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Ⅱ

2024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이상아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박소희 예산분석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 원 | 장유진 행정실무원
김서연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Ⅱ

【 위원회별 분석 】

2024. 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4. 9. 23.)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지정된 327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수입 · 지출액은 2023년 기준 907조 3,792억원으로,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세수부진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운영 전반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3월에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일을 앞당기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국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부처에 비하여 기관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기관별 · 공시항목별로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기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공공기관 전반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고, 분야별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 현황,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안전관리등급 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 공공기관의 이슈를 주제별로 분석하였습니다. 2권에서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 현황과 재무건전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문제 및 복리후생 등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다룸으로써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4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 경 호

차 례

CONTENTS

정무위원회

1.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3

2. 한국산업은행 ····· 9

2-1.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필요 ····· 9

2-2.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 15

2-3. 성과급 관련 문제 ····· 17

2-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19

2-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23

2-6. 징계 관련 문제 ····· 26

3.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 29

3-1.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대상 회사의 업종 확대 필요 ····· 29

4. 신용보증기금 ····· 38

4-1.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우회 출자회사를 지원한 문제 ····· 38

4-2.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관련 문제 ····· 46

4-3. 성과급 관련 문제 ····· 51

4-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54

4-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57

4-6. 징계 관련 문제 ····· 60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63

5-1.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개선 필요 ····· 63

5-2. 성과급 관련 문제 ····· 65

5-3. 징계 관련 문제 ····· 67



CONTENTS

6. 금융감독원 ····· 70

6-1.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검토 ····· 70
6-2. 재무 현황 분석 ····· 79
6-3. 분담금 반환금액 최소화 노력 필요 ····· 83
6-4. 경영정보 공시 확대 필요 ····· 87
6-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90

기획재정위원회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95

2. 한국수출입은행 ····· 98

2-1.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필요 ····· 98
2-2. 해외현지법인 수익성 개선 노력 필요 ····· 103
2-3.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외보증업무 중복 ····· 108
2-4. 성과급 관련 문제 ····· 117
2-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120
2-6. 징계 관련 문제 ····· 123

3. 한국은행 ····· 125

3-1. 재무 현황 분석 ····· 125
3-2. 정부대출금 및 관련 이자수익 현황 분석 ····· 129
3-3. 퇴직금 관련 자산 추가 적립 필요 ····· 132
3-4.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 관리 필요 ····· 134
3-5.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정 수준 관리 필요 ····· 136
3-6. 급여성 경비예산 사전 승인 논의 현황 ····· 139



CONTENTS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145

2. 서울대학교병원 ····· 149

2-1.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 연속 최고액 납부 ····· 1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155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60

2-1. 지속적인 적자 누적에 따른 일부 자본잠식 문제 ····· 160

2-2. Kobaco 연수원 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필요 ····· 162

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65

3-1.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 165

3-2. 성과급 관련 문제 ····· 167

3-3. 징계 관련 문제 ····· 169



CONTENTS

외교통일위원회

1.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173

2. 한국국제교류재단 ····· 176

2-1.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 176

2-2. 성과급 관련 문제 ····· 178

2-3.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 180

행정안전위원회

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185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89

2-1.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수입 적정성 검토 필요 ····· 189

2-2. 성과급 관련 문제 ····· 193



CONTENTS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197

2. 영화진흥위원회 ····· 202

2-1. 녹색제품 공공기관 구매이행률 실적 저조 ····· 202

2-2.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 204

2-3. 성과급 관련 문제 ····· 206

2-4.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 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213

2. 한국마사회 ····· 220

2-1. 장외발매소 사행성 매출 관리 필요 ····· 220

2-2.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고객만족도 ····· 223

2-3. 성과급 관련 문제 ····· 225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27

3-1.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 문제 개선 노력 필요 ····· 227

3-2. 성과급 관련 문제 ····· 231

3-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233

3-4.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236



CONTENTS

4. 한국농어촌공사 ····· 239

4-1.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임대료 차등화 필요 ····· 239

4-2.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242

4-3.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245

4-4. 징계 관련 문제 ····· 248

5. 한국치산기술협회 ····· 251

5-1. 2023년 보수지급액 급등 부적절 ····· 25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257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 267

3. 한국전력공사 ····· 274

3-1.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 274

3-2. 재정건전화계획 상 미매각자산 매각 방안 마련 필요 ····· 278

3-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281

3-4.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284

3-5. 징계 관련 문제 ····· 287

4. 한국가스공사 ····· 289

4-1.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 289

4-2. 성과급 관련 문제 ····· 292

4-3. 징계 관련 문제 ····· 295



CONTENTS

5. 한국석유공사 ····· 298

5-1.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탐사사업 현황 분석 ····· 298
5-2. 자회사 부실에 따른 우발채무 확대 대비 필요 ····· 304
5-3. 성과급 관련 문제 ····· 307
5-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309
5-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313
5-6. 징계 관련 문제 ····· 316

6. ㈜강원랜드 ····· 318

6-1. 카지노 이외 사업부문 수익성 제고 필요 ····· 318
6-2. 최하위 고객만족도 결과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321
6-3. 성과급 관련 문제 ····· 323
6-4. 징계 관련 문제 ····· 326

7. 대한석탄공사 ····· 328

7-1. 몽골 훗고르샤나가 탄광 매각을 위한 방안 필요 ····· 328

8. 기술보증기금 ····· 331

8-1.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관련 문제 ····· 331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36

9-1.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제재 부과 필요 ····· 336

10. 창업진흥원 ····· 343

10-1.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제재 부과 필요 ····· 343



CONTENTS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351

11-1. 수출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 ····· 351
11-2. 성과급 관련 문제 ····· 357
11-3. 징계 관련 문제 ····· 360

12. 한국전력거래소 ····· 362

12-1.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오지급 및 환수 지연 문제 ····· 362
12-2. 성과급 관련 문제 ····· 368
12-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370
12-4.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373
12-5. 징계 관련 문제 ····· 376

보건복지위원회

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381

2. 국민건강보험공단 ····· 386

2-1.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86
2-2.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건강보험 재정 투입 현황 ····· 389
2-3.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392
2-4. 징계 관련 문제 ····· 395



CONTENTS

3. 대한적십자사 ····· 397

3-1. 헌혈환급예치금 적립금 적정성 재검토 필요 ····· 397
3-2. 안정적 혈액 공급 방안 마련 필요 ····· 401
3-3. 원폭피해자복지사업 관리비의 해당 사업 관련 사용 필요 ····· 405
3-4. 활용도 낮고 자본잠식된 콘도회원권 처리방안 마련 필요 ····· 410
3-5. 성과급 관련 문제 ····· 414
3-6. 징계 관련 문제 ····· 416

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419

4-1.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 운영 관리 철저 ····· 419
4-2. 신규 중독재활센터 설치 관련 문제 ····· 425

환경노동위원회

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431

2. 한국수자원공사 ····· 437

2-1. 수탁사업 자금 관리 부적절 ····· 437
2-2. 물산업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440
2-3. 친수 및 수변사업 실적 관리 필요 ····· 443
2-4. 활성탄 비축창고 및 재생시설 공사의 신속한 완료 필요 ····· 447
2-5. 수질관련 환경법규 위반 발생 ····· 450
2-6. 성과급 관련 문제 ····· 453
2-7.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455
2-8.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459
2-9. 징계 관련 문제 ····· 462



CONTENTS

3. 한국환경공단 ····· 465

3-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465
3-2.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지속적 손실 발생 문제 해결 필요 ····· 468
3-3. 징계 관련 문제 ····· 472

4. 국립공원공단 ····· 474

4-1. 산악형 공원의 전문구조요원 부족 문제 ····· 474
4-2. 성과급 관련 문제 ····· 479
4-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481
4-4.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 484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487

5-1. 반입수수료 수입 급감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487
5-2.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491
5-3.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494
5-4. 징계 관련 문제 ····· 497
5-5.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 499

6. 근로복지공단 ····· 502

6-1. 산업재해 사건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502
6-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509
6-3. 대지급금지급 구상채권 부실과 임금채권보장기금 재무건전성 취약 문제 ···· 512
6-4. 퇴직금 관련 자산 추가 적립 필요 ····· 516

7. 한국산업인력공단 ····· 518

7-1.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발생 ····· 518



CONTENTS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522

8-1.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필요 ····· 522

9.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525

9-1. 학과신설·개편에 따른 원활한 교원 수급 필요 ····· 525

9-2. 성과급 관련 문제 ····· 530

9-3. 징계 관련 문제 ····· 532

국토교통위원회

1.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 537

2.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 542

3. 한국토지주택공사 ····· 548

3-1. 미분양 장기보유재고 매각활성화 필요 ····· 548

3-2. 집단에너지사업 장기간 미매각 문제 ····· 550

3-3. 수탁사업 자금 이자수익률 제고 필요 ····· 554

3-4.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 557

3-5.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559

3-6.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563

3-7. 징계 관련 문제 ····· 566



CONTENTS

4. 한국도로공사 ····· 570

4-1.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설치 지연 문제 해결 필요 ····· 570
4-2. 최근 5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 ····· 574
4-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577
4-4. 징계 관련 문제 ····· 581

5. 주택도시보증공사 ····· 583

5-1.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한 손실 확대 ····· 583
5-2. 연례적으로 낮은 고객만족도 개선 위한 노력 필요 ····· 587
5-3. 성과급 관련 문제 ····· 589
5-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591
5-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 594

6. 한국철도공사 ····· 597

6-1. 용산 역세권 토지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매각계획 마련 필요 ····· 597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601

7-1. 장기화되는 주요 개발사업의 적극적 관리 필요 ····· 601
7-2. 면세점 사업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 문제 ····· 609
7-3. 유휴토지 및 국제학교 운영권 매각계획 적시 이행 필요 ····· 612
7-4. 성과급 관련 문제 ····· 618
7-5.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 620

8. 한국국토정보공사 ····· 623

8-1. 녹색제품 연례적 구매계획 미달성 개선 필요 ····· 623
8-2. 징계 관련 문제 ····· 625



CONTENTS

9. 새만금개발공사 ····· 627

9-1.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627

9-2. 사업 집행 부진으로 인한 수익 발생 지연 문제 ····· 631

9-3. 성과급 관련 문제 ····· 635

9-4. 징계 관련 문제 ····· 637

10.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639

10-1. 안전관리등급 미흡 ····· 639

11. 건설기술교육원 ····· 642

11-1. 3년 연속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미달성 ····· 642

11-2. 성과급 관련 문제 ····· 644



정무위원회

1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총 37개이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2개, 기타공공기관이 31개임

-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3개로 총 7개임
-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총 2개임
- ○ 국가보훈부 소관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기타공공기관인 88관광개발(주)와 독립기념관 등 총 3개임
- ○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등 기타공공기관 25개임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금융위원회(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3)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소비자원
	기타공공기관(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가보훈부(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공공기관(2)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25)	기타공공기관 (25)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37)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37,592명

- ○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3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7,566명
- ○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25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998명
-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소비자원 등 2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660명
- ○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등 7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23,974명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보훈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795	7,131	7,426	7,570	7,378
	기타공공기관 (2)	88관광개발(주)	43	45	43	43	42
		독립기념관	145	150	151	152	146
	소계		6,983	7,326	7,620	7,765	7,566
국무조정실 (25)	기타공공기관 (25)	건축공간연구원	101	105	110	112	1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88	93	98	98	9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0	163	167	162	162
		국토연구원	277	277	279	283	28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4	214	216	216	217
		산업연구원	209	210	215	215	211
		에너지경제연구원	170	171	170	170	17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8	175	175	179	177
		통일연구원	102	101	101	101	100
		한국개발연구원	480	460	468	472	472
		한국교육개발원	228	225	226	227	2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82	345	348	351	351
		한국교통연구원	240	240	252	253	244
		한국노동연구원	147	150	150	151	15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3	166	165	164	164
		한국법제연구원	130	132	134	136	1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	206	208	208	2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2	132	132	132	12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22	333	360	365	36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6	209	204	210	2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6	87	88	91	9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47	249	248	254	255
		한국행정연구원	125	130	132	131	1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95	95	95	103	105
		한국환경연구원	225	226	229	234	238
	소계		4,786	4,894	4,970	5,018	4,998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정거래위원회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소비자원	497	533	546	568	547
	기타공공기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92	94	105	116	113
	소계		589	627	651	684	660
금융위원회 (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	신용보증기금	2,716	2,769	2,888	2,948	2,907
		예금보험공사	804	805	828	868	839
		한국자산관리공사	1,682	1,729	1,785	1,846	1,831
		한국주택금융공사	909	952	995	1021	997
	기타공공기관 (3)	서민금융진흥원	243	274	312	328	339
		중소기업은행	13,339	13,698	1,3974	1,3965	1,3642
		한국산업은행	3,305	3,313	3,341	3,396	3,419
	소계		22,998	23,540	24,123	24,372	23,974
합계			35,745	36,781	37,758	38,236	37,592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국가보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로 총 6개 기관임

-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임
- ○ 2022년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하락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2022년 아주미흡(E) 등급에서 2023년 보통(C) 등급으로 2등급 상승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융위원회(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신용보증기금	경평결과	B	A	A	B	B
			경평성과급	2,593	2,322	3,024	2,518	2,294
		예금보험공사	경평결과	A	B	B	B	B
			경평성과급	2,215	2,598	2,398	2,590	2,515
		한국자산관리공사	경평결과	B	A	A	C	C
			경평성과급	1,988	1,893	2,451	2,304	1,900
		한국주택금융공사	경평결과	A	A	A	C	C
			경평성과급	1,830	2,344	2,525	2,352	1,812
공정거래위원회(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소비자원	경평결과	C	C	D	C	B
			경평성과급	1,409	914	1,001	129	1,291
국가보훈부(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평결과	D	C	C	E	C
			경평성과급	1,065	188	932	756	0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임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등 2개 기관이며, 2022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등 2개 기관임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보훈부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3	3	3	2
	기타공공기관 (1)	독립기념관	-	-	-	3	-
국무조정실 (3)	기타공공기관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	-	-	4
		한국개발연구원	3	-	-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	-	-	-	-
공정거래위원회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소비자원	4	3	3	3	4
금융위원회 (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	예금보험공사	4	3	3	3	2
		한국자산관리공사	3	3	4	3	3
		한국주택금융공사	2	3	2	2	2
		신용보증기금	2	2	2	1	2
		서민금융진흥원	-	-	-	2	-
	기타공공기관 (2)	중소기업은행	3	2	2	2	2
		한국산업은행	2	2	2	2	2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한국산업은행

2-1.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1]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임

- ○ 2023년 결산 기준 한국산업은행의 자산규모는 346조 8,305억원, 부채는 307조 9,211억원, 자본은 38조 9,094억원이며 부채비율은 791.38%로 나타남
- ○ 2022년에는 7조 8,9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은 3조 4,78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흑자 전환하였음

[한국산업은행 재무상태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	268,839,664	304,996,478	333,898,236	352,605,396	346,830,463
부채	233,762,601	264,006,955	287,740,059	315,779,999	307,921,079
자본	35,077,063	40,989,523	46,158,177	36,825,397	38,909,384
부채비율	666.43	644.08	623.38	857.51	791.38
수익(매출액)	35,211,722	34,734,854	35,587,512	51,434,174	49,216,105
영업이익	1,234,230	776,669	1,842,108	△292,637	3,801,379
당기순이익	279,147	1,961,348	1,323,469	△7,895,347	3,478,605

주: 1. 각 연도 결산 기준
2. 연결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손실금의 보전)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특수은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필요

○ 2024년 3월 기준 한국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88%로 시중은행 평균인 16.80%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특수은행의 평균인 14.36%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남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단위: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3.
시중은행	국민은행	15.85	17.78	17.47	17.46	18.08	17.35
	신한은행	15.91	18.47	18.18	17.77	18.08	17.65
	우리은행	15.40	17.34	16.20	15.60	16.04	15.92
	하나은행	16.11	14.73	17.24	16.63	17.93	17.38
	농협은행주식회사	15.19	17.70	18.31	18.77	18.30	17.70
	수협은행	13.59	13.98	13.84	13.52	14.42	14.78
시중은행 평균(A)		15.34	16.67	16.87	16.63	17.14	16.80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14.47	14.82	14.85	14.68	14.87	14.94
	한국산업은행(B)	14.05	15.96	14.88	13.40	13.70	13.88
	한국수출입은행	14.56	15.09	14.84	13.38	14.47	14.27
특수은행 평균		14.36	15.29	14.86	13.82	14.35	14.36
시중은행 평균과 한국산업은행 차이(A-B)		1.29	0.71	1.99	2.23	3.44	2.92

주: 1. 2019~2023년은 각 연도말 기준
2. 특수은행중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는 농협은행주식회사 및 수협은행은 설립목적과 별개로 시중은행으로 구분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2년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발생으로 한국산업은행의 2023년 1분기 BIS 자기자본비율이 13.11%로 내려가자[2]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2022년 12월 및 2023년 3월 말일 자로 총 1조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을 한국산업은행에 현물출자하였고, 해당 현물출자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2bp, 10bp 상승하였음

2)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24조 4,2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해당 손실 중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32.9%) 만큼을 한국산업은행의 지분법 손실로 인식

○ 그러나 2023년에도 한국전력공사의 4.8조원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2023년도 말 기준 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7%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 수요 확대로 인한 자금공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2조원을 추가로 현물출자함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이 14.13%로 43bp 상승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현물출자 세부내역]

(단위: 좌, 억원, %, %p)

일자[1]	주식 수[2]	금액	BIS 비율 변동		
			출자 전(a)	출자 후(b)	증감(b-a)
2022.12.28	43,700,208	5,650	13.08	13.20	+0.12
2023.03.30	34,477,292	4,350	13.40	13.50	+0.10
2024.03.28	194,457,948	20,000	13.70	14.13	+0.43
합계	272,635,448	30,000	-	-	-

주: 1) 주권 수령일 기준
2) '비상장주식의 출자가액 결정기준 제7조'에 의거, 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으로 가정
자료: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성 관련 지표 실적도 타 은행 대비 낮은 수준으로 수익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은행별 순이자마진(NIM)[3]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2023년도 평균 NIM이 1.69%이고, 특수은행의 2023년도 평균 NIM은 1.04%인 반면, 한국산업은행의 2023년도 말 기준 NIM은 0.51%으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

-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산업은행의 순이자마진은 0.5~0.6% 수준으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3월 기준으로는 NIM이 0.3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게 나타남

3)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은행별 순이자마진(NIM) 현황]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3.
시중은행	국민은행	1.67	1.51	1.58	1.73	1.83	1.86
	신한은행	1.54	1.37	1.41	1.63	1.62	1.63
	우리은행	1.44	1.33	1.37	1.59	1.56	1.49
	하나은행	1.49	1.34	1.41	1.62	1.59	1.54
	농협은행주식회사	1.72	1.65	1.60	1.75	1.96	2.00
	수협은행	1.40	1.39	1.50	1.45	1.57	1.70
평균		1.54	1.43	1.48	1.63	1.69	1.70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1.83	1.55	1.51	1.78	1.79	1.74
	한국산업은행	0.52	0.55	0.68	0.63	0.51	0.34
	한국수출입은행	1.13	1.03	1.09	0.96	0.83	0.59
평균		1.16	1.04	1.09	1.12	1.04	0.89

주: 1. 2019~2023년은 각 연도말 기준
2. 특수은행 중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는 농협은행주식회사 및 수협은행은 설립목적과 별개로 시중은행으로 구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성 지표(ROA, ROE)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ROA(Return On Assets)는 총자산순이익률로 기업의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4] 최근 5년 한국산업은행의 ROA는 시중은행 평균 ROA의 상회와 하회를 반복하고 있음
- ROE(Return On Equity)는 자기자본이익률로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로 산출되며, 자기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임. 한국산업은행의 ROE는 2023년 6.52%로 시중은행 평균 8.64%, 특수은행 평균 6.56%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특히 2019년, 2020년, 2022년에는 ROE는 1%대 수준으로 나타남

4) 일반적으로 ROA가 높을수록 자산규모 대비 수익성이 큰 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유자산을 대출·유가증권 등에 운용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순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음

[은행별 ROA, ROE 현황]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ROA	시중은행	국민은행	0.66	0.55	0.58	0.60	0.60
		신한은행	0.59	0.48	0.52	0.58	0.57
		우리은행	0.55	0.38	0.58	0.61	0.54
		하나은행	0.62	0.51	0.60	0.67	0.70
		농협은행주식회사	0.50	0.42	0.43	0.46	0.45
		수협은행	0.56	0.43	0.49	0.41	0.44
	평균		0.58	0.46	0.53	0.56	0.55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0.50	0.40	0.58	0.64	0.60
		한국산업은행	0.20	0.19	0.90	0.15	0.78
		한국수출입은행	0.33	0.10	0.55	0.33	0.67
	평균		0.34	0.23	0.68	0.37	0.68
ROE	시중은행	국민은행	8.72	7.70	8.11	8.93	8.56
		신한은행	8.48	7.09	7.97	9.40	8.64
		우리은행	8.36	5.83	9.21	10.85	9.31
		하나은행	8.55	7.34	8.95	10.81	11.09
		농협은행주식회사	9.27	7.99	8.51	8.77	7.94
		수협은행	7.68	5.72	6.59	5.81	6.31
	평균		8.51	6.95	8.22	9.10	8.64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6.57	5.51	8.12	9.43	8.50
		한국산업은행	1.73	1.75	6.57	1.31	6.52
		한국수출입은행	2.14	0.70	3.53	2.44	4.65
	평균		3.48	2.65	6.07	4.39	6.56

주: 1. 각 연도말 기준
2. 특수은행 중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는 농협은행주식회사 및 수협은행은 설립목적과 별개로 시중은행으로 구분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산업은행의 ROA와 ROE 지표가 2021년과 2023년만 특별히 높게 나타난 것은 2021년과 2023년에 한국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조원 중반대로 평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임.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 증가 외에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처분이익의 발생(2021년)[5] 및 기업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2023년)[6] 등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크게 반영된 것에 기인함

[한국산업은행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당기순이익	445,728	487,530	2,461,846	464,981	2,508,927

자료: KDB산업은행 감사보고서(재무제표)

❑ 한국산업은행은 수익성이 낮은 공기업 주식 보유 및 주요 구조조정 관련 영업외손익 변동 등 영향으로 낮은 BIS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 지표 등을 보이고 있는바,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2021년 에이치엠엠(주) 전환사채(CB) 전환권 행사(보통주 전환)에 따른 처분손익 1조 8,165억원

6) 2023년 한화오션(주)(舊 대우조선해양)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 1조 147억원

2-2.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가. 현 황

❑ 한국산업은행의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15%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2023년 기준 공공기관[2]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로, 전체 공공기관 중 222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은 미달성

[한국산업은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324개 기관	24,537,487	315,276	1.28
한국산업은행	168,689	246	0.15

자료: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전체 327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 중 신규 편입된 (재)한국통계정보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1년 0.15%, 2022년 0.17%, 2023년 0.15%로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산업은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1	155,849	239	0.15
2022	152,512	256	0.17
2023	168,689	246	0.15

자료: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산업은행은 「직무성과급제규정 시행세칙」 제2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3,400명의 임직원에게 총 120,189,735천원을 지급

[한국산업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A	3,166	30,322,323	87,496,367	117,818,690
2023	A	3,131	30,874,261	87,081,625	117,955,886
2024	A	3,400	30,931,069	89,258,666	120,189,735

주: 1. 2022~2024년 경영평가 성과급은 결산 기준, 2024년 내부평가급은 예산 기준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차등 등급 수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아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한국산업은행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영업직)	20	205	60	185	20	165	-	-	-	-	-	-
	경평 (비영업직)	20	185	60	175	20	165	-	-	-	-	-	-
	경평 (전문직)	135~270(절대평가 후 차등 지급)											
	내부	10	21	15	17	50	13	15	9	10	5	-	-
2023	경평 (영업직)	20	205	60	185	20	165	-	-	-	-	-	-
	경평 (비영업직)	20	185	60	175	20	165	-	-	-	-	-	-
	경평 (전문직)	108~360(절대평가 후 차등 지급)											
2023	내부	10	21	15	17	50	13	15	9	10	5	-	-
2024	내부	10	21	15	17	50	13	15	9	10	5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산업은행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산업은행은 내부 규정인 「복지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248명, 지원금액은 12,867,814천원임

[한국산업은행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357	399	435	398	291	248
지원금액	23,619,822	25,439,216	27,327,758	24,316,437	15,937,350	12,867,814
1인당 지원 한도	주택임차자금대출: (~2024년)100,000, 주택구입자금대출: (~2024년)5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규정」 제14조(가계안정자금 대여) 및 시행세칙 제8조(가계안정자금 대여조건) 「한국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시행세칙 제11장(주택자금대출)					
지원 요건 (2024.7.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주택임차자금대출: 2년내 일시상환 주택구입자금대출: 3년 이내 일시상환, 2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원금균등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table>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산업은행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2.18~2.83	1.97~2.80	1.43~2.70	2.36~2.68	4.43~5.12	4.36~4.48	4.03~4.27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산업은행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 대출 이자율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66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2.36~5.12%)으로 주택융자금 제공
-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37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1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산업은행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66	2.36~5.12	4,581,220	미개정	37	3,530,92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산업은행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산업은행은 내부 규정인 「복지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1,254명, 지원금액은 35,306,415천원임

[한국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319	1,510	1,661	1,576	1,349	1,254
지원금액	39,552,614	44,169,356	49,850,018	46,780,570	38,806,126	35,306,415
1인당 지원 한도	(~2024년)4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규정」제14조(가계안정자금 대여) 및 시행세칙 제8조(가계안정자금 대여조건) 「한국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제20조(기금의 용도) 「한국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시행세칙」제4장(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요건 (2024.7.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3년내 일시상환, 8년내 분할상환(3년거치 포함)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8~3.49	2.08~3.49	1.53~3.49	2.46~2.67	4.47~5.21	4.39~4.85	4.17~4.45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산업은행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대출 이자율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668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2.46~5.21%)으로 생활안정자금 제공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404명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4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668	2.46~5.21	16,055,460	미개정	404	12,903,2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산업은행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6.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산업은행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9명임

[한국산업은행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435	29	3	-	5	-	5	16	2	4	-	-	-	1	1	22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상기한 내용 중 일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바,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직무성과급제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정직자에게 기준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 5명에게 46,976천원의 보수를 지급

[한국산업은행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	1	-	-	2	1
평균 처분기간	6	6	-	-	1	6
보수지급액	14,375	14,689			3,830	14,082
관련 내부 규정	「직무성과급제규정 시행세칙」 제11조(징계자의 보수)					
지원 요건 (2024.7. 기준)	정직자: 기준급의 40/100 범위내 지급 ※해당기간 기준급 40/100 범위 外 보수(직책급, 성과급 등) 미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산업은행은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2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한국산업은행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2.9.1.	뇌물수수	28,000	면직	X
2024.2.23.	횡령	RMB 5.5만 RMB (약 10,000천원)	정직 6개월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규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3-1.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대상 회사의 업종 확대 필요

가. 현 황

❑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 대상 회사를 비금융출자회사에 한정하고 있음

○ 은행형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2024년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내부적으로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심사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런데 3개 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대상 회사를 “타법인 투·출자 공시대상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재취업 심사대상 회사를 “비금융 출자회사”에만 한정하여 금융출자회사로의 재취업 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고 있음

[은행형 공공기관별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여부]

구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비금융출자회사		○	○	○
금융출자회사	자회사	×	×	○
	기타			

자료: 각 기관별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관련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은행형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규정]

기관명	재취업 심사 대상 회사	내부규정
한국산업은행	비금융 출자회사로서 - 당행이 임직원추천권을 보유한 회사이거나 - 당행이 최대채권자 또는 주채권은행인 경우	출자회사관리위원회규정 및 출자관리회사위원회 운영세칙
중소기업은행	비금융출자회사(「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10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여 당행이 출자한 법인은 제외)	퇴직자재취업심사위원회 규정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서 정하는 타법인 투·출자 현황 공시대상 법인	퇴직자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관련 지침상 퇴직임직원의 출자기관 취업 심사 규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업무의 특성 및 출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에 준하는 출자기관 재취업 심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 심의 · 의결에 대한 규정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적용하였으며, 2018년 공공기관 관련 지침의 통폐합[1]으로 제정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도 출자기관 재취업에 대한 심의 · 의결 규정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음

1) 공공기관에 관한 지침은 2018년 3월 이전에는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임금피크제 권고안 등 32개의 지침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5개로 지침으로 통폐합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기관 취업심사 규정]

구분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용	제5조(출자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 ⑤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기관 등의 운영) ⑤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퇴직임직원이 출자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자기관의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취업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기관 관리업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공기업 · 준정부기관

○ 다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의 업무 특성 및 중요성, 출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출자기관 재취업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업은행은 「출자회사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임직원 재취업 적정성 심의대상 기관을 비금융 출자회사로 한정하여 금융 출자회사로의 재취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있음

○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 재취업자 총 35명 중 「출자회사관리위원회규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심사 대상에 해당하여 심사를 거쳐 재취업한 인원은 15명임[2)]

2) 한국산업은행의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재취업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합계
인원(명)	1	3	2	3	4	2	15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나머지 20명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금융자회사(국외 현지법인 포함)[3] 및 금융출자회사[4]로의 재취업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남

[2019~2024.6. 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재취업 인원	재취업 심사 여부
비금융출자회사		15	○
금융출자회사	자회사[1]	19	×
	기타	1[2]	
합계		35	

주: 1) 국외현지법인 포함
2) 한국해양진흥공사 재취업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특히 한국산업은행은 재취업 심사대상 회사를 비금융 출자회사 중에서도 ① 당행이 임직원추천권을 보유한 회사이거나 ② 당행이 최대채권자 또는 주채권은행인 경우로 한정하여 심사대상 범위를 더욱 좁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은 출자회사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15.10.29)에 의거하여 비금융 출자회사 관련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신설되었으며, 신설목적을 감안하여 심의대상을 비금융 출자회사로 한정하였다는 설명임

○ 그러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임직원의 비금융회사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 그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방안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대상을 비금융에만 한정하라는 취지는 아님

3) 케이디비인베스트먼트㈜, 산은캐피탈㈜,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 케이디비비즈㈜, KDB BANK EUROPE LIMITED, KDB ASIA LIMITED, KDB BANK UZBEKISTAN

4) 한국해양진흥공사

○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재취업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금융자회사에서 내·외규[5]에 따라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고, 금융자회사는 한국산업은행의 기능[6] 보완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사로 일반적인 여신·투자 거래처와는 달리 관리하고 있으며, 모회사 경영전략 공유 및 협업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금융 분야 및 조직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산업은행 퇴직임직원을 금융자회사 경영진으로 선임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임원의 자격요건(제5조) 및 금융회사 측에서 임명하고자 하는 임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제도는 임직원의 재취업을 통한 출자회사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다름

❑ 중소기업은행 역시 「퇴직자재취업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재취업 적정성 심사 대상을 비금융 출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2022년 6월에 「퇴직자재취업심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그 이전까지의 재취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2년 7월 이후부터 2024년 6월까지 중소기업은행의 재취업자 총 28명 중 「퇴직자재취업심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취업한 경우는 비금융출자회사에 취업한 3명에 불과함[7][8]

---

5) (예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6)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기업구조조정 등

7)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은행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내역

재취업 연도	재취업 회사명	재취업 심사결과	재취업 직위/직급	퇴직연도	퇴직 전 직급
2023	웹케시㈜	승인	감사	2023	고경력직원(5급)
2024	㈜블루아일랜드 자산관리	승인	사내이사	2024	고경력직원(5급)
2024	(주)홈앤쇼핑	승인	사외이사	2023	고경력직원(5급)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8) 비금융출자회사(한국도로공사) 재취업시 심사를 받지 않은 1명은 재취업연도가 2020년으로 중소기업은행의 재취업심사위원회 규정 시행('22.6) 전이었음

○ 이 외에 25명의 경우 모두 중소기업은행의 금융 출자회사들[9]로 재취업함에 따라 「퇴직자재취업심사위원회 규정」 심사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2022.7~2024.8 중소기업은행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재취업 인원	재취업 심사 여부
비금융출자회사		3	○
금융출자회사	자회사[1)]	24	×
	기타	1[2)]	
합계		28	

주: 1) 국외현지법인 포함
2) 연합자산관리(주)
1. 중소기업은행은 2022년 6월에 「퇴직자재취업심사위원회 규정」을 제정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10] 등을 운영하고 있어 「퇴직자재취업심사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중복되는 등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설명임

9) (주)IBK캐피탈, (주)IBK저축은행, IBK자산운용(주), IBK투자증권(주), (주)IBK시스템, IBK연금보험(주), (주)IBK서비스,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IBK미얀마은행 등

10)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은 금융회사 측에서 임명하고자 하는 임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제도는 임직원의 재취업을 통한 출자회사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다름

❑ 반면, 또다른 은행형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퇴직자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재취업 심사대상을 "타법인 투·출자 현황 공시대상 법인"으로 하여 공시대상 출자회사 전체에 적용하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퇴직자 재취업 관련 세칙에서 "심사대상 출자회사"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서 정하는 타법인 투·출자 현황 공시대상 법인(다만, 국외현지법인은 제외)"으로 규정하여 재취업 심사 대상 회사를 비금융 출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당행의 임직원이 ALIO 공시대상 출자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재취업 현황 공시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기준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시 기준[11]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임

○ 한국수출입은행은 2022.8.26.에 「퇴직자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그 이전까지의 재취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2023년부터 발생한 출자회사 재취업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건을 심사한 것으로 나타남

11) 2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1,000억원 이상 출자한 상위 15개' 출자회사

[한국수출입은행 재취업심사 대상 및 심사결과 (2022.9~2024.7.)]

구분		재취업 연도	재취업 대상기관명	재취업 심사결과	재취업 직위/직급	퇴직 연도	퇴직 전 직급
비금융 출자회사		2023	한국항공우주산업	취업승인	사외이사	2022	본부장
		2024	한국항공우주산업	취업승인	비상근 자문위원	2024	시니어 컨설턴트
금융 출자회사	자회사	2024	수은플러스	취업승인	대표이사	2023	시니어 컨설턴트
	기타	2024	한국해양진흥공사	취업승인	본부장	2024	본부장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또한 이와 같이 각 공공기관별로 재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출자회사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됨에 따라 동일 사례(퇴직자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재취업)에 대하여 공공기관별로 재취업 심사 수행 여부가 다르게 나타남

- 한국산업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 출자회사라는 사유로 퇴직자 재취업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모든 출자회사에 대해 재취업심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심사를 거쳐 재취업을 승인한 바 있음

❑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대상 범위를 비금융 출자회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출자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취업 심사대상을 비금융 출자회사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 ② 「공공기관 운영법」[12]에서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③ 유사한 은행형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재취업 심사대상을 전체 출자회사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또한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금융출자회사에 대해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 사유로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임원의 자격요건(제5조)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제17조) 규정은 금융회사 측에서 임명하고자 하는 임원의 자격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고,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재취업 심사제도는 임직원의 재취업을 통한 출자회사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가능성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다름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4 신용보증기금

4-1.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우회 출자회사를 지원한 문제

가. 현 황

❑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는 신용보증기금 사우회의 출자회사로, 신용보증기금이 100%(자본금 19.5억원) 출자하였음

○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이하 "㈜에스비에이드"라 함)의 2023년 말 기준 자산은 64.4억원, 부채는 6.3억원, 자본은 58.1억원임

○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6억원이며, 2023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39.5억원으로 나타남

[(주)에스비에이드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재무 현황	자산총계	4,662	5,171	6,284	6,440
	부채총계	937	811	935	632
	이익잉여금	2,817	2,500	3,491	3,950
	자본총계	3,726	4,360	5,348	5,809
손익 현황	매출액	6,124	6,505	7,223	6,911
	당기순이익	845	1,182	1,792	1,759

자료: ㈜에스비에이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에스비에이드의 임직원은 총 72명임

[(주)에스비에이드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임원	팀장	팀원	총계
임원	2	-	-	2
직원	-	4	66	70
총계	2	4	66	72

주: 1. 2024.1.1. 기준
2. 임원의 경우, 상임임원 기준으로 작성

자료: 신용보증기금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 매년 신용보증기금 퇴직자 중 일부가 사우회 출자회사인 ㈜에스비에이드에 재취업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 퇴직자의 사우회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인원	5	8	8	8	8	6	6	6	8	8	8	8	2

자료: 신용보증기금

나. 주요 쟁점

❑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P-CBO 보증[1] 관련 일반사무 업무수탁자 선정시 사우회 출자회사인 ㈜에스비에이드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우회 출자회사의 이익을 확대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에스비에이드와 별도의 업무수탁 계약 체결 없이 매월 건별로 P-CBO 보증 업무수탁 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통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에스비에이드에 지급한 보증업무 수탁 수수료 총금액은 207억 7,500만원임

-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에스비에이드와의 수의계약 체결 사유는 “업무 수행 경험 및 전문성”임

[(주)에스비에이드와의 보증업무 관련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회, 백만원)

구분	2012.9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계약체결 횟수	66	8	13	21	24	25	25	182
수수료 금액	7,183	1,526	1,291	1,595	2,569	3,031	3,580	20,775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회사채 발행시장 등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 회사보증

○ ㈜에스비에이드의 이익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과의 P-CBO 보증 업무수탁 용역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구조임

- 신용보증기금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P-CBO 보증 업무수탁 용역이 전체 ㈜에스비에이드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2.1%에서 2023년 기준 약 88.5%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에스비에이드의 당기순이익 역시 2020년 8.45억원에서 2023년 17.5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주)에스비에이드 매출액 중 유동화수탁 사업수입 비중]

(단위: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유동화 수탁	매출액(A)	1,595,186,785	2,568,524,690	3,336,669,192	3,579,602,058
	매출원가(B)	975,466,284	1,078,500,296	1,260,217,312	1,340,989,595
	매출이익 (C=A-B)	619,720,501	1,490,024,394	2,076,451,880	2,238,612,463
전체 매출총이익(D)		1,471,273,129	1,964,683,903	2,648,914,032	2,529,476,650
매출총이익 중 유동화수탁사업 비중 (C/D)		42.1	75.8	78.4	88.5
당기순이익		845,044,308	1,182,320,817	1,791,866,473	1,758,587,909

자료: ㈜에스비에이드 감사보고서(2020~2023)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P-CBO 보증 업무수탁자 선정시부터 제반 수탁사무의 실행이 가능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에스비에이드를 포함한 3개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함

- 업무수탁자 모집 공고 결과, 시중은행 2개사(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사우회 출자회사인 ㈜에스비에이드가 응모하였고, 최종적으로 3개 기관이 모두 수탁자로 선정되었음[2)]

2) 신용보증기금은 매월 업무수탁자 업무수행시 건별로 업무수탁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

❑ 신용보증기금은 P-CBO 보증업무 수탁 외에도 임대차 계약 등 다수의 수의계약을 사우회 출자회사인 ㈜에스비에이드와 체결하여 왔음(2012~2023년)

○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신용보증기금의 건물 일부를 ㈜에스비에이드에 임대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왔으며, 연도별 평균 계약금액(보증금)은 약 15억원 수준임

[(주)에스비에이드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내역]

(단위: 평, 원)

연도	계약기간		면적	(전세)보증금	계약방식
	시작일	종료일			
2012	'12.03.26.	'13.03.25.	354.27	1,039,322,000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카목)
2013	'13.03.26.	'14.03.25.	354.27	1,143,254,000	
2014	'14.03.26.	'15.03.25.	354.27	1,143,254,000	
2015	'15.03.26.	'16.03.25.	467.2	1,507,687,000	
2016	'16.03.26.	'17.03.25.	467.2	1,658,455,000	
2016	'16.03.26.	'17.03.25.	354.27	1,257,578,000	
2017	'17.03.26.	'18.03.25.	354.27	1,257,578,000	
2018	'18.03.26.	'19.03.25.	354.27	1,257,578,000	
2019	'19.03.26.	'21.03.25.	240.65	1,650,000,000	
2020	'20.09.18.	'21.03.25.	288.03	1,863,000,000	
2021	'21.03.26.	'22.03.25.	288.03	1,863,000,000	
2022	'22.03.26.	'23.03.24.	288.03	1,863,000,000	
2023	'23.03.25.	'24.03.24.	288.03	1,863,000,000	
2024	'24.03.26.	'29.03.25.	355.23	2,605,000,000	공개입찰[1)]

주: 1) 2024년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온비드를 통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여 ㈜에스비에이드와 5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자료: 신용보증기금

○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임대차 수의계약의 계약금액 산정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경우가 있었고, 기존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책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에스비에이드와의 임대차 수의계약 보증금 산정기준]

연도	소재지	(전세)보증금(원)	보증금 산정기준
2012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1,039,322,000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 및 주변시세 등 감안
2013		1,143,254,000	
2014		1,143,254,000	동결(본점이전에 따른 매각 추진)
2015		1,507,687,000	사용 면적 증가(본점이전에 따른 매각 추진으로 평 단가는 동일 적용)
2016		1,658,455,000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 및 주변시세 등 감안
2016		1,257,578,000	임대면적 축소
2017		1,257,578,000	동결(본점이전에 따른 매각 추진)
2018		1,257,578,000	동결(마포청년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명도 조건 반영)
2019	서울시 종로구 종로 408	1,650,000,000	감정평가액 적용
2020		1,863,000,000	
2021		1,863,000,000	동결(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2022		1,863,000,000	
2023		1,863,000,000	동결(감사원 감사 진행)
2024		2,605,000,000	감정평가액 적용(공개 입찰)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은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체결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카목[3]을 제시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 대한 임대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감사원은 사우회 출자회사와 규정에 위반되는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여 지적하였고,[4]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에스비에이드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위의 보증업무 수탁계약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외에도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다수 계약 건에 대하여 ㈜에스비에이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보증업무수탁 및 임대차 계약 외 ㈜에스비에이드와의 수의계약 체결내역]

연도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수의계약 사유
2012	본점 임원실 및 8층 대회의실 外 카페트 세척	'12.11.26.~ '12.11.26.	5,790,000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본점 지하주차장(B2) 주차환경 개선공사	'12.10.04.~ '12.10.08.	9,900,000	
	본점 및 연희동 공동사택 수목관리 용역 계약	'12.10.01.~ '13.09.30.	6,660,000	
	본점 전화기 소독 유지보수 재계약	'12.10.01.~ '13.09.30.	5,130,000	
	본점 발전기 유지보수 용역 재계약	'12.10.01.~ '13.09.30	8,316,000	
	2012년도 하반기 전화번호부 제작	'12.08.14.~ '12.08.14.	9,740,000	
2013	본점 20층 옥상휴게실 및 지하식당 누수공사 外	'13.10.22.~ '13.10.22.	8,970,000	
	2013년도 하반기 전화번호부 조제	'13.08.28.~ '13.08.28.	9,740,000	
	본점 유동화보증 수탁업무팀 인테리어 공사	'13.06.14.~ '13.06.14.	8,160,000	
	본점 옥상 외 도장공사	'13.05.10.~ '13.05.20.	9,520,000	
	본점건물 외부청소 유리 교체공사	'13.05.03.~ '13.05.03.	9,170,000	

4) 2023년 9월 감사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사우회 출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① 사우회 출자회사를 P-CBO 보증 업무수탁자로 지속 선정, ② 직무를 이용한 사우회 출자회사 월간지 판매, ③ 사우회 출자회사와 규정에 위반되는 수의계약 체결이었음

연도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수의계약 사유
	본점 베란다 청소 및 조류퇴치제 설치공사	'13.04.26.~ '13.04.26.	5,150,000	
	본점 임원실 및 8층 대회의실 外 카페트 청소	'13.04.22.~ '13.04.22.	5,790,000	
	본점 내부 및 외부 보도블록 등 영선공사	'13.03.29.~ '13.04.10.	4,600,000	
	2013년도 상반기 전화번호부 제작	'13.02.04.~ '13.02.14.	10,260,000	
	서울서부보험4,5팀 및 유동화 등 별정부장실 시설공사	'13.01.23.~ '13.01.30.	8,800,000	
	문서센터 레이아웃 변경 등 공사	'13.01.09.~ '13.01.14.	8,800,000	
2014	18층 및 16층 걸레싱크대, 화장실 오수배관 보수공사	'14.02.14.~ '14.02.14.	6,660,000	
	2014년도 상반기 전화번호부 조제	'14.02.06.~ '14.02.20.	10,500,000	
2018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및 영업점 건물관리	'18.06.01.~ '18.12.31.	527,185,000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지침[1)]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및 13개 영업점 건물관리	'18.02.06.~ '18.05.31.	279,920,200	
합계			958,761,200	

주: 1) 해당 지침에 따라 기존 계약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18.12.31.까지 연장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 및 부정 발생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바,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사우회 출자회사의 사례와 같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따르면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제8조제3항)[5)]

5) 「공기업 ·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기업 · 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 · 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 · 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 · 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 · 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2.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관련 문제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은 2019~20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증가 추세가 높음

○ 2020년 19억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에 74억원, 2023년에 312억원을 출연함

[신용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출연액	-	19	-	74	312	312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하면, 1인당 기금누적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상한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은 불가함

○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 · 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복리후생 사업 소요재원 등을 감안

[기금 누적액별 출연액 기준]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정부지원액 및 영업외 이익(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과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서는 안 됨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 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나. 주요 쟁점

❑ 신용보증기금의 최근 10년간 손익을 살펴보면, 2014~2020년까지는 손실 또는 소액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익 규모가 2021년, 2022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의 2021~2022년 동안의 일시적인 이익확대는 주로 정부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사고율, 대위변제율 등의 하락으로 관련 준비금 등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1)]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결과(2014~2023)]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용보증기금	4,114	3,929	6,104	130	1,878	△468	3,300	△3,702	△7,829	△6,711

주: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인 경우 적자,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며, 연장 · 유예 조치는 만기 시점을 이연하여 이익과 손실 발생 시기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 보증 규모 변동은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손익 효과는 적다는 입장임

○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타 연도 대비 2021년과 2022년에 프로그램총원가는 감소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완화 등 유동성 공급 정책 및 상환 유예 조치에 기인함

- 2021년 3,702억원, 2022년 7,829억원의 이익이 발생함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완화조치로 보증사고율 감소에 따라 대위변제준비비 등의 일시 감소로 프로그램총원가 감소
- 보증충당부채가 감소하여 보증충당부채환입(수익) 발생, 대위변제준비금 환입으로 인한 프로그램수익 증가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표(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프로그램총원가(C)	16,581	22,605	15,627	13,992	21,504
프로그램수익(D)	△6,879	△7,718	△8,415	△11,503	△12,744
프로그램순원가(C-D)	9,702	14,887	7,211	2,489	8,760
재정운영결과	△468	3,300	△3,702	△7,829	△6,711

주: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인 경우 적자,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신용보증기금 부실률(2019~2023)]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용보증기금	4.0	4.0	3.9	3.5	3.6	3.3	2.4	2.0	2.0

주: 일반보증 대상이며, 해당연말 보증잔액 대비 연초부터 해당연말까지의 부실금액 비율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전체 보증액 중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의 비율이 2020년 48.6%에서 2021년 이후 60%대로 상승함

○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의 증가로 인한 부실률 감소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는 감소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함

[신용보증기금의 만기연장 · 상환유예 보증액(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a)	-	267,047	368,200	406,970	406,667
전체 보증액(b)	472,231	549,536	591,461	613,961	618,214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 비율 (a/b)	-	48.6	62.3	66.3	65.8

주: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은 코로나19 시 정부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뜻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신용보증기금 부실률 추이(2019~2023)]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실률	2.3	2.4	2.0	2.0	3.3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즉, 2014~2020년에 손실 또는 소액의 이익이 발생했던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2022년에 일정 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금융완화조치 등으로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2022,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

○ 2022년에는 74억원, 2023년에는 출연가능한 최대금액인 312억원(7,812억원×4%)을 출연함

[신용보증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가능금액 및 출연액]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조정 세전순이익(A)	-	3,698	7,812
출연율(B)	-	4%	4%
출연가능금액(A×B)	-	148	312
출연액	-	74	312

주: 조정 세전순이익은 전년도 세전순이익에서 유형자산 재평가, 처분 등을 제외한 이익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획재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결정 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이 정책적 고려에 따른 보증공급으로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 및 기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20년간 신용보증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금융정책이 시행됐던 4회에 그침 ('12년, '20년, '22년, '23년)

[금융위기 시기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잔액과 재정운영결과]

(단위: 억원, %)

구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2009	201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보증 증가액 (증가율)	151,701 (47.8)	4,196 (8.9)	114,357 (17.0)	47,751 (6.0)	△17,412 (△2.0)
재정운영결과	△5,955	△1,129	△3,702	△7,829	△6,711

주: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인 경우 적자,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요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복리후생비를 충당하므로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4-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은 「보수규정」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2,517명의 임직원에게 총 29,520,471천원을 지급

[신용보증기금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A	2,418	6,434,072	22,251,581	28,685,653
2023	B	2,451	5,832,305	22,927,529	28,759,834
2024	B	2,517	5,910,366	23,610,105	29,520,471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신용보증기금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모두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3급 이하의 등급별 지급률은 최고 등급의 지급률이 다섯 번째 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으로,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9	90	14	79	60	68	10	56	7	45	-	-
	내부 본부점장	10	520	15	455	50	390	15	325	10	260	-	-
	내부 (1,2급)	6	270	11	235	62	200	13	165	8	130	-	-
	내부 (3급)	10	255	15	227	56	200	11	173	7	145	-	-
	내부 (4급 이하)	9	235	13	217	62	200	9	183	6	165	-	-
2023	경평	6	80	18	70	57	60	12	50	6	40	-	-
	내부 본부점장	10	520	15	455	49	390	16	325	9	260	-	-
	내부 (1,2급)	7	270	14	235	59	200	13	165	7	130	-	-
	내부 (3급)	6	255	18	227	54	200	15	173	7	145	-	-
	내부 (4급 이하)	6	235	19	217	59	200	11	183	6	165	-	-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4	경평	10	80	15	70	50	60	15	50	10	40	-	-
	내부 본부점장	10	520	15	455	50	390	15	325	10	260	-	-
	내부 (1,2급)	10	270	15	235	50	200	15	165	10	130	-	-
	내부 (3급)	10	255	15	227	50	200	15	173	10	145	-	-
	내부 (4급 이하)	10	235	15	217	50	200	15	183	10	165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신용보증기금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은 내부 규정인 「복지규정운영기준」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24명, 지원금액은 1,924,877천원임

[신용보증기금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34	31	31	29	28	24
지원금액	2,441,515	2,544,318	2,639,312	2,374,111	2,451,371	1,924,877
1인당 지원 한도	(2019~) 130,000천원					
관련 내부 규정	「복지규정운영기준」 제59조~78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재직 2년 이상,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거치기간 5년 포함 최대 18년 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table>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신용보증기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신용보증기금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2.41	2.24	1.38	1.70	4.02	4.48	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대출 이자율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3명에 대해 1인당 한은 금리 미만 수준(4.02%)으로 주택융자금 제공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1.3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신용보증기금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3	4.02	330,000	미개정	2	26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신용보증기금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은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667명, 지원금액은 21,918,139천원임

[신용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623	605	614	565	656	667
지원금액	14,391,337	15,053,586	16,664,087	15,522,218	21,123,437	21,918,139
1인당 지원 한도	(2019~) 50,000천원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지원 요건 (2024.7. 기준)	근속 2년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근속 7년 이상의 독신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연장가능), 퇴직시 즉시 전액 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신용보증기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신용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41	2.24	1.38	1.70	4.02	4.48	4.34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대출 이자율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65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의 금리(4.02~5.02%)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8명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5천만원)하여 생활안정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신용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265	4.02~5.02	8,100,840	미개정	208	10,190,93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신용보증기금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6.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2명임

[신용보증기금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097	22	4	-	11	-	4	3	2	7	4	-	-	3	3	7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나. 주요 쟁점

❑ 신용보증기금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직원상벌요령」 별표3 등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재산, 성, 음주운전, 채용비위 외의 사유로 인한 정직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정직자에게 기준급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 12명에게 94,453천원의 보수를 지급

[신용보증기금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0	3	0	2	3	4
평균 처분기간	0	6	0	1.5	2.3	1.5
보수지급액	0	37,368	0	30,318	26,767	0
관련 내부 규정	「직원상벌요령」 별표3					
지원 요건 (2024.7. 기준)	전액 감액 (단,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관련 위법행위, 음주운전, 채용비위 외의 사유로 인한 정직의 경우에는 기준급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 이후 재산 관련 비위,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13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

○ A 2명, B 8명, C 2명, 등급 미정 1명, 성과급 40,189천원 과다 지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채용 비위	계
인원 수	2	7	4	-	13
평가 등급	B 2명	A 1명 B 4명 C 1명 등급 미정 1명	A 1명 B 2명 C 1명	-	A 2명 B 8명 C 2명 등급 미정 1명
징계연도	'20년 1명 '22년 1명	'20년 3명 '24년 4명	'19년 1명 '23년 2명 '24년 1명	-	'19년 1명 '20년 4명 '22년 1명 '23년 2명 '24년 5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1,459	20,006	18,724	-	40,189

주: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2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신용보증기금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0.4.28.	금전차입	70,000	면직	X
2022.6.16.	금전차입 및 요구(미수)	191,500	면직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규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1.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개선 필요

가. 현 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1] 국가의 해양수산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2009년 최종 개정되었으며 해당 지급규칙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는 다음과 같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칙]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 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월평균 급여액의 45%× 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월평균 급여액의 45%×〔60 + $\frac{\text{정년 잔여월수} - 60}{2}$〕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 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국무조정실 소관 기타공공기관

나. 주요 쟁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혁신지침과 상이하게 정년 잔여기간 1~5년 퇴직대상자에게 전체기간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명예퇴직수당 규정은 월평균 급여액의 45%를 적용함에 비해 혁신지침의 경우 기본연봉 또는 월평균 급여액의 45%의 1/2를 적용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퇴직수당규정 비교]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 기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침	「공공기간의 혁신에 관한 지침」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월평균 급여액의 45% × 정년 잔여월수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기본연봉 또는 월평균 급여액의 45% × 1/2 × 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월평균 급여액의 45% $\times\left[60 + \frac{\text{정년 잔여월수} - 60}{2}\right]$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기본연봉 또는 월평균 급여액의 45% × 1/2 $\times\left[60 + \frac{\text{정년 잔여월수} - 60}{2}\right]$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따라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추후 혁신지침을 넘어서는 명예퇴직수당 과지급이 없도록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5-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능률성과급 지급규칙」 제4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329명의 임직원에게 총 1,318,229천원을 지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	328	-	1,253,979	1,253,979
2023	-	326	-	1,354,925	1,354,925
2024	-	329	-	1,318,229	1,318,229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4%, 최저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2%에 불과하고, 특정 등급(셋째)의 인원 비율이 59~62%에 육박하는 등 지급 인원 비율의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내부	4	133	25	117	59	100	10	83	1	67	-	-
2023	내부	4	133	23	117	62	100	9	83	1	67	-	-
2024	내부	4	133	22	117	62	100	10	83	2	67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7명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26	7	-	-	3	-	1	3	-	-	-	-	1	-	-	6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

❑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상기한 내용 중 일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바,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인사관리규정」 제37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정직자에게 보수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 3명에게 9,541천원의 보수를 지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2	-	-	-	-	1
평균 처분기간	2.5	-	-	-	-	1
보수지급액	7,302	-	-	-	-	2,239
관련 내부 규정	「인사관리규정」 제3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1항 제3호					
지원 요건 (2024.7. 기준)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중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보수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19년 이후 채용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 1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B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 2,178천원을 과다 지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채용 비위	계
인원 수	-	-	-	1	1
평가 등급	-	-	-	B 1명	B 1명
징계연도	-	-	-	'20년 1명	'20년 1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	-	-	2,178	2,178

주: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6 금융감독원

6-1.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검토

가. 현 황

❑ 금융감독원 개요

○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됨[1)]

○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는 「금융위원회법」[2)]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4)],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음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 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감독분담금)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총부채, 영업수익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분담
(발행분담금) 주식,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

[금융감독원 수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수입예산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분담금		3,419	3,492	3,526	3,838	3,875	4,042
	감독분담금	2,772	2,788	2,654	2,872	2,980	3,030
	발행분담금	647	704	872	966	895	1,012
한국은행 출연금		100	100	100	100	50	50
기타		37	37	33	35	44	67
합계		3,556	3,629	3,659	3,973	3,969	4,159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되었다가 2009년에 지정 해제되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이 매년 유보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전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5], 별표 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였음

○ 이후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하였으나, 2009년 금융 감독기관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하였고, 공공기관으로의 지정을 유보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5)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시행 2007.1.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023년말 기준 금융감독원의 정부지원액 비율은 약 97%로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정대상이며, 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체수입액[6], 자산 규모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7]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관련 금융감독원 현황조사표]

(단위: 백만원, %, 명)

총수입액	자체수입액	자체수입비율	정부지원액 비율	총자산	직원 정원
357,107	141,486	39.62	96.79	272,523	2,190

주: 1. 총수입액, 자체수입액(비율), 정부지원액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3개년 평균
2. 총자산 및 직원정원은 2023년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나. 주요 쟁점

❑ 금융감독원은 법령 요건상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 해당하나 2009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고 있는바, 지정 유보조건 이행 현황 및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을 이유로 2009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는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라 함)는 2018년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관하여 경영성과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조직효율화, 고객만족도 조사 내실화, 채용비리 근절 등 기타의 4가지 조건을 부여한 후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유보하였음

○ 2024년 1월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이 공운위가 부여한 지정유보조건을 모두 이행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지정 유보를 유지하였는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이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및 이행 현황]

연도	유보조건 내용	
2018	❶ 채용비리 근절대책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개선방안('18년, 기재부)」을 반영한 채용비리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❷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상위직급 비율 감축 - ('17말) 45% → ('20말) 40% → ('23말) 35%
		■직위수 감축 - '18~'19년 중 팀장 이상 직위수 34개 감축
		■해외사무소 폐지 - 홍콩사무소 폐지('19년), 싱가포르사무소 설치 계획(예산 旣승인) 중단·폐기
		■정원외 인력 운영 개선 - 정원외 인력 한도 설정, 무보직 상위직급자 현업부서 배치
	❸ 경영공시	■경영공시 기준 마련 -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항목 확대(30개→116개) - 공시주기·시기를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❹ 엄격한 경영평가	■기재부 추천 1人을 포함한 평가委 구성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평가편람 마련
2021	❶ 경영평가 객관성·공정성 강화	■경영평가 계량지표 비중(34%→43.5%)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
		■공공기관 사례에 준한 성과급 지급률 조정과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추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기준 신설 및 평가결과 성과급과 연계
		■부정행위 등 확인시 경영평가등급 조정 및 성과급 환수 규정 마련
	❷ 조직 효율화	■상위직급 비중 축소, 1급 정원 감축 - 상위직급 축소: ('17말) 45% → ('20말) 40% → ('23말) 35% - 1급 정원: ('20말) 62명 → ('23말) 55명
		■'23년말까지 팀당 인원수를 6명까지 확대 - ('17년) 4.9명 → ('21년) 5.7명 → ('23년) 6.0명
		■'22년부터 업무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내지원 축소 추진
		■해외사무소 운영 개선 - 워싱턴 사무소 폐쇄, 여타 해외사무소의 정비·조정안 마련
	❸ 고객만족도 조사	■금융위 주관으로 금감원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경영평가에 반영
	❹ 기타사항	■'21년 하반기부터 외부파견자 업무추진비 지급 중단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일부 미흡한 경영공시 항목(담당자 및 공시일자 미기재 등) 수정 보완

자료: 금융감독원

○ 2021년도에 금융감독원에 부과된 조직효율화 유보조건 중 “2022년부터 업무수요 등을 감안하여 국내지원 축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국내지원 내 팀 통·폐합을 통해 5개 팀을 축소하였음(총 20개→15개, 2023.1월)

-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은 11개[8]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지원 인력은 132명, 운영예산은 32억원 수준임(2023년 말 기준)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 인력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지원 수	인력(정원)			운영예산
		직원	업무지원인력	합계	
2021	11	92	40	132	3,015
2022	11	92	44	136	3,441
2023	11	87	45	132	3,208

주: 연도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외에 다른 조직효율화 유보조건으로 부과된 “워싱턴 사무소 폐쇄, 여타 해외사무소의 정비·조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2.3.31. 워싱턴 사무소를 폐쇄하고 해외사무소 기능 전환 및 정비조정방안을 마련하였음

- 해외사무소 기능 전환 방안으로 ① 현지 해외점포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② 현지공관 및 관련 정부부처의 협력 지원을 위한 오픈 플랫폼化, ③ 현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유치를 위한 현지지원센터 기능을 부여하였음
- 해외사무소 정비·조정방안으로는 해외사무소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사무소를 정비·조정대상을 분류하고 관리 강화체제를 도입하였음[9]

8) 부산울산지원, 대구경북지원, 광주전남지원, 대전충남지원, 인천지원, 경남지원, 제주지원, 전북지원, 강원지원, 충북지원, 강릉지원

9) ① 개선계획 징구 → ② 폐지(또는 주재원 전환) 順으로 단계적 정비·조정

○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수립한 해외사무소 기능 전환 방안 중 정부 부처와의 협력 지원 강화나 현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등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본질적인 업무라거나 확대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10)]

○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4년 현재 총 6개 지역(뉴욕, 런던, 동경, 북경, 프랑크푸르트, 하노이)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는 외국 금융당국들의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과 비교해볼 때 많은 수준임

[금융감독원과 외국 금융당국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금융 감독원	미국 통화 감독청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일본 금융청	독일 금융 감독청	홍콩 금융 관리국	대만 금융 위원회
해외 사무소 소재지	뉴욕, 런던, 프랑크 푸르트, 동경, 북경, 하노이	-	북경, 상해, 런던, 뉴욕	-	-	뉴욕	뉴욕, 런던
개수	6	0	4	0	0	1	2

주: 2023.12월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10) 금융감독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등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다만, 금융감독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측면에서 감독 기능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기관에 지정하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203932)이 발의된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가 4개뿐으로 금융감독원의 다른 해외사무소 소재지와 비교할 때 지원 수요가 저조한 지역이며, 금융감독원의 2023년도 해외사무소 평가 결과에서도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의 평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음[11)]
- 감사원은 2020년 1월 「감사보고서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에서 금융감독원 해외점포의 기능·업무 등을 전면 재검토한 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가 소재하지 않거나 그 수가 미미한 지역에 위치한 사무소는 우선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12)]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소재 지역의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 현황]

(단위: 개)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소재지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	하노이	북경
해외지점	17	7	-	9	10	10
해외법인	35	13	4	6	24	21
합계	52	20	4	15	34	31

주: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진출한 해외점포 수를 기재(해외사무소가 없는 국가는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업무 수행과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각 금융기관이 분담하는 분담금)으로 대부분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운위가 금융감독원에 부과한 유보조건들의 이행은 조직 및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11) 해외사무소별 평가점수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12) 금융감독원의 프랑크푸르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해외점포가 3곳에 불과하여 필요시 본부에서 직접 해외출장을 통해 검사·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프랑크푸르트 소재 유럽중앙은행에도 금감원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나아가 향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검토 문제는 공운위가 부여한 지정 유보조건의 충족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중립성 보장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율 및 관리 필요성, 현행 법률의 개정 가능성 및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13)]

13) 금융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찬반 의견이 대립함
- 찬성논거: ①금융감독원은 이미 「공운법」에 따른 지정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 공공정책의 주도적 수행 및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강한 감독권 등 공공성을 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②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이미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들 역시 개별 설치 근거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국회의 외부통제(국정감사 등), 예·결산의 승인 등을 받고 있다는 점, ③현행법상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부득이하게 자율성,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기관은 이미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의 우선 적용 문제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항
- 반대논거: ①국제통화기금(IMF),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가 권고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원칙에 비추어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공운법」과 달리 기관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임원의 임기보장, 해임사유 제한 등 지배구조 관련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운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금융위원회의 근거 법률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금융감독원은 이미 금융위원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및 국회의 외부통제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으며 「공운법」에 따른 규제가 추가될 경우 중복규제가 될 수 있음

6-2. 재무 현황 분석

가. 현 황

❑ 금융감독원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자산은 2,855억원이고 부채는 1,000억원, 순자산은 1,855억원이며 수지차익은 전액 분담금 납부기관에 반환하므로 존재하지 않음

○ 자산과 부채는 2022년 대비 130억원 증가했으며, 순자산은 통합시 인수재산 및 한국은행 출연금 등 1,855억원임

[금융감독원 재무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자산	2,821	3,025	2,899	2,725	2,855	130
부채	966	1,170	1,044	870	1,000	130
순자산	1,855	1,855	1,855	1,855	1,855	0

자료: 금융감독원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금융감독원의 결산안은 「금융위원회법」 제45조[1]에 따라 매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으며, 이후 승인된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함

- 2023년 결산안은 '24.3.22. 국회 정무위원회에 결산서를 보고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금융위원회법」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 2023년 말 자산은 건물·토지 등 비유동자산, 예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채는 비유동자산준비금[2], 미지급금·예수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자본은 통합 시 인수재산 및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구성됨

○ 금융감독원의 운영수입은 대부분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감독분담금은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 발행분담금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 2023년 말 총자산 규모는 2,8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지차익 증가[3] 등으로 예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그 외 시스템 개발 등으로 무형자산이 증가하였고, 사택수요 증가로 임차보증금이 증가하였음

[금융감독원 자산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예금	1,271	1,570	1,404	1,179	1,271	92
유형자산	1,147	1,120	1,091	1,084	1,064	△20
기타	403	335	404	462	520	58
합계	2,821	3,025	2,899	2,725	2,855	130

자료: 금융감독원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당해연도에 취득(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한 취득분 제외)한 비유동자산(공구기구집기, 개발비 등)에 대해서 준비금을 설정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수지균형 예산원칙'에 따라 매년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수지차익)을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비유동자산과 같이 현금지출과 동시에 회계상 비용화되지 않는 자산은 결산 시 비용화가 필요함

3) 2022년 293억원, 2023년 407억원

❑ 2023년 말 총부채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의 반환 예정금액[4]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 비유동자산 취득 등으로 비유동자산준비금 또한 증가함

[금융감독원 부채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미지급금	499	628	508	364	465	101
비유동자산준비금	198	207	253	325	363	38
기타	269	335	283	181	172	△9
합계	966	1,170	1,044	870	1,000	130

자료: 금융감독원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금융감독원의 2023년 수입총계는 3,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5억원 증가했으며, 지출총계는 3,862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억원 증가함

○ 감독분담금은 2,603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억원 감소했으나, 발행분담금은 1,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억원 증가함

○ 총지출은 인원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함

○ 수지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부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므로 분담금 반환 후에는 수지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4)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별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분담금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을 납부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며, 반환 예정금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동부채인 미지급금으로 계상

[금융감독원 수지차익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수입총계	3,410	3,375	3,554	3,803	3,868	65
- 감독분담금	2,403	2,336	2,317	2,657	2,603	△54
- 발행분담금	833	886	1,092	980	1,142	162
- 기타	174	153	145	166	123	△43
지출총계	3,405	3,372	3,552	3,799	3,862	63
- 총인건비	2,187	2,235	2,293	2,343	2,432	89
- 기타	1,218	1,137	1,259	1,456	1,430	△26
법인세비용	5	3	2	4	6	2
당기수지차익	-	-	-	-	-	-

주: 분담금 반환 반영 후 기준이며, 반영 전에는 수지차익이 2023년 407억원, 2022년 293억원 발생
자료: 금융감독원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6-3. 분담금 반환금액 최소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 금융감독원의 수입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에 따라 징수하는 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감독분담금은 2,603억원, 발행분담금은 1,142억원으로 총수입 3,868억원의 96.8%를 차지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2]에 따라 총분담금액에 출연금 등을 더한 금액이 운영경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을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결산 시 수지차익 중 수입초과(수입결산-수입예산)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하며, 지출불용 금액은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납부액(예산 기준) 비율대로 반환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분담금의 구분)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4.7.〉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이하 "감독분담금"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하 "발행인"이라 한다)이 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이하 "발행분담금"이라 한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담금)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총분담금액에 제3항제2호·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 -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 제1호의 금액) ÷ (총분담금액 - 제1호의 금액)]

❑ 최근 5년간 감독·발행분담금 반환금액은 2,315억원으로, 반환 전 금액인 1조 9,565억원의 11.8%를 차지함

○ 감독분담금 반환금액은 1,747억원, 발행분담금 반환금액은 568억원임

○ 최근 5년간 반환금액은 2020년에 624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2022년까지 감소하다 2023년에 407억원으로 증가함

[감독·발행분담금 반환금액(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감독분담금(A)			발행분담금(B)			합계(A+B)		
	반환전	반환	반환후	반환전	반환	반환후	반환전	반환	반환후
2019	2,771	368	2,403	961	128	833	3,732	496	3,236
2020	2,788	452	2,336	1,058	172	886	3,846	624	3,222
2021	2,654	336	2,318	1,251	159	1,092	3,905	495	3,410
2022	2,871	214	2,657	1,059	79	980	3,930	293	3,637
2023	2,980	377	2,603	1,172	30	1,142	4,152	407	3,745
합계	14,064	1,747	12,317	5,501	568	4,933	19,565	2,315	17,250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분담금 반환금액이 평균적으로 최근 5년간 반환 전 금액의 11.8%에 이르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출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발행분담금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반환금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 2023년 예산 대비 10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퇴직급여 등 통제가 어려운 비목을 제외한 비목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출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발행분담금은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예산으로 산정하는데, 수입초과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추정액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함[3)]

[금융감독원 수입 및 지출 결산(2023년)]

(단위: 억원)

구분		2023		
		예산액(a)	결산액(b)	(b-a)
Ⅰ. 총수입(A)		3,969	4,275	306
	운영수입	3,930	4,207	277
	- 감독분담금	2,980	2,980	0
	- 발행분담금	895	1,172	277
	- 한은출연금	50	50	0
	- 기타수입수수료	5	5	0
	운영외수입	39	68	29
Ⅱ. 총지출(B)		3,969	3,868	△101
	일반관리비	3,694	3,630	△64
	- 인건비	2,498	2,433	△65
	- 경비	866	884	18
	- 퇴직급여	330	313	△17
	운영외비용등	275	238	△37
Ⅲ. 수지차익(A-B)		0	407	407

자료: 금융감독원

○ 분담금 예산이 결정되면, 감독분담금은 은행·증권·보험 등 업종별로 모수(영업수익, 총부채 등)에 요율을 적용하고, 발행분담금은 증권 발행가액총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분담금을 부과함

3) 금융감독원은 직전년도 상반기까지 자료를 기초로 발행분담금을 추정함에 따라 실제 수입액 간 괴리 발생이 불가피하고, 시장상황이 예상과 달리 변하거나 제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정액과 실제 수입액 간의 차이가 확대된다는 입장임

[감독분담금 및 분담요율(2023년)]

(단위: 억원, %)

구분			2023
은행	(별도) 전금업자, VAN사 등	분담금	23
		요율	(영업수익) 0.03043365
	(일반) 은행	분담금	1,435
		요율	(총부채) 0.00406736
증권	(별도) 자산운용사, 자문사 등	분담금	30
		요율	(영업수익) 0.05377060
	(일반) 증권사	분담금	713
		요율	(총부채) 0.00742279 (영업수익) 0.02071269
보험	(별도) 보험대리점 등	분담금	12
		요율	(영업수익) 0.03246355
	(일반) 보험사	분담금	767
		요율	(총부채) 0.00387630 (보험료수입) 0.01476442
감독분담금 총계			2,980

주: 1. 매년 금융위 분담금관리위원회의 감독분담금 총액(예산편성액), 요율(금융영역별 및 기관별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확정
2. 2023년부터 각 금융영역내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과 일반 기준을 구분하여 부과

자료: 금융감독원

[발행분담금 분담요율(2019~2024)]

□ 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
□ 채무증권
◦ 만기가 1년 이하인 채무증권: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5
◦ 만기가 1년 초과 2년 이하인 채무증권: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6
◦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7
◦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 파생결합사채: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
□ 파생결합증권: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
□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발행가액총액 1만분의 0.5
□ 투자계약증권: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9

자료: 금융감독원

6-4. 경영정보 공시 확대 필요

가. 현 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고시(「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1])에 따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영정보를 공시

- ○ ‘29.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음
- ○ 전 국민에게 금융감독원의 경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음
- ○ 감사보고서의 주석은 ‘1. 일반사항’부터 ‘1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까지 12개로 구성되어 있음
  - 예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비유동자산준비금,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감독 및 발행 분담금, 충당부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임

❑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임

나. 주요 쟁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주석의 내용이 단순한 측면이 있어 그 내용을 확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음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시행 2018.11.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1호, 2018.11.22., 제정]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비유동자산준비금’은 금융감독원의 수지균형 예산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한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건물, 보증금 등 자산의 세부내역 등이 추가되어야 함

- 현재는 상각자산 · 비상각자산으로 나누어 증감 공시

[금융감독원 비유동자산준비금 주석(2023)]

<당기>

(단위 : 원)

구 분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상각자산	26,967,268,299	11,905,693,144	7,979,033,206	30,893,928,237
비상각자산	5,488,368,757	217,823,185	299,184,720	5,407,007,222
합 계	32,455,637,056	12,123,516,329	8,278,217,926	36,300,935,459

자료: 금융감독원 2023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감독 및 발행 분담금’은 금감원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감독분담금은 은행 · 증권 · 보험 등 업종별, 발행분담금은 증권종류별 · 만기별로 분담금 요율 등을 추가 공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감독분담금은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 발행분담금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금융감독원 감독 및 발행분담금 주석(2023)]

<당기>

(단위 : 원)

구 분	반환전 금액	반환금액	반환후 금액	비 율(%)
감독분담금	297,944,735,000	37,654,105,215	260,290,629,785	69.5
발행분담금	117,238,378,823	3,076,662,788	114,161,716,035	30.5
합 계	415,183,113,823	40,730,768,003	374,452,345,820	100.0

자료: 금융감독원 2023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ESG,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 공시할 필요가 있음[3)]

○ 2018년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마련 시 금융위원회는 당시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 공시 기준 등을 정하였음

- 이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은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시항목에 ESG,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항목을 확대하도록 개정됨[4)]

○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ESG,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를 하지 않고 있음

- 당초 금융감독원 공시항목을 규정할 당시에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변화된 공공기관 공시항목을 금융감독원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하고,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시 개정을 통해 ESG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5)]

---

3)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24.8., pp.120~122 참고

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폭 확대한다.」, 2021.3.4.

5)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부항목 등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며 특히 신설된 ESG 공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E),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S), 비상임이사 활동내역(G) 등과 관련된 것으로 감독기구로서의 업무 성격 상 관련 실적 등이 없어 해당 공시항목이 추가되더라도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공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입장임

6-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금융감독원은 내부 규정인 「원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운영규정」 제2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602명, 지원금액은 21,708백만원임

[금융감독원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603	603	626	654	631	602
지원금액	18,939	20,094	21,486	21,910	22,430	21,708
대출 금리 수준	은행연합회 고시 신용대출 평균금리에 직원의 신용도를 일부 고려하여 산정 (1.5%p 차감)					
1인당 지원 한도	(~2024.3월) 60,000 / (2024.4월~) 70,000					
관련 내부 규정	「원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운영규정」 제2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대여신청일(재대여일 포함) 현재 1년이상 실근무한 자 중 정년까지 남은 근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자					
상환 조건 (2024.7. 기준)	매1년 경과시마다 최초대여금의 10%이상 금액을 4회 상환 후 5년 만기시 잔여금액을 상환하거나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의 1인당 대출 한도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보다 높음

○ 금융감독원은 1인당 대출 한도를 보증부(5천만원)와 무보증부(3천만원)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총 한도를 7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지침에 따라 적용하는 한도(1인당 2천만원)보다 높은 수준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380명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금융감독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금융감독원 대출 한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1인당 한도(2천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은 인원 및 지급액	
	인원	지원액
보증부(5천만원), 무보증부(3천만원) 1인당 최대 7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380	14,482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금융감독원은 주택융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의 1인당 대출 한도를 산정하였다는 입장임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1인당 대출 한도를 주택융자금의 경우 7천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2천만원으로 정한 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주택융자금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의 1인당 대출 한도를 7천만원으로 설정

[금융감독원 및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1인당 지원 한도 비교]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관련 규정	「원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운영규정」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대출 한도	주택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주택융자금	생활안정자금
	미제공	7천만원	7천만원	2천만원

자료: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현행 금융감독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주택융자금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임직원의 경조사 등에 소요되는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양자는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상이한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주택융자금과 동일한 지원 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소관 4개 기관, 관세청 소관 1개 기관, 통계청 소관 1개 기관임

- ○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으로 총 4개 기관임
- ○ 관세청 소관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개 기관임
- ○ 통계청 소관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재)한국통계정보원 1개 기관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기획재정부 (4)	준시장형 공기업 (1)	한국조폐공사
	기타공공기관 (3)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관세청(1)	기타공공기관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통계청(1)	기타공공기관 (1)	(재)한국통계정보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6)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3,461명

- ○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조폐공사 등 4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3,243명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원산지정보원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8명

○ 통계청 산하 공공기관은 (재)한국통계정보원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170명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획재정부 (4)	준시장형 공기업 (1)	한국조폐공사	1,562	1,582	1,532	1,517	1,414
	기타공공기관 (3)	한국수출입은행	1,179	1,180	1,189	1,249	1,213
		한국투자공사	293	306	306	327	317
		한국재정정보원	230	273	300	298	299
	소계		3,264	3,341	3,327	3,391	3,243
관세청 (1)	기타공공기관(1)	한국원산지정보원	50	50	50	50	48
	소계		50	50	50	50	48
통계청 (1)	기타공공기관(1)	(재)한국통계정보원	135	135	135	170	170
	소계		135	135	135	170	170
합계			3,449	3,526	3,512	3,611	3,461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관임

○ 한국조폐공사의 2023년 평가 등급은 양호(B)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획재정부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경평결과	A	B	C	B	B
			경평성과급	8,283	10,177	6,268	4,971	7,530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 · 경영관리 · 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 · 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1개 기관임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였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획재정부 (4)	준시장형 공기업 (1)	한국조폐공사	3	2	2	4	2
	기타공공기관 (3)	한국수출입은행	2	2	2	2	2
		한국투자공사	3	2	-	-	-
		한국재정정보원	2	2	-	-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한국수출입은행

2-1. 자본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1]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임

○ 2023년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125조 3,944억원이며, 납입자본금 규모는 14조 7,733억원

[한국수출입은행 요약 재무현황(결산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총자산	975,900	1,014,517	1,220,700	1,253,944
부채	831,206	860,987	1,066,344	1,074,436
자기자본	144,694	153,530	154,356	179,508
(자본금)	(124,495)	(127,483)	(127,733)	(147,733)
(이익잉여금 등)	(20,199)	(26,047)	(26,623)	(31,775)
영업이익(충당금적립전)	11,091	11,113	12,475	13,403
당기순이익	1,024	5,475	3,869	7,22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별도)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손실금의 보전)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현황]

(단위: 억원)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정부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250,000	147,733	107,878(73.0%)	28,205(19.1%)	11,650(7.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타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자본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2024년도 3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27%로 특수은행 평균 14.36% 및 시중은행 평균 16.80%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단위: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3.
시중은행	국민은행	15.85	17.78	17.47	17.46	18.08	17.35
	신한은행	15.91	18.47	18.18	17.77	18.08	17.65
	우리은행	15.40	17.34	16.20	15.60	16.04	15.92
	하나은행	16.11	14.73	17.24	16.63	17.93	17.38
	농협은행주식회사	15.19	17.70	18.31	18.77	18.30	17.70
	수협은행	13.59	13.98	13.84	13.52	14.42	14.78
시중은행 평균(A)		15.34	16.67	16.87	16.63	17.14	16.80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14.47	14.82	14.85	14.68	14.87	14.94
	한국산업은행	14.05	15.96	14.88	13.40	13.70	13.88
	한국수출입은행(B)	14.56	15.09	14.84	13.38	14.47	14.27
특수은행 평균		14.36	15.29	14.86	13.82	14.35	14.36
시중은행 평균과 한국수출입은행 차이(A-B)		0.78	1.58	2.03	3.25	2.67	2.53

주: 1. 2019~2023년은 각 연도말 기준
2. 특수은행중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는 농협은행주식회사 및 수협은행은 설립목적과 별개로 시중은행으로 구분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약 14조 7,733억원으로, 2024년 3월「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자본금 한도가 증가하였음.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확대의 후속조치로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계획으로, 2024년 5월에는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지원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현물출자 주식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평가손실이 반영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익성 관련 지표 실적도 타 은행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수익성 제고 노력 필요

○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른 최근 5년간 은행별 순이자마진(NIM)[2]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2023년도 평균 NIM이 1.69%이고, 특수은행의 2023년도 평균 NIM은 1.04%인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의 2023년도 말 기준 NIM은 0.83%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3] 2019년 1.13% 수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4]

- 특히 2024년 3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의 NIM은 0.59%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나머지를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3)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조정률 차감 등 금리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수금 기능이 없고 현물출자 비중이 높은 등 타행과 부채·자본 구성이 상이해 타행보다 NIM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1~2년간 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금리인하, ② 방위산업 등 거액여신 지원을 위한 일시적 유동성 증가로 NIM이 하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은행별 순이자마진(NIM) 현황]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3.
시중은행	국민은행	1.67	1.51	1.58	1.73	1.83	1.86
	신한은행	1.54	1.37	1.41	1.63	1.62	1.63
	우리은행	1.44	1.33	1.37	1.59	1.56	1.49
	하나은행	1.49	1.34	1.41	1.62	1.59	1.54
	농협은행주식회사	1.72	1.65	1.60	1.75	1.96	2.00
	수협은행	1.40	1.39	1.50	1.45	1.57	1.70
평균		1.54	1.43	1.48	1.63	1.69	1.70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1.83	1.55	1.51	1.78	1.79	1.74
	한국산업은행	0.52	0.55	0.68	0.63	0.51	0.34
	한국수출입은행	1.13	1.03	1.09	0.96	0.83	0.59
평균		1.16	1.04	1.09	1.12	1.04	0.89

주: 1. 2019~2023년은 각 연도말 기준
2. 특수은행 중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는 농협은행주식회사 및 수협은행은 설립목적과 별개로 시중은행으로 구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ROA(Return On Assets)는 총자산순이익률로 기업의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5] 한국수출입은행의 ROA는 2019~2023년(5년간) 특수은행 평균 ROA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음

○ ROE(Return On Equity)는 자기자본이익률로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로 산출되며, 자기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임. 한국수출입은행의 ROE는 최근 5년간 특수은행 평균 ROE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ROE는 4.00%로 시중은행 평균 8.64%, 특수은행 평균 6.34%에 비해 상당히 낮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ROA와 ROE의 수익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이 매년 1회성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6] 영업이익(대손충당금 적립전)은 1.1~1.3조원 내외로 유지 중이라고 설명함

5) 일반적으로 ROA가 높을수록 자산규모 대비 수익성이 큰 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유자산을 대출·유가증권 등에 운용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순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음

6) 2020년 KAI 보유주식 손상차손 인식(1,422억원), 2022년 대러제재에 따른 충당금 적립비용 발생(2,081억원)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일시적 감소

[은행별 ROA, ROE 현황]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ROA	시중은행	국민은행	0.66	0.55	0.58	0.60	0.60
		신한은행	0.59	0.48	0.52	0.58	0.57
		우리은행	0.55	0.38	0.58	0.61	0.54
		하나은행	0.62	0.51	0.60	0.67	0.70
		농협은행주식회사	0.50	0.42	0.43	0.46	0.45
		수협은행	0.56	0.43	0.49	0.41	0.44
	평균		0.58	0.46	0.53	0.56	0.55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0.50	0.40	0.58	0.64	0.60
		한국산업은행	0.20	0.19	0.90	0.15	0.78
		한국수출입은행	0.33	0.10	0.55	0.33	0.58
	평균		0.34	0.23	0.68	0.37	0.65
ROE	시중은행	국민은행	8.72	7.70	8.11	8.93	8.56
		신한은행	8.48	7.09	7.97	9.40	8.64
		우리은행	8.36	5.83	9.21	10.85	9.31
		하나은행	8.55	7.34	8.95	10.81	11.09
		농협은행주식회사	9.27	7.99	8.51	8.77	7.94
		수협은행	7.68	5.72	6.59	5.81	6.31
	평균		8.51	6.95	8.22	9.10	8.64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6.57	5.51	8.12	9.43	8.50
		한국산업은행	1.73	1.76	6.57	1.31	6.52
		한국수출입은행	2.14	0.70	3.53	2.44	4.00
	평균		3.48	2.66	6.07	4.39	6.34

주: 1. 각 연도말 기준
2. 특수은행 중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는 농협은행주식회사 및 수협은행은 설립목적과 별개로 시중은행으로 구분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 지표가 타 특수은행 대비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보유 주식 연계 손실 및 대내외적 불안 요인 등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을 고려할 때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2-2. 해외현지법인 수익성 개선 노력 필요

가.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지법인 5개와 국외사무소 24개를 운영 중에 있음

○ 5개의 현지법인은 본점 여신 관련 사업개발 · 주선 · 공동지원 및 현지 심사 · 사후관리 · 마케팅 · 대리인 업무 등을 통해 본점의 원활한 정책금융 지원 및 리스크관리 등을 수행

○ 24개의 해외사무소는 여신업무 지원, EDCF 업무 지원, 외화조달,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ECA, DFI 등) 협력 등을 통해 본점 업무를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사무소 및 법인 현황 및 업무]

구분	개수	소재지역	담당 업무
현지법인	5	수은영국은행	종합금융
		수은인니금융	리스, 대출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리스, 대출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종합금융
		수은싱가포르	종합금융
국외사무소	24	뉴욕, 동경, 워싱턴, 파리, 북경	네트워크군 (외화조달,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ECA, DFI 등) 협력 등 본점 업무지원)
		사웅파울루,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상해, 두바이, 이스탄불	프로젝트군 (여신업무 지원)
		하노이, 마닐라, 자카르타, 양곤, 프놈펜, 타슈켄트, 콜롬보, 다레살람, 아디스아바바, 아크라, 다카, 보고타, 뉴델리	경협중점군 (EDCF업무 지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23.0~131.8% 수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BIS 자기자본비율인 14.47%를 크게 상회함

○ 기본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보유 자산에 대한 운용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법인의 자산 운용이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 BIS 자기자본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은영국은행	17.8	37.0	30.0	25.0	23.0
수은인니금융	19.1	18.5	14.5	15.5	47.2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15.6	37.1	38.1	42.4	50.2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20.7	40.5	31.2	26.7	23.8
수은싱가포르	-	-	-	180.3	131.8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4.6	15.1	14.8	13.4	14.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의 수익성 실적 저조 문제

○ 한국수출입은행 5개 해외법인의 ROA, ROE의 경우 2023년 기준 각가 0.15~1.42%, 0.37~3.58% 사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 ROA, ROE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특히 수은인니금융의 경우 2020년, 수은싱가포르의 경우 2022년에 ROA 및 ROE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수익성 실적이 저조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법인 ROA 및 RO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ROA	수은영국은행	0.11	0.22	0.31	0.48	0.45
	수은인니금융	0.20	△1.14	0.34	0.12	0.15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0.69	0.89	0.58	1.01	1.42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0.61	0.60	0.66	0.65	0.43
	수은싱가포르	-	-	-	△1.12	1.28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0.33	0.10	0.55	0.33	0.58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ROE	수은영국은행	0.97	0.76	1.26	2.64	2.35
	수은인니금융	1.28	△9.68	2.54	0.89	0.37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7.00	2.85	2.06	3.21	3.58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4.21	1.81	2.43	2.87	1.93
	수은싱가포르	-	-	-	△1.15	1.53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2.14	0.70	3.53	2.44	4.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은인니금융의 경우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0.14%로 5개 현지법인 중 가장 낮고,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도 0.3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와 같은 낮은 수익성 지표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은인니금융('23.10월 증자), 수은싱가포르('22.7월 설립)을 포함한 5개 현지법인의 자본증자가 최근에 큰 폭으로 이루어져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대출자산 확보까지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법인의 총자산,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천USD, %)

구분	총자산 (A)	자기자본 (B)	당기순이익 (C)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C/A)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C/B)
수은영국은행	666,717	127,796	2,938	0.44	2.30
수은인니금융	175,205	66,703	243	0.14	0.36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165,072	63,718	2,280	1.38	3.58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774,984	170,057	3,289	0.42	1.93
수은싱가포르	362,242	301,439	4,616	1.27	1.53

주: 2023년 말 가결산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법인의 배당실적 저조 문제

○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 수익성 저조로 인해 5개 현지법인의 배당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2021년 이후로는 배당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2022년부터는 수익성이 가장 낮은 수은인니금융에서만 배당이 발생하고, 그 외 4개 현지법인에서는 아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내부 유보를 통한 자본확충을 실시하여 정책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 배당 현황]

(단위: 천USD)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은영국은행	-	-	55	-	-
수은인니금융	52	71	-	105	24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	-	71	-	-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114	132	150	-	-
수은싱가포르	-	-	-	-	-
합계	166	203	276	105	2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 출범 목적이 본점 여신 관련 사업개발·주선·공동지원 등을 통해 본점의 원활한 정책금융 지원 및 리스크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지법인은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2-3.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외보증업무 중복

가. 현 황

❑ 수출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 (ECA: Export Credit Agency)으로, 우리나라는 1국 2ECA 체계를 유지

- ○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전,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1976년 설립되었으며, 「수출보험법」에 의해 1969년 설치되어 대한재보험공사가 관리하던 무역보험기금(전, 수출보험기금)을 1977년부터 위탁관리
- ○ 이후 1979년 수출보험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던 무역보험기금이 산업통상자원부(전, 상공부)로 이관되었으며, 무역보험기금의 규모가 증가하자 1992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립되어 해당 기금을 관리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제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현황

- ○ 양 제도는 금융기관이 외국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대출하고, 결제일에 이를 상환받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 또는 보험상품임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대외채무보증제도와 중장기 수출보험]

대외채무보증제도 (한국수출입은행)	중장기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4항[1] 및 시행령 제16조[2]	「무역보험법」 제53조[3]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하여 수출 및 해외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금융지원제도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으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채무의 보증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외채무보증)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하 이 호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거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로서 외국정부등이 그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는 거래. 다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통화로 대출받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 채무는 이 호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합의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보증료 수익은 2023년 1,424억원이고, 전체 보증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도말 대외채무보증 잔액 또한 2023년 11.6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대외채무보증이 전체 여신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1%으로, 이는 2013년 8월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지급보증 잔액 및 비중이 3조원(3.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것임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보증료 수익	799	869	1,108	1,152	1,090	1,082	1,424	689
(전체 보증 수익 대비 비중)	26.1	36.2	43.5	44.6	47.4	42.8	45.4	42.9
신규 보증 승인금액	12,994	17,433	26,077	6,938	20,569	33,630	57,053	21,662
(전체 신규 보증 승인금액 대비 비중)	17.7	15.8	25.9	6.7	12.7	15.8	36.1	19.2
연도 말 보증 잔액	97,582	105,503	103,149	95,801	100,094	112,336	115,959	136,679
(전체 연도말 보증잔액 대비 비중)	25.0	30.3	32.0	34.3	33.3	28.5	26.9	28.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의 경우 최근 5년간(2019~2024년) 보험료 수입이 2,354억원~9,245억원 수준으로 공사의 전체 보험료 수입의 53.8~8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23년에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폴란드向 거액 방산 수출계약,[4] 친환경선박 수퍼사이클 진입 및 신재생발전 설비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함

4) 방산 분야 중장기수출보험 보험금액: 2022년 1,177억원 → 2023년 9조 7,306억원 (전년대비 8,167% 증가)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수실적 및 보험료 수입 현황]

(단위: 조원,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수 실적 (조원)	중장기(A)	11.2	9.8	8.4	13.0	29.4	10.3
	전체(B)	155.8	165.1	195.9	238.4	244.8	135.3
	비중(A/B)	7.2	5.9	4.3	5.4	12.0	7.6
보험료 수입 (억원)	중장기(C)	3,477.9	4,214.8	2,353.6	3,119.6	9,245.0	2,002.9
	전체(D)	5,078.8	5,810.0	4,376.9	5,088.3	10,885.7	2,960.6
	비중(C/D)	68.5	72.5	53.8	61.3	84.9	67.7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 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익의 대부분은 중장기 수출보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신용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중장기 수출보험 수익은 9,555억원 규모인 반면, 단기 수출보험 수익은 974억원,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4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함

[무역보험 상품별 보험수지 및 실질손해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보험 수지	단기	△403	383	239	△481	1,646	1,461	974	924
	중장기	2,046	3,151	△1,783	4,386	△235	2,404	9,555	2,363
	수출신용보증	△914	△512	△440	△388	△269	△126	△413	△1,432
	합계	729	3,022	△1,985	3,518	1,143	3,739	10,116	1,855
실질 손해율	단기	118.5	87.0	86.6	126.8	35.6	33.2	48.8	24.2
	중장기	60.0	40.0	143.5	4.9	109.0	57.5	9.2	8.2
	수출신용보증	298.0	181.5	239.3	251.8	188.5	143.4	251.6	1,020.4
	합계	90.6	65.8	132.0	47.2	79.1	54.1	20.3	53.0

주: 1. 보험수지 = 보험료수입 – 사고 시 보험금지급액 + 구상채권 등에 대한 회수금 임.
2. 실질손해율 = 사고 시 보험금지급액 / (보험료 수입 + 구상채권 등 회수금)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외보증업무 중복 문제와 관련하여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협력 방안 및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간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 2013년 3월 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 중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두 금융기관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함
- ○ 2013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취급요건이 완화되었음[5)]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2013.8.) 중 대외보증업무 정비 주요내용]

1 현 체제 유지하면서 핵심 기능 강화 o 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개도국 수출지원 및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 개편 - 다수 국가(일본, 독일 등)에서 대출, 보험 기능을 존중하여 2개 ECA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무보간 업무중복은 크지 않음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지급보증(무보 중장기수출보험과 중복) 잔액 및 비중('12말) : 3.0조원(3.6%) o 수요자(기업) 편의 및 양 기관 협업체계 유지·강화를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현행 '한국수출입은행지원 1억불이상 및 대출비중 55%이상'의 건별제한 중 '1억불 이상'을 삭제하고 '대출비중은 50%초과'로 완화

자료: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2013.8.)」 기반 재작성

5) 1억불 이상 거래요건 삭제, 대출비중 55% → 50%로 완화

○ 다만, 당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지급보증 잔액 및 비중이 2012년말 기준 3.0조원(3.6%)으로 양 기간관 업무중복이 크지 않다고 보았으나, 2023년 말 기준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지급보증 잔액 및 비중이 11.6조원(9.1%)로 크게 증가한 상황임

○ 또한 2023년에는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높이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에 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범위 확대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중장기수출보험과 역할이 겹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주요 개정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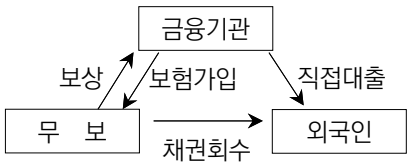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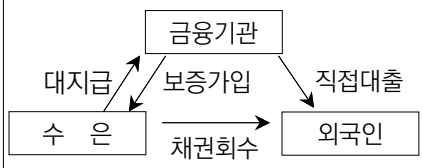
구분	개정 전	'14.4월 개정	'23.4월 개정
❶ 건별제한 (제16조 1항1호)	수출입은행 지원규모가 미화 1억 달러 상당 금액 이상인 거래로서 그 중 대출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거래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현지통화[1] 금융이 필요한 거래는 예외적으로 50% 이상 보증 가능
❷ 총액제한 (제16조 제2항)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 보증 가능	좌동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직전 3개년 평균실적의 50%까지 보증 가능

주: 1)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중국 위안화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중장기수출보험과 대외채무보증은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이 해외 수입자 앞 대금 대출 후 이를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로, 운영취지 및 기능·구조가 동일함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수출보험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th><th>대외채무보증</th></tr>
<tr><td rowspan="2">기능</td><td>대상</td><td colspan="2">외국 수입자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직접대출</td></tr>
<tr><td>보장위험</td><td colspan="2">외국 수입자나 외국정부의 채무불이행</td></tr>
<tr><td>구조</td><td>법률관계</td><td> 
</td><td> 
</td></tr>
<tr><td colspan="2">제공주체</td><td>한국무역보험공사</td><td>한국수출입은행</td></tr>
</table>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 반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채무보증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은 '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동일한 업무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임[6)]

○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프로젝트 수주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3.8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용대상 종목, 비교시기, 실적기준, 점검방안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6) 대외채무보증은 은행법상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로서 은행의 기본업무이며, 보험과는 소관법, 위험보장 범위, 보장심사, 비용 등 다른 특성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외채무보증)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 주요내용]

구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적용대상 종목	·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 해외사업금융보험	· 수출금융보증(대외채무보증) · 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보증) · 수입금융보증(대외채무보증)
비교시기 및 실적기준	직전 3개년 인수실적의 평균	당해연도 승인실적
인수(승인) 금액	'23년 U$99.1억	'23년 U$44.3억
점검방안	· 매년 1월 정례협의회에서 상호 실적을 교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한도 준수 여부 확인	

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외국인을 차주로 하는 금융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양 기관이 협의한 종목은 모두 외국인을 차주로 하는 금융상품임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다만, 2023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7] 및 업무협약[8] 등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업무영역의 중복도 심화된 측면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원전 · 방산 · 인프라 등 수주 규모 대형화 추세로 단일 기관의 지원으로는 금융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정책금융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대외채무보증 한도 추가 확대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등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이 확대될 경우 양 기관 업무 중복에 따른 과도한 인수 경쟁으로 공사의 영업수지 악화 및 기금 여력 감소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해외수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임[9]

7) ① 총액요건 완화(35% → 50%) ② 건별요건 완화(주요국 8개 통화 제외 현지화 금융 100% 보증 가능 등)

8) 50억불 이상 거액 프로젝트이고 공동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부족시 지원할 수 있는 예외 명시

9)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적수출신용제도를 규율하는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도 보증·보험은 Pure Cover로 동일하게 취급되고, 수출금융(대출)은 Financing Support로 별도 취급(제5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는 보증은 표준이상 상품(Above Standard)로, 보험은 표준 또는 표준이하 상품(Standard of Below Standard)으로 구분(제25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최근 플랜트 · 방산 · 원전 등 대규모 사업이 증가하고, 국가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지원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금융수요자(기업)가 최적의 금융구조를 고려하여 대출 · 보증 · 보험 등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양 기관 간 업무 중복에 대한 논란[10]이 지속되고 있고, 금융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정부의 직접 지원 또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바탕으로 한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 간 업무 영역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바,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중장기 수출금융을 일정 비율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1]

10) "① 한국수출입은행 · 무보 밥그릇 싸움 '풀리지 않는 갈등'", 뉴스토마토, 2024.8.8.
"무보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놓고 샅바싸움…"업무 중복" VS "타깃 달라"", 머니투데이뉴스, 2023.2.20.
"한국수출입은행 · 무보 업무중복 갈등…감사원 감사 등 법적다툼", 헤럴드경제, 2021.12.17.

11) 일본은 JBIC(일본 수출입은행)와 NEXI(일본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과 기능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 주무부처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1972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중장기 수출금융을 협조융자 방식(JBIC 60%, NEXI 40%)으로 지원하고 있음

2-4.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수규정」 제7조 및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1,216명의 임직원에게 총 42,990,909천원을 지급

[한국수출입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A	1,173	9,442,463	29,214,491	38,656,954
2023	A	1,202	9,773,369	30,316,471	40,089,840
2024	S	1,216	11,916,527	31,074,382	42,990,909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모든 직급에서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G2 이하 직급에서는 최고 등급의 지급률이 다섯째 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인바,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 내부평가급(G2 팀장): 첫째 등급 49%, 다섯째 등급 37%
- 내부평가급(기타): 첫째 등급 46%, 다섯째 등급 40%

[최근 3년간 한국수출입은행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내부 (G1)	10	60	15	48	50	45	15	42	10	30	-	-
2022	내부 (G2)	10	49	15	46	50	43	15	40	10	37	-	-
2022	내부 (기타)	10	46	15	45	50	43	15	42	10	40	-	-
2023	내부 (G1)	10	60	15	48	50	45	15	42	10	30	-	-
2023	내부 (G2)	10	49	15	46	50	43	15	40	10	37	-	-
2023	내부 (기타)	10	46	15	45	50	43	15	42	10	40	-	-
2024	내부 (G1)	10	60	15	48	50	45	15	42	10	30	-	-
2024	내부 (G2)	10	49	15	46	50	43	15	40	10	37	-	-
2024	내부 (기타)	10	46	15	45	50	43	15	42	10	40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수출입은행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은 내부 규정인 「복지자금대여취급세칙」 및 「기금복지자금대여취급절차」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681명, 지원금액은 17,592,416천원임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625	680	756	717	708	681
지원금액	19,619,495	22,137,321	25,641,824	22,451,799	19,482,973	17,592,416
1인당 지원 한도	(~2021년) 50,000 / (2022년~) 2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자금대여취급세칙」및「기금복지자금대여취급절차」					
지원 요건 (2024.7.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최장 1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95(신용) 2.25(담보)	2.44(신용) 1.74(담보)	1.81(신용) 1.11(담보)	2.36(신용) 1.66(담보)	5.02(신용) 4.32(담보)	4.91(신용) 4.21(담보)	4.58(신용) 3.88(담보)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출입은행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70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3.88~4.91%)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관련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개정 시기)
70	3.88~4.91	1,392,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6.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8명임

[한국수출입은행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191	18	0	0	4	0	2	12	0	3	2	0	0	0	1	13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상기한 내용 중 일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바,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은 2019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 1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고 등급보다 높은 3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 6,817천원 과다 지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	-	1	-	1
평가 등급	-	-	3등급 1명	-	3등급 1명
징계연도	-	-	'22년 1명	-	'22년 1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	-	6,817	-	6,817

주: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한국은행

3-1. 재무 현황 분석

가. 현 황

❑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 및 정부에 대출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

○ 국외부문의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함과 동시에 외화자산을 매입·보유

❑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증권 및 예치금이 차지하며, 부채의 대부분은 화폐발행,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은행의 손익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음

❑ 한국은행의 2023년 자산은 536조 4,019억원이고 부채는 514조 9,018억원, 순자산은 21조 5,001억원이며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자산은 2022년 대비 46조 4,242억원 감소, 부채는 46조 47억원, 순자산은 4,195억원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1조 1,830억원 감소함

[한국은행 재무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자산	4,925,748	5,387,304	5,956,437	5,828,261	5,364,019	△464,242
부채	4,740,502	5,165,591	5,707,646	5,609,065	5,149,018	△460,047
순자산	185,246	221,713	248,791	219,196	215,001	△4,195
당기순이익	53,131	73,659	78,638	25,452	13,622	△11,830

자료: 한국은행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한국은행의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 2023년의 경우 당기순이익 1조 3,622억원 중 30%인 4,087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함

- 315억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9,221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함

❑ 2023년 말 총자산 규모는 536조 4,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 4,242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치금과 어음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38조 6,945억원 감소한 데 기인함

○ 예치금은 외화예치금이 줄었으며, 2022년 고환율로 외화증권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율을 높였으나 2023년에는 상황이 완화되면서 예치금이 감소함

○ 어음대출은 코로나 관련 한시적 지원조치의 종료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함

[한국은행 자산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유가증권	3,920,599	4,006,480	4,355,842	3,933,652	4,005,320	71,668
예치금	198,980	288,721	299,644	529,417	356,960	△172,457
어음대출	155,684	342,723	402,798	409,750	195,262	△214,488
기타	650,485	749,380	898,153	955,442	806,477	△148,965
합계	4,925,748	5,387,304	5,956,437	5,828,261	5,364,019	△464,242

자료: 한국은행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부채 규모는 514조 9,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 47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 전년 대비 19조 5,000억원 감소한 데 기인함

○ 통상 유동성 조절을 통화안정증권과 환매조건부매매[1]로 하는데, 2022년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외환 매도 등으로 2023년 유동성을 조절해야 하는 규모가 줄었음

[한국은행 부채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화폐발행	1,256,989	1,475,569	1,675,719	1,748,623	1,810,947	62,324
통화안정증권발행	1,640,623	1,592,570	1,402,185	1,124,461	1,215,622	91,161
정부예금 및 예금	1,337,677	1,535,595	1,753,240	1,696,866	1,456,729	△240,137
환매조건부매각증권	80,000	110,000	111,534	200,000	5,000	△195,000
기타	425,213	451,857	764,968	839,115	660,720	△178,395
합계	4,740,502	5,165,591	5,707,646	5,609,065	5,149,018	△460,047

자료: 한국은행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은행의 2023년 당기순이익은 1조 3,622억원으로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낮으며, 전년 대비 1조 1,830억원 감소하였음

○ 영업수익이 1조 6,183억원 감소하였고 영업비용이 1,346억원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영업수익의 감소에 기인함

○ 영업수익 감소는 유가증권매매익과 외환매매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임

- 최근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유가증권(채권 등)의 가격이 하락하여 유가증권매매익이 감소함
- 2023년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외환매도 규모 등이 감소하면서 외환매매익이 감소함

1) 증권을 담보로 한 자금의 대차거래이며,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매각증권계정에 계상함

[한국은행 손익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영업수익	163,820	198,192	190,384	209,443	193,260	△16,183
- 유가증권이자	83,920	71,749	66,787	75,578	89,812	14,234
- 유가증권매매익	58,274	98,978	102,567	67,356	47,509	△19,847
- 외환매매익	1,933	3,425	144	23,069	9,655	△13,414
영업비용	90,512	96,520	82,729	176,899	175,553	△1,346
당기순이익	53,131	73,659	78,638	25,452	13,622	△11,830

자료: 한국은행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은행 잉여금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법정적립금(a)	97,737	113,677	135,774	159,366	167,002	69,265
임의적립금(b)	34,378	34,378	34,378	34,378	34,378	0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c)	53,131	73,659	78,638	25,452	13,622	△39,509
정부세입 납부	36,853	51,220	54,781	17,546	9,221	△27,632
합계(a+b+c)	185,246	221,713	248,790	219,196	215,001	29,755

자료: 한국은행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2. 정부대출금 및 관련 이자수익 현황 분석

가. 현 황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1항[1] 및 「한국은행법」 제75조제1항[2]에 의하면, 국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은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대응[3]

○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고 상환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2020년과 2023년에 특히 많이 활용함

- 한국은행의 정부대출금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해 정부 대출금 규모가 컸음
- 2023년에는 2020년과 비슷한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2020년 대비 이자수익(발생액 기준)이 3.2배이며, 이는 정부입장에서는 2023년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함
- 대출금은 정부의 일반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대한 대출금임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 「한국은행법」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Ⅰ」, 2024.7., p.69

❑ 2023년에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정부대출금 규모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대출액은 117조 6,000억원, 회수액은 113조 6,000억원으로 2023년 정부대출금 잔액은 4조원임

◦ 2023년의 이자율은 3.534~3.706%이며,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23년에 최근 10년간 이자율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동안 대출액 규모는 9,662억원~117조 6,000억원에 이르며, 발생액 기준 이자수익은 총 3,508억원임

◦ 최근 10년간 발생액 기준 이자수익의 42.9%(1,506억원)이 2023년에 발생함

◦ 2023년 다음으로 대출액 규모가 높은 연도는 2020년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정 투입으로 인해 대출액은 102조 9,130억원, 회수액은 103조 130억원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의 정부대출금 내역(2014~2023)]

(단위: 억원, %)

연도	기초	대출액	회수액	기말	이자액	이자율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4	31,172	459,172	449,172	41,172	434	2.670	2.680	2.660	2.350
2015	41,172	659,801	688,172	12,801	347	2.160	1.932	1.704	1.627
2016	12,801	116,898	116,801	12,898	41	1.664	1.602	1.453	1.402
2017	12,898	79,655	79,191	13,362	45	1.522	1.440	1.386	1.362
2018	13,362	9,662	15,862	7,162	31	1.638	1.651	1.652	1.685
2019	7,162	365,072	369,104	3,130	349	1.851	1.867	1.696	1.393
2020	3,130	1,029,130	1,030,130	2,130	472	1.432	1.096	0.712	0.736
2021	2,130	76,130	78,260	-	9	0.756	0.601	0.603	0.870
2022	-	342,000	342,000	-	273	1.100	1.316	1.912	2.808
2023	-	1,176,000	1,136,000	40,000	1,506	3.544	3.534	3.618	3.706
합계					3,508	-	-	-	-

주: 1. 이자액은 발생 기준임
2. 이자율은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p를 더한 율임
3. '2023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정부대출금 상환기한은 통합계정 2024.1.20.,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4.9.30.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023.12.31.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최근 5년간 정부대출 건수는 2023년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연간 대출건수는 64회, 회수건수는 34회임

○ 2023년 다음으로 2020년이 대출건수 51회, 회수건수 33회로 대출이 빈번하게 일어남

[한국은행의 정부대출 건수(2019~2023)]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출건수	21	51	3	13	64
회수건수	15	33	6	6	34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3. 퇴직금 관련 자산 추가 적립 필요

가. 현 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1]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누어짐

-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 문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 있음

-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임
-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로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임

❑ 한국은행은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를 운영 중임

○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퇴직금 추계액임

○ 「국민연금법」에 의해 종업원이 부담할 국민연금납입액의 일부를 은행이 대납하고 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국민연금전환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요 쟁점

❑ 한국은행은 퇴직금 관련 부채보다 퇴직금 관련 자산이 약 2,306억원 적음

○ 한국은행의 퇴직금 관련 부채는 약 2,567억원이며, 퇴직금 관련 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약 261억원으로 자산은 사외에 적립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2023년 말 퇴직금 관련 부채 및 자산]

(단위: 백만원)

부채(A)		자산(B)		차이금액(B-A)
계정	금액	계정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256,724	퇴직연금운용자산	26,040	-
-	-	국민연금전환금	43	-
합계	256,724	합계	26,083	△230,641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말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살펴보면, 2023년 퇴직급여충당금 순증액(증가-감소)은 약 155억원이나, 퇴직연금운용자산 순증액은 약 30억원에 불과함

[한국은행의 2023년 말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분	기초(A)	증가(B)	감소(C)	기말(A+B-C)
차감 전 퇴직급여충당금(a)	241,269	33,986	18,531	256,724
국민연금전환금(b)	43	-	1	43
퇴직연금운용자산(c)	23,010	4,150	1,120	26,040
차감 후 퇴직급여충당금 (a-b-c)	218,216	29,835	17,410	230,641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은행은 퇴직금 관련 자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3-4.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 관리 필요

가. 현 황

❑ 한국은행의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며, 2023년 말 기준 법정적립금은 16조 7,002억원으로 2019년 대비 6조 9,265억원이 증가함

○ 2023년의 경우 당기순이익 1조 3,622억원 중 30%인 4,087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함

- 315억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9,221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함

[한국은행 잉여금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법정적립금	97,737	113,677	135,774	159,366	167,002	69,265
임의적립금	34,378	34,378	34,378	34,378	34,378	0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53,131	73,659	78,638	25,452	13,622	△39,509
합계	185,246	221,713	248,790	219,196	215,001	29,755

자료: 한국은행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은행법」 제99조[1]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순이익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법」 제100조[2]에 의하면,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함

나. 주요 쟁점

❑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법정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법」 제99조제1항(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의 한시적 적용 유예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은 상법 및 타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와 상이하게 법정적립금 적립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음

- 「상법」의 경우, 제458조[3]에서 이익준비금 적립의 한도를 자본금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4],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5]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6조[6] 에서 적립금은 자본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고 있음

○ 법정 · 임의적립금 적립을 제외한 이익이 정부의 세외수입으로 편입되므로, 지속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정적립금 적립 조항 한시 유예 시 향후 세외수입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음

---

2) 「한국은행법」
제100조(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3)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이익금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5) 「중소기업은행법」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6)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3-5.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정 수준 관리 필요

가. 현 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1]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함

❑ 한국은행의 2018~20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및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550억원을 출연했으며, 2023년 말 1인당 기금누적액은 3,500만원임

○ 2021년도에 550억원을 출연하여 1인당 잔액이 4,400만원까지 증가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출연을 하지 않아 2023년 말 1인당 기금누적액은 3,500만원 수준임

[한국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2018~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규출연액	-	-	-	55,000	-	-
누적잔액	85,356	75,233	64,977	108,022	95,277	84,522
1인당 기금누적액	35	30	27	44	39	35

주: 누적잔액과 1인당 기금누적액은 연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상 1인당 기금누적액과 은행형 공공기관과 비교 시, 한국은행의 2023년 말 1인당 기금누적액 3,500만원은 높은 수준임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하면, 1인당 기금누적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상한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데, 1인당 기금누적액이 2,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출연율이 0으로, 출연을 할 수 없음

[기금 누적액별 출연액 기준]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한국은행은 은행형 공공기관 및 시중 4대은행과 비교하여도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이 높음

○ 은행형 공공기관의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을 살펴보면, 2018~2023년간 1인당 기금누적액은 1,700만원~2,200만원으로 한국은행의 3,500만원보다 낮음

○ 시중 은행과 비교하여도 한국은행의 2023년 말 1인당 기금누적액은 높은 수준임

- A은행의 1인당 기금누적액은 2023년 말 약 2,100만원이며, B은행은 약 1,300만원, C은행은 약 1,700만원, D은행은 약 1,200만원, E은행은 약 1,700만원 수준임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 현황(2018~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은행		35	30	27	44	39	35
은행형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23	24	25	25	25	24
	중소기업은행	12	13	14	13	15	18
	한국수출입은행	16	22	24	24	23	25
시중 은행	A은행	9	10	10	13	21	21
	B은행	14	14	12	12	12	13
	C은행	-	-	17	16	17	17
	D은행	12	10	10	10	11	12
	E은행	16	14	15	16	16	17

자료: 각 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은행은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액이 은행형 공공기관·4대 시중은행 등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과다한 출연을 지양하고 적정한 수준의 기금누적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3-6. 급여성 경비예산 사전 승인 논의 현황

가. 현 황

❑ 「한국은행법」 제98조[1]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03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총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한 차례 축소된 바 있음

[한국은행 예산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일반관리비	4,811	5,055	5,180	5,487	5,670	183
자본예산	1,593	1,869	3,056	3,345	3,815	470
기타	1,492	1,742	2,462	2,136	1,690	-446
합계	7,896	8,666	10,698	10,968	11,175	207

주: 기타는 국제금융기구 출연금, 화폐제조비 등임
자료: 한국은행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한국은행법」
제98조(예산 · 결산) ①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요 쟁점

❑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존재함

○ 찬성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사전 통제 장치인 급여성 경비에 대한 심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임[2)]

- 기획재정부는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사전승인은 한국은행 예산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임
-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예산을 통제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외부의 통제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반대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 존재

-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됨[3)]
-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국 중앙은행의 예산제도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유럽의 경우 예산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사전승인을 거치지만 승인거부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

2) 의안번호 제2122863호(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2023.11.) 참고

3) 의안번호 220028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2024.6.11.

[주요국 중앙은행의 예산 절차]

국가	예산 절차
미국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예산은 각 지역 연준 경영·예산위원회의 승인과 본부 심사 등을 거친 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의결로 확정 기타 예산(본부, 감사실, 화폐)은 본부 심사 등을 거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의결로 확정
영국	영란은행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Court of Directors)의 심의·의결로 확정
유럽	예산담당부서인 예산통제조정국의 심사와 예산위원회(ECB 및 회원국 중앙은행 대표로 구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유럽중앙은행 최고 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의 의결로 확정
일본	일본은행 최고 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Policy Board)가 의결, 이 중 경비예산은 일본 재무대신(정부)의 인가를 받아 결정 재무대신이 경비예산에 대한 인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일본은행에 통지하고, 경비예산의 상세내역과 거부이유를 공표하여야 함

자료: 의안번호 제2122863호(한병도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2023.11.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교육부 소관 22개 기관임

○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과 서울대학교 병원 등 기타공공기관 21개 기관으로 총 22개 기관임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교육부 (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2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항중앙연구원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22)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48,997명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장학재단 등 22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8,997명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부 (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장학재단	488	514	524	541	524
	기타공공기관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22	333	340	349	33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39	251	262	268	257
		한국고전번역원	140	142	144	149	142
		동북아역사재단	117	113	114	118	118
		한국학중앙연구원	277	277	275	274	271
		한국사학진흥재단	115	121	128	132	12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7	178	180	183	174
		서울대학교병원	7,324	8,082	8,278	8,400	8,452
		부산대학교병원	6,479	6,674	6,742	6,643	6,703
		강원대학교병원	1,537	1,711	1,759	1,822	1,906
		충북대학교병원	2,155	2,332	2,466	2,479	2,674
		충남대학교병원	4,233	4,514	4,859	5,010	5,067
		전북대학교병원	2,752	2,811	3,050	3,257	3,289
		전남대학교병원	4,502	4,675	5,267	5,631	5,654
		경북대학교병원	4,557	5,069	5,128	5,717	5,715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40	3,426	3,882	4,225	4,230
		제주대학교병원	1,726	1,883	1,948	1,995	1,99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81	652	652	661	672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62	259	272	272	27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00	200	199	200	196
		경북대학교치과병원	189	205	206	215	214
합계			41,712	44,422	46,675	48,541	48,997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관임

○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우수(A) 등급에서 양호(B) 등급으로 1등급 하락함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부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장학재단	경평결과	B	B	B	A	B
			경평성과급	627	1,467	1,339	1,429	2,253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 10개 기관임

○ 충남대학교 병원과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은 2022년 5등급에서 2023년 3등급으로 상승함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부 (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장학재단	4	3	2	3	2
	기타공공기관 (1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5	2	3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	3	-	3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3	-	-	-
		서울대학교병원	4	2	2	5	3
		부산대학교병원	4	4	5	4	3
		강원대학교병원	4	3	2	4	3
		충북대학교병원	4	4	4	3	2
		충남대학교병원	3	4	3	3	3
		전북대학교병원	3	3	3	3	2
		전남대학교병원	5	5	4	3	2
		경북대학교병원	4	4	3	4	2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	2	3	2	2
		제주대학교병원	3	2	3	4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	1	-	1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	3	-	2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	-	-	4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	2	-	2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서울대학교병원

2-1.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 연속 최고액 납부

가. 현 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의해 고용주는 의무고용률에 따라 적정수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준수 시 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함[1)]

○ 2023년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6%임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2019~2024)]

(단위: %)

구분	2019~2021	2022~2023	2024
공공기관	3.4	3.6	3.8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서울대학교병원의 최근 5년 장애인고용비율은 1.75% ~2.69% 수준으로,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A)	3.4	3.4	3.4	3.6	3.6
상시근로자수(B)	13,004	14,782	15,542	15,579	15,791
장애인의무고용인원(C=A*B)	442	502	528	560	568
장애인 근로자수(D)	228	305	335	402	424
장애인고용비율(E=D/B)	1.75	2.06	2.16	2.58	2.69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F=C-D)	214	197	193	158	14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크므로, 장애인의무고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서울대학교병원는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3억 6,400만원 납부하여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전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공공기관의 12.3%를 차지함[2)]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1,029억 9,500만원이며, 서울대학교병원이 133억 7,200만원(13.0%)으로 가장 많이 납부함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누적액
서울대학교병원(A)	2,763	2,748	2,694	2,803	2,364	13,372
전체 공공기관(B)	22,520	22,628	18,003	20,622	19,223	102,995
비중(A/B)	12.3	12.1	15	13.6	12.3	13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202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47개 기관이 총 192억 2,300만원을 납부함

○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금액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뒤이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부담한 금액의 2.4배 이상 크므로 장애인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 누적납부액 상위 5개 기관]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누적액
서울대학교병원	2,763	2,748	2,694	2,803	2,364	13,372
국방과학연구소	927	1,032	994	1,242	1,280	5,476
경북대학교병원	976	1,008	781	789	789	4,342
한국원자력의학원	915	854	689	882	889	4,229
전남대학교병원	548	558	704	1,041	1,061	3,91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개 기관 등 총 26개 기관임

-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기타공공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2개 기관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등 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15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21개 기관임
-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3개 기타공공기관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2)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1)	시청자미디어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2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타공공기관(15)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자력안전위원회(3)	기타 공공기관(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26)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12,846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연구재단 등 21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11,417명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2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590명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3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839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	한국연구재단	581	598	619	627	6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40	549	549	557	538
		한국인터넷진흥원	766	757	770	790	76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67	670	710	721	710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609	1,573	1,565	1,564	1,485
		(재)우체국금융개발원	760	807	857	868	844
		기초과학연구원	425	431	449	438	439
	기타공공기관 (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06	317	319	324	314
		한국나노기술원	76	76	80	86	88
		국립광주과학관	123	129	135	142	143
		국립대구과학관	139	140	146	153	153
		국립부산과학관	131	133	142	145	145
		한국원자력의학원	1,321	1,343	1,364	1,392	1,384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46	46	46	52	5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43	43	44	45	45
		한국과학창의재단	184	184	185	184	18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45	166	173	175	17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26	443	456	461	454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84	83	99	98	9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2,710	2,709	2,709	2,709	2,285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506	515	527	531	504
	소계		11,588	11,712	11,944	12,062	11,417

(단위: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방송통신위원회 (2)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9	315	316	317	314
	기타공공기관 (1)	시청자미디어재단	225	263	265	273	276
	소계		534	578	581	590	590
원자력안전위원회 (3)	기타공공기관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09	613	607	616	62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17	120	127	129	129
		한국원자력안전재단	69	75	81	85	84
	소계		795	808	815	830	839
합계			12,917	13,098	13,340	13,482	12,846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개 기관임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며, 2022년 평가 대비 하락한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2년 보통(C) 등급에서 2023년 아주미흡(E) 등급으로 2등급 하락했으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상 조치 해당 기관이지만 기관장 부재로 기관장 해임건의는 해당하지 않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방송통신위원회(1)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평결과	C	C	B	C	E
			경평성과급	7,216	4,413	2,969	6,158	5,2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경평결과	B	C	C	C	C
			경평성과급	1,471	1,500	456	832	1,194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경평결과	E	E	E	C	C
			경평성과급	255	85	0	0	1,1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평결과	B	B	B	D	D
			경평성과급	5,193	4,230	4,546	4,197	3,463
		한국연구재단	경평결과	B	B	A	B	A
			경평성과급	1,281	1,508	1,805	1,694	1,590
		한국인터넷진흥원	경평결과	C	C	B	B	B
			경평성과급	1,168	1,119	1,085	1,359	2,09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평결과	B	B	B	C	C
			경평성과급	953	1,620	1,612	1,908	1,588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개,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임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며, 2022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였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4년 연속 (2020~2023년) 4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년 연속(2022~2023년) 4등급을 받음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임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	3	3	4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4	4	4	4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	3	4	3	4
		(재)우체국금융개발원	2	4	2	3	3
		한국연구재단	4	3	2	4	3
		한국인터넷진흥원	3	3	2	2	3
	기타공공기관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2	3	1	3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3	3	2	1	2
		한국과학창의재단	4	4	4	1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3	-
		한국원자력의학원	4	3	1	4	-
방송통신위원회 (2)	준시장형 공기업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	2	2	3	3
	기타공공기관 (1)	시청자미디어재단	-	-	-	3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기타공공기관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2	3	2	2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1. 지속적인 적자 누적에 따른 일부 자본잠식 문제

가. 현 황

❑ 우리나라 방송광고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방송광고 수수료 수입 감소

○ 우리나라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2015년 4조 4,639억원에서 2023년 3조 3,075억원으로 25.9% 하락하였으며, 동 기간 공사의 방공광고 판매액도 2015년 1조 3,171억원에서 2023년 5,476억원으로 58.4% 하락

[방송광고시장 규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 판매액]

(단위: 억원, %)

구분	2015(A)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B)	증감률 (B-A)/A
방송광고시장	44,639	39,501	37,710	34,841	40,532	40,212	33,075	△25.9
공사 방송광고 판매액	13,171	9,057	6,758	6,282	7,305	7,246	5,476	△58.4
비중	29.5	22.9	17.9	18.0	18.0	18.0	16.6	△43.7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광고 판매의 감소에 따라 광고수탁수수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사로부터 광고판매액의 14~16%의 광고수탁수수료를 수령하는데, 광고판매액이 감소하면서 광고수탁수수료 수입도 함께 감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2015년 광고수탁수수료 수입은 1,848억원이었으나 2023년 871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공사의 총매출액도 2015년 2,079억원에서 2023년 1,192억원으로 감소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손익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총매출액	2,079	1,513	1,200	1,249	1,432	1,457	1,192
광고수탁수수료	1,848 (88.9)	1,275 (84.3)	956 (79.7)	997 (79.8)	1,159 (80.9)	1,154 (79.2)	871 (73.1)
매출총이익	492	373	351	329	351	352	253
판매비와관리비	574	593	566	634	506	535	495
인건비	271	561	282	319	284	301	300
운영경비	313	295	283	314	223	234	195
영업이익(손실)	△82	△187	△215	△305	△155	△183	△242
당기순이익(손실)	42	△114	△133	147	△99	△107	△166

주: 1. 연결실적 기준
2. ( )안은 총매출액 대비 광고수탁수수료 수입 비중임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방송광고판매수수료 수입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일부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므로, 공사는 재정건전성 방안을 마련 필요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15년 이후로 주된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일부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결손으로 인한 자본변동]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본금(A)	3,256	3,256	3,256	3,256	3,256
이익잉여금(결손금)(B)	△240	△85	△178	△283	△451
기타자본구성요소(C)	10	8	△6	△95	△31
자본총계(A+B+C)	3,026	3,179	3,072	2,878	2,774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2. Kobaco 연수원 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필요

가. 현 황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Kobaco 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음

○ 1984년 개관한 연수원은 광고·언론기관, 정당, 국가기관, 중소기업, 공공·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 등을 고객으로 하며, 숙소 100실과 강당, 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 시설 현황]

구분	종류	수량	수용인원
교육	강당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	1실 12실	272석 608석
숙소	온돌 침대	26실 74실	127명 220명
	소계	100실	347명
체육	수영장, 잔디구장, 소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기타	식당, 연회장, 레크리에이션실, 캠프화이어장, 산책로 등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나. 주요 쟁점

❑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해 연수원 이용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연수원 이용률은 2017년 35.1%에서 2023년 20.6%로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권으로 볼 수 있는 2020년 및 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연수원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Kobaco 연수원 이용인원 및 이용률]

(단위: 일, 명, %)

연도	연간사용일수 (A)	총숙박가능인원 (B)	총사용가능인원 (C=A×B)	실이용인원 (D)	이용률 (D/C)
2017	296	347	102,712	36,009	35.1
2018	297	347	103,059	32,274	31.3
2019	299	347	103,753	24,849	23.9
2020	298	347	103,406	8,923	8.6
2021	297	347	103,059	11,948	11.5
2022	298	347	103,406	22,920	22.1
2023	296	347	102,712	21,180	20.6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연수원의 이용객 감소로 운영경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2017년~2023년 동안 음(-)의 값을 유지 중임

○ 영업손실은 2017년 9억 5,000만원에서 2023년 16억 9,3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2017년 △47.0%에서 2023년 △142.0%로 크게 감소함

○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음

- 인건비는 2018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용역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 운영경비는 17~20억원 수준의 지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Kobaco 연수원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2,022	1,853	1,496	508	664	1,513	1,192
매출총이익	1,415	1,269	961	386	551	996	702
판매비와관리비	2,366	2,378	2,343	2,120	2,065	2,148	2,394
인건비	562	530	447	369	378	377	391
경비	1,797	1,848	1,896	1,750	1,686	1,770	2,002
판매비	6	0	0	1	1	1	1.5
영업이익(손실)	△950	△1,109	△1,382	△1,734	△1,513	△1,153	△1,693
영업이익률	△47.0	△59.9	△92.4	△341.3	△227.9	△76.2	△142.0
당기순이익(손실)	△948	△1,114	△1,388	△1,736	△1,511	△971	△847

주: 경비는 시설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연수원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수원운영개선TF' 운영을 통해 연수원 민간위탁운영방안을 수립하고, 20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Kobaco 연수원 운영효율화')에 포함하였으나 지연되고 있음

○ 지연사유는 민간위탁을 위한 지침 검토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설명

○ 연수원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공사는 민간위탁운영 추진 등 수립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연수원의 수익성 개선 필요

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1.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가. 현 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2%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2023년 기준 공공기관[2]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로, 전체 공공기관 중 222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달성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전체 327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 중 신규 편입된 (재)한국통계정보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324개 기관	24,537,487	315,276	1.2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29,026	864	0.2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3)]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1년 0.24%, 2022년 0.07%, 2023년 0.2%로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1	446,893	1,088	0.24
2022	503,133	353	0.07
2023	429,026	864	0.2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인공지능·데이터·네트워크 등 국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체 구매액의 84.3%가 용역인 기관 업무 특성과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796개)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구매 가능한 관련 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며, 23년 기준 목표비율(1%) 달성을 위해서는 약 43억원을 구매해야 하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가능한 항목(인쇄·홍보물·소모품 등)의 예산은 총 22억원(52%)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구매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또한 인쇄 등으로 제한적이므로 기관별 구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매비율 측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3-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센티브지급규칙」 제5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789명의 임직원에게 총 1,005,301천원을 지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B	866	1,167,711	-	1,167,711
2023	C	872	1,003,023	-	1,003,023
2024	C	789	1,005,301	-	1,005,301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바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7	134	14	117	62	100	13	83	5	67	-	-
2023	경평	6	134	15	117	60	100	15	83	4	67	-	-
2024	경평	6	134	15	117	58	100	15	83	4	67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7명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872	17	2	-	3	-	5	7	2	5	-	-	-	-	1	9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19년 이후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 3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B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 6,594천원을 과다 지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채용 비위	계
인원 수	-	3	-	-	3
평가 등급	-	B 3명	-	-	B 3명
징계연도	-	'19년 2명 '21년 1명	-	-	'19년 2명 '21년 1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	6,594	-	-	6,594

주: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외교통일위원회

1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외교부 소관 2개 기관, 통일부 소관 2개 기관, 재외동포청 1개 등 총 5개 기관임

- ○ 외교부 소관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총 2개 기관임
- ○ 통일부 소관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임
- ○ 재외동포청 소관 공공기관은 재외동포협력센터(기타공공기관) 1개 기관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외교부(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국제협력단
	기타공공기관(1)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2)	기타공공기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외동포청(1)	기타공공기관(1)	재외동포협력센터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5)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979명

- ○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등 2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733명
- ○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209명
- ○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37명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외교부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국제협력단	573	586	597	604	585
	기타공공기관 (1)	한국국제교류재단	146	150	152	154	148
	소계		719	736	749	758	733
통일부 (2)	기타공공기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81	173	174	177	171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5	36	36	38	38
	소계		216	209	210	215	209
재외동포청 (1)	기타공공기관 (1)	재외동포협력센터	0	0	0	0	37
	소계		0	0	0	0	37
합계			935	945	959	973	979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관임

○ 한국국제협력단은 전년도 평가와 동일한 보통(C) 등급 유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외교부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국제협력단	경평결과	A	A	A	C	C
			경평성과급	799	1,637	1,664	1,804	1,270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임

○ 2023년 청렴도 평가는 4등급으로 2022년 대비 등급이 하락하였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외교부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국제협력단	4	3	4	3	4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한국국제교류재단

2-1.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가. 현 황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1%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2023년 기준 공공기관[2]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로, 전체 공공기관 중 222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달성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전체 327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 중 신규 편입된 (재)한국통계정보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324개 기관	24,537,487	315,276	1.28
한국국제교류재단	11,531	11	0.1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1년 0.292%, 2022년 0.037%, 2023년 0.1%로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1	11,029	32.2	0.292
2022	15,559	5.8	0.037
2023	11,531	11.2	0.1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보수규정」 및 「성과급 지급지침」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149명의 임직원에게 총 1,083,049천원을 지급 완료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A	154	575,132	1,139,785	1,714,917
2023	A	148	548,009	1,145,255	1,693,264
2024	A	149	지급예정	1,083,049	1,083,049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차등 등급 수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아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한국국제교류재단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내부	12	135	21	115	58	100	22	85	12	65	-	-
2023	내부	13	135	24	115	53	100	26	85	12	65	-	-
2024	내부	10	135	20	115	40	100	20	85	10	65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3.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부 규정인 「퇴직금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음

○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명예퇴직한 직원 수는 5명이며, 이들에게 총 1,087,305천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한국국제교류재단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	1	1	1	1	-
지원금액	224,947	174,357	167,548	268,410	252,043	-
관련 내부 규정	「퇴직금규정」 제12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으로서 재단에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자로 하되, 명예퇴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을 명시하는 한편, 기준급여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였음

○ 기준급여: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할 것

-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보수체계를 고려하면, 월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의 규모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급' 항목과 달리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본 연봉 이외의 수당이 포함됨

○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 아래의 기준에 따를 것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2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4

나. 주요 쟁점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급여는 '월평균임금' 인데, 이는 기준급여를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할 것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과 상이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퇴직금규정」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비교]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중략)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명예퇴직수당 산정 방식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45%×정년잔여월수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45%×정년잔여월수의 1/4
한국국제교류재단 「퇴직금규정」 제12조 및 [별표 1]	① 인사규정의 명예퇴직규정에 의해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별표 1] 명예퇴직금 지급기준표 - 정년 잔여년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월평균임금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정년 잔여년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월평균임금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 - 60)/2)
명예퇴직수당 산정 방식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100%×정년잔여월수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100%×정년잔여월수의 1/4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명예퇴직수당의 기준급여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설정한 결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19년 이후 명예퇴직자에게는 지침상 기준 대비 128백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음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명예퇴직수당이 지침의 취지보다 과다하게 산정 및 지급되거나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지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위원회

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3개 기관, 인사혁신처 소관 1개 기관, 경찰청 소관 1개, 소방청 소관 1개 기관 등 총 6개 기관임

-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으로 총 3개 기관임
- ○ 인사혁신처 소관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 1개 기관임
- ○ 경찰청 소관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 1개 기관임
- ○ 소방청 소관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개 기관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인사혁신처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찰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	기타공공기관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6)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5,826명

-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3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1,780명
- ○ 인사혁신처 산하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683명
- ○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3,043명
- ○ 소방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320명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행정안전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02	1,590	1,607	1,663	1,658
	기타공공기관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8	53	50	71	70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51	51	51	52	52
	소계		1,601	1,694	1,708	1,786	1,780
인사혁신처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공무원연금공단	662	680	683	687	683
	소계		662	680	683	687	683
경찰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도로교통공단	3,001	3,030	3,057	3,112	3,043
	소계		3,001	3,030	3,057	3,112	3,043
소방청 (1)	기타공공기관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91	314	321	329	320
	소계		291	314	321	329	320
합계			5,555	5,718	5,769	5,914	5,826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행정안전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및 경찰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로 총 3개 기관

-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2022년 미흡(D) 등급에서 2023년 보통(B) 등급으로 2등급 상승
-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2022년 보통(C) 등급에서 2023년 미흡(D) 등급으로 하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사혁신처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공무원연금공단	경평결과	B	B	B	C	C
			경평성과급	1,566	1,466	1,188	1,951	1,421
행정안전부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평결과	D	D	C	D	B
			경평성과급	800	394	4	905	473
경찰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도로교통공단	경평결과	B	B	A	C	D
			경평성과급	1,451	1,494	1,360	1,709	1,345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임

- ○ 인사혁신처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으로 2022년 2등급에서 2023년 3등급으로 하락하였음
-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2022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하였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행정안전부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3	3	2	4
인사혁신처 (1)	기금관리 준정부기관 (1)	공무원연금공단	3	2	2	2	3
경찰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도로교통공단	4	4	3	2	2
소방청 (1)	기타공공기관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2	2	2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1. 소방안전검사 수수료 수입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소방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의 성능확인·제품검사 등을 수행하며 위험물 시설 설치, 변경, 검사 관련 수수료 수입을 인식하고 있음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등을 수행하며 관련 수수료수입 인식
- ○ 위험물 시설(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설치, 변경, 검사, 안전교육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1조 등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평가 또는 교육을 받고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
- ○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소방장비 운용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검사, 인증 및 평가 수행
- ○ 2023년 기준 수수료 수입 중 사업수입이 106억 8,700만원, 위탁수입이 491억 4,600만원, 독점수입이 41억 2,000만원, 기타사업수입이 2억 600만원임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유형	2021	2022	2023
사업수입	소방용품검사, 위험물 검사, 소방장비 검사, 연구용역, 기타수입 등	7,659	9,007	10,687
위탁수입	소방용품검사, 위험물 검사, 소방장비검사	38,938	43,501	49,146
독점수입	소방용품 검사, 위험물 검사, 기타수입	3,075	3,017	4,120
총 수입		52,220	66,240	86,118

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나. 주요 쟁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기관이 수취하고 있는 수수료 수익의 과다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20년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영업이익율은 18.4%, 당기순이익율은 20.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주요 손익현황(2019~2023)]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평균
영업수익(A)	51,768	45,968	46,567	51,630	58,161	6,393	50,819
영업비용	42,881	42,428	42,201	45,092	47,479	4,598	44,016
영업이익(B)	8,887	3,540	4,366	6,538	10,682	1,795	6,803
영업이익율(B/A)	17.2	7.7	9.4	12.7	18.4	1.2	13.4
당기순손익(C)	7,837	3,689	4,528	6,358	11,798	3,961	6,842
당기순이익율(C/A)	15.1	8.0	9.7	12.3	20.3	5.1	13.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이익증가분을 사내유보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이자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단기금융상품 연평균 잔액은 2019~2023년 평균 520억 9,700만원 수준이며, 2019년 494억 7,200만원에서 2023년 말 단기금융상품은 621억 8,800만원까지 증가함

◦ 2019년 6억 2,500만원이었던 단기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은 2023년 30억원까지 증가한 바 있음

◦ 이자수익률은 2019년 1.26%에서 2020년 2.2%, 2021년 1.86%, 2022년 2.73%, 2023년 4.94%로 2021년부터 이자수익률이 증가하였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자수익 및 단기금융상품(2019~2023)]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이자수익(A)	625	1,086	877	1,425	3,073	1,417
연도말 단기금융상품 잔액	49,249	50,289	51,092	56,887	69,011	55,306
단기금융상품 연평균 잔액(B)	49,472	49,390	47,164	52,273	62,188	52,097
이자수익률(C=A/B)	1.26	2.20	1.86	2.73	4.94	2.72

주: 연평균 잔액은 월말 기준임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또한 사내유보금으로 2021~2023년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은 용인 본사와 오송 신청사 토지 포함 취득원가가 250억 3,900만원임

◦ 오송 신청사의 취득가액이 234억원, 소방장비센터 취득가액이 11억 9,500만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21~2023년 유형자산 취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취득원가
취득	건물(소방장비센터)	2021-04-07	1,083
	건물(소방장비센터)	2021-12-29	17
	건물(소방장비센터)	2022-08-04	95
	건물(용인 본사)	2023-02-27	132
	건물(용인 본사)	2023-02-28	333
	토지(오송 신청사)	2023-05-11	23,379
합계			25,039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023년 기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산은 1,671억원으로 이 중 2023년 단기금융상품 연평균 잔액 622억원, 취득한 토지·건물 취득원가는 250억원이므로 사내유보금으로 취득한 자산 비중이 52.2%로 비중이 높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재무상태표(2019~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	139,985	145,236	150,428	155,987	167,072
부채	11,883	14,097	13,723	10,264	10,251
자본	128,102	131,139	136,705	145,723	156,821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금융자산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수수료 수익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376명의 임직원에게 총 1,932,154천원을 지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D	375	98,101	641,587	739,688
2023	D	383	0	688,661	688,661
2024	B	376	1,166,000	766,154	1,932,154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차등 등급 수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바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내부	9	148	15	123	50	100	16	78	9	53	-	-
2023	내부	9	134	14	116	52	100	16	85	9	67	-	-
2024	내부	10	134	15	116	49	100	14	85	10	67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1개 기관, 국가유산청 소관 1개 기관 등 총 32개 기관임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등 28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31개 기관임
- ○ 국가유산청 소관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 1개 기관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3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관광공사
	기타공공기관(2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가유산청(1)	기타공공기관(1)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32)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9,542명

-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1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9,148명
- ○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은 국가유산진흥원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394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체육관광부 (31)	준시장형 공기업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880	1,890	1,823	1,827	1,77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국민체육진흥공단	1,711	1,634	1,642	1,646	1,48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관광공사	731	746	759	773	766
	기타공공기관 (28)	한국문화정보원	59	62	64	66	6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0	140	141	142	139
		세종학당재단	94	97	100	104	10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80	80	80	80	8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72	272	271	269	260
		한국문화진흥(주)	147	146	142	141	139
		예술의전당	389	391	391	393	377
		(재)예술경영지원센터	64	64	66	70	72
		재단법인 국악방송	69	69	73	76	7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9	39	42	43	4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5	65	68	68	6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0	139	149	153	15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콘텐츠진흥원	510	515	528	533	523
		영화진흥위원회	128	128	139	137	136
		영상물등급위원회	46	47	53	55	53
		한국영상자료원	96	97	97	100	100
		게임물관리위원회	98	99	99	99	101
		한국저작권위원회	151	150	153	159	156
		한국저작권보호원	114	114	116	119	115
		한국언론진흥재단	206	223	224	220	213
		국제방송교류재단	228	225	229	230	22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92	90	95	97	94
		한국문학번역원	56	56	57	58	59
		대한체육회	271	268	268	280	281
		대한장애인체육회	126	128	134	139	142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461	1,460	1,461	1,468	1,175
		태권도진흥재단	85	87	88	89	88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93	93	95	95	93
	소계		9,621	9,614	9,647	9,729	9,148
국가유산청 (1)	기타공공기관 (1)	국가유산진흥원	389	394	394	397	394
	소계		389	394	394	397	394
합계			10,010	10,008	10,041	10,126	9,542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로 총 3개임

- ○ 2022년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2년 우수(A) 등급에서 2023년 보통(C) 등급으로 두 등급 하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체육관광부(3)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경평결과	C	C	D	B	C
			경평성과급	870	3,540	1,952	455	5,88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체육진흥공단	경평결과	C	C	C	A	C
			경평성과급	1,734	1,262	1,299	1,385	2,58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관광공사	경평결과	A	A	B	B	C
			경평성과급	5,492	9,862	9,024	8,177	10,071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6개임

-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하락한 공공기관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등 3개 기관임
  -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2022년 3등급에서 2023년 5등급으로 하락
-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3개 기관임
- ○ 대한체육회는 4년(2020~2023년)간 4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년 연속(2022~2023년) 4등급을 받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체육관광부 (10)	준시장형 공기업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	2	2	2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국민체육진흥공단	3	3	4	3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관광공사	4	2	2	2	2
	기타 공공기관 (7)	한국콘텐츠진흥원	5	4	3	3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4	5	4	3
		대한체육회	5	4	4	4	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	4	3	5
		국제방송교류재단	2		-	4	2
		한국언론진흥재단	-	-	-	4	4
		영화진흥위원회	3	3	-	-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영화진흥위원회

2-1. 녹색제품 공공기관 구매이행률 실적 저조

가. 현 황

❑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이행 비율은 28%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제품 계획액을 이행하지 못하였음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라 녹색제품[2]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이행계획을 수행함

○ 2023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3]의 구매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평균 118.3% 이행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이행률은 28%에 그침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함

3) 전체 327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 중 신규 편입된 (재)한국통계정보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

[영화진흥위원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액 현황 등(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구매이행계획(A)	녹색제품 구매실적 (B)	계획 대비 실적 (B/A)
324개 공공기관	733,543	867,720	118.3
영화진흥위원회	239	67	28.0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영화진흥위원회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계획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 실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2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을 보면 2022년 62%, 2023년 28%로 2년 연속 녹색제품 구매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영화진흥위원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구매이행계획(A)	녹색제품 구매실적 (B)	계획 대비 실적 (B/A)
2022	211	131	62
2023	239	67	28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2. 중증장애인생산품 3년 연속 의무구매 실적 저조

가. 현 황

❑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45%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2023년 기준 공공기관[2]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로, 전체 공공기관 중 222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영화진흥위원회는 미달성

[영화진흥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등(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324개 기관	24,537,487	315,276	1.28
영화진흥위원회	7,213	32	0.45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전체 327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 중 신규 편입된 (재)한국통계정보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

나. 주요 쟁점

❑ 영화진흥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보면 2021년 0.25%, 2022년 0.61%, 2023년 0.45%로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영화진흥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1	10,872	27	0.25
2022	7,854	48	0.61
2023	7,213	32	0.45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영화진흥위원회는 「보수규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119명의 임직원에게 총 410,180천원을 지급

[영화진흥위원회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B	123	215,065	262,988	478,053
2023	C	118	148,384	265,953	414,337
2024	C	119	147,078	263,102	410,180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영화진흥위원회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모두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2024년 등급별 지급률의 경우 120%, 110%, 100%, 90%, 80% 순으로,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영화진흥위원회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내부	0	-	44	100	53	100	0	-	1	100	-	-
2023	내부	5	100	38	100	52	100	1	100	2	100	-	-
2024	내부	10	120	19	110	43	100	19	90	5	80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영화진흥위원회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4.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영화진흥위원회는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 제42조, 「보수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음

○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명예퇴직한 직원 수는 5명이며, 이들에게 총 555,882천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영화진흥위원회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	2	-	2	1	-
지원금액	-	268,251	-	176,966	110,665	-
관련 내부 규정	「인사규정」 제42조, 「보수규정」 제27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20년 이상 재작한 직원 중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을 명시하는 한편, 기준급여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였음

○ 기준급여: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할 것

-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보수체계를 고려하면, 월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의 규모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급’ 항목과 달리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본 연봉 이외의 수당이 포함됨

○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 아래의 기준에 따를 것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2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4

나. 주요 쟁점

❑ 영화진흥위원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인데, 이는 기준급여를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할 것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과 상이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영화진흥위원회 「보수규정」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비교]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중략)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명예퇴직수당 산정 방식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정년잔여월수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정년잔여월수의 1/4
영화진흥위원회 「보수규정」 제27조	인사규정 제42조에 의거하여 명예퇴직한 직원에게는 잔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월 통상임금의 25%×정년잔여월수 1.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월 통상임금의 25%×[60+(정년잔여월수-60)/2]
명예퇴직수당 산정 방식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50%×정년잔여월수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50%×정년잔여월수의 1/4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명예퇴직수당의 기준급여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설정한 결과, 영화진흥위원회의 2019년 이후 명예퇴직자에게는 지침상 기준 대비 36백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음

❑ 영화진흥위원회는 명예퇴직수당이 지침의 취지보다 과다하게 산정 및 지급되거나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지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개 기관, 농촌진흥청 소관 1개 기관, 산림청 소관 5개 기관,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기관 등 총 35개임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8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임
- ○ 농촌진흥청 소관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개 기관임
- ○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한국임업진흥원 등 4개 기타공공기관임
- ○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해양과학관 등 15개 기타공공기관등 총 17개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2)	준시장형 공기업 (1)	한국마사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공공기관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1)	기타공공기관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산림청 (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공공기관 (4)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해양수산부 (17)	준시장형 공기업 (1)	해양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15)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앙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35)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18,743명

-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12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12,701명
- ○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323명
- ○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5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1,288명
-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 등 17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431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농림축산식품부 (12)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마사회	3,160	3,145	3,175	3,173	2,85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	한국농어촌공사	6,811	6,756	6,708	6,743	6,56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75	881	905	921	914
		축산물품질평가원	411	452	456	476	469
	기타공공기관 (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6	89	90	100	9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6	169	176	180	17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257	1,270	1,275	1,296	1,29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73	75	83	91	88
		국제식물검역인증원	49	49	52	56	56
		한식진흥원	43	43	43	46	4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78	91	103	110	108
		축산환경관리원	30	40	43	45	45
	소계		13,029	13,060	13,109	13,237	12,701
해양수산부 (17)	준시장형 공기업(1)	해양환경공단	699	701	728	747	72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70	528	544	550	536
	기타공공기관 (15)	부산항만공사	245	257	273	279	269
		인천항만공사	271	276	284	289	275
		여수광양항만공사	155	167	174	177	179
		울산항만공사	113	118	125	130	12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9	89	96	101	96
		한국수산자원공단	330	328	360	361	34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1	258	290	304	295
		한국해양진흥공사	130	151	169	174	17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44	744	755	757	741
		한국어촌어항공단	225	227	244	250	239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20	223	224	227	224
		국립해양박물관	64	65	65	66	62
		국립해양과학관	0	44	44	45	43
		한국항로표지기술원	55	55	64	66	64
		한국해양조사협회	53	55	55	57	54
	소계		4,104	4,286	4,494	4,580	4,431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촌진흥청 (1)	기타공공기관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15	324	329	343	323
	소계		315	324	329	343	323
산림청 (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05	475	477	477	454
	기타공공기관 (4)	한국임업진흥원	240	248	272	274	26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37	449	469	452	45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58	58	38	39	39
		한국치산기술협회	49	58	69	69	78
	소계		989	1,288	1,325	1,311	1,288
합계			18,437	18,958	19,257	19,471	18,743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와 해양수산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산림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로 총7개 기관

- ○ 2022년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임
- ○ 2022년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기관임
- ○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장 경고조치 및 안전 관련 개선계획 제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림축산식품부 (4)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마사회	경평결과	C	E	D	B	C
			경평성과급	26	5,057	25	745	9,48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	축산물품질평가원	경평결과	C	B	C	B	B
			경평성과급	240	741	1,476	910	1,577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경평결과	B	A	A	B	B
			경평성과급	2,345	1,606	1,680	1,772	2,992
		한국농어촌공사	경평결과	B	D	C	B	C
			경평성과급	2,457	2,526	507	1,566	2,651
해양수산부 (2)	준시장형 공기업(1)	해양환경공단	경평결과	B	B	A	A	B
			경평성과급	2,864	4,842	4,304	5,792	6,92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평결과	B	D	E	C	C
			경평성과급	1,252	1,262	246	260	1,605
산림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평결과	B	B	D	B	A
			경평성과급	935	1,071	1,237	282	1,665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

-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마사회 등 2개 기관
  - 한국마사회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 ○ 한국농어촌공사는 4년 연속(2020~2023년) 4등급을 받음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3년 연속(2021~2023년) 4등급을 받음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년 연속(2022~2023년) 4등급을 받음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3개

-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이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4년 연속(2020~2023년) 4등급을 받음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1개

-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년 연속(2022~2023년) 4등급을 받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농림축산식품부(7)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마사회	3	3	3	4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한국농어촌공사	3	4	4	4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3	2	3	3
		축산물품질평가원	2	2	3	3	2
	기타공공기관(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	3	-	3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2	-	4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4	4	4
해양수산부(11)	준시장형 공기업(1)	해양환경공단	3	3	3	3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4	4	4	4
	기타공공기관(9)	부산항만공사	3	3	2	1	-
		인천항만공사	3	3	2	3	-
		울산항만공사	2	2	2	2	-
		여수광양항만공사	1	2	2	4	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	3	-
		한국수산자원공단	4	5	3	2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4	4	4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	4	-	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	3	-	-	-
농촌진흥청(1)	기타공공기관(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2	3	2	-
산림청(3)	위탁집행형(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3	3	4	4
	기타공공기관(2)	한국임업진흥원	-	-	-	3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	3	4	3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한국마사회

2-1. 장외발매소 사행성 매출 관리 필요

가. 현 황

❑ 한국마사회는 경마가 실제 개최되는 경마장(본장)과 장외발매소를 운영

○ 한국마사회는 부산, 제주, 과천 3개의 경마장(본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마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님에도 실제 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한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

○ 2024년 7월 말 기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는 서울 9개소, 경기 8개소 등 수도권 21개소와 지방 6개소로 총 27개소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2024년 7월 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수도권(21개소)			지방(6개소)					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충청	광주	부산	경상	
소유	4	5	3	1	1	1	-	-	15
임차	5	3	1	-	-	-	2	1	12
합계	9	8	4	1	1	1	2	1	27

자료: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의 2023년 매출액은 6조 5,007억원이고, 입장인원은 1,040만명으로, 1,0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의 경우 매출액과 입장인원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입장인원이 11.6%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1.6% 증가하였음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한국마사회 연도별 매출액, 입장인원 및 당이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천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실적	73,572	10,890	10,476	63,969	65,007
	증감률	△2.4	△85.2	△3.8	510.6	1.6
입장인원	실적	12,713	1,728	1,300	9,319	10,400
	증감률	0.3	△86.4	△24.8	617.0	11.6
당기순이익		1,449	△4,368	△3,480	973	1,006

자료: 한국마사회

나. 주요 쟁점

❑ 2023년도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준인 50%를 상회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을 50% 이하로 축소할 것을 명시하는 등 공급규제 정책 실시[1)]

○ 2023년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4조 4,252억 6,400만원으로, 그 비중이 68.1%에 해당함. 2023년의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지만, 여전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준인 50%를 상회함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와 경마공원의 매출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장외발매소	경마본장	총합(A+B)	장외발매소 비중 [B/(A+B)]
2019	5,170,547	2,186,688	7,357,235	70.3
2020	771,873	317,174	1,089,047	70.9
2021	775,935	271,662	1,047,597	74.1
2022	4,381,613	2,015,337	6,396,950	68.5
2023	4,425,264	2,075,469	6,500,733	68.1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5년 단위로 "사행산업 건전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차 종합계획('09~'13) 상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며 이후 수립된 2차 종합계획('14~'18)에서는 영업장 신설·이전 관련 영향평가 제도 도입, 3차 종합계획('19~'23)에서는 장외발매소 추가 신설 지양 등 장외발매소 관련 정책이 변경되었음을 언급함

❑ 장외발매소의 1인당 매출액 역시 높은 수준으로 사행성 심화에 대한 우려 존재

○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의 2023년 매출액은 4조 4,252억 6,400만원, 입장인원은 652만 4,621명으로, 1인당 매출액은 6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와 경마공원의 1인당 매출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천원)

구분	1인당 발매금액		입장인원		발매금액	
	경마본장	장외발매소	경마본장	장외발매소	경마본장	장외발매소
2019	471	641	4,644,505	8,068,468	2,186,688	5,170,547
2020	549	671	577,723	1,150,393	317,174	771,873
2021	706	848	384,841	914,813	271,662	775,935
2022	593	740	3,399,133	5,919,550	2,015,337	4,381,613
2023	535	678	3,875,852	6,524,621	2,075,469	4,425,264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2023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81.57) 평가를 받아 사행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매출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함

- 추후 전자마권 도입으로 매출 일부가 전자마권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전자마권에 대한 사행성 관리 대책 수립 중

2-2.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고객만족도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1)]

○ 고객만족도 종합 점수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등급, 80점 이상은 C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을 받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내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항]

>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

❑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최근 2년 동안 공기업 평균 대비 낮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한국마사회의 주요사업(경마사업·말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합결과를 보면 2021년 C등급, 2022년 D등급으로 지속 하락추세에 있으며 2023년 D등급으로 최하위 등급(D등급)임[2)]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기획재정부는 조사단계별로 기본설계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주관업체(한국능률협회 등 2개 업체) 및 실시업체(한국리서치 등 6개 업체)에 위탁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함(0.4점)

2)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 고객만족도 점수 하위 4개 기관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랜드
점수	79.4	77.8	77.1	73.8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3년간 한국마사회 및 공기업(평균)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 결과]

(단위: 점)

구분		2021	2022	2023
한국마사회	등급	C	D	D
	점수(A)	83.5	68.5	77.8
공기업(평균) (B)		86.6	86.0	87.0
점수 차이(B-A)		3.1	17.5	9.2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마사회의 모든 세부항목별 고객만족도가 2022년 및 2023년 공기업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공공기관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5가지 부분(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국민행복 및 신뢰 등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구성[3)]

- 한국마사회는 성과(국민행복 등) 부분에서 공기업 평균과 2년 연속 큰 폭의 점수 차이가 발생

[공기업(평균) 및 한국마사회에 대한 고객만족도 항목별 점수]

(단위: 점)

구분	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국민행복 및 신뢰)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공기업 (평균)	한국 마사회
2022	88.2	72.4	84.8	62.0	83.5	66.0	85.8	68.5	84.0	55.2
2023	89.1	80.9	85.8	73.8	84.8	75.4	86.8	77.5	84.7	68.8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서비스품질(서비스 상품의 본원적 품질, 서비스 전달과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환경 등에 대한 만족 정도) 사회적책임(공공기관으로서 정책타당성, 지속가능성, 윤리성 정도), 기대 대비 불일치(기대, 이상점, 타 기관 이용 경험 등과 대비 지각된 서비스 수준의 일치/불일치 정도), 전반적 만족도(서비스 이용 후 전반적 만족도 및 기관에 대한 긍정적 느낌), 성과(서비스 이용 후 기관 사업 활동에 대한 신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정도)

2-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마사회는 「급여규정」 제16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1,156명의 임직원에게 총 16,928,712천원을 지급

[한국마사회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D	1,083	722,779	14,411,107	15,133,887
2023	B	1,101	9,674,214	13,699,964	23,374,179
2024	C	1,156	2,987,789	13,940,922	16,928,712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나. 주요 쟁점

❑ 한국마사회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3급 이하 직급에 대해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은 등급별 지급률이 57%, 53%, 50%, 47%, 43% 순으로, 최고 등급의 지급률이 차하위 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인바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 내부평가급의 경우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최근 3년간 한국마사회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2급 이상)	11	17	20	15	38	13	20	10	11	8	-	-
	내부 (2급 이상)	11	333	20	292	38	250	20	208	11	167	-	-
	3급 이하 (경평+내부)	11	303	20	283	38	263	20	243	11	223	-	-
2023	경평 (2급 이상)	12	233	20	204	39	175	19	146	10	117	-	-
	내부 (2급 이상)	12	333	20	292	39	250	19	208	10	167	-	-
	3급 이하 (경평+내부)	12	465	20	445	39	425	19	405	10	385	-	-
2024	경평 (2급 이상)	10	67	20	58	40	50	20	42	10	33	0	0
	경평 (3급 이하)	10	57	20	53	40	50	20	47	10	43	0.18	0
	내부 (2급 이상)	10	333	20	292	40	250	20	208	10	167	0	167
	내부 (3급 이하)	10	283	20	267	40	250	20	233	10	217	0	217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마사회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 부적정한 보조금 지급 문제 개선 노력 필요

가. 현 황

❑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상위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한 보조사업에서 나타난 보조금 부정수급 건은 4건임

○ 해당 부정수급자들에게 교부된 보조금액 5,000만원 중 부정수급으로 나타난 금액은 2,200여만원(44.4%)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내역사업명	사업 연도	부정수급 유형	보조금 교부액	부정수급액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인턴십)	2020	임금 지급내역 허위 증빙 제출	12,000	9,000
	전통식품 산업육성(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2020	전수 활동 실적 증빙 사진 중복 사용	12,872	1,772
		2021		12,095	7,777
		2022		13,042	3,634
합계				50,009	22,183

주: 단순 과오수급 사례는 제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보조금 지급 요건 확인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상위보조사업자로 수행하는 보조사업 중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통식품 산업육성' 사업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3조[1]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중 전수활동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일한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3년간(2020~2022년)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음

- 2020~2022년까지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3,800여만원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1,300여만원으로 보조금 교부액의 약 34.7%가 부정수급으로 나타남

---

1)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 등을 전수·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전수·기록·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통식품 산업육성보조사업 중 부정수급 발생 내역(2020~2022)]

(단위: 천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금 수령자	보조금 교부액(A)	부정수급액 (B)	부정수급 비율(B/A)
전통발효식품 육성	전통식품 산업육성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박○○, 유○○ (전수자)	12,872	1,772	13.7
		박○○, 유○○ (전수자)	12,095	7,777	64.3
		박○○, 유○○ (전수자)	13,042	3,634	27.9
합계			38,009	13,183	34.7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당 부정수급 건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제재 부과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등은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고, 부처와 기관 간 내부 협의를 통하여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남[2)]

[전통식품 산업육성 내역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단위: 천원)

내역사업명	사업 연도	부정수급 의심유형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미부과 사유
전통식품 산업육성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2020	전수 활동 실적 증빙 사진 중복 사용	1,772	x	전수자의 단순 과실로 인한 미부과
	2021		7,777		
	2022		3,634		
합계			13,18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보조금 수령자의 비의도적 행정오류인 경우로 협의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 그런데 부정수급이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① 의도적 기망·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② 비의도적 행정오류, 수급자 사업요건 인지 미흡 등으로 보조금을 과오 수급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3)]

○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2024.9.)에 따르면 법령 위반의 교부취소 및 반환사유로 인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을 수행한 '과오수급' 역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4)]

○ 다만, 동 사업에 대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감사보고서-식품산업육성사업 운영실태 감사-」(2022.12.)에 따르면 전수자에게 과다 지급한 전수장려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향후 증빙자료(사진·동영상)에 대한 중복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조치 요구가 있었는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수자 교육 실적 확인 과정에서 증빙자료에 대한 중복 점검 및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5)]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요건 확인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도 증빙자료 제출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e나라도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 기획재정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본격 가동 -, 2019.10.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4) 과오수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법·지침 위반이며, 부정수급자 확정 및 환수,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판단 대상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3년 사업부터는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타임스탬프)을 도입하고 워크샵을 개최하여 전수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설명임

3-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제7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826명의 임직원에게 총 12,598,471천원을 지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A	785	2,417,884	11,791,836	14,209,720
2023	B	783	2,315,054	10,483,887	12,798,941
2024	B	826	2,005,061	10,593,410	12,598,471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을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등급별 지급률이 380%, 349%, 317%, 286%, 254% 순으로, 최고 등급의 지급률이 차하위 등급 지급률이 2배 미만인바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3	86	13	76	53	65	24	55	7	44	0	0
	내부	3	380	13	349	53	317	24	286	7	254	0	0
2023	경평	3	92	10	81	52	70	29	59	7	49	0.1	0
	내부	3	380	10	349	52	317	29	286	7	254	0.1	0
2024	경평	3	80	11	70	55	60	24	50	8	40	0	0
	내부	3	380	11	349	55	317	24	286	8	254	0	0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내부 규정인 「주택자금융자관리요령」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31명, 지원금액은 2,636,590천원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01	125	100	54	37	31
지원금액	7,566,991	10,031,341	7,861,280	3,922,355	2,579,143	2,636,590
1인당 지원 한도	10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자금융자관리요령」					
지원 요건 (2024.7. 기준)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구입) 2년 거치 18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임차) 자격요건 상실시 일시상환(임대기간 종료시 또는 퇴직시)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1.80	1.60	1.30	3.50	3.50	3.50	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4년 1월에서야 비로소 한은 금리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4년 1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94명에 대해 여전히 3.50%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
-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77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1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94	3.50	7,154,088	개정(2024.1.29.)	77	7,294,49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4.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요령」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75명, 지원금액은 1,277,850천원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11	104	43	89	75	75
지원금액	2,286,900	1,792,700	1,114,000	1,396,280	1,295,015	1,277,850
1인당 지원 한도	(2021년 이전) 30,000 / (2022년 이후) 20,000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요령」					
지원 요건 (2024.7. 기준)	가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10년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3.00	2.50	2.50	2.50	2.50	2.50	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4년 1월에서야 비로소 한은 금리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4년 1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239명에 대해 여전히 2.50%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239	2.50	3,969,145	개정(2024.1.25.)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4 한국농어촌공사

4-1.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임대료 차등화 필요

가. 현 황

❑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고령의 농업인이나 이농 농업인, 은퇴 농업인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임차하여 연령이나 영농규모 등에 따라 농지 매도 및 임차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계획현액은 8,449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이 중 공공임대 사업은 고령의 농업인이나 이농 농업인, 은퇴 농업인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임차하여 귀농인, 청년농, 일반 농업인에게 5~10년 관행임차료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내역사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당초	수정				
맞춤형 농지지원	8,577	8,449	-	△128	8,449	8,449
- 농지매매	577	578	-	1	578	578
- 임차임대	213	85	-	△128	85	85
- 교환분합	2	1	-	△1	1	1
- 공공임대	7,650	7,650	-	-	7,650	7,650
- 선임대후매도	82	81	-	△1	81	81
- 대규모스마트팜 창업단지	54	54	-	-	54	54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휴경의 임대료 감면비율과 타작물 재배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용 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임차농가가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벼 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일정기간에 한해 휴경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타작물 재배나 휴경 시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농지은행 업무 지침 중 임대료 감면 규정]

다. 비축농지 임대

7) 농가 의무사항

가) 식량작물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한 조치

(1) 농가는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 함. 단 휴경기간은 임대기간 5년을 기준으로 최대 2년(연속할 필요는 없음) 허용

* 타작물 재배 또는 일정기간 휴경 시 임대료 80% 감면 혜택 부여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 임차 농가 임대료 감면 규정은 식량작물의 적정한 생산 유도를 통해 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타작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임

○ 최근 5년간 벼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체 공공임대용 농지 면적의 10.5% 수준임

○ 휴경의 경우 2023년 15억 1,200만원의 임대료가 감면되었으며 휴경지는 전체 공공임대용 농지 면적의 4.9% 수준

[최근 5년간 감면된 임대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휴경	1,400	2,318	2,517	1,949	1,512
타작물재배	3,807	6,506	9,993	13,802	18,494
합계	5,207	8,824	12,510	15,751	20,00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공임대용 매입농지 재배작물 현황]

(단위: ha, %)

구분		쌀(벼)	채소	두류	사료	잡곡	기타	휴경	합계
2019	면적	2,518	246	929	1,323	454	404	965	6,839
	비율	36.8	3.6	13.6	19.3	6.6	5.9	14.1	100.0
2020	면적	2,886	225	1,320	1,502	389	889	1,134	8,345
	비율	34.6	2.7	15.8	18.0	4.7	10.6	13.6	100.0
2021	면적	2,372	319	1,528	2,475	642	1,499	935	9,770
	비율	24.3	3.3	15.6	25.3	6.6	15.3	9.6	100.0
2022	면적	1,636	409	3,342	3,474	341	1,461	961	11,624
	비율	14.1	3.5	28.7	29.9	2.9	12.6	8.3	100.0
2023	면적	1,432	800	4,836	4,221	364	1,346	677	13,676
	비율	10.5	5.8	35.3	30.9	2.7	9.9	4.9	100.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 식량작물 적정 생산유도를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휴경의 경우 타작물 재배와 달리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것이므로 농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 작물 재배농지와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

○ 공공임대 농지의 휴경은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경, 임대 기간 만료로 인한 일시적 휴경, 타작물 재배 준비를 위한 휴경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농지 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휴경은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타작물 재배와 휴경지 임대료 감면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지속적인 휴경을 방지하고 식량작물 생산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2.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 규정인 「복지후생규정」 제14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590명, 지원금액은 39,521,137천원임

[한국농어촌공사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960	946	1,003	886	694	590
지원금액	66,212,505	68,496,927	76,624,977	64,442,455	47.372,654	39,521,137
1인당 지원 한도	(~2024년) 12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후생규정 제14조(주택자금의 대여)					
지원 요건 (2024.7. 기준)	무주택자 등					
상환 조건 (2024.7. 기준)	3년 거치 17년 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1.90	1.30	0.60	1.10	5.34	5.04	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 7월에서야 비로소 한은 금리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2년 7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49명에 대해 여전히 1.10%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
-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67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1.2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49	1.10	4,367,500	개정(2022.7.5.)	67	7,130,5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3.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 규정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요령」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1,194명, 지원금액은 22,573,569천원임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594	568	581	827	1,136	1,194
지원금액	15,400,060	14,952,760	15,495,760	23,096,960	23,788,846	22,573,569
1인당 지원 한도	(~2023년) 30,000 / (2024년~) 20,000					
관련 내부 규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요령					
지원 요건 (2024.7. 기준)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상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직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사실이 있는 경우 직원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결혼 배우자의 사망 직원이 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포함)에 취학하는 경우 기타 급박한 사유로 가계에 곤란이 발생한 경우					
상환 조건 (2024.7. 기준)	60개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60개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4년 1월에서야 비로소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4년 1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931명에 대해 여전히 2.50%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627명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3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931	2.50	24,542,350	미개정	627	18,734,700	개정(2024.1.1.)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4.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농어촌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80명임

[한국농어촌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566	80	10	-	20	-	23	27	15	3	8	1	-	5	1	53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9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3회의 징계위원회 모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농어촌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징계처분 결과	위원 수 (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 (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 (B/A)
2022.6.14.	성희롱	그 밖의 징벌	6	1	5	16.7
2022.9.7.	성희롱	감봉	6	1	5	16.7
2022.10.6.	성희롱	감봉	6	1	5	16.7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15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한국농어촌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19.3.20.	횡령	134,540	해고	X
2020.4.13.	금품 수수	5,000	해고	
2020.7.6.	금전 편취	201,933	해고	
2020.12.29.	금품향응 수수	1,000	정직 3개월	
2021.9.15.	금품 등 수수	12	정직 1개월	
2021.9.15.	금품 등 수수	12	정직 1개월	
2021.9.15.	금품 등 수수	56	정직 1개월	
2021.9.15.	금품 등 수수	223	정직 3개월	
2021.10.21.	배임	64,000	해고	
2022.7.12.	금품 수수	500	감봉 1개월	
2023.2.22.	횡령 및 유용	19,338	해고	
2022.4.13.	금품 수수	800	해고	
2023.12.26.	배임	27,684	정직 1개월	
2023.12.26.	배임	27,684	정직 1개월	
2024.6.20.	금품 수수	582	정직 1개월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치산기술협회

5-1. 2023년 보수지급액 급등 부적절

가. 현 황

❑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전통 사방기술 계승, 선진 재해방지기술을 사방사업에 적용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재해 예방 교육·홍보, 정보 제공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임

○ 한국치산기술협회는 2024년에 신규 공공기관에 지정되었으며, 2023년 기준 수입은 187억 9,200만원이며 지출은 132억 8,500만원임

[한국치산기술협회 수입 ·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수입	정부간접지원	사업수입	8,825	15,182	16,819
		위탁수입	27	58	31
	기타		2,706	1,517	1,942
	수입 합계		11,558	16,757	18,792
지출	인건비		3,504	4,156	4,972
	경상운영비		3,032	4,037	5,877
	사업비		1,908	2,797	2,436
	기타		362	-	-
	지출합계		8,806	10,990	13,28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나. 주요 쟁점

❑ 한국치산기술협회의 2023년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1인당 1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8% 증가하였음

- ○ 성과상여금은 6,2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6% 증가
-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979만원으로 전년 대비 92.4% 증가
- ○ 실적수당은 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

[한국치산기술협회 1인당 평균 보수액 구성요소(일반정규직)]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률 (B-A)/A
기본금	44,241	44,976	45,272	45,275	46,359	2.4
고정수당	3,161	3,202	3,785	3,817	3,632	△4.8
실적수당	706	2,199	3,587	3,485	4,233	21.5
급여성 복리후생비	778	639	3,911	5,088	9,790	92.4
성과상여금	168	5,912	11,221	27,108	62,785	131.6
1인당 평균보수액	48,276	56,289	63,866	79,686	117,007	46.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 기타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22년 대비 2.5% 증가, 성과상여금은 4.4% 증가하였음에 비해 한국치산기술협회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같은 기간 46.8%(1인당 평균보수액), 131.6%(성과상여금) 증가함

[기타공공기관 1인당 평균 보수액 구성요소(일반정규직)]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A)	2023 (B)	증감률 (B-A)/A
기본금	44,384	46,562	47,058	47,552	48,575	2.2
고정수당	5,834	5,978	6,031	6,174	6,388	3.5
실적수당	2,698	2,677	2,709	2,671	2,732	2.3
급여성 복리후생비	874	830	837	845	832	△1.5
성과상여금	7,513	7,927	8,303	8,678	9,062	4.4
1인당 평균보수액	61,337	64,052	65,008	66,011	67,686	2.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한국치산기술협회의 2023년 일반정규직 인건비 지급 수준은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음

○ 2023년 전년 대비 인건비 증가율은 46.8%로 타 기관(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5.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8%, 한국임업진흥원 1.7%)에 비해 증가율이 높음

○ 2023년 전년 대비 성과상여금 증가율은 131.6%로 타 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18.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5.3%, 한국임업진흥원 △2.7%에 비해 증가율이 높음[1)]

○ 2023년 전년 대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증가율은 92.4%로 타 기관(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0%,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3%,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5%, 한국임업진흥원 △0.6%)에 비해 증가율이 높음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 인건비 비교(일반정규직)]

(단위: 천원, %)

구분		인건비항목	2022(A)	2023(B)	증감률 (B-A)/A
한국치산기술협회		급여성 복리후생비	5,088	9,790	92.4
		성과상여금	27,108	62,785	131.6
		1인당 평균보수액	79,686	117,007	46.8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급여성 복리후생비	468	468	0
		성과상여금	-	10,639	-
		1인당 평균보수액	44,265	50,954	15.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1,073	1,098	2.3
		성과상여금	14,134	16,796	18.8
		1인당 평균보수액	54,875	57,568	4.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978	1,032	5.5
		성과상여금	11,407	13,152	15.3
		1인당 평균보수액	53,335	57,579	8.0
	한국임업진흥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844	839	△0.6
		성과상여금	11,223	10,919	△2.7
		1인당 평균보수액	59,263	60,254	1.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1) 협회 입장에 따르면 협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 관련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2009년 협회 설립 이후 13년간 직원의 평균 임금은 타 공공기관의 79% 수준이었음. 2023년 성과상여급은 수익금 및 재전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의 증가 사유는 최근 수익사업이 급증하였음에도 최소 인원으로 열악한 근무여건과 2021년 사옥 건립을 위해 부족한 처우를 감내한 직원들에 대한 성과를 보상해주는 것이 협회의 운영방침이었음을 언급함

❑ 산림청 감사(2024.4) 결과 성과급 지급[2] 시 회계처리 부적정, 절차 미준수, 지급규정 미비로 개선·시정권고 조치가 시행되었으므로 기 지급된 성과상여금 자발적 환수 추진 및 재발방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급 지급 관련 지적사항은 「정관」, 제규정을 위반한 성과급 예산 미편성, 회계처리 부적정 및 이사회 미승인, 성과급 지급대상 불명확, 성과급 지급기준의 회계원칙·관습 위반 등임

○ 상여금 지급 관련 지적사항은 상여금 지급관련 규정 미비 및 예산집행·지급항목 부적정, 상여금 과다 지급 및 수익 초과, 이사회 등 의결절차 미이행 등임

2) 성과급 관련하여 「정관」, 제규정을 위반한 성과급 예산 미편성, 회계처리 부적정 및 이사회 미승인, 성과급 지급대상 불명확, 성과급 지급기준의 회계원칙·관습 위반 등이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으며 상여급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관련 규정 미비 및 예산집행·지급항목 부적정, 상여금 과다 지급 및 수익 초과, 이사회 등 의결절차 미이행 등이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개 기관, 특허청 소관 6개 기관 등 총 58개임

- ○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1개,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준시장형 공기업 6개,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한국전력거래소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타공공기관 13개 기관임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창업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 8개 기관임
- ○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등 기타공공기관 6개 기관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41)	시장형 공기업 (11)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6)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기타공공기관 (13)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부 (1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공공기관 (8)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6)	기타공공기관 (6)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58)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102,540명

-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41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95,336명
- ○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등 11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5,487명
- ○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 등 6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1,717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업통상자원부 (41)	시장형 공기업 (11)	한국전력공사	23,353	23,409	23,540	23,728	23,320
		한국가스공사	4,272	4,274	4,322	4,320	4,229
		한국석유공사	1,472	1,435	1,448	1,454	1,432
		한국지역난방공사	2,129	2,146	2,151	2,210	2,136
		한국수력원자력(주)	12,591	12,588	12,649	12,821	12,839
		한국동서발전(주)	2,576	2,610	2,647	2,585	2,529
		한국중부발전(주)	2,774	2,808	2,837	2,898	2,840
		한국남동발전(주)	2,554	2,717	2,894	2,929	2,862
		한국남부발전(주)	2,472	2,641	2,697	2,738	2,712
		한국서부발전(주)	2,551	2,705	2,774	2,842	2,784
		(주)강원랜드	3,745	3,758	3,769	3,778	3,680
	준시장형 공기업 (6)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371	2,382	2,390	2,417	2,360
		대한석탄공사	1,002	884	755	655	633
		한전KDN(주)	2,829	2,901	2,970	3,040	3,017
		한전KPS(주)	6,617	6,619	6,703	6,642	6,659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713	2,223	2,237	2,279	2,270
		한국광해광업공단	865	851	807	808	809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한국무역보험공사	757	795	795	795	80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5	407	410	416	4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55	1,278	1,292	1,304	1,300
		한국산업단지공단	609	615	636	650	6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98	422	422	410	430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91	418	429	440	403
		한국전기안전공사	3,078	3,139	3,245	3,237	3,204
		한국가스안전공사	1,546	1,651	1,709	1,758	1,714
		한국에너지공단	703	711	740	756	748
		한국전력거래소	512	513	546	539	536
		한국석유관리원	434	452	458	462	449
	기타공공기관 (13)	한국디자인진흥원	136	183	181	187	18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67	170	181	193	196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1,189	1,202	1,197	1,184	1,169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70	70	71	70	67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무역안보관리원	57	70	70	70	70
		한국세라믹기술원	209	224	225	232	229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42	41	41	42	34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49	50	49	51	5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00	110	115	118	11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942	957	955	960	902
		한전MCS	2,633	4,387	4,973	4,973	4,36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1	61	71	110	10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97	100	104	108	108
	소계		91,726	94,977	96,505	97,209	95,336
중소기업 벤처부 (1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1	1395	1435	1476	1421
		기술보증기금	1,454	1,491	1,551	1,589	1,56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30	784	874	923	859
	기타공공기관 (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16	241	269	297	290
		중소기업유통센터	217	256	271	299	29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22	125	122	122	11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0	101	108	113	113
		한국벤처투자	112	161	165	166	162
		(주)공영홈쇼핑	396	396	396	400	381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42	43	43	50	49
		창업진흥원	202	231	242	233	233
	소계		4,942	5,224	5,476	5,668	5,487
특허청 (6)	기타공공기관 (6)	한국발명진흥회	181	184	185	198	19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2	82	81	81	7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07	108	108	117	117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30	239	240	251	245
		한국특허정보원	398	430	430	429	423
		한국특허기술진흥원	665	665	666	665	666
	소계		1,663	1,708	1,710	1,741	1,717
합계			98,331	101,909	103,691	104,618	102,540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8개(시장형 공기업 11개, 준시장형 공기업 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개) 및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 3개(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로 총 31개 기관임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총 11개 기관임

- 이 중 2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한국남부발전(주)(보통(C) 등급 → 우수(A) 등급), 한국전력공사(미흡(D) 등급 → 보통(B) 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보통(C) 등급 → 우수(A) 등급), 한국에너지공단(보통(C) 등급 → 우수(A) 등급)임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진시장진흥공단으로 총 8개 기관임

- 이 중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은 한국서부발전(주)(우수(A) 등급 → 보통(C) 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우수(A) 등급 → 미흡(D) 등급)임

○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실적 미흡으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및 안전 관련 개선계획 제출 조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업통상자원부 (28)	시장형 공기업 (11)	㈜강원랜드	경평결과	C	C	C	D	C
			경평성과급	3,906	4,160	3,089	3,759	0
		한국가스공사	경평결과	C	D	C	C	D
			경평성과급	5,225	3,307	0	4,408	4,011
		한국남동발전(주)	경평결과	A	A	A	B	A
			경평성과급	8,011	10,543	8,451	9,173	8,387
		한국남부발전(주)	경평결과	B	B	A	C	A
			경평성과급	8,754	8,010	6,994	8,426	5,346
		한국동서발전(주)	경평결과	B	A	S	B	B
			경평성과급	8,011	7,805	9,061	10,510	8,518
		한국서부발전(주)	경평결과	B	B	C	A	C
			경평성과급	5,828	8,255	7,847	6,387	11,021
		한국중부발전(주)	경평결과	C	C	A	C	B
			경평성과급	9,913	4,532	5,967	8,934	5,530
		한국석유공사	경평결과	C	D	C	B	C
			경평성과급	7,240	6,643	0	7,055	8,754
		한국수력원자력(주)	경평결과	A	A	B	B	A
			경평성과급	8,157	10,719	9,716	7,439	8,434
		한국전력공사	경평결과	B	B	C	D	B
			경평성과급	7,875	7,945	6,786	5,597	0
		한국지역난방공사	경평결과	B	B	A	C	A
			경평성과급	3,988	5,736	5,188	6,483	4,076
	준시장형 공기업 (6)	㈜한국가스기술공사	경평결과	B	B	C	B	B
			경평성과급	2,501	4,109	3,437	3,076	4,150
		대한석탄공사	경평결과	D	C	D	C	C
			경평성과급	23	878	1,881	971	2,973
		한국광해광업공단	경평결과	-	C	B	C	C
			경평성과급	-	-	3,220	6,535	5,90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경평결과	C	B	B	B	B
			경평성과급	3,246	5,647	7,376	8,703	8,372
		한전KDN(주)	경평결과	B	B	B	C	C
			경평성과급	7,480	7,261	6,698	6,796	2,543
		한전KPS(주)	경평결과	B	B	B	B	A
			경평성과급	607	6,754	7,430	6,328	7,498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한국무역보험공사	경평결과	B	B	B	A	B
			경평성과급	2,716	2,389	2,537	2,620	3,449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평결과	A	A	B	A	A
			경평성과급	3,265	3,141	3,225	2,329	4,378
		한국가스안전공사	경평결과	C	D	C	B	B
			경평성과급	914	1,075	550	1,115	2,0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평결과	C	B	C	C	B
			경평성과급	1,869	1,235	1,616	1,303	1,497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경평결과	A	B	C	A	B
			경평성과급	2,158	2,610	2,154	1,410	3,233
		한국산업단지공단	경평결과	D	C	C	A	D
			경평성과급	822	431	977	1,111	2,288
		한국석유관리원	경평결과	C	C	D	B	B
			경평성과급	1,151	787	897	335	1,624
		한국에너지공단	경평결과	A	A	B	C	A
			경평성과급	2,616	1,711	1,886	1,549	1,43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평결과	C	B	B	B	D
			경평성과급	578	1,071	1,313	1,444	2,131
		한국전기안전공사	경평결과	B	C	C	B	C
			경평성과급	648	985	795	796	1,262
		한국전력거래소	경평결과	D	D	C	B	B
			경평성과급	960	644	495	1,400	2,414
중소기업 벤처부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	기술보증기금	경평결과	B	B	B	C	A
			경평성과급	2,962	2,396	2,348	2,317	1,93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평결과	A	A	B	B	A
			경평성과급	1,694	2,329	2,088	1,945	2,20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평결과	C	B	B	C	D
			경평성과급	252	584	896	824	964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1개, 준시장형 공기업 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개,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임

-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주) 등 11개 기관이며, 2022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한전KPS(주) 등 8개 기관임
  -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주)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전KPS(주)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 ○ 대한석탄공사는 3년 연속(2021~2023년) 4등급을 받음
- ○ 한국가스공사는 2년 연속(2022~2023년) 4등급을 받음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임

-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2개 기관이며, 2022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창업진흥원은 2년 연속(2022~2023년) 4등급을 받음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 1개 기관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업통상자원부 (34)	시장형 공기업 (11)	한국전력공사	3	3	2	2	2
		한국가스공사	3	3	3	4	4
		한국석유공사	3	3	3	4	3
		한국지역난방공사	4	5	3	2	3
		한국수력원자력(주)	2	1	2	2	2
		한국동서발전(주)	2	3	3	3	3
		한국중부발전(주)	1	-	2	2	2
		한국남동발전(주)	2	2	2	1	2
		한국남부발전(주)	2	3	2	2	2
		한국서부발전(주)	3	2	3	4	2
		(주)강원랜드	4	3	4	4	3
	준시장형 공기업 (6)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3	3	2	2	3
		대한석탄공사	5	1	4	4	4
		한전KDN(주)	3	3	2	3	3
		한전KPS(주)	2	2	3	2	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	3	4	3	3
		한국광해광업공단	-	-	-	4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한국무역보험공사	1	-	2	2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3	2	3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4	3	2	3
		한국산업단지공단	3	4	4	3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3	2	3	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	2	2	2	3
		한국전기안전공사	3	3	3	3	3
		한국가스안전공사	3	3	2	3	3
		한국에너지공단	3	4	3	2	4
		한국전력거래소	2	2	2	2	2
		한국석유관리원	2	4	2	2	2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공공기관 (6)	한국디자인진흥원	4	3	-	2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2	-	1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3	3	2	2	1
		한국세라믹기술원	3	2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3	3	4	2
		한전MCS	-	-	-	2	2
중소기업 벤처부 (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5	3	3	4
		기술보증기금	2	2	1	2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4	3	4	3
	기타공공기관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3	-
		중소기업유통센터	2	4	5	4	3
		한국벤처투자	4	3	-	-	-
		창업진흥원	-	-	-	4	4
특허청 (2)	기타공공기관 (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3	2	-	2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	-	-	3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가.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은 2024년 기준 17개 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11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6개 기관임

- ○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임
- ○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있음

나. 주요 쟁점

(1) 수익성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수익성이 2019년 대비 악화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 한국가스공사(별도), 대한석탄공사이며, 2022년 대비 악화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임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수익성]

구분	2019년 대비 2023년	2022년 대비 2023년
한국전력공사(연결)	악화	개선
한국가스공사(별도)	악화	개선
한국석유공사	개선	악화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선	개선
㈜강원랜드	개선	개선
한국가스기술공사	개선	개선
대한석탄공사	악화	악화
한국광해광업공단	개선	악화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유연탄 및 발전용 천연가스 등 원료가격이 2022년 대비 낮아졌으나, 2019년 대비 상승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됨

[유연탄 및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2019~2023)]

(단위: USD/ton, 원/GJ)

구분	2019.12.	2020.12.	2021.12.	2022.12.	2023.12.
유연탄	60.33	66.41	129.78	159.56	91.91
발전용 천연가스	11,698.50	9,358.20	20,650.00	37,895.76	21,633.42

주: 1. 유연탄 가격기준은 FOB Kalimantan 5,900kcal/kg GAR임
2. 발전용 천연가스는 일반발전사업자 기준임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www.komis.or.kr), 한국가스공사(https://www.kogas.or.kr/) 천연가스 요금정보

○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에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확대, 천연가스 용도별 원료비 정산 등 일시적 비용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및 수익성이 악화됨

○ 대한석탄공사는 무연탄 생산 감소에 따른 지원금이 감소하였고, 단계적 폐광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었음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원유·가스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음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물가 하락에 따른 광산물매출손익 감소, 해외 주요사업 생산부진에 따른 지분법손실 증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함

❑ 2023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임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수익이 구입전력비는 초과하였으나, 송변전 관련 설비 감가상각비 등 기타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함

○ 대한석탄공사는 무연탄 판매단가 제약[1]으로 매출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해외 암바토비 사업에서 자산손상 1,480억이 발생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1) 「석탄및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한국전력공사(별도)	매출액	589,332	579,894	596,606	689,515	858,256	168,741
	영업이익	△28,483	27,851	△74,256	△339,086	△65,039	274,047
	당기순이익	△25,950	19,515	△56,077	△252,977	△32,492	220,485
	영업이익률	△4.8	4.8	△12.4	△49.2	△7.6	41.6
	당기순이익률	△4.4	3.4	△9.4	△36.7	△3.8	32.9
한국가스공사(별도)	매출액	239,038	200,042	261,568	503,018	428,325	△74,693
	영업이익	11,858	9,506	10,018	20,158	12,003	△8,155
	당기순이익	816	△936	5,945	8,529	△8,812	△17,341
	영업이익률	5.0	4.8	3.8	4.0	2.8	△1.2
	당기순이익률	0.3	△0.5	2.3	1.7	△2.1	△3.8
한국수력원자력(주)	매출액	89,826	99,997	94,903	106,077	109,783	3,706
	영업이익	7,831	13,158	8,122	6,451	7,927	1,476
	당기순이익	2,465	6,179	2,945	△620	1,221	1,841
	영업이익률	8.7	13.2	8.6	6.1	7.2	1.1
	당기순이익률	2.7	6.2	3.1	△0.6	1.1	1.7
대한석탄공사	매출액	585	401	520	730	662	△68
	영업이익	△844	△932	△1,040	△916	△793	123
	당기순이익	△1,221	△1,099	△1,325	△1,673	△2,483	△810
	영업이익률	△144.3	△232.2	△200.0	△125.4	△119.9	5.5
	당기순이익률	△208.7	△274	△254.8	△229.1	△375.3	△146.2
한국광해광업공단	매출액	7,703	6,779	13,715	11,146	11,163	17
	영업이익	△5,622	△13,671	2,161	△876	△1,043	△167
	당기순이익	△5,081	△14,643	2,765	△181	△3,120	△2,939
	영업이익률	△73.0	△201.7	15.8	△7.9	△9.3	△1.4
	당기순이익률	△66.0	△216.0	20.2	△1.6	△27.9	△26.3

주: 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에 (구)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설립되었으며, 2021년 9월 이전 자료는 두 기관의 합계액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3년, 2022년 대비 2023년의 재무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나타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구분	2019년 대비 2023년	2022년 대비 2023년
한국전력공사(연결)	악화	악화
한국가스공사(별도)	악화	악화
한국석유공사	악화	유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유지	악화
㈜강원랜드	유지	유지
한국가스기술공사	악화	개선
대한석탄공사	악화	악화
한국광해광업공단	악화	악화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대비 석탄·LNG가격 상승 및 2022년 대규모 손실 등으로 구입전력대금 지급 및 투자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외부차입이 증가하였음

○ 한국가스공사는 원료가격 상승 영향 및 2023년 해외자산 손상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인해 자본이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음

○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속적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로 인한 영업자금 차입으로 외부차입금이 증가하였음

❑ 2023년 부채비율은 한국가스공사 648.3%, 한국전력공사(별도) 644.2%이며,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남

○ 부채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 대비 150.3%p가 증가하였음

- 순손실 지속에 따른 자본감소 및 차입금 증가로 부채비율이 상승함

❑ 2023년 차입금의존도는 대한석탄공사 286.1%, 한국광해광업공단 139.9%, 한국석유공사 82.8% 순으로 나타남

○ 세 기관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결손금을 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 및 사업소요자금을 지속적으로 차입하여 차입금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없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별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나타남

○ 한국전력공사(별도)의 이자보상배율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손실로 인해 2022년 △23.9배, 2023년 △2.3배로 나타나, 이자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영업외수익 또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중부발전은 전력판매단가 하락과 한전의 영업손실로 인한 발전사별 차등 정산조정계수 적용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이자보상배율이 낮게 나타남

[부채, 금융부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p, 배)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한국전력공사(별도)	부채	583,507	597,720	685,319	1,089,630	1,201,812	112,182
	금융부채	312,997	310,975	391,492	768,478	895,599	127,121
	부채비율	113.4	112.1	145.7	493.9	644.2	150.3
	차입금의존도	28.5	27.5	33.9	58.7	64.5	5.8
	이자보상배율	△3.7	3.8	△10.9	△23.9	△2.3	21.6
한국가스공사(별도)	부채	305,553	275,887	336,060	512,921	466,305	△46,616
	금융부채	247,041	224,472	264,476	430,561	389,838	△40,723
	부채비율	455.8	420.6	452.6	642.9	648.3	5.4
	차입금의존도	66.3	65.7	64.5	72.6	72.4	△0.2
	이자보상배율	1.4	1.3	1.5	2.0	0.7	△1.3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채	340,768	360,784	388,271	432,575	460,310	27,735
	금융부채	104,556	111,866	122,239	124,949	136,465	11,516
	부채비율	132.8	137.7	147.5	164.6	185.0	20.4
	차입금의존도	17.5	18.0	18.8	18.0	19.2	1.2
	이자보상배율	1.5	2.6	1.7	1.1	1.1	0.0
한국석유공사	부채	181,310	186,449	199,630	197,951	195,781	△2,170
	금융부채	138,384	142,777	148,780	151,954	150,917	△1,037
	부채비율	3,415.50	△1,634.20	△1,286.10	△1,323.20	△1,451.70	△128.5
	차입금의존도	74.2	81.6	80.8	83.0	82.8	△0.2
	이자보상배율	1.2	△0.1	1.1	4.4	1.7	△2.7
대한석탄공사	부채	19,813	21,010	22,628	23,917	25,020	1,103
	금융부채	19,225	20,495	22,047	23,633	24,580	947
	부채비율	△178.4	△176.6	△175.1	△167.7	△152.3	15.4
	차입금의존도	220.9	224.8	227.2	244.7	286.1	41.4
	이자보상배율	△2.2	△2.9	△3.5	△1.7	△1.0	0.7
한국광해광업공단	부채	68,017	71,066	72,642	74,494	80,120	5,626
	금융부채	62,179	66,013	69,458	70,816	76,524	5,708
	부채비율	△574.2	△277.7	△327.5	△330.4	△315.2	15.2
	차입금의존도	110.7	145.2	137.7	136.3	139.9	3.6
	이자보상배율	△3.0	△6.8	1.1	△0.4	△0.4	0.0

주: 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에 (구)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되어 설립되었으며, 2021년 9월 이전 자료는 두 기관의 합계액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한국전력공사

3-1.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가. 현 황

❑ 한국전력공사의 손익 현황(2020~2024.6.)을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2023년까지 적자가 발생했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 1조 1,691억원, 당기순이익 1,366억원이 발생함

[한국전력공사 손익 현황(2020~2024.6.)]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a)	2023(b)	2024.6.	증감(b-a)
매출액	579,894	596,606	689,515	858,256	429,942	168,741
영업손익	27,851	△74,256	△339,086	△65,039	11,691	274,047
당기순손익	19,515	△56,077	△252,977	△32,492	1,366	220,485

주: 1. [영업손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이며, [당기순손익=영업손익±기타손익±금융수익·원가±종속기업 등 투자지분관련손익±법인세 비용] 임
2.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및 각 연도별 한국전력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재무상태표 상 부채는 116조 5,505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3조 6,307억원 감소하여 부채비율은 621.9%로 22.3%p 감소하였고, 차입금과 사채 또한 감소하여 차입금의존도는 63.0%로 1.5%p 감소함

- ○ 차입금과 사채의 합계 금액은 85조 2,425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4조 3,174억원 감소하였음
- ○ 총자산 중 차입금 및 사채 등 외부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존도는 63.1%인데, 이는 총자산 중에서 금융비용 이상의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자산이 전체 자산의 63.1%임을 의미함[1)]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한국은행의 2024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24.6.24.)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2024년 1/4분기 부채비율은 92.1%, 차입금의존도는 25.7%임

[한국전력공사 연도별 재무현황(2020~2024.6.)]

(단위: 억원,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6.(b)	증감(b-a)
자산(A+B)	1,131,035	1,155,785	1,310,237	1,388,383	1,352,924	△35,459
부채(A)	597,721	685,319	1,089,630	1,201,812	1,165,505	△36,307
자본(B)	533,314	470,466	220,607	186,571	187,419	848
부채비율(A/B)	112.1	145.7	493.9	644.2	621.9	△22.3
차입금(C)	11,771	24,150	108,027	155,999	150,393	△5,606
사채(D)	299,204	367,342	660,451	739,600	702,032	△37,568
소계(E=C+D)	310,975	391,492	768,478	895,599	852,425	△43,174
차입금의존도(E/(A+B))	27.5	33.9	58.7	64.5	63.0	△1.5

주: 1. 상기 차입금, 사채금액은 회계기준 상 할인 및 할증발생 차금을 가감한 금액임
2.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각 연도별 한국전력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세 차례 요금조정으로 판매단가가 8.5% 상승하였고, 연료가격 하락으로 전기판매수익이 구입전력비 및 기타매출원가를 상회하면서 이익이 발생함

- ○ 판매단가는 ('23.1)+11.4 → ('23.5)+8 → ('23.11)+4.9원/kWh 상승
- ○ 연료가격은 2023년 반기 대비 유연탄은 35.4%, LNG는 27.4% 감소하여 SMP[2]가 34.6% 감소함

[연료가격 및 SMP]

(단위: %)

구분	2023년 1~6월	2024년 1~6월	증감률
유연탄($/톤)	202.7	131.0	△35.4
LNG(천원/톤)	1,596.6	1,158.7	△27.4
SMP(원/kWh)	196.9	128.8	△34.6

자료: 한국전력공사

2) SMP(System Marginal Price) :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의 도매가격

❑ 2023년 상반기에는 전기판매수익보다 구입전력비가 높아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전반기 대비 전기판매수익이 3조 856억원 증가하였고 구입전력비는 5조 4,656억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8조 3,952억원 증가한 1조 1,691억원으로 나타남

○ 2023년 연간으로는 전기판매수익에서 구입전력비를 차감한 금액이 2조 210억원 발생하였으나, 해당 금액의 규모가 전력 공급과 관련된 비용인 기타매출원가와 기업을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판매비와관리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함

[한국전력공사 손익 세부내역(2020~2024.6.)]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3.6. (a)	2024.6. (b)	증감액 (b-a)
수익(매출액)	579,894	596,606	689,515	858,256	399,999	429,942	29,943
- 전기판매수익(A)	562,532	580,009	672,968	840,572	392,008	422,864	30,856
매출원가	533,961	651,489	1,008,833	903,381	463,119	408,742	△54,377
- 구입전력비(B)	454,768	568,781	927,031	820,362	425,537	370,881	△54,656
- 기타매출원가	79,193	82,708	81,802	83,019	37,582	37,861	279
전기판매수익-구입전력비(A-B)	107,764	11,228	△254,063	20,210	△33,529	51,983	85,512
영업이익(손실)	27,851	△74,256	△339,086	△65,039	△72,261	11,691	83,952

주: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4년 상반기에 이익이 발생했으나, 여전히 부채비율 621.9%, 차입금의존도 63.0%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함[3)]

○ 향후 국제 유가는 석유수요의 증가세 지속,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 상승 요인이 존재함

○ 이자보상배율은 양(+)으로 전환했으나, 1 이하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 이자보상배율(2020~2024.6.)]

(단위: 억원, 배)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6.
영업손익(A)	27,851	△74,256	△339,086	△65,039	11,691
이자비용(B)	7,380	6,790	14,208	28,269	14,519
이자보상배율(A/B)	3.8	△10.9	△23.9	△2.3	0.8

주: 1. 이자비용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에 포함되는 이자비용만 포함함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회사를 포함하지 않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재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통상적으로 부채비율 200%, 차입금의존도 30% 이하를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3-2. 재정건전화계획 상 미매각자산 매각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8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제출 후 2023년 5월 재정건전화계획 목표 상향을 발표했으며, 2023년 8월 수정 재정건전화계획이 확정

○ 수정 재정건전화계획은 공사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까지 18.1조원 규모로 수립되었으며,[1]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으로 나뉨

[한국전력공사 5개년 수정 재정건전화계획 목표(2022~2026)]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자산매각	3,780	6,921	3,885	246	910	15,742
사업조정	4,892	4,589	4,878	5,000	6,259	25,618
비용절감	28,766	17,824	3,211	2,973	6,517	59,291
수익확대	710	2,298	2,239	2,523	2,617	10,387
자본확충	-	-	70,407	-	-	70,407
합계	38,148	31,632	84,620	10,742	16,303	181,445

자료: 한국전력공사

- 2022년의 경우 자산매각 3,780억원, 사업조정 4,892억원, 비용절감 28,766억원, 수익확대 710억원을 달성했고, 2023년에는 자산매각 4,202억원,[2] 사업조정 993억원[3], 비용절감 32,637억원, 수익확대 2,691억원을 달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2023년 8월 수정계획 기준이며, 2024년 8월 수정계획 수립 시 20.9조원으로 목표가 확대되었음

2) 2023년까지 매각된 자산가액임

3) 사업조정 목표는 (투자계획-집행전망액)으로 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투자비 증가액 4,535억원을 투자계획에 포함하여 실적을 5,528억원(83,519억원-77,991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상기 투자비 증가액 4,535억원을 인정하지 않아 실적을 993억원(78,984억원-77,991억원)만 인정함

나. 주요 쟁점

❑ 재정건전화계획 중 '자산매각'의 2023년 목표인 6,921억원 중 2,579억원(37.3%)이 미매각되었으므로 한국전력공사는 미매각자산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2023년 미매각자산은 10건이며, 주요 자산은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보유 지분 60%, 필리핀 SPC사업, 경남본부 사택 등임

[재정건전화계획 상 2023년 미매각자산]

(단위: 억원)

자산명	2023년 매각계획금액	미매각 사유
경기북부본부 사옥	130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수 수요 급감(유찰 8회)
동부지사 사옥	126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수 수요 급감(유찰 3회)
경기북부본부 별관	71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수 수요 급감(유찰 4회)
경남본부 사택	240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수 수요 급감(유찰 3회)
김포지사 사옥	95	재개발사업 구역 편입 (조합 토지 보상 지연)
목포변전소	46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수 수요 급감(유찰 8회)
이리변전소	140	LH 공공임대주택 공급지구 부지 편입 (2024. 6월 보상 예정)
필리핀 세부 사업 (석탄화력발전소 보유 지분 60%)	1,491	매각 입찰 유찰(3차 입찰 진행 중)
필리핀 SPC 사업 (합자사업 보유 지분 40%)	227	매각 입찰 유찰(2차 입찰 준비 중)
무주 덕유산회원권	13	경기 침체, 시설노후화 등 수요제한으로 유찰
합계	2,579	-

자료: 한국전력공사

❑ 수익성 개선 및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매각방식 도입, 대대적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요자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

○ 한국전력공사는 자산이 매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매수 수요가 감소하였고, 석탄화력발전소 지분 매각 수요자의 계약자격 미충족[4]으로 인한 유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 수요 부족으로 인한 유찰이 지속되는 등 자산 매각이 어려워 보이는 자산 금액분만큼 타 항목의 추가 재무개선사항 발굴 필요

○ 2023~2027년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자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타 항목의 추가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존재

[2023~2027년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中]

※ 자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타 항목의 추가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추진

자료: 「2023~2027년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4) 수요자가 입찰가격에 대한 적격 자금 증빙(잔고내역서,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한국전력공사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음

3-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전력공사는 내부 규정인 「주택자금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138명, 지원금액은 9,291,000천원임

[한국전력공사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539	620	576	570	472	138
지원금액	41,648,000	50,897,000	50,798,000	49,665,000	37,962,000	9,291,000
1인당 지원 한도	(~2023년 7월) 100,000 / (2023년 8월~) 7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자금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조(대부금 및 대부조건)					
지원 요건 (2024.7. 기준)	재직 중인 직원으로 국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4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단, 상환기간은 대부 신청시점과 본인의 임금피크제 진입일 사이의 잔여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2.50~3.00	2.50~3.00	2.50~3.00	2.50~3.00	2.50~3.00	5.04	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6월에서야 비로소 지침상 한도 내에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지침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6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900명에 대해 여전히 2.50~3.00%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6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816명에 대해 여전히 1인당 7천만원을 초과(1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전력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900	2.50~3.00	78,213,000	개정(2023.6.30.)	816	74,088,000	개정(2023.6.30.)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3-4.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전력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523명, 지원금액은 9,455,000천원임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346	1,316	2,019	2,031	2,004	523
지원금액	38,200,000	38,080,000	39,610,000	39,380,000	36,760,000	9,455,000
1인당 지원 한도	(~2020년) 30,000 / (2021년~) 2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5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근속년수 1년 이상 재직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2020년) 2년 거치(선택) 5년 분할상환 / (2021년~) 5년 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1.75	1.75	1.75	1.75~2.95	3.00~5.34	5.04	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8월에서야 비로소 한은 금리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8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3,056명에 대해 여전히 1.75~3.50%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전력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개정 시기)
3,056	1.75~3.50	58,310,000	개정(2023.8.1.)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3-5.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전력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836명임

[한국전력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2,976	836	53	-	276	-	263	244	35	32	135	-	-	26	11	597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35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한국전력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19.2.27.	금품 및 향응 수수	1,170	해임 1명	X
2019.2.27.	금품 및 향응 수수	660	정직 1명	
2019.2.27.	금품 및 향응 수수	136	감봉 등 4명	
2019.11.13.	횡령	200,000	해임 1명	
2019.11.13.	금품 및 향응 수수	13,000	해임 1명	
2020.4.28.	금품 및 향응 수수	1,040	해임 등 2명	
2020.4.28.	금품 및 향응 수수	40	감봉 1명	
2020.7.7.	금품 및 향응 수수	30,739	해임 등 3명	
2021.3.3.	금품 및 향응 수수	1,292	해임 1명	
2022.6.22.	금품 및 향응 수수	1,580	해임 1명	
2022.6.22.	배임	1,400	감봉 등 2명	
2022.8.23.	배임	16,990	해임 등 2명	
2022.9.20.	횡령	59,730	해임 1명	
2023.9.13.	금품 및 향응 수수	377	정직 등 2명	
2023.9.13.	금품 및 향응 수수	360	정직 등 2명	
2024.1.10.	금품 및 향응 수수	106	정직 등 2명	
2024.1.10.	금품 및 향응 수수	262	강등 등 2명	
2024.1.10.	금품 및 향응 수수	392	감봉 등 4명	
2024.3.6.	금품 및 향응 수수	1,200	정직 1명	
2024.6.13.	금품 및 향응 수수	1,865	해임 1명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한국가스공사

4-1. 재무건전성 개선 필요

가. 현 황

❑ 한국가스공사의 손익 현황(2020~2024.6.)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적자가 발생했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 1조 2,326억원, 당기순이익 4,290억원이 발생함

[한국가스공사 손익 현황(2020~2024.6.)]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a)	2023(b)	2024.6.	증감(b-a)
매출액	200,042	261,567	503,018	428,325	194,364	△74,693
영업이익	9,506	10,018	20,158	12,003	12,326	△8,155
당기순손익	△936	5,945	8,529	△8,812	4,290	△17,341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총자산 중에서 금융비용 이상의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존도가 2020년 65.7%에서 2024년 6월 말에는 73.4%로 상승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한 수준임

○ 재무상태표 상 부채는 43조 5,195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3조 1,111억원 감소하여 부채비율은 577.3%로 71.0%p 감소하였고, 금융부채 또한 감소하였으나 자산이 더 크게 감소하여 차입금의존도는 73.4%로 1.0%p 증가함

- LNG 판매물량 감소[1] 등으로 매출채권 2조 1,537억원이 감소하였고, LNG 구매물량 감소[2]로 매입채무 1조 4,455억원이 감소하였음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23년 말: 595만톤(도시 11~12월, 발전 12월) → '24년 6월 말: 340만톤(도시 5~6월, 발전 6월)

2) 92만톤 감소('23.12월: 241만톤 → '24.6월: 149만톤)

- 총자산 대비 차입금 및 사채 등 외부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차입금의 존도는 73.4%인데, 이는 총자산 중에서 금융비용 이상의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자산이 전체 자산의 73.4%임을 의미함[3)]

[한국가스공사 재무현황(2020~2024.6.)]

(단위: 억원,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6.(B)	증감(B-A)
자산(a)	341,474	410,316	592,702	538,237	510,585	△27,652
부채(b)	275,887	336,060	512,922	466,306	435,195	△31,111
금융부채(c)	224,472	264,476	430,561	389,838	374,882	△14,956
자본(d)	65,587	74,256	79,780	71,931	75,390	3,459
부채비율(b/d)	420.6	452.6	642.9	648.3	577.3	△71.0
차입금의존도(c/a)	65.7	64.5	72.6	72.4	73.4	1.0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금융부채는 사채와 외부차입금의 합계금액임
자료: 한국가스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24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① 도매공급비용 총괄원가 정산금액 감소, ②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손실 감소, ③ 천연가스 용도별 원료비손실 감소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한국가스공사 손익 현황(2023, 2024 상반기)]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1~6월(A)	2024년 1~6월(B)	증감(B-A)
매출액	252,275	194,364	△57,911
영업이익	5,517	12,326	6,809
영업외손익	△6,565	△8,036	△1,471
당기순이익	△1,048	4,290	5,338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한국은행의 2024년 1/4분기 기업경영분석(24.6.24.)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2024년 1/4분기 부채비율은 92.1%, 차입금의존도는 25.7%임

○ ①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총괄원가 정산과 관련하여, 상기 총괄원가는 당해연도 결산 전 총괄원가를 예상치로 산정한 후 결산으로 정산하는데, 이를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총괄원가 정산'이라 함

- 2023년 상반기에는 △1,553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에는 △784억원이 발생

○ ②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4]손실 감소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2,356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에 △903억원이 발생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액]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1~6월	2024년 1~6월
요금 반영액	1,401	2,674
실제 경감액	3,757	3,577
차이	△2,356	△903

자료: 한국가스공사

○ ③ 천연가스 용도별 원료비 정산손익과 관련하여, 공사는 소비자 부담 요금 원료비와 공사 부담 실적원료비 차이를 정산하여 차기년도 요금에 정산단가로 반영함[5]

- 2023년 상반기에 △2,553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에 △7억원이 발생

❑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의존도는 1.0%p 증가(73.4%)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함[6]

○ 금융부채가 감소했으나, 자산의 원료비 미수금 감소(4,013억원), LNG 판매물량 감소로 인한 매출채권 감소(2조 1,537억원)로 인하여 차입금의존도 악화

❑ 한국가스공사는 재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4)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의거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예상액을 당해년도 요금에 반영하고, 실제 경감액과의 차이는 익년도 결산에 반영

5) 요금원료비와 실적원료비의 차이는 ① 원료비 산정 시 적용하는 유가·환율 추정치와 실적 차이 및 ② 연동제 유보 등의 사유로 발생함

6) 통상적으로 부채비율 200%, 차입금의존도 30% 이하를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4-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가스공사는 「보수규정」 제19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4,086명의 임직원에게 총 44,334,687천원을 지급

[한국가스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C	4,058.7	17,893,063	42,101,324	59,994,387
2023	C	3,993.5	16,020,832	42,806,451	58,827,283
2024	D	4,086.0	0	44,334,687	44,334,687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가스공사가 2022~2024년에 지급한 호봉제 성과급은 등급 수가 사실상 2개에 불과하고, 2024년의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는 등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한국가스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상	내부 (연봉제)	14	327	18	286	34	245	17	204	17	163	1	0
2022 하	내부 (연봉제)	13	327	18	286	34	245	18	204	16	163	1	0
2022	내부 (호봉제)	97	250	-	-	-	-	-	-	-	-	3	0
2022 상	경평 (연봉제)	14	71	18	62	34	53	17	44	17	35	1	0
2022 하	경평 (연봉제)	13	71	18	62	34	53	18	44	16	35	1	0
2022	경평 (호봉제)	5	161	18	134	50	106	18	79	6	52	3	0
2023 상	내부 (연봉제)	13	327	20	286	33	245	17	204	16	163	1	0
2023 하	내부 (연봉제)	14	327	21	286	32	245	16	204	17	163	1	0
2023	내부 (호봉제)	97	250	-	-	-	-	-	-	-	-	3	0
2023 상	경평 (연봉제)	13	33	20	29	33	25	17	21	16	17	1	0
2023 하	경평 (연봉제)	14	33	21	29	32	25	16	21	17	17	1	0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3	경평 (연봉제)	4	155	19	128	51	100	18	73	6	45	3	0
2024	내부 (연봉제)	15	653	20	572	30	490	20	408	15	327	0	0
2024	내부 (호봉제)	100	250	0	250	0	250	0	250	0	250	0	0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가스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가스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36명임

[한국가스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052	136	12	-	24	-	47	53	9	9	5	3	1	8	6	98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가스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직무 상의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정직자에게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 24명에게 125,700천원의 보수를 지급

[한국가스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7	2	2	4	4	5
평균 처분기간	2	3	2	2	2	2
보수지급액	41,089	20,832	8,422	17,778	37,579	0
관련 내부 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7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 동안 해당하는 보수 전액 감액.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직무 상의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동안 해당하는 보수의 50% 감액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가스공사에서 2019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3회의 징계위원회 중 2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가스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징계처분 결과	위원 수 (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 (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 (B/A)
2023.4.13.	성희롱	해임	8	4	4	50.0
2023.5.8.	성희롱	해임	12	2	10	16.7
2024.6.20.	성희롱	정직 2월	11	2	9	18.2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9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한국가스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0.6.26.	금품 향응·수수	6,145	정직 3월	X
2021.6.30.	공금 횡령·유용	24,751	파면	
2021.7.26.	공금 횡령·유용	7,368	파면	
2021.10.6.	공금 횡령·유용	2,655	해임	
2022.8.12.	금품 향응·수수	66	정직 1월	
2022.9.23.	금품 향응·수수	117	감봉 5월	
2022.10.7.	금품 향응·수수	700	정직 3월	
2022.12.30.	공금 횡령·유용	1,380	감봉 1월	
2023.9.19.	금품 향응·수수	406	정직 6월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석유공사

5-1.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탐사사업 현황 분석

가. 현 황

❑ 석유 탐사단계는 석유 부존이 가능한 지역을 탐색한 후 물리탐사, 탐사시추를 통해 매장량과 경제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

○ 지표지질조사,[1] 물리탐사,[2] 탐사시추,[3] 평가시추[4] 단계로 나뉨

❑ 한국석유공사의 최근 10년간 탐사사업은 총 13건이며, 해외 5건, 국내 8건임

○ 사업 성과는 해외 부문은 말레이시아 Block 2B 시추 1건, 우즈베키스탄 등 물리탐사 2건임

○ 국내 부문은 국내 6-1남부 등 국내 시추 2건, 국내 6-1중부의 동해-2 가스전 생산정(井) 시추, 6-1동부 등 3D 물리탐사 5건 등이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10년간 탐사사업에 총 2,056억원을 투자하였음

○ 해외사업은 나이지리아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사업은 현지 정부가 2009년 서명보너스 미납 사유로 일방적 광구 분양 무효 통보 후 현재 국제투자자중재(ICSID) 절차 개시 및 진행 중임

○ 탐사사업 투자비는 탐사비 1,397억원, 시추비 659억원으로 구성되며, 해외 탐사사업비가 417억원, 국내 탐사사업비가 1,639억원임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지층(지표노출)을 통해 지하지질구조 및 석유부존가능성 예측

2) 중자력 탐사, 탄성파 탐사(2차원, 3차원)

3) 석유부존여부 직접 확인

4) 석유부존량 확인, 산출시험

[한국석유공사 최근 10년간 탐사사업 현황(2016~2024.6.)]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지역	지분율	탐사사업 집행비용			실적
				시추비	탐사비	계	
해외	말레이시아 Block 2B	보르네오섬 사라왁 해상	15.00	13,815	2,031	15,846	시추 1공('16년, Dry) 사업 종료('16.9월)
	카자흐스탄 잠빌	카스피해 북서부 해상	9.45	-	602	602	사업 종료('16.12월)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 취나바드	우즈베키스탄 동부 육상	65.00	-	8,027	8,027	2D 물리탐사(500km) 사업 종료('23.7월)
	세네갈 UDO	세네갈 해상	20.00	-	12,867	12,867	3D 물리탐사(5,000㎢) 사업 종료('24.8월)
	나이지리아 OPL321/323	나이지리아 기네아만 해상	43.875	-	4,404	4,404	사업 종료 추진중
	소계			13,815	27,931	41,746	-
국내	6-1 남부	동해	30.00	-	697	697	사업 종료('17.12월)
	6-1 중부	동해	70.00	-	9,026	9,026	3D 물리탐사(612㎢) 사업 종료('18.12월)
	6-1 동부	동해	100.00	-	332	332	사업 종료('19.11월)
	6-1 중동부	동해	100.00	52,079	45,558	97,637	시추 1공('21년), 3D 물리탐사(2,575㎢)
	8/6-1북부 (대왕고래)	동해	100.00	-	35,923	35,923	3D 물리탐사(3,276㎢)
	4/5광구	남해	100.00	-	11,037	11,037	3D 물리탐사(495㎢)
	1, 2, 3광구	서해	100.00	-	8,335	8,335	2D 물리탐사 진행중
	제주분지	제주남쪽해상	100.00	-	913	913	석유부존 환경 평가 진행 중
	소계			52,079	111,821	163,900	-
합계				65,894	139,752	205,646	-

주: 1.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반기 보고 기준이며, 연도별 기말환율을 적용함
2. 탐사비는 물리탐사 취득 및 전산처리, 현지법인 운영비용 등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탐사 이후 시추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진 건은 국내 탐사사업 8건 중 6-1 남부(사업 종료), 6-1중부(사업 종료), 6-1중동부 3건이고,[5] 8/6-1북부(대왕고래구조 시추예정) 등 5건의 탐사사업은 현재 진행 중임

[국내 탐사사업 투자 및 회수 현황(2016~2024.6.)]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합계
6-1 남부	투자액	626	71	-	-	-	-	-	-	-	697
	회수액	-	-	-	-	-	-	-	-	-	-
6-1 중부	투자액	242	7,264	1,520	-	-	-	-	-	-	9,026
	회수액	-	-	-	-	-	-	-	-	-	-
6-1 동부	투자액	12	42	△59	337	-	-	-	-	-	332
	회수액	-	-	-	-	-	-	-	-	-	-
6-1 중동부	투자액	-	-	-	-	376	49,782	43,203	3,595	680	97,636
	회수액	-	-	-	-	-	-	-	-	-	-
8/6-1 북부	투자액	-	-	-	821	2,289	10,210	1,703	20,714	187	35,924
	회수액	-	-	-	-	-	-	-	-	-	-
제4/5 광구	투자액	-	-	-	-	-	-	10,269	448	320	11,037
	회수액	-	-	-	-	-	-	-	-	-	-
제1/2/3 광구	투자액	-	-	-	-	-	-	-	149	8,186	8,335
	회수액	-	-	-	-	-	-	-	-	-	-
제주 분지	투자액	-	-	-	-	462	299	91	59	2	913
	회수액	-	-	-	-	-	-	-	-	-	-
합계		880	7,377	1,461	1,158	3,127	60,291	55,266	24,965	9,375	163,900

주: 본사 현금 유출입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5) 3건(6-1남부, 6-1중부, 6-1동부)은 사업이 종료되었음

◦ 국내 6-1 남부는 계약기간이 2011.10.~2017.12.로, 탐사시추 1공 실시, 탐사 2기 진입하였으나 탐사 3기 진입을 포기하여 탐사권이 소멸되었음

◦ 국내 6-1 중부는 계약기간이 2011.10.~2019.9.로, 2016년 4월 동해-2 가스전 채취권을 설정하고 2017년 5월 3D 물리탐사자료를 취득(612㎢)하였으나 탐사 3기 진입을 포기하여 탐사권이 소멸되었음

◦ 국내 6-1 동부는 계약기간이 2013.2.~2019.11.로, 3D 물리탐사자료를 취득(225㎢)하였으나 2019.11.에 탐사권을 반납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음

◦ 국내 6-1 중동부는 계약기간이 2020.2.~2028.2.로, 2021년 탐사시추 1공을 실시하고 2022년 5월 3D 물리탐사자료를 취득(2,575㎢)하였음

◦ 국내 8/6-1 북부는 계약기간이 2019년~2027년이며, 2021년 3월 3D 물리탐사자료를 취득(2,071㎢)하고 2023년 4월 탐사 2기 진입 및 3D 물리탐사자료를 취득(1,206㎢)하였음

- 프로젝트 '대왕고래' 지역이며, 석유 및 가스 약 140억 배럴 매장 추정

◦ 국내 제4/5광구는 계약기간이 2022년~2030년이며, 2022년 8월 5광구 내 갈치 3D물리탐사 자료를 취득(495㎢)하였고, 남해대륙붕 종합기술평가 2차년도 작업 수행 중임

◦ 국내 제1/2/3광구는 계약기간이 2023.10.~2031.10.이며, 2023년 10월 서해대륙붕 제1,2,3광구 탐사권을 등록하였음

◦ 국내 제주분지 제2/4소구는 한일공동개발구역이며, 2023년 남해대륙붕 종합기술평가 1년차 평가를 하였고 2차년도 작업 수행 중임

❑ 8/6-1 북부('대왕고래' 지역)에 2024년 6월까지 투자된 금액은 359억 2,400만원이며, 2025년 예산(안)은 994억원 4,000만원이고, 정부출자 50%, 석유공사 자체부담 50%임

◦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말 시작되는 탐사시추 1공에 대한 예산안이며, 2024년 탐사시추까지는 한국석유공사 지분율 100%이나 2025년 이후 탐사시추부터는 해외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임

- 2024년 말 탐사시추 1공의 전체 사업비(총사업비)는 약 1,120억원이며, 2024년 120억원, 2025년 약 1,000억원임

- 2025년 예산(안)은 시추선 및 보급선 용선비, 시추 용역비 등으로 이루어짐
- 수심 1km 밑 심해 유전을 개발해야 하므로 시추 1공에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됨
- 정부는 석유공사는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천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 및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6)]
- 심해 석유·가스 개발을 위해 자본력과 운영경험을 보유한 메이저社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탐사리스크 및 투자비 부담 감소를 추진

[2025년 예산(안) 산출 근거 및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시추선 및 보급선 용선	67,888
시추 용역	13,709
장납기 자재	818
기타(시추보험, 연료비 등)	17,025
합계	99,440

주: 용선은 선박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며, 장납기 자재는 조달기간이 긴 자재를 의미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19년 4월 조광계약서 체결 및 탐사권 등록 시에는 석유공사 50%, 우드사이드사[7)] 50%였으나, 2023년 1월 우드사이드사 지분 및 운영권을 인수하고 4월 탐사 2기 진입 및 3D 물리탐사자료를 취득함

6) 산업통상자원부, "국익 극대화 원칙하에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제도정비 및 투자유치 추진", 보도자료, 2024.6.21.

7) 오스트레일리아의 석유 탐사 및 생산 기업

[8/6-1 북부 사업 추진 경과]

구분	추진 경과
2019.4.	조광계약서 체결 및 탐사권 등록(석유공사 50%, 우드사이드사 50%)
2021.3.	3D 물리탐사자료 취득(2,071㎢)
2023.1.	우드사이드사 지분 및 운영권 인수
2023.4.	탐사 2기 진입 및 3D 물리탐사자료 취득(1,206㎢)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탐사시추 후 석유·가스 부존이 확인되면, 시추 후 평가를 통해 석유·가스 부존범위를 예측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 개의 평가정을 시추

- 동 시추 자료를 바탕으로 매장량 및 경제성 평가 후 개발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시설을 건설하여 2035년부터 생산 개시 전망[8)]

○ 탐사시추 후 석유·가스 부존 확인 실패 시, 시추 후 평가를 통해 실패 원인 분석 후 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유망성 재평가 및 추가 유망구조를 도출하여 시추대상 구조를 선정하고 탐사시추를 실시할 계획임

8) 한국석유공사는 소요되는 사업비는 평가시추로 확인되는 매장량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5-2. 자회사 부실에 따른 우발채무 확대 대비 필요

가. 현 황

❑ 한국석유공사의 최근(2019~2023년) 5개년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3조 1,715억원 손실이 발생

- ○ 이는 2020년에 자회사 Dana Petroleum Limited, ANKOR E&P Holdings Corp.에 대해 추정유가의 하락, 매장량 변동 등으로 손상차손 1조 1,561억을 인식하였고, 금융부채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하베스트사에 대한 금융보증부채 1조 2,504억원을 설정[1]한 것에 기인
- ○ 2020년에 발생한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로 인해 2020년부터 자본잠식이 발생했으며, 이는 2023년까지 이어지고 있음

[한국석유공사 재무 및 손익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자산총계(A)	139,158	129,300	137,647	136,439	131,385	△5,054
부채총계	130,177	145,545	155,443	157,641	154,817	△2,824
금융부채(B)	109,587	113,621	120,886	130,272	141,254	10,982
자본총계	8,981	△16,245	△17,796	△21,202	△23,431	△2,229
매출액	5,984	4,778	3,922	6,448	5,577	△871
영업이익	1,051	568	△325	1,660	809	△851
이자비용	3,645	3,631	3,243	3,718	4,431	713
당기순이익	△7,627	△31,715	△1,256	△3,400	△2,625	775
차입금의존도(B/A)	78.8	87.9	87.8	95.5	107.5	12.0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차) 금융보증비용 / (대) 금융보증부채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가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에 투자한 금액 및 대지급할 금액은 2023년 말 기준 6조 7,398억원[2]인데, 이는 우발채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

○ 하베스트사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할 수 있음

❑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3]에 투자한 금액은 2009~2023년 동안 출자와 대여를 합하여 총 55.9억달러(6조 6,659억원)이며, 전액 손상차손 혹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

○ 인수 시점에 21.2억달러를 출자한 이후 2010~2020년 동안 출자 혹은 대여 후 출자전환한 금액이 19.6억달러임

- 2022년에는 지급보증 중인 하베스트사의 금융부채의 지급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4.9억달러, 2023년에는 10.2억달러를 대지급하고 대여금으로 계상

[하베스트사 출자 및 대여 현황(2009~2023)]

(단위: 억$)

구분	2009	2010~2020	2021	2022	2023	합계
출자	21.2	19.6	0	0	0	40.8
대여	0	0	0	4.9	10.2	15.1
합계	21.2	19.6	0	4.9	10.2	55.9

주: 2013~2016년 공사에서 하베스트에 제공한 대여금 5.4억$ 2016년도 출자전환
자료: 한국석유공사

2) 출자 및 대여 6조 6,659억원, 금융부채 대지급 예정액 739억원

3) 하베스트 유전개발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12월에 21.2억$에 인수한 이후 19.6억$의 자금이 투입된 주요 유전개발사업 중 하나임

○ 하베스트의 재무 및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당기순이익이 2022년 대비 1,318억원 감소한 △748억원으로 손실이 발생

- 차입금의존도는 2019년 87.7% 이후 저유가 자산손상에 따른 자산 감소로 상승 추세를 보여 2022년, 2023년에는 130%대로 나타나 재무건전성 악화

[하베스트 재무 및 손익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자산총계(A)	26,810	21,817	20,423	19,623	20,396	773
부채총계	31,757	32,199	32,457	31,120	32,152	1,032
금융부채(B)	23,500	23,904	26,033	26,478	26,875	397
자본총계	△4,946	△10,382	△12,034	△11,497	△11,756	△259
매출액	3,094	1,841	3,057	4,629	3,090	△1,539
영업이익	△835	△1,301	257	1,921	170	△1,751
당기순이익	23	△5,724	△788	570	△748	△1,318
차입금의존도(B/A)	87.7	109.6	127.5	134.9	131.8	△3.1

주: 금융부채에는 공사 대여금 포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 자회사 하베스트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석유공사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5-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석유공사는 「보수규정」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1,180명의 임직원에게 총 16,590,209천원을 지급

[한국석유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C	1,175	8,290,591	14,990,600	23,281,191
2023	B	1,180	10,330,631	16,313,671	26,644,303
2024	C	1,180	0	16,590,209	16,590,209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을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4급 이하 직급의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지급률이 차하위 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인바,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 경영평가 성과급(4급 이하): 최고 등급 128%, 다섯째 등급 113%
- 내부평가급(4급 이하): 최고 등급 213%, 다섯째 등급 188%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최근 3년간 한국석유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3급 이상)	10	160	20	140	40	120	20	100	10	80	0	0
	경평 (4급 이하)	10	128	20	124	40	120	20	116	10	113	0	0
	내부 (3급 이상)	10	267	20	233	40	200	20	167	10	133	0	0
	내부 (4급 이하)	10	212	20	206	40	200	20	194	10	187	0	0
2023	경평 (3급 이상)	10	200	20	175	40	150	20	125	10	100	0	0
	경평 (팀장 등)	10	171	20	161	40	150	20	140	10	129	0	0
	경평 (4급 이하)	10	165	20	158	40	150	20	143	10	135	0	0
	내부 (3급 이상)	10	267	20	233	40	200	20	167	10	133	0	0
	내부 (팀장 등)	10	229	20	215	40	200	20	185	10	171	0	0
	내부 (4급 이하)	10	220	20	210	40	200	20	190	10	180	0	0
2024	경평 (3급 이상)	10	160	20	140	40	120	20	100	10	80	0	0
	경평 (4급 이하)	10	128	20	124	40	120	20	116	10	113	0	0
	내부 (3급 이상)	10	267	20	233	40	200	20	167	10	133	0	0
	내부 (4급 이하)	10	213	20	206	40	200	20	194	10	188	0	0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석유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인 「주택자금대부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522명, 지원금액은 64,650,783천원임

[한국석유공사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705	732	747	644	558	522
지원금액	89,736,581	92,162,175	93,285,671	73,049,869	68,442,334	64,650,783
1인당 지원 한도	15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자금대부규정」					
지원 요건 (2024.7. 기준)	1년이상 재직 무주택세대주					
상환 조건 (2024.7. 기준)	5년 거치 종료 후 일시상환/1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회에 한하여 거치기간 5년 연장 후 일시상환/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0.50~1.50	1.50	0.86	1.15~3.70	2.85	3.05	3.05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과도한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제공,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 등

❑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1월에서야 비로소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관련 신규 대출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4년 1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10명에게 여전히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제공

◦ 대출 이자율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89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1.15~3.70%)으로 주택융자금 제공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69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1.5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석유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89	1.15~3.70	10,475,000	미개정	69	9,888,040	미개정

85㎡ 초과 면적 주택의 구입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면적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개정 시기)
10	100	1,500,000	개정(2024.1.2.)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석유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114명, 지원금액은 3,150,000천원임

[한국석유공사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269	178	233	367	198	114
지원금액	7,290,000	5,340,000	7,590,000	12,650,000	5,940,000	3,150,000
1인당 지원 한도	5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조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					
지원 요건 (2024.7. 기준)	2년 이상~10년 미만 재직 : 3천만원 / 10년 초과 재직 : 5천만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2천만원 이하 금액 50개월, 2천만원 초과 금액 100개월)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대출 이자율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679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2.50%)으로 생활안정자금 제공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402명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5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석유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679	2.50	21,740,000	미개정	402	17,04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석유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6.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석유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35명임

[한국석유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449	35	2	-	6	-	9	18	2	4	2	14	-	1	5	9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석유공사에서 2019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3회의 징계위원회 중 1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석유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징계처분 결과	위원 수 (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 (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 (B/A)
2023.2.10.	성희롱	정직 3월	8	0	8	0.0
2023.6.27.	성희롱	정직 3월	5	2	3	40.0
2024.2.6.	성희롱	정직 1월	5	2	3	40.0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2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한국석유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0.08.24.	횡령	17,751	파면	X
2022.01.11.	횡령	48,200	파면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석유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6 ㈜강원랜드

6-1. 카지노 이외 사업부문 수익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카지노, 호텔, 리조트 등 관광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시장형 공기업임

❑ ㈜강원랜드의 2019~2023년 손익을 살펴보면, 2023년 당기순이익이 3,359억원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이익 규모를 회복하였음

  ○ 2020~2021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당기순이익 3,359억원으로 2019년도 이익 규모를 회복함

[(주)강원랜드 손익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매출액	15,176	4,775	7,874	12,694	13,875	1,181
영업이익	5,027	△4,309	△528	2,179	2,832	653
당기순이익	3,356	△2,788	△119	1,159	3,359	2,200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료: ㈜강원랜드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나. 주요 쟁점

❑ ㈜강원랜드는 2023년 기준 카지노와 골프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에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나타났으므로, 해당 사업부문들에 대한 수익성 제고방안 모색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

○ 사업부문별 손익을 살펴보면, ㈜강원랜드는 2023년 기준 카지노와 골프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에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

- 그랜드호텔은 △493억원, 팰리스호텔 △74억원, 하이원콘도 △267억원, 하이원스키 △227억원, 하이원워터월드 △100, 기타부문 △152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손실 합계는 △1,313억원임
- 손실이 발생한 부문의 경우,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높아 매출총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주)강원랜드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카지노	12,060	6,749	5,311	4,354	4,664
하이원골프	102	83	19	12	8
그랜드호텔	1,128	1,602	△474	△667	△493
팰리스호텔	62	144	△82	△100	△74
하이원콘도	347	667	△320	△359	△267
하이원스키	185	391	△206	△235	△227
하이원워터월드	120	248	△129	△141	△100
기타	4	32	△27	△33	△152
조정	△135	△135	-	-	-
합계	13,875	9,782	4,093	2,832	3,359

주: 조정은 모회사의 구분단위간의 매출, 매입 등의 활동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 2023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부문(호텔, 콘도, 스키, 워터월드 등)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9~2023년간 손실 사업부문에서는 총 6,0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그랜드호텔이 △2,490억원으로 손실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하이원콘도가 △1,441억원, 하이원스키가 △947억원으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남

[(주)강원랜드 사업부문별 당기순이익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카지노	4,186	△1,393	1,262	2,243	4,664	10,962
하이원골프	△9	△8	9	16	8	16
그랜드호텔	△290	△624	△601	△482	△493	△2,490
팰리스호텔	△61	△69	△73	△78	△74	△355
하이원콘도	△244	△336	△338	△256	△267	△1,441
하이원스키	△162	△189	△213	△156	△227	△947
하이원워터월드	△64	△101	△116	△110	△100	△491
기타	0	△68	△49	△18	△152	△287
소계	△821	△1,387	△1,390	△1,100	△1,313	△6,011
합계	3,356	△2,788	△119	1,159	3,359	4,96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 ㈜강원랜드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수익성 제고방안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음

○ 호텔과 콘도 등 관광사업의 경우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6-2. 최하위 고객만족도 결과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1)]

○ 고객만족도 종합 점수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등급, 80점 이상은 C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을 받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내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항]

>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

❑ ㈜강원랜드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평균 대비 낮으며, 2023년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아 관리가 필요함

○ ㈜강원랜드의 7개 부분 주요사업(하이원그랜도호텔 · 카지노 · 하이원팰리스호텔 · 하이원콘도 · 하이원골프 · 하이원스키 · 하이원워터월드)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합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임[2)]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기획재정부는 조사단계별로 기본설계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주관업체(한국능률협회 등 2개 업체) 및 실시업체(한국리서치 등 6개 업체)에 위탁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함(0.4점)

2)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고객만족도 점수 하위 4개 기관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랜드
점수	79.4	77.8	77.1	73.8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3년간 ㈜강원랜드 고객만족도 점수 결과]

(단위: 점)

구분		2021	2022	2023
(주)강원랜드	등급	D	D	D
	점수(A)	68.9	69.5	73.8
공기업(평균) (B)		86.6	86.0	87.0
점수 차이(B-A)		17.7	16.5	13.2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강원랜드의 모든 세부항목별 고객만족도가 3년 동안 공기업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공공기관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5가지 부분(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국민행복 및 신뢰 등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구성[3)]

- ㈜강원랜드는 성과(국민행복 및 신뢰) 부분에 대한 점수가 3년간 특히 더 저조한 상황

[공기업(평균) 및 ㈜강원랜드에 대한 고객만족도 항목별 점수]

(단위: 점)

구분	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국민행복 및 신뢰)	
	공기업 (평균)	㈜강원 랜드	공기업 (평균)	㈜강원 랜드	공기업 (평균)	㈜강원 랜드	공기업 (평균)	㈜강원 랜드	공기업 (평균)	㈜강원 랜드
2021	88.6	74.0	85.5	62.4	84.1	65.7	86.5	68.2	85.0	54.8
2022	88.2	75.4	84.8	62.6	83.5	64.2	85.8	69.4	84.0	52.7
2023	89.1	78.7	85.8	68.1	84.8	71.0	86.8	73.0	84.7	59.1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서비스품질(서비스 상품의 본원적 품질, 서비스 전달과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환경 등에 대한 만족 정도) 사회적책임(공공기관으로서 정책타당성, 지속가능성, 윤리성 정도), 기대 대비 불일치(기대, 이상점, 타 기관 이용 경험 등과 대비 지각된 서비스 수준의 일치/불일치 정도), 전반적 만족도(서비스 이용 후 전반적 만족도 및 기관에 대한 긍정적 느낌), 성과(서비스 이용 후 기관 사업 활동에 대한 신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정도)

6-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강원랜드는 「급여규정」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3,528명의 임직원에게 총 41,623,666천원을 지급

[㈜강원랜드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C	3,479.59	13,145,563	27,697,069	40,842,632
2023	D	3,503.25	-	26,991,992	26,991,992
2024	C	3,528.08	7,785,321	33,838,345	41,623,666

주: 1. 2022~2023년 및 2024년 경영평가 성과급은 실적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
2.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강원랜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강원랜드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2급 이하 내부평가급은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며, 1급 내부평가급의 내부평가급은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등급별 지급률의 경우 내부평가급은 직급과 무관하게 최고 등급 지급률이 차하위 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으로,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 경영평가 성과급 및 2급 이하 내부평가급은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 최저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하는 등 지급 인원 비율의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강원랜드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1급)	0	568	28	499	54	430	18	361	0	292	-	-
	경평 (2급 이하)	12	206	29	203	46	200	12	197	2	194	-	-
	내부 (1급)	7	117	35	102	42	87.5	13	73	4	58	-	-
	내부 (2급 이하)	12	110	28	99	46	88	12	76	2	65	-	-
2023	내부 (1급)	0	568	26	499	58	430	16	361	0	292	-	-
	내부 (2급 이하)	3	207	8	203	68	200	17	197	5	194	-	-
2024	경평	1	67	19	58	49	50	30	42	0	33	0	0
	내부 (1급)	16	568	46	499	38	430	0	361	0	292	0	200
	내부 (2급 이하)	1	207	20	204	47	200	32	197	0.3	193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강원랜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강원랜드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6-4.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강원랜드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56명임

[㈜강원랜드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680	156	7	-	41	-	48	60	2	11	11	6	-	15	16	9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강원랜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강원랜드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2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강원랜드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2.5.11.	절도, 절취	미상	면직	X
2024.1.26.	절도, 절취	미상	면직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강원랜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7 대한석탄공사

7-1. 몽골 홋고르샤나가 탄광 매각을 위한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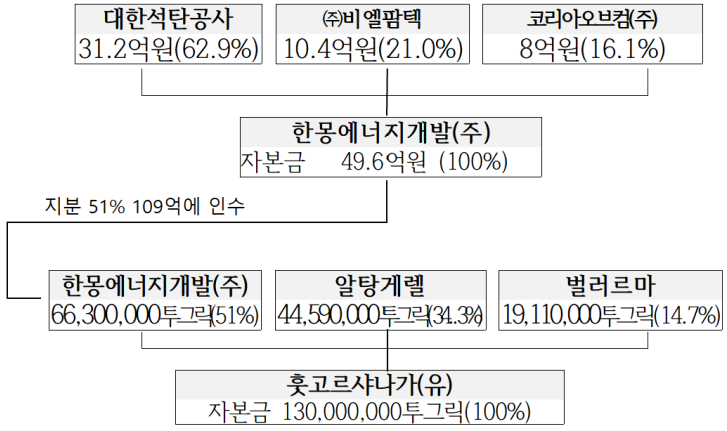
가. 현 황

❑ 대한석탄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홋고르샤나가 탄광은 운송인프라 부족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인해 2016년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24년 6월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

○ 경영적자가 지속되어 '23년 9월에 한몽에너지개발(주)[1]의 주주총회를 통해 홋고르탄광의 지분 매각이 결정되었음

- 2023년 말 한몽에너지개발(주)를 대한석탄공사가 31.2억원(62.9%), ㈜비엘팜텍[2]이 10.4억원(21.0%), 코리아오브컴(주)[3]가 8억원(16.1%)를 소유

[2023년도 기준 한몽에너지개발(주) 지분현황]



자료: 대한석탄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한몽에너지개발(주)는 몽골 홋고르샤나가 탄광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투자회사임

2)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 건강지향식품 등) 및 진단 및 메디컬 사업부문 영위

3) 고정 및 이동자산을 원격으로 추적,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산업용 IoT 및 M2M 통신 솔루션을 국내 및 전세계에 공급하는 기간통신 사업자

나. 주요 쟁점

❑ 대한석탄공사는 진행 중인 몽골 홋고르샤나가 탄광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한석탄공사가 2011년 이후 2023년까지 홋고르샤나가 탄광에 투자한 금액은 283억 1,500만원인 데 반해 회수액은 전무하며, 한몽에너지개발(주)의 지분은 전액 감액된 상태

[2011~2023년 몽골 홋고르탄광 투자 및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투자액	18,400	4,440	-	1,140	2,590	-	-	1,103	-	266	-	204	172	28,315
회수액	-	-	-	-	-	-	-	-	-	-	-	-	-	-

주: 투자액은 지분 인수비 및 건물, 중장기 구입, 탐사 활동, 운영자금 등임
자료: 대한석탄공사

○ 지분 매각 결정 후 2023년 10월에 매각주간사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사 무응찰로 유찰되었고, 2024년 1월 재공고에서도 참여사 무응찰로 유찰된 상황

- 2024년 2~5월에는 홋고르샤나가 탄광 매수에 관심을 가진 중국, 몽골 업체와 지분 매각 관련 협의를 진행 중

○ 현재 잠재 매수자들의 제시 가격이 대한석탄공사의 희망가격보다 낮아 지분 매각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

- 향후에는 지분매각 선결 이슈 점검을 통해 공사의 내부 역량 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을 검토하고, 매수자의 제시가격이 적정 수준일 경우 지분 매각 국제 입찰을 시행할 예정

[훗고르탄광 지분매각 향후 계획]

향후 계획	세부 내용
지분매각 선결 이슈 점검	- 매각예정가격 산출, 석탄공사 지분매각 내부 역량 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방안 마련 - 몽골정부의 광업권 양도세 등 지분매각에 따른 납부 세금 수준 파악
잠재 매수자 발굴 및 매수 희망가 확인	- 국내외 매수 희망 업체 대상 매수가격 수준 파악
지분매각 국제 입찰 시행	- 잠재 매수자의 제시가격이 적정 수준일 경우 지분매각 입찰 시행 고려

자료: 대한석탄공사

❑ 대한석탄공사는 석탄광산의 개발촉진과 석탄의 생산 · 가공 · 판매, 수급 안정을 주 사업으로 하며, 공사는 해외 광산 매각의 자체적 내부 역량이 부족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 따라서 공사는 몽골 훗고르탄광 매각을 위해 현 상황과 제반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기술보증기금

8-1.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관련 문제

가. 현 황

❑ 기술보증기금은 2019~20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의 증가 추세가 높음

○ 2019~2021년에는 기금에 출연하지 않다 2022년에 90억원, 2023년에 116억원을 출연함

[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출연액	-	-	-	90	116	116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하면, 1인당 기금누적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상한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은 불가함

○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 · 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복리후생 사업 소요재원 등을 감안

[기금 누적액별 출연액 기준]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정부지원액 및 영업외 이익(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과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서는 안 됨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 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나. 주요 쟁점

❑ 기술보증기금의 최근 10년간 손익을 살펴보면, 2014~2020년까지는 손실 또는 소액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익 규모가 2021년, 2022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 기술보증기금의 2021~2022년 동안의 일시적인 이익확대는 주로 정부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사고율, 대위변제율 등의 하락으로 관련 준비금 등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1)]

[기술보증기금 재정운영결과(2014~2023)]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보증기금	2,011	△265	1,596	2,109	3,651	1,078	184	△4,511	△3,869	33

주: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인 경우 적자,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함
자료: 기술보증기금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며, 연장 · 유예 조치는 만기 시점을 이연하여 이익과 손실 발생 시기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 보증 규모 변동은 없으므로 중장기적인 손익 효과는 적다는 입장임

○ 기술보증기금의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타 연도 대비 2021년과 2022년에 프로그램총원가는 감소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완화 등 유동성 공급 정책 및 상환 유예 조치에 기인함

- 2021년 4,511억원, 2022년 3,869억원의 이익이 발생함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완화조치로 보증사고율 감소에 따라 대위변제준비비 등의 일시 감소로 프로그램총원가 감소
- 보증충당부채가 감소하여 보증충당부채환입(수익) 발생, 대위변제준비금 환입으로 인한 프로그램수익 증가

[기술보증기금 재정운영표(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프로그램총원가(A)	10,409	10,026	6,916	6,785	12,130
프로그램수익(B)	△3,397	△3,197	△5,024	△4,199	△3,906
프로그램순원가(A-B)	7,012	6,829	1,892	2,587	8,225
재정운영결과	1,078	184	△4,511	△3,869	33

주: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인 경우 적자,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함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율(2019~2023)]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사고율	4.5	3.4	2.5	2.7	4.2

주: 직접보증 기준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전체 보증액 중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의 비율이 2020년 49.8%에서 2021년 이후 70%대로 상승함

○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의 증가로 인한 보증사고율 감소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는 감소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증가하여 이익이 발생함

[기술보증기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a)	-	126,619	187,895	198,074	202,175
전체 보증액(b)	-	254,453	262,684	265,029	279,176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 비율 (a/b)	-	49.8	71.5	74.7	72.4

주: 1.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액은 정책금융기관 특별만기연장이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해당연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건의 연말 기준 잔액임
2. 전체 보증액은 직접보증 기준(유동화회사보증 및 재보증 제외)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즉, 2014~2020년에 손실 또는 소액의 이익이 발생했던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2022년에는 일정 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금융완화조치 등으로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2022년,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

○ 2022년에는 90억원, 2023년에는 출연가능한 최대금액인 116억원(3,871억원 ×3%)을 출연함

[기술보증기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가능금액 및 출연액]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조정 세전순이익(A)	-	4,511	3,871
출연율(B)	-	4%	3%
출연가능금액(A×B)	-	180	116
출연액	-	90	116

주: 조정 세전순이익은 전년도 세전순이익에서 유형자산 재평가, 처분 등을 제외한 이익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획재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결정 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이 정책적 고려에 따른 보증공급으로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 및 기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요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복리후생비를 충당하므로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1.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화 및 제재 부과 필요

가. 현 황

❑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한 보조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는 1.9억원으로, 해당 부정수급자들에게 교부된 전체 금액 대비 24.9%를 차지함

○ 주로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가족간 거래,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등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정수급 유형	교부액	부정수급액
2020	소상공인창업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가족간 거래	15,000	13,636
2021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20,000	1,500
2021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20,000	1,476
2021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15,000	520
2022			가족간 거래	20,000	12,080
2022			가족간 거래	22,000	6,000
2022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16,000	187
2023			가족간 거래	10,000	9,000
2021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10,000	150
2022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17,000	102
20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17,000	8,500
20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20,000	4,880
20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17,000	773
2022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17,000	16
202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17,000	8,500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정수급 유형	교부액	부정수급액
2021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확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44,000	1,000
2021			가족간 거래	44,000	28,800
2022			가족간 거래	44,000	6,000
2022			가족간 거래	44,000	15,000
2022			가족간 거래	44,000	44,000
2022			가족간 거래	44,000	18,500
2019	시장경영혁신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가족간 거래	240,000	8,000
2022					
합계				757,000	188,620

주: 과오수급 제외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노력 미흡 및 환수 지연

○ 상위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는 경우[1] 해당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함

○ 부정수급 사례[2] 중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의 경우 최초 카드 결제 및 계산서 발행 시점에 증빙 처리가 되었더라도 상위보조사업자인 공단이 보조사업 수행 과정 및 정산[3] 단계에서 재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

1) 기획재정부장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함

2) 가족간 거래,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등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발생 유형 중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건의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은 e-나라도움을 통해 매월 카드 결제 취소 여부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자의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또한 공단의 보조사업은 대부분 단년도 사업으로 수행되는데, 부정수급 적발 건에 대한 공단의 심의의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대부분 사업종료 후 차년도 하반기가 지나서야 관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적발·관리 및 제재조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내역사업명	보조사업연도	적발건수	심의위원회 개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020	1	2021.6.15
	2021	3	2023.8.31
	2022	3	
	2023	2	2024년 8월 예정
희망리턴패키지	2021	1	2023.12.11
	2022	6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확산	2021	1	2022.11.21
		1	2021.12.10
	2022	4	2023.8.3, 2024.3.22
특성화시장 육성	2019	1	2020.10.8
	2022	1	2023.11.20
합계		24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편 공단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대부분 사업 종료 이후 뒤늦게 적발됨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지연되고 있는바, 2022년에 부정수급액으로 결정된 1억 2,460여만원 중 2024년 7월 기준 환수된 금액은 7,467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약 60%에 불과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환수 현황]

(단위: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부정수급액(A)	8,000,000	13,636,360	33,445,900	124,629,974	9,352,000	-
환수액(B)	8,000,000	13,636,360	33,445,900	74,669,973	-	-
비율(B/A)	100	100	100	59.9	-	-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다수의 보조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환수 역할을 상위보조사업자인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되는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및 환수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 외에 제재부가금 미부과 문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관리법」"이라 함)에서는 보조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제33조제1항)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제33조의2)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단은 공단이 상위보조사업자로서 교부한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들이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제1항 각 호[4]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제33조의2[5]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았음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그러나 공단의 보조사업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들(가족간 거래,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등)의 경우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6]

○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 (2024.9.)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법」에서는 의도가 없는 법령위반도 부정수급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도성이 없는 과오수급이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7]

-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가족 간 거래는 8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의 보조금 관련 행정규칙 상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100% 환수를 기본으로 함

○ 한편, 공단은 공단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보조금 관리법」 상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개별 사업 지침상의 환수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액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제재부가금의 경우에는 지침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6)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022.3.)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하며, 그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보조금 반환 외에 제재를 부과할 수 없게 됨

7) 법령 위반의 교부취소 및 반환사유로 인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을 수행한 '과오수급' 역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 (2024.9.)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허위 신청, 정산서류 조작[8], 부적정 계약거래[9], 목적외 사용[10] 등) 및 사례에 대하여 정리 ·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공단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부정수급 판단 및 제재 부과 기준 등을 사업지침 등에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검토 · 부과함으로써 특정 보조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사업 지침상 일관된 제재규정 마련 필요

○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제33조의2)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제31조의2)는 법령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단의 사업별 지침에서는 이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 의무로 정한 사항을 하위 지침에서 재량규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인데, 일부 사업 지침에서는 공단이 제재부가금 부과 및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운영지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외에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내용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 수령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8) 고정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

9)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10)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규정]

관련 규정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과주체	성격	부과주체	성격
법률	「보조금 관리법」	중앙관서의 장	의무	중앙관서의 장	의무
사업 지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앙관서의 장	재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량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운영지침 (희망리턴패키지)	규정 없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량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지침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확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량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운영세칙 (특성화시장 육성)	중앙관서의 장	의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재량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위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보조사업들에서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의 선제적 적발 및 명확한 제재조치 부과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집행 관리, 제재 부과를 위해 노력할 필요

10 창업진흥원

10-1.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및 제재 부과 필요

가. 현 황

❑ 최근 5년간 창업진흥원이 상위보조사업자로 수행하는 보조사업 중 2개 사업에서 5건(4.16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함

○ 창업진흥원이 상위보조사업자로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 중 최근 5년간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2개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아기유니콘200육성'사업임(내역사업 기준)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2020~2021년 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보조금 수령자에게 교부된 금액은 총 1.85억원이었고, 그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49억원으로 교부액 대비 부정수급액 비중이 약 82.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아기유니콘200육성 사업의 경우 2021년에 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부정수급 건에 교부된 2.7억원 중 2.67억원이 부정수급으로 나타나 사실상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었음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창업진흥원 수행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 발생 내역(2020~2024.7)]

(단위: 천원)

사업 연도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금 교부액	부정수급액 (A)	이자액 (B)	전체환수액 (C=A+B)
2020	창업사업화 지원	예비창업 패키지	51,000	51,000	-	51,000
2020			48,000	47,961	2,781	50,742
2021			35,000	2,700	-	2,700
2021			47,500	47,500	2,539	50,039
소계			181,500	149,161	5,320	154,481
2021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아기유니콘 200육성	270,000	267,667	216	267,883
합계			451,500	416,828	5,536	422,364

자료: 창업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창업진흥원은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지급 요건 검토를 강화하여 오지급을 방지하고, 교부된 보조금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요건을 준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정산 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게 교부된 금액의 대부분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발생한 4건의 부정수급 중 보조금 교부액 전액이 부정수급액으로 확정되어 환수된 사례가 3건(5,100만원, 4,800만원, 4,750만원)이었으며, 아기유니콘200 사업에서도 보조금 교부액 2.7억 중 99.1%인 2.67억원이 부정수급액으로 나타남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대비 부정수급액 비중]

(단위: 천원, %)

사업 연도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금 교부액 (A)	부정수급액 (B)	부정수급 비중 (B/A)
2020	창업사업화 지원	예비창업 패키지	51,000	51,000	100
2020			48,000	47,961	99.9
2021			35,000	2,700	7.7
2021			47,500	47,500	100
소계			181,500	149,161	82.2
2021	민관협력 창업자육성	아기유니콘 200육성	270,000	267,667	99.1
합계			451,500	416,828	92.3

자료: 창업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와 같이 보조금 수령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교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보조금의 집행 과정에서 그 교부 목적 및 요건이 전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아기유니콘200육성 사업에서 전액 환수된 1건은 지원 대상 창업기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이후 창업진흥원이 지원자격 요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요건이 추가 확인되어 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처리가 진행되었는바, 이는 지원자격 요건을 검토하는 창업진흥원의 담당자 귀책 사유로 확인되어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됨에 따라 관련자 징계 조치까지 된 사안임

○ 이러한 점에서 창업진흥원은 보조사업 수행시 보조금 지급 요건에 대한 검토를 보다 면밀히 수행하여 보조금의 과오지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반복되는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2020~2021년에 창업진흥원의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가 2024년 7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어 환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창업진흥원의 2020~2021년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 약 4.2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6억원 수준으로, 2024년 7월 기준 환수율이 87.4%로 나타남

[창업진흥원의 부정수급 환수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합계
부정수급액(A)	-	101,742	320,622	-	-	-	422,364
환수액(B)	-	82,517	185,366	4,700	24,200	73,017	369,800
전체 부정수급액 환수율 (B/A)							87.6

자료: 창업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창업진흥원은 2020~2021년 발생한 부정수급 총 5건 중 2건이 환수 완료(2024년 7월 기준)되었으며, 나머지 환수 건의 경우 추진 절차 및 일정에 따라 환수 진행 중이라는 설명인바,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세부내역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현황]

(단위: 천원, %)

내역사업명	보조 사업자명	환수 대상액	환수액	환수율	납부방법	납부계획
예비창업 패키지	공** *** **	51,000	46,200	90.6	분할납부	'24.10월까지 환수 완료 예정
	케***	50,742	36,317	67.0	채권주심업체 위탁 · 환수	추심 진행 중
	리***	2,700	2,700	100	환수완료	환수완료
	두*	50,039	16,700	32.2	채권주심업체 위탁 · 환수	추심 진행 중
아기유니콘 200 육성	람****	267,883	267,883	100	환수완료	환수완료
합계		422,363	369,800	87.6		

자료: 창업진흥원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외에 제재조치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여 특정 보조사업에서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할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 관리법」"이라 함)제33조제1항[1]에 따르면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3조의2[2]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다수의 보조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1차 심의 역할을 상위보조사업자인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처분에 대한 검토 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부정수급 건들에 대하여 모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부정수급 4건은 용역 결과물 불인정 및 수급자 착오로 인한 외주용역비의 오집행 등 '지침 위반으로 인한 불인정 건'으로서, 창업진흥원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적용하여 환수 조치를 하였고, 별도로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창업진흥원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단위: 천원)

사업 연도	내역사업	부정수급 유형	보조금 교부액	부정수급액 (A)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미부과 사유
2020	예비창업 패키지	허위처리	51,000	51,000	부	지침 위반으로 인한 불인정 건
2020		허위처리	48,000	47,961	부	
2021		규정미숙	35,000	2,700	부	
2021		허위처리	47,500	47,500	부	

주: 창업진흥원의 귀책시유로 환수조치된 아기유니콘 200육성 사례 제외
자료: 창업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다만, 부정수급이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① 의도적 기망·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② 비의도적 행정오류, 수급자 사업요건 인지 미흡 등으로 보조금을 과오 수급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3)]

○ 또한 창업진흥원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서 보조금 환수를 결정한 4건 중 3건의 경우 "용역 결과물 불인정"으로 보조금 수령자에게 교부된 금액 전체가 환수조치되었는바, 교부된 보조금 전액이 불인정금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침 위반 사항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조금 관리법」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관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3) 「e나라도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 기획재정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본격 가동 -, 2019.10.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한편,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점검 가이드라인」(2024.9.)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허위신청, 정산서류 조작[4], 부적정 계약거래,[5] 목적외 사용[6] 등) 및 사례에 대하여 정리·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법령 위반의 교부취소 및 반환사유로 인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수급을 수행한 '과오수급' 역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됨(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7]

○ 따라서 창업진흥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부정수급 판단 및 제재 부과 기준 등을 사업지침 등에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검토·부과함으로써 특정 보조사업에서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에 대한 사업별 지침상 일관된 규정 마련 필요

○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제33조의2)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제31조의2)[8]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56조제8항[9]에서

---

4) 고정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 폐업 사업처 세금계산서 사용 등

5)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6)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7) 과오수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법·지침 위반이며, 부정수급자 확정 및 환수,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판단 대상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9)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56조 ⑧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법률에 따라 환수금액에 추가하여 환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는 제재부가금 부과 및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였는바, 상위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지침에서 재량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보조금 관리법」 상 제재부가금 부과 및 사업참여 제한 조치의 부과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진흥원은 개별 사업 지침에서 스스로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창업진흥원의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에는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외에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규정이 아예 없으므로 보조금 수령자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규정]

관련 규정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과주체	성격	부과주체	성격
법률	「보조금 관리법」	중앙관서의 장	의무	중앙관서의 장	의무
개별 사업 지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중앙관서의 장	재량	창업진흥원	재량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	규정 없음		창업진흥원	의무

자료: 창업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1. 수출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상위보조사업자[1]로 수행하는 주요 사업(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및 수출경쟁력강화지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상위보조사업자로 수행하는 보조사업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내역사업 기준 3개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개별지원사업' 및 '통합지원사업'과 수출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의 '해외전시회(개별)' 사업임

-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의 경우 2020~2022년에 총 6건, 2,500여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는바, 부정수급 사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관리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함
- 수출경쟁력강화지원 사업에서는 2023년에 총 2건, 1000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으며, 부정수급 사유는 중복수급(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 전시회 참가)이었음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수행 간접보조사업 중 부정수급 발생 내역(2020~2024.7)]

(단위: 천원)

사업연도	세부사업	내역사업	부정수급액	부정수급 유형	상세사유
2020	수출지원 기반활용	개별지원 사업	6,750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제1항 제1호 위반	해외지사화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위반 (타 사업 결과물과 동일한 결과물 제출,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
2020			1,000		
2022			3,120		
2022			6,240		
2022			1,040		
2021		통합지원 사업	6,650	목적 외 사용	수출바우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소계			24,800		
2023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해외전시회(개별)	5,000	중복 수급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 전시회 참가
2023			5,000		
소계			10,000		
합계			34,800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유사 분야 사업 간의 보조금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 노력 강화 필요

○ ‘개별지원사업’에서 발생한 5건의 부정수급은 타 사업 결과물과 동일한 결과물을 제출하였거나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동 사업과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중복수급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양 사업의 결과물 공동 점검[2]을 통해 중복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음

○ 또한 ‘해외전시회(개별)’ 사업에서 발생한 2건의 부정수급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수행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주관)과 동일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보조금을 중복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공동 점검 수행

○ 이와 같이 수출지원 분야의 경우 각 부처 및 기관에서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보조사업 간 사업 결과물의 중복 사용이나 중복 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상위보조사업자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관 내·외부 협력을 통해 타 수출지원 사업과의 결과물 중복 및 중복 수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 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보조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비예치형'[3]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해왔으나 최근 개별지원사업부터 '예치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예치형의 경우 시스템 검증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타 보조사업의 예치형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 강화 필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시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여 제재 여부 및 수준을 심의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별지원사업'에서 2020년도 및 2022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5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의 환수 명령 통보 및 조치 요청하였고,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환수명령 사실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였음
- 또한 '통합지원사업'에서 적발된 2021년도 부정수급 1건의 경우 목적외 사용으로 판단되어 2023년 8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년이 부과되었음

3) ① 상위보조사업자가 비예치형으로 보조사업자한테 사업등록을 하고 ② 하위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우선 자체 집행하며 ③ 사업비 집행 금액을 계산하여 상위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 교부 요청 ④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한테 자부담 계좌로 교부하고 ⑤ e나라도움에 보조금 집행 정보 등록

○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제1항[4]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3조의2[5]의 제재부가금 의무 부과 대상이 되어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될 필요가 있으나,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가 상위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한 2020~2023년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총 8건의 부정수급의 경우 아직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았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5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다수의 보조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1차 심의 역할을 상위보조사업자인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되므로 공공기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및 제재처분에 대한 검토 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부정수급 건에 대한 제재 심의, 보고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에 대한 사업별 지침상 일관된 규정 마련 필요

○ 「보조금 관리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 배제)[7]는 법률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별 사업 지침에 제재 부과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상위법의 규정 취지를 위반한 문제가 있고, 사업 지침 간 제재의 일관성이 없음

○ 또한 「보조금 관리법」 상 제재부가금 부과 및 사업참여 제한 조치의 부과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인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및 「해외전시회 지원 지침」에서 운영기관인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가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및 「해외전시회 지원 지침」의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외에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내용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개별 사업지침상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규정]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관련 규정</th><th colspan="2">제재부가금</th><th colspan="2">보조사업 수행 배제</th></tr>
<tr><th>부과주체</th><th>성격</th><th>부과주체</th><th>성격</th></tr>
<tr><td>법률</td><td>「보조금 관리법」</td><td>중앙관서의 장</td><td>의무</td><td>중앙관서의 장</td><td>의무</td></tr>
<tr><td rowspan="4">사업 지침</td><td rowspan="2">해외지사화 통합관리지침 (KOTRA)</td><td rowspan="2">중앙관서의 장</td><td rowspan="2">재량</td><td>중앙관서의 장</td><td>재량</td></tr>
<tr><td>대한투자무역 진흥공사</td><td>재량</td></tr>
<tr><td rowspan="2">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KOTRA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td><td colspan="2" rowspan="2">규정 없음</td><td>중앙관서의 장</td><td>의무</td></tr>
<tr><td>대한투자무역 진흥공사</td><td>의무</td></tr>
<tr><td>해외전시회 지원지침 (KOTRA)</td><td colspan="2">규정 없음</td><td>대한투자무역 진흥공사</td><td>재량</td></tr>
</table>

자료: 대한무역투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와 같이 사업 지침별로 제재 부과 규정이 상이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과 조치 부과 여부 및 부과 주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보조금 수령자의 예측가능성도 저해되는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관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사업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지원 관련 보조사업에서 유사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개별 사업 지침에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부정수급 제재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보조금 수령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1-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직원연봉제 보수규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1,023명의 임직원에게 총 16,869,209천원을 지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2022	B	1,017.29	19,280,761
2023	A	1,022.87	21,347,760
2024	A	1,022.87	16,869,209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 등급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개인별 차등 지급

○ 직급별 최고지급률 및 최저지급률, 개인별 차등간격을 설정 후 개인 단위로 차등 지급

○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미지급

- 2022년 정직 1명, 2023년 파면 1명에게 성과급 지급률 0% 적용

[2024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성과급 지급 개요]

(단위: %, %p)

구분	직급	최고지급률	최저지급률	개인별 차등간격
간부	1직급	556.4	255.6	5.1
	2직급	556.4	255.6	1.8
비간부	3직급	466.0	346.0	0.7
	4직급	466.0	346.0	0.3
	5직급	466.0	346.0	0.8
행정직		466.0	346.0	1.6

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였음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비간부직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직급별 지급률 상·하위 10% 인원의 평균 지급률을 살펴보면, 비간부직은 간부직과 달리 상위 10% 평균이 하위 10% 평균의 2배에 미달

- 간부직은 약 2.0배, 비간부직은 약 1.3배 수준

[2024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직급별 성과급 차등 현황]

(단위: %, 배)

구분	직급	상위 10% 인원 지급률 평균(A)	하위 10% 인원 지급률 평균(B)	배수(A/B)
간부	1직급	543.6	268.4	2.0
	2직급	542.4	269.8	2.0
비간부	3직급	460.4	351.7	1.3
	4직급	460.3	351.9	1.3
	5직급	460.1	351.7	1.3
행정직		460.5	351.7	1.3

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였음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을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을 10% 이상으로 설정하고,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공사 비간부직의 경우 이에 부합하지 않음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1-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7명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225	17	1	-	1	-	5	10	1	3	1	-	-	6	7	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1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3.3.20.	유용	6,130	정직 3월	X

주: 1.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2. 비리 관련 재산 가액의 경우 처분요구액 기준(당시 환율 적용)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전력거래소

12-1. 신 ·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오지급 및 환수 지연 문제

가. 현 황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7조[1]에 근거하여 신 ·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2]

○ 정부가 기준가격[3]을 제시하고 계통한계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동안 지원하는 법정의무지출사업

- 2011년 12월 종료[4]되어 신규 진입은 없으나, 기선정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동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1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추진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17조(신 · 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 ·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수준은 낮으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발전비용이 큼

3) 차액지원가격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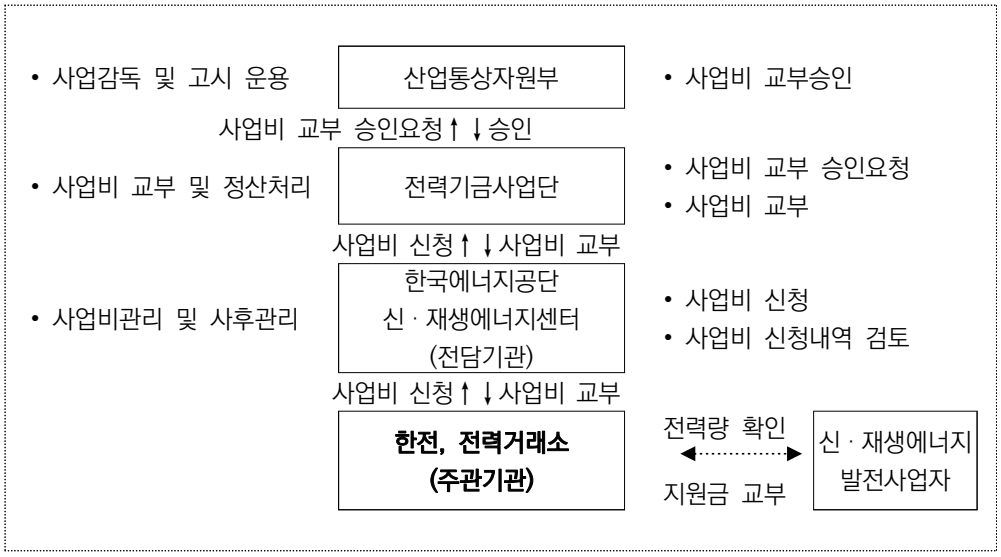
4) 2008년 4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나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1년까지만 시행하기로 결정

-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발전사업자 2,108개소(설비용량 1,042MW)[5)]
- (지원내용) 발전차액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text{지원금} = (\text{기준가격}^{\text{발전차액}} - \text{SMP}) \times \text{전력거래량}$$

○ 사업시행주체(전담기관)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보조금 지급 절차는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가 사업비를 신청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당월 사업비를 익월 주관기관에 교부하는 방식임[6)]

[신 ·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사업 추진 체계]



5) 2024년 기준 1,124개소(설비용량 396MW) 지원

6) 예: 11월 전력거래량에 대한 발전차액지원금을 1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교부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차액지원금 초과 지급 및 환수 지연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력거래소는 2022~2023년 발전차액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3개 발전소에 대하여 약 14.9억원의 지원금(보조금)을 초과 지급하였음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차액지원금 초과지급 내역(2022~2023)]

(단위: 원)

법인명	㈜○○○에너지	△△△에너지주식회사		합계
발전소명	발전소A	발전소B	발전소C	
'22년 4월	110,205,680	-	-	110,205,680
'22년 5월	144,958,670	-	-	144,958,670
'22년 6월	121,231,730	-	-	121,231,730
'22년 7월	101,916,070	-	-	101,916,070
'22년 8월	70,909,830	27,536,830	-	8,446,660
'22년 9월	65,729,570	78,701,160	-	44,430,730
'22년 10월	68,823,340	77,470,660	-	46,294,000
'22년 11월	59,184,090	69,822,190	-	29,006,280
'22년 12월	60,422,630	66,870,210	-	27,292,840
'23년 1월	77,828,780	84,664,250	15,916,790	78,409,820
'23년 2월	81,460,410	91,465,530	23,081,860	196,007,800
합계	962,670,800	496,530,830	38,998,650	1,498,200,280

주: 발전차액지원금(FIT) 실제 지급월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발전 차액지원사업(FIT)의 '지원 기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적실수(정산DB 오류)로 지급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 지원기간을 초과[7]하여 발전차액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차액지원금 지원기간 산정 오류 내역]

발전소명	설비용량 (MW)	기준가격 (원/kWh)	지원시작일		지원종료일	
			정산DB	검토결과	정산DB	검토결과
발전소A	1.643	677.38	'08.05.01	'07.04.04	'23.04.30	'22.04.03
발전소B	1.641	677.38	'08.05.01	'07.08.21	'23.04.30	'22.08.20
발전소C	0.461	677.38	'08.05.01	'08.01.10	'23.04.30	'23.01.09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차액지원금을 초과지급받은 사업자 중 ㈜○○○에너지는 전력거래대금으로 초과지급금을 전액 분할 상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8] △△△에너지주식회사는 발전소 매각을 진행 중으로 매각 대금으로 일시 상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9]

○ 이에 대하여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는 각 사업자에 대한 초과지급금의 환수가 어려울 수 있어 강제 징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10] 초과지급한 건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보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환수 규정을 적용하였음

---

7) 現 지원금 정산DB(EXCEL관리)의 지원 기간 관리 오류

8) ㅇ 전력거래대금 중 고정비(월 1천만원)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월 분할 납부
- 이자 납부는 가능하나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채권양도는 불가
ㅇ 발전소 및 부지에 대한 담보제공 불가 (사유 : 담보 대출로 인한 근저당)

9) ㅇ 발전소 매각을 진행중이므로 발전소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ㅇ 고정비(이자 등)로 인한 전력거래대금 채권양도 및 분할 납부 불가

10) ① 발전소A 발전소는 보조금 환수까지 3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며 전액 환수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국세체납처분 예에 의한 강제징수 방안 검토 필요
② 발전소C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매각 후 상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국세체납처분 예에 의한 강제징수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발전소 및 부지로 담보대출이 존재하여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 시 후순위 채권으로 인해 보조금 전액 환수가 어려울 수 있음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차액지원금 초과지급 환수 계획]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

➢ 반환금액,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되 최소한 교부취소 시점에서 3년 내에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력거래대금 상계환수시 환수 대상별 추정 회수기간(이자 미포함)

발전소명	초과지급	월평균 전력대금 (22.12~23.3)	추정 환수 소요기간(월)*	비고
발전소A	962,670천원	37,227천원	25.9	발전소 A 합산
발전소B, 발전소C	535,529천원	35,963천원	14.9	발전소B, 발전소C 합산

* 고정비 등 제외되는 금액 없이 월별 전력거래 대금 전액 상계시 소요기간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 그런데 위와 같은 발전차액지원금 초과지급 사실이 2023.3.28.에 확인된 이후, 발전소B,C는 2023.8.31.에 5.4억원의 초과지급금액을 전액 납부완료한 반면, 발전소A의 경우 2023.10.5, 36개월 분할납부를 진행 중으로 당초 한국전력거래소가 환수 계획에서 추정하였던 환수 소요기간(25.9개월)보다 더욱 지연되었음

- 2024년 8월 기준으로 초과지급금 9.6억원 중 1.7억원이 환수된 상황(환수율 17.4%)이며, 2026년 9월에야 초과지급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차액지원금 초과지급금 환수 현황]

(단위: 천원, %)

발전소명	초과지급	납부	잔여	환수율
발전소A	962,670	167,200	795,470	17.4
발전소B, 발전소C	535,529	535,529	0	100.0

주: 발전소A 36개월 분할납부 진행중(2023년 10월~2026년 9월), 민법 제379조에 근거하여 약정이자(5%) 포함 환수 진행중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차액지원금 착오 지급 발생 문제

○ 발전차액지원사업의 또다른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도 2022년 7월에 시스템 상 발전차액지원기간 착오로 인하여 11개 사업자에게 약 4,400만원의 지원금을 착오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 한국전력공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3을 근거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였는바 10개 사업자에 대한 착오지급액 약 3,300여만원은 전액 환수되었고, 나머지 1개 사업자에 대한 환수대상액(1,100만원)은 3회 분납 계약을 체결을 통해 2022.12월에 환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2022년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차액지원금 착오지급 및 환수 사례]

(단위: 건, 원)

구분	건수	환수 대상액(A)	환수완료(B)	비고
일시납	10	32,535,030	32,535,030	
분납	1	11,324,657	11,324,657	2022.10~12 (매월 25일경)
합계	11	43,859,687	43,859,687	

주: 분납 이자는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연5%) 적용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 신 ·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의 발전차액지원금(보조금)의 과오지급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및 주관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은 지원금 착오지급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전소별 지원기간 산정 등 보조금 집행 관리에 유의할 필요

○ 특히 신 ·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결산 심사에서 “상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동 사업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의결된 바 있음[11)]

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3.12., p.1008.

12-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전력거래소는「직원보수규정」및「직원연봉규정」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514명의 임직원에게 총 8,230,409천원을 지급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C	527.6	783,879	6,523,812	7,307,691
2023	B	507.4	1,349,962	6,381,429	7,731,391
2024	B	514.4	1,229,372	7,001,037	8,230,409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을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거래소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내부평가급의 첫째 등급 지급률이 다섯째 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인바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한국전력거래소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10	60	15	51	50	43	15	34	10	25	-	-
	내부	10	540	15	484	50	428	15	372	10	316	-	-
2023	경평	10	98	15	84	50	70	15	56	10	42	-	-
	내부	10	540	15	484	50	428	15	372	10	316	-	-
2024	경평	10	98	15	84	50	70	15	56	10	42	0	0
	내부	10	540	15	484	50	428	15	372	10	316	0	0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전력거래소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전력거래소는 내부 규정인 「주택자금대부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던 인원은 8명, 지원금액은 497,000천원임

[한국전력거래소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43	56	35	35	8	-
지원금액	2,699,761	3,931,685	2,624,186	2,401,520	497,000	-
1인당 지원 한도	(~2023년) 매입:100,000, 임차:80,000 / (2023년~) 매입·임차 80,000					
관련 내부 규정	「주택자금대부업무처리지침」 제4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무주택인 직원으로 실 근무년수 1년 이상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최장 240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거래소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거래소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매입:2.96 임차:3.05	매입:3.63 임차:3.59	매입:2.40 임차:2.46	매입:2.77 임차:2.82	매입:4.48 임차:4.47	5.04	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전력거래소는 2023년 12월에서야 비로소 지침상 기준에 따라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지침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12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43명에 대해 여전히 2.77~4.47%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
-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12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27명에 대해 여전히 1인당 7천만원을 초과(최대 1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전력거래소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43	2.77~4.47	2,898,520	개정(2023.12.29.)	27	2,302,000	개정(2023.12.29.)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전력거래소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12-4.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전력거래소는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7명, 지원금액은 116,300천원임

[한국전력거래소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21	25	44	31	33	7
지원금액	238,000	240,000	479,920	479,930	564,170	116,300
1인당 지원 한도	20,000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업무처리지침」 제3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거래소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전력거래소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1.50	0.70	0.45	2.82	5.34	5.04	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전력거래소는 2022년 9월에서야 비로소 한은 금리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2년 9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31명에 대해 여전히 1.20~5.04%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전력거래소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개정 시기)
31	1.20~5.04	479,930	개정(2022.9.30.)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전력거래소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12-5.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전력거래소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2명임

[한국전력거래소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536	12	1	0	1	0	4	6	1	1	0	0	0	0	2	8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나. 주요 쟁점

❑ 한국전력거래소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1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한국전력거래소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19.02.20.	자금 편취	431,595	해임	X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기관 등 총 33개 기관임

-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24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28개 기관임
-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공기관은 식품안전정보원 등 5개 기타공공기관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보건복지부(2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힌국사회보장정보원
	기타공공기관(24)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5)	기타공공기관(5)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33)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41,228명

-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8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0,528명
- ○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5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700명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보건복지부 (2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연금공단	7,396	7,461	7,521	7,596	7,42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	국민건강보험공단	16,145	16,081	16,326	16,340	15,9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630	3,725	3,971	4,032	3,93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734	739	747	740	748
	기타공공기관 (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85	388	402	423	4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0	164	173	183	18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54	261	271	279	27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51	157	159	165	164
		국립암센터	1,980	2,033	2,074	2,165	2,155
		대한적십자사	4,294	4,295	4,295	4,375	4,36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30	132	132	143	147
		한국장애인개발원	305	327	345	397	38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92	96	96	99	1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90	90	90	92	90
		국립중앙의료원	1,439	1,631	1,734	1,815	1,82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58	161	161	164	16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73	144	144	156	15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12	412	412	412	392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42	443	442	442	442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07	107	107	112	112
		한국한의약진흥원	151	158	159	146	14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80	69	69	75	75
		국가생명윤리정책원	56	65	68	77	77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65	65	66	65	65
		아동권리보장원	63	149	164	168	171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3	43	89	103	104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25	37	60	119	119
		한국보육진흥원	371	375	375	367	368
	소계		39,321	39,808	40,652	41,250	40,528
식품의약품안전처 (5)	기타공공기관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42	254	265	269	263
		식품안전정보원	99	103	115	117	11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01	107	117	117	117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86	62	68	68	6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3	23	23	48	140
	소계		551	549	588	619	700
합계			39,872	40,357	41,240	41,869	41,228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로 총 4개 기관임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양호이상(A~B) 등급을 받아오다 2022년 미흡(D)등급으로 하락하였으나 2023년 평가에서 다시 양호(B)등급을 받음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건복지부(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연금공단	경평결과	B	C	B	B	B
			경평성과급	3,006	4,283	4,737	4,764	4,47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평결과	A	A	C	B	B
			경평성과급	1,383	1,631	1,677	813	1,89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평결과	A	A	A	B	C
			경평성과급	1,824	1,559	1,457	1,730	1,55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경평결과	B	B	A	D	B
			경평성과급	1,435	1,108	1,070	1,348	404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3개

-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2개 기관이며, 등급이 하락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년 연속(2020~2023년) 4등급을 받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보건복지부(1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국민연금공단	2	2	2	2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국민건강보험공단	1	1	1	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3	3	2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4	4	4	4
	기타공공기관(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3	4	4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	3	-	3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4	3	3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	4	3
		국립암센터	3	3	3	2	-
		대한적십자사	5	4	2	2	2
		한국장애인개발원	3	3	-	-	-
		국립중앙의료원	3	4	3	2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	3	-	-	-
		한국보육진흥원	-	-	3	3	-
식품의약품안전처(1)	기타공공기관(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	3	-	3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민건강보험공단

2-1.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23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 총액은 32조 1,676억원임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18년 및 2019년 결산상 잉여금 손실로 적립금 누적액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발생

- 건강보험은 2023년 적립금 누적액이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강보험	결산상 잉여금	△32,922	△29,162	15,037	27,718	48,717	15,690
	적립금 누적액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79,977
장기요양	결산상 잉여금	△6,661	△6,911	1,470	10,313	17,059	13,199
	적립금 누적액	10,997	4,136	4,475	13,563	28,063	41,699
누적 적립금 총액		216,952	181,848	178,656	215,973	266,764	321,67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주요 쟁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4.21%로 타 연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함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적립금 운용은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형 상품, 채권 등 안정적 자산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특성이 있음

○ 국민연금의 2023년 운용수익률은 13.59%, 공무원연금의 2023년 운용수익률은 10.2%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강보험	2.73	2.19	1.70	1.66	2.20	2.28	1.91	1.22	2.15	5.00
장기요양	2.81	2.17	1.78	1.68	1.96	1.99	1.41	1.18	2.54	4.2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용하는 적립금 규모는 증가할 전망

○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2023년 20조원 수준이고, 중장기 자산 적립금 운용 규모가 최근 지속적으로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5년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가 31조 1,01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운용 평균잔액]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강보험	118,410	157,535	193,164	210,137	215,183	203,759	167,697	181,802	195,647	213,130
장기요양	22,449	23,894	25,103	23,210	18,730	12,584	10,309	16,590	29,111	44,25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을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부서의 전문가 채용비율이 저조하므로 적립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 채용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적립금 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부(총괄 1인 외 10명)에서 담당하며, 부서의 구성은 일반직(행정) 9명, 경력직 2명으로 이루어짐

○ 특히 자금운용을 담당하는 6인 모두 일반직(행정)으로 구성하고 있어 전문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1)]

1) 다만 공단은 자금운용 담당 직원 6인 중 5인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채권 및 대체투자 등 외부 운용기관에 운용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전문 분야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임

2-2.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건강보험 재정 투입 현황

가. 현 황

❑ 정부는 2024.2.6. 「의사인력 확대 방안」[1] 발표 이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 중임

○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2.19.)

-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2.28.)하였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는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3.6.)[2][3]
-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5.28.)[4]

○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3.7.)을 마련하였고,[5] 해당 지원대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 의결되고 있음(2024년 9월 기준)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

2)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

3)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비상진료대책 철저히 이행해 국민건강 보호", 보도자료 2024.3.6.

4)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

5)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위해 3월부터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 추가지원", 보도자료, 2024.3.7.

❑ 정부의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② 의료인력 재배치 지원, ③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으로,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항목은 아래 10개 항목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항목별 내용]

지원항목	지원 내용
1. 응급진료체계 유지지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집단행동 기간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 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응급 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한시적 수가 신설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가산율 한시적 확대(50%→100%)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2. 경증환자 회송지원	
회송료 한시 인상	상급종합병원 및 시범사업 참여 2단계 진료기관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30%→50% 한시적 인상
3.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가산 - 대상기관 및 가산율 한시적 확대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	비상진료 기간 중에도 중증환자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 대하여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사후보상 지원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집단행동 기간 중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중환자실 병동에 정책가산 지원
4. 일반 입원진료 지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병동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동에 정책가산 지원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수가 한시적 인상

자료: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2024.6.7.)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정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바, 지원방안 10개 항목에 대하여 2024년 2~7월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총 4,623억원이며, 지원방안이 연장됨에 따라 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10개 지원항목 중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 항목의 경우 사후보상 지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청기관에 한해 2022년 청구실적을 활용하여 2개월분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상진료 기간 종료 후에 사후보상액을 산출하여 상계정산할 예정으로 추가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음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10개 추진 항목별 건강보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원항목	진료비
합계		4,623
2024-07-18 심사차수 반영	1. 응급진료체계 유지지원	560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487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34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	38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0.5
	2. 경증환자 회송지원	76
	회송료 한시 인상	76
	3.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2,720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378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1)]	2,235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08
	4. 일반 입원진료 지원	1,267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243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25

주: 1) 사후보상 지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신청기관에 한해 '22년 청구실적 활용하여 2개월분 우선 지급(비상진료 기간 종료 후 사후보상액 산출, 상계정산 예정)

1. 기간: 2024년 2~7월 진료분 … '24.7.31.(금) 지급분까지 반영 (발췌일자: '24.8.5.(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자료

2-3.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규정인 「직원대여금 운용요령」 제4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294명, 지원금액은 3,395,480천원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046	1,104	1,370	1,284	382	294
지원금액	23,151,770	26,759,460	34,388,350	27,904,940	4,434,800	3,395,480
1인당 지원 한도	(~2021년) 직전년도 본인 퇴직금의 70% 이내 / (2022년~) 20,000					
관련 내부 규정	「직원대여금 운용요령」 제4조(대여금 종류, 용도 및 대상), 제5조(대여 상한), 제9조(이자) 등					
지원 요건 (2024.7. 기준)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의료비, 부채상환 등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대여 익월부터 월별 균등 분할상환 (대여금액에 따라 5년~20년 이내 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0	1.99	1.34	0.93	2.10~5.34	3.51~5.04	3.56~4.60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에서야 비로소 한은 금리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2년 7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1,116명에 대해 여전히 0.93~3.51%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
-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415명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1,116	0.93~3.51	25,643,410	개정(2022.7.7.)	415	16,905,440	개정(2022.7.7.)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4.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64명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5,794	164	29	0	41	0	35	59	8	31	5	4	0	4	10	106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8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19.4.25.	금품 수수	300	감봉 3월	X
2019.7.23.	금품 수수	500	파면	
2021.1.6.	금품 수수	170,000	파면	
2021.2.9.	금품 수수	5,600	파면	
	금품 수수	1,200	정직 3월	
2021.6.28.	금품 수수	추정 불가	해임	
2022.9.30.	금품 수수	40,000	파면	
2022.10.11.	공금 횡령	4,600,000	파면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대한적십자사

3-1. 헌혈환급예치금 적립금 적정성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혈액관리법시행령」 제9조,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등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을 위탁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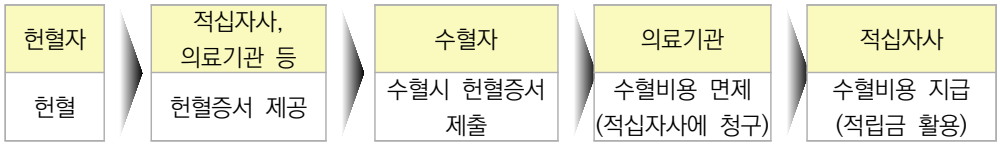
○ 헌혈환급예치금은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

- 헌혈 1건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및 의료기관에서 일정 금액(전혈 및 성분헌혈 1건당 1,500원)을 헌혈환급예치금(혈액수가)으로 적립하고, 이 예치금에서 수혈자가 헌혈증서로 면제받은 혈액 가격을 병원에 지급
- 헌혈환급예치금(혈액수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결정되며, 건당 예치금 적립금은 2019년 1월 이후로 1,500원으로 유지[1)]

○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된 헌혈환급적립금은 「혈액관리법」 제15조에 따라 ① 수혈비용의 보상 ② 헌혈의 장려 ③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 헌혈증서 발급 및 수혈비용보상은 헌혈자 또는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으며, 헌혈증서를 제출한 환자에게 무상수혈을 해준 의료기관은 헌혈환급적립금에서 해당 수혈비용을 보상받음

[헌혈환급예치(적립)금 주요 흐름]



자료: 대한적십자사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당 예치금 적립액은 1,000원('81.11.) → 1,500원('03.1.) → 2,000원('05.12.) → 2,500원('07.3.) → 1,500원('19.1.)으로 변동되었음

나. 주요 쟁점

❑ 2023년 기준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은 548억 7,100만원으로 2010년(45억 7,100만원) 대비 503억원 증가

○ 헌혈환급적립금은 매년 10억원 ~ 50억원 수준의 잉여금 발생[2)]

- 2019년부터 건당 적립예치금을 2,5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춰 2018년 86억 6,200만원에서 2019년 54억 5,700만원으로 수입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으나 점차 회복

○ 헌혈환급적립금의 주된 사용처인 수혈비용보상은 2010년 30억 3,500만원에서 2023년 19억 4,900만원으로 감소

○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 증가는 수혈비용보상액의 지속적 감소,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헌혈 장려, 혈액관리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사용 금액이 미미함에 기인함

[연도별 헌혈환급적립금 수입 및 비용(2010~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4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 합계(A)	6,559	9,503	8,662	5,457	4,959	5,164	5,375	6,592
헌혈환급적립금	6,593	7,840	7,704	4,488	4,236	4,248	4,311	4,564
그 외 수입	20	1,663	958	969	723	916	1,064	2,028
비용 합계(B)	3,193	3,860	3,030	2,784	7,431	3,962	2,460	2,411
수혈비용보상	3,035	2,018	2,065	2,332	1,929	1,944	1,692	1,949
그 외 비용(연구비 등)	158	1,842	965	452	5,502	2,018	768	462
수입-비용(A-B)	3,366	5,643	5,631	2,673	△2,472	1,202	2,915	4,181
누적 잔액(누적 잉여금)	4,571	23,487	46,372	49,045	46,573	47,775	50,690	54,871

주: 헌혈환급적립금 = 예치금 납부 대상건수(헌혈증서 발급건수 + 복합성분채혈건수 - 부적격혈액 판정건수) × 건당 적립단가, 복합성분채혈의 경우 헌혈증서는 1매가 발급되지만 2개의 성분채혈제제가 발생되므로 헌혈환급예치금 1건을 추가 적립함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로 헌혈량이 급감하여 헌혈장려를 위한 TV광고비 지출에 따른 비용 발생

❑ 수혈 관련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및 실손보험의 가입률 증가에 따라 헌혈증서 사용률 급감

○ 건당 1,500~2,500원을 적립하는 헌혈증서 발급 등에 따른 예치금 납부 대상 건수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91만 9,000건 발생하였으나 동기간 헌혈증서 사용건수는 420만 7,000건에 불과

○ 예치금 납부 대상 건수 대비 헌혈증서 사용 건수 비율인 헌혈증서 예치금 환급률은 2010년 15.4%에서 2023년 7.1%로 낮아지는 추세

- 비급여였던 수혈 관련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대되고, 가입자가 급증한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수혈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 환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연도별 헌혈환급예치금 적립액 및 사용액(2010~2023)]

(단위: 백만원, 천건)

구분	2010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헌혈환급예치금 적립액(a×b)	6,539	7,840	4,488	4,236	4,248	4,311	4,564	87,728
예치금 납부 대상 건수(a)	2,616	3,136	2,992	2,824	2,832	2,875	3,043	40,919
건당 예치금 적립액(원)(b)	2,500	2,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헌혈환급예치금 사용액(c×d)	3,035	2,018	2,332	1,929	1,944	1,692	1,949	31,046
헌혈증서 사용건수(c)	404	310	305	254	247	204	216	4,207
건당 예치금 사용액(원)(d)	7,515	6,504	7,649	7,598	7,872	8,280	9,014	-
적립액-사용액	3,504	5,822	2,156	2,307	2,304	2,619	2,615	56,681
헌혈증서 예치금 환급률(c/a)	15.4%	9.9%	10.2%	9.0%	8.7%	7.1%	7.1%	-

주: 1. 합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총합계
2. 건당 예치금 적립액은 1,000원('81.11) ⇒ 1,500원('03.1) ⇒ 2,000원('05.12) ⇒ 2,500원('07.3) ⇒ 1,500원('19.1) (보건복지부 고시)
3. 헌혈환급예치금 적립액 = 예치금 납부 대상건수(헌혈증서 발급건수+복합성분채혈건수-부적격혈액 판정건수) × 건당 적립단가(복합성분체혈의 경우 헌혈 증서는 1매 발급되나 2개의 성분체혈제제가 발생되므로 헌혈환급예치금 1건을 추가적립함)
4. 건당 예치금 사용액은 수혈한 혈액 종류에 따라 수혈비용 보상금액이 달라짐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건강보험의 재정상태와 헌혈환급적립금 수준을 고려한 헌혈환급예치금 재검토 필요

○ 헌혈환급적립금의 수혈비용보상 외 사용은 법에 정해진 용도로만 가능하며, 헌혈의 장려, 혈액관리 관련 연구 등에 사용함에 따라 연도별 예치금 적립금은 증가하고 있음

- 수혈비용 보상 외 사용 금액은 2020년 및 2021년 헌혈증진캠페인 TV 광고료로 인한 헌혈장려비의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2010년 1억 5,400만원에서 2023년 4억 6,200만원 수준

[연도별 헌혈환급적립금의 수혈비용 보상 외 세부 사용내역(2010~2023)]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혈액 연구비	-	158	65	174	322	109	268
헌혈장려비	-	-	179	5,090	1,576	-	-
혈액관리업무 전산화 지원	-	1,200	-	-	-	-	-
경상비(헌혈증서 제작비 등)	154	174	109	103	120	659	194
합계(a)	154	1,532	353	5,367	2,018	768	462
연도별 예치금 적립액(b)	6,539	7,840	4,488	4,236	4,248	4,311	4,564
비율(a/b)	2.4	19.5	7.9	126.7	47.5	17.8	10.1

주: 합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총합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헌혈환급금예치금(혈액수가)은 종국적으로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함

- 건강보험 재정은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출 증가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3)]

○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인한 적립금의 규모를 적정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 대비 보험료 수입 정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를 제기함

3-2. 안정적 혈액 공급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대한적십자사는 「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적혈구 제제 보유일수[1]를 기준으로 혈액재고를 관리함

○ 보유일수 기준 5일 이상 '적정' 혈액 재고 보유, 5일 미만의 경우 1일 혈액 보유일수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혈액 수급 위기단계 판단기준]

구분	혈액보유량 (적혈구제제)	내용
적정	5일분 이상	
관심	5일분 미만	혈액보유량 부분적 부족 징후
주의	3일분 미만	부분적 혈액보유량 부족
경계	2일분 미만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악화 확대 및 혈액보유량 부족 확대
심각	1일분 미만	혈액수급 비상

자료: 대한적십자사

나. 주요 쟁점

❑ 대한적십자사의 2010년 이후 2024년 7월까지 연도별 평균 보유일수는 2010년 7.8일에서 2024년 7월 5.9일로 감소추세

○ 특히 코로나19 발생 기간으로 볼 수 있는 2020년~2022년 감소 폭이 컸으며 엔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회복하였으나 2024년의 경우 의정갈등 등 수요량 감소에 따른 보유일수 유지로 볼 수 있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혈액 보유일수 산정방식

$$1일\ 혈액\ 보유일수 = \frac{미검포함\ 적혈구제제\ 보유량(해당일\ 00시\ 기준)}{해당\ 연도\ 1일\ 혈액\ 소요량}$$

1일 혈액 소요량 산출식 = 전년도 1일 혈액 소요량 + 이전 3년간 평균 증감량

- 2024년의 경우 의정갈등에 따른 혈액 수요량 감소가 혈액 보유일수 유지에 반사적인 영향을 미침
- 적정 혈액 재고인 5일 이상의 혈액을 보유한 일자의 각 연도별 비중도 2021년 10.4%까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24년 7월 기준 81.9%의 비중을 나타냄

[연도별 평균 혈액 보유일수]

(단위: 일, %)

연도	평균 보유일수	적정 (5일 이상)	관심 (5일 미만)	주의 (3일 미만)	경계 (2일 미만)	심각 (1일 미만)
2010	7.8	307(84.1)	58(15.9)	-	-	-
2011	7.8	81(22.2)	236(64.7)	48(13.2)	-	-
2012	4.3	188(51.4)	162(44.3)	16(4.4)	-	-
2013	5.1	281(77.0)	82(22.5)	2(0.5)	-	-
2014	6.6	306(83.8)	59(16.2)	-	-	-
2015	6.4	198(54.2)	163(44.7)	4(1.1)	-	-
2016	5.3	131(35.8)	180(49.2)	55(15.0)	-	-
2017	4.4	161(44.1)	204(55.9)	-	-	-
2018	5.4	97(26.6)	257(70.4)	11(3.0)	-	-
2019	4.5	61(16.7)	302(82.7)	2(0.5)	-	-
2020	4.3	85(23.2)	268(73.2)	13(3.6)	-	-
2021	4.3	38(10.4)	326(89.3)	1(0.3)	-	-
2022	4.1	254(69.6)	111(30.4)	-	-	-
2023	6.1	242(66.3)	123(33.7)	-	-	-
2024.7	5.9	149(81.9)	33(18.1)	-	-	-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대한적십자사

❑ 헌혈실적 및 인구감소에 따른 헌혈가능 인구는 지속적 감소 추세

○ 헌혈 실적이 2015년 308만 3,000건에서 2021년 260만 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소폭 상승세이나, 헌혈가능인구는 감소추세임

○ 헌혈 실적 감소와 함께 총인구 대비 헌혈 건수도 2015년 6.0%에서 2023년 5.4%로 0.6%p 감소, 헌혈가능 인구 대비 헌혈율도 2015년 7.9%에서 2023년 7.1%로 0.8%p 감소, 헌혈가능인구 대비 실제 헌혈자수 비율도 2015년 4.0%에서 2023년 3.1%로 0.9%p 감소

[연도별 헌혈자 현황]

(단위: 천건, 천명, %, %p)

연도	총헌혈 실적 (A)	총인구 (B)	헌헐율 (A÷B)×100	헌혈가능 인구 (C)	헌혈가능 인구대비 헌혈률 (A÷C) ×100	실 헌혈자수 (D)	실제국민 헌혈률 (D÷C) ×100
2015(A)	3,083	51,529	6.0	39,244	7.9	1,573	4.0
2016	2,866	51,696	5.5	39,462	7.3	1,497	3.8
2017	2,929	51,779	5.7	39,488	7.4	1,453	3.7
2018	2,883	51,826	5.6	39,460	7.3	1,395	3.5
2019	2,791	51,850	5.4	39,428	7.1	1,351	3.4
2020	2,611	51,829	5.0	39,383	6.6	1,210	3.1
2021	2,604	51,639	5.0	39,241	6.6	1,200	3.1
2022	2,649	51,439	5.1	38,971	6.8	1,241	3.2
2023(B)	2,776	51,325	5.4	38,873	7.1	1,209	3.1
차이(B-A)	△307	△204	△0.6	△371	△0.8	△364	△0.9

주: 1. (A)총헌혈실적: 적십자 + 한마음 + 의료기관 헌혈실적
2. (B)총인구: 통계청 - 주민등록인구현황
3. (C)헌혈가능인구: 만16-69세 인구

자료: 대한적십자사

❑ 헌혈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적혈구 제제 수요에 대응하여 헌혈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헌혈 가능 인구와 실 헌혈자 감소에 따라 헌혈 건수는 2020년 196만 4,633건에서 2030년 195만 7,910건으로 6,723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혈액 수요는 2020년 187만 6,050건에서 2030년 204만 3,232건으로 16만 7,182건 증가 예측

[중장기 혈액(수혈용 적혈구 제제 기준) 수급 전망(2020~2030)]

(단위: 건)

구분		헌혈량 (A)	수요량 (B)	차이 (A-B)
실적	2020(a)	1,964,633	1,876,050	127,759
	2021	1,977,098	1,849,803	192,488
	2022	1,998,108	1,821,156	285,675
	2023	2,023,490	1,974,650	48,742
예상	2024	1,981,437	2,012,708(1,920,123)[1)]	△31,271(61,314)[1)]
	2025	1,976,809	2,022,858	△46,049
	2026	1,972,564	2,028,890	△56,326
	2027	1,974,483	2,032,488	△58,005
	2028	1,971,756	2,035,444	△63,688
	2029	1,967,893	2,037,767	△69,874
	2030(b)	1,957,910	2,043,232	△85,322
차이(b-a)		△6,723	167,182	△213,080

주: 1) 의정갈등 지속시 수요량 4.6% 감소
1. 헌혈량은 통계청 연령별 추계인구에 헌혈방법별, 연령별 헌혈률을 분석하여 산정
2. 수요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보험수가가 적용된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

자료: 대한적십자사

❑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혈액 자급율을 고려하여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3-3. 원폭피해자복지사업 관리비의 해당 사업 관련 사용 필요

가. 현 황

❑ 대한적십자사는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 등 지원사업 위탁수행

○ 한국정부(보건복지부)와 일본정부의 양국합의에 따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2019~2023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금액은 한국정부의 경우 매년 40~50억원 수준이며, 일본정부는 매년 200억원 수준의 지원금 지급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의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정부지원	4,921	4,605	4,779	4,918	4,690
일본정부지원	21,261	21,470	20,912	19,392	17,858
합계	26,182	26,075	25,691	24,310	22,548

자료: 대한적십자사

❑ 일본정부는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에 대한 원호수당 등 지원, 한국정부는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등 지원

○ 일본정부는 일본에서 피폭자로 인정한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원호수당, 유족장례비, 보건의료비, 건강검진 비용 등 지원

○ 한국정부는 국내에서는 원폭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일본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건강검진비, 장례비등을 지원

- 이외에 한국정부는 전체 피폭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등의 진료보조비, 원폭피해자 중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한 합천회관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내역]

구분	한국정부	일본정부
진료비 (보건의료비)	○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진료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 1) 연간상한액(30만엔, 약 269만원) 이내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 전액 지원 2) 연간상한액 초과할 경우 일본 의료수가 재산정하여 지원
장례비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사망시, 유족에게 '24년 기준 장례비 210만원 지원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 사망시, 유족에 '24.4월 기준 장례비 215천엔(약 190만원) 지원
건강검진비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연1회 35만원)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연1회 35만원)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전원에 매월 10만원 지원(단, 회관 입주자는 5만원)	-
원호수당	-	4종 중 질병의 유무 및 경중에 따라 월정액 수령 1종 수령(중복수령 불가) - 의료특별수당(150,020엔, 약 140만원) - 특별수당(55,400엔, 약 50만원) - 건강관리수당(36,900엔, 약 33만원) - 보건수당(18,500엔, 약 17만원)
합천복지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전액(약 20억원)	-
행정지원	-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 도일치료, 건강상담사업, 원폭증 인정 신청 지원 등) 희망자에 한해 지원

자료: 대한적십자사

❑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지원대상자는 2023년 기준 1,763명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음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의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대상]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정부지원 (피폭자건강수첩미소지자)	55	52	47	43	37
일본정부지원 (피폭자건강수첩소지자)	2,118	2,041	1,945	1,833	1,726
합계	2,173	2,093	1,992	1,876	1,763

자료: 대한적십자사

나. 주요 쟁점

❑ 대한적십자사의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사업과 관련한 반환의무 없는 미사용 잔액 23억 3,000만원에 대한 적정 활용방안 마련 및 관련 용처 사용 필요

○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일본 정부 지원금액은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 사업비와 잔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는 기관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구분

- 한국정부 지원금의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남은 잔액 전액 반환

○ 동 사업의 매년 반환하지 않는 관리비의 누적액은 2024년 7월 기준 23억 3,000만원

- 2019년 1억 6,300만원에서 2024년 7월 기준 2억 5,300만원 수준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사업 연도별 수입·지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일본정부	사업비(반환)	수입		20,702	21,037	20,370	18,771	17,488	10,217
		지출		20,702	21,037	20,370	18,771	17,488	10,217
		반환		641	252	588	489	530	649
	관리비(미반환)	수입(A)		722	724	663	706	674	532
		지출(B)		559	433	542	621	370	279
		준비금	이입액(A-B)	163	291	121	85	304	253
			잔액 누계	1,636	1,628	1,925	2,001	2,045	2,330
	소계	수입		21,424	21,761	21,033	19,477	18,162	10,749
		지출		21,261	21,470	20,912	19,392	17,858	10,496
한국정부(반환)		수입		4,921	4,605	4,779	4,918	4,690	3,406
		지출		4,921	4,605	4,779	4,918	4,690	3,406
		반환		-	-	-	-	-	-
합계		수입		26,345	26,366	25,812	24,395	22,852	14,155
		지출		26,182	26,075	25,691	24,310	22,548	13,902
		반환		641	252	588	489	530	649

자료: 대한적십자사

❑ 준비금 잔액 관련 사용처는 본부 사무실환경개선,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일본적십자사방문 출장 비용 등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음[1)]

○ 대한적십자사는 일본정부사무비재원의 사용에 대해 내규에서 사업발전준비금으로 사용할 것과 일부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금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2)]

1)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일본 정부의 사무비 재원으로 조성된 준비금은 매년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어 본부의 사무실 환경개선비용 사용은 타당하며, 일본 적십자사 방문 출장 비용 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본정부와의 협업 제고를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2)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재무운영내규」
제4조(결산상 준비금 처리) ② 일본정부원폭피해자재원은 업무계약서에 의해 처리한다.
③ 일본정부사무비재원은 일부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 그러나 상기 준비금은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금에서 적립된 금액인 만큼 해당 사용처를 원폭피해자지원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준비금 잔액 사용처]

(단위: 천원)

구분	사용처	내역	금액
2019	합천원폭피해복지회관	행복더하기 김장행사	20,000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본부 법률자문수수료	3,190
202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코호트격리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원	30,000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코로나19감염예방용품세트지원	142,920
2022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중장기 미래발전전략수립연구용역	45,500
2023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본부 백서 발간 용역	33,117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청와대초청 재일원폭피해자 고향방문건강검진	7,662
2024.7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본부 사무실환경개선	17,696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 일본적십자사방문 출장	1,503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7조의4(사업발전준비금) ① 본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발전준비금을 설정하고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발전준비금은 매 회계연도의 사무비수입예산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3-4. 활용도 낮고 자본잠식된 콘도회원권 처리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대한적십자사는 2024년 7월말 기준 5개 콘도의 77개 구좌에 대해 장부가액 6억 8,700만원의 콘도 회원권 보유

[대한적십자사 보유 콘도 회원권 세부내역]

(단위: 구좌, 백만원)

콘도명	구좌수	취득가액	장부가액
한화콘도	8	207	199
대명콘도	2	48	42.4
일성콘도	63	472	373.9
ES리조트	1	59	59
토비스	3	27	13.0
합계	77	813	687.3

자료: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 직원의 콘도 회원권 이용률 저조

○ 취득가액 4억 7,200만원인 일성콘도의 경우 연간 이용률이 2019~2023년간 1~4%로 매우 저조, 토비스의 경우 동기간 이용률이 0~3%이며, ES리조트의 경우에도 2022년 및 2023년 이용률이 37~38%로 저조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대한적십자사 보유 콘도 회원권 이용률 현황]

(단위: 구좌, 백만원, 일, %)

콘도명	구좌	취득 가액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한화콘도	8	207	사용가능일수	438	438	438	288	200	200
			사용일수	318	201	140	171	122	65
			이용률	73	46	32	59	61	33
대명콘도	2	48	사용가능일수	60	60	60	60	60	60
			사용일수	95	92	61	91	77	35
			이용률	158	153	102	152	128	58
일성콘도	63	472	사용가능일수	1,890	1,890	1,890	1,890	1,890	1,890
			사용일수	79	25	14	18	19	21
			이용률	4	1	1	1	1	1
ES리조트	1	59	사용가능일수	60	60	60	60	60	60
			사용일수	50	51	32	22	23	11
			이용률	83	85	53	37	38	18
토비스	3	27	사용가능일수	36	36	36	36	36	36
			사용일수	1	0	0	0	0	0
			이용률	3	0	0	0	0	0

자료: 대한적십자사

나. 주요 쟁점

❑ 대한적십자사는 이용률이 낮은 콘도회원권 중심으로 매각 진행 중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회원권은 계약해지 추진 중임

○ 등기매입 회원권인 일성콘도 26구좌 및 토비스 3구좌는 자산 매각 추진

- 2018년 3차례 공고, 2019년 4차례 공고하였으나 유찰,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4차례, 2023년 14차례 공고하였으나 유찰

[해약 및 매각추진 중인 콘도회원권 현황]

(단위: 구좌, 백만원)

구분	취득 기관	취득방식	취득가액	구좌수	현황
일성콘도	부산지사	회원권	47	6	해약진행 ('24.8.)
	경기지사	회원권	40	5	
	혈액수혈연구원	회원권	31	2	
	서울남부혈액원	회원권	93	6	
	강원혈액원	회원권	50	10	
	대전충남혈액원	회원권	40	5	
	전북혈액원	회원권	24	3	
	대구경북혈액원	등기매입	44	8	매각추진 중
	인천혈액원	등기매입	43	8	
	경기혈액원	등기매입	60	10	
토비스	혈장분획센터	등기매입	13	3	

주: 등기매입 회원권은 부동산 지분을 보유한 형태, 회원권은 계약기간 동안 시설이용권임
자료: 대한적십자사

○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결과(2023년 9월), 일성콘도 회원권 26구좌에 대한 취득가액은 1억 4,700만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금액은 70.8% 하락한 4,290만원으로 평가

[감정평가 실시 결과(2023.9)]

(단위: 구좌, 백만원)

구분	구좌수	취득가액 (a)	감정평가액 (b)	차이 (b-a)	비율 (b-a)/a
일성콘도	26	147	42.9	△104.1	△70.8
토비스	3	13	4.5	△8.5	△65.4

주: 2024년 매각을 위해 2024년 8월 감정평가 진행 중(2024.9.5. 기준일로 감정평가 예정)
자료: 대한적십자사

❑ 계약기간 만기 도래로 보증금 반환 예정인 일성콘도 37구좌는 보증금 회수 예정이나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일성콘도 운영 회사의 연도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업은 지속적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2023년 기준 자본이 △1,604억원 결손인 상황

- 해당기업의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1)]

[일성콘도 운영 기업(일성레저산업)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자산	74,134	73,928	75,532
부채	222,087	230,072	235,894
자본	△147,953	△156,144	△160,362
당기순이익	△8,637	△4,203	△4,218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상 해당 기업 감사보고서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대한적십자사는 이용률이 낮고 자본잠식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콘도회원권의 처리 방안 마련 필요

○ 매각 추진 중인 콘도회원권의 지속적 유찰, 계약해지 추진 중인 콘도회원권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유사 자산 매입시 신중한 검토 필요

1)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023년말 현재 유동부채가 189,075백만원이고 유동자산이 3,406백만원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85,669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3-5.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직원보수운영규정」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4,370명의 임직원에게 총 11,300,954천원을 지급

[대한적십자사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B	4,375	-	8,871,508	8,871,508
2023	C	4,365	-	9,265,009	9,265,009
2024	C	4,370	-	11,300,954	11,300,954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대한적십자사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3.4%에 불과하는 등 지급 인원 비율의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내부	12	134	23	110	32	100	26	90	7	66	-	-
2023	내부	14	134	15	110	42	100	20	90	9	66	-	-
2024	내부	3	134	22	110	3	100	29	90	10	66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대한적십자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6.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대한적십자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9명임

[대한적십자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365	19	11	0	28	0	18	34	1	11	11	0	0	12	8	53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상기한 내용 중 일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바,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대한적십자사에서 2019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7회의 징계위원회 중 1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대한적십자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징계처분 결과	위원 수 (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 (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 (B/A)
2022.10.14.	성희롱	강등	6	4	2	66.7
2022.11.3.	성추행	정직 1월	6	1	5	16.7
2023.1.16.	성희롱	정직 3월	6	2	4	33.3
2023.10.5.	성추행, 성희롱	강등	6	3	3	50.0
2024.1.4.	성희롱	강등	6	3	3	50.0
2024.4.2.	성추행	해임	6	4	2	66.7
2024.5.25.	성희롱	해임	6	3	3	50.0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대한적십자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1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대한적십자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2.2.17.	공금 횡령	횡령 4,336/ 유용 9,633	파면	X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1.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 운영 관리 철저

가. 현 황

❑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육강사 양성·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수행하며, 2024년 사업규모가 크게 증가함

- ○ 대국민 예방교육의 2024년도 예산은 47억 5,200만원으로 2023년(2억 6,100만원) 대비 44억 9,100만원으로 1,721% 증가
- ○ 교육 목표인원도 2024년 202만명으로 2023년 31만 377명에서 170만 9,623명으로 551% 증가

[2024년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명, 건, %)

연도	예산	교육 목표인원	
		인원	건수
2022	260	208,497	5,644[1)]
2023(A)	261	310,377	8,750[1)]
2024(B)	4,752	2,020,000	32,150
증감(B-A)	4,484	1,709,623	23,400
증감율((B-A)/A)	1,721	551	267

주: 1) 실제 실시 건수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주요 쟁점

❑ 대국민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철저한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관리 필요

○ 대국민 예방교육의 2024년도 예산(47억 5,200만원)은 2023년(2억 6,100만원) 대비 18배 증가하였으며 교육 목표 인원도 전년 대비 6.5배 증가

○ 사업 규모가 확대되기 전인 2023년에는 8월까지 67%의 예산을 소진하였으나 2024년 8월은 42%의 예산을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

- 특히 교육 목표인원 증가가 가장 크게 설정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은 방학을 제외한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국민 예방교육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집행액(결산)	집행률	누적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누적집행률
예산	251	-	-	4,742	-	-
집행계	251	100.0		2,013	42.45	
1월	4	1.56	1.56	4	0.08	0.08
2월	10	4.03	5.59	30	0.64	0.72
3월	8	3.09	8.68	112	2.36	3.08
4월	24	9.56	18.24	226	4.77	7.85
5월	20	7.95	26.19	296	6.24	14.09
6월	21	8.46	34.65	380	8.02	22.11
7월	36	14.43	49.08	562	11.86	33.97
8월	44	17.54	66.62	403	8.4	42.37
9월	16	6.18	72.8	-	-	-
10월	15	6.13	78.93	-	-	-
11월	21	8.56	87.49	-	-	-
12월	31	12.51	100.0	-	-	-

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교육 사업이 시작되는 1월부터 3월까지 교육 강사 확보, 강의 교재 표준화, 강의 계획 수립 등 교육 사업의 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교육은 4월부터 실시하여 초기의 예산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 및 예방교육 사업 추진 필요

○ 교육목표 인원 202만명 중 2024년 8월 말까지 91만 8,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45%의 목표를 달성

[대국민 예방교육 목표 및 교육 인원]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8	
					건수		건수
예방교육 목표 인원(A)		160,383	208,497	310,377	8,750	2,020,000	19,930
오프라인 교육	유아 및 청소년	251,287	316,238	575,040	6,807	715,446	15,596
	취약계층	9,700	9,525	12,989	802	36,187	1,101
	성인	7,453	11,157	43,812	770	51,956	2,365
	전문인력	1,278	3,186	9,941	166	35,778	481
	기타프로그램 (체험형교육 등)	295	19,485	27,970	204	66,550	387
	소계	270,013	359,591	669,752	8,750	905,917	19,930
온라인 교육		5,369	6,010	22,033	-	12,513	-
합계(B)		275,382	365,601	691,785	-	918,430	-
목표 대비 실적(B/A)		171.7	175.3	222.9	-	45.5	-

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2024년 8월 말 기준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지부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지부별 목표달성율은 인원수 기준으로 19%에서 77.9% 수준이며, 교육 실시 건수 기준으로 27%에서 183% 수준으로 지부별로 달성율에 차이가 있음
- 향후 지역별 교육 수요 특성과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하면서 연내 사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별 교육실시 현황]

(단위: 건, 명, %)

지부	누적 실적 현황			목표 달성률	
	교육 (a)	인원 (b)	교육 건당 명수 (b/a)	교육	인원
서울	1,416	109,058	77	29.9	36.0
부산	789	76,024	96	44.8	67.5
대구	1,079	68,188	63	75.7	74.8
인천	1,144	52,585	46	63.6	45.7
광주전남	1,397	57,769	41	67.8	43.8
대전	670	34,370	51	73.0	58.5
경기	4,164	226,113	54	47.7	40.4
충북	1,069	41,496	39	81.4	49.3
충남세종	2,515	48,867	19	183.0	55.6
전북	1,210	47,398	39	109.3	66.9
경북	829	35,976	43	55.6	37.7
경남	577	26,595	46	26.8	19.3
울산	489	21,407	44	64.7	44.2
강원	297	17,675	60	30.2	27.6
제주	167	6,094	36	76.6	42.9
본부	2,118	48,815	23	302.1	107.1
합계	19,930	918,430	46	63.2	45.5

주: 2024년 8월 말 기준
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필요

○ 예방교육 목표가 크게 증가한 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2024년 8월 말 기준 192만 3,196명 목표 인원 중 37%인 71만 5,44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아보다는 중고등학생의 교육 비율을 높이고, 온라인 교육 등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대국민 예방교육 유아 및 청소년 교육목표 및 실적]

(단위: 명, %)

구분	교육대상	목표인원(추계)	교육인원(실적)	
			교육인원	목표 대비 실적
유아	552,812	182,428	30,836	16.9
초등	2,664,278	879,212	306,272	34.8
중등	1,348,428	444,981	221,951	49.9
고등	1,262,348	416,575	156,387	37.5
소계	5,827,866	1,923,196	715,446	37.2

주: 1. 교육대상은 2022년 표본 기준 추계인원
2. 목표인원은 교육대상의 33%
3. 2024년 8월 말 기준

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영 필요

○ 마약류 예방교육은 본부의 예방사업팀과 지역본부(13개, 이하 지부)에서 담당

○ 예방사업팀의 8명이 교육 대상별로 업무분장

- 예방사업팀 인력 구성은 대국민예방교육 사업에 포함된 인력 1명(2023년, 2024년 동일[2]), 기관운영비에 포함된 인력 4명으로 총 5인이 업무 담당
-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2024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사업인 마약류 예방 · 재활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 관리사업 인력 3명(계약직) 충원[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 현원(2024.7. 기준)]

(단위: 명)

국고(정규직)		위탁(계약직)	합계
대국민 예방교육	기관운영비		
1	4	3	8

주: 1. 기관운영비에 포함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인건비는 14명에 대한 인건비
2. 위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사업(강사양성 인증사업)의 인건비
3. 2024년 7월 말 기준

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 2024년 대국민 예방교육 담당직원 인건비 산출 근거(2023년과 동일)
담당직원 인건비(35백만원) : 기준연동 30백만원(248만원×**1명**×12개월), 사회보험료 2.6백만원(30백만원×9%), 퇴직연금 2.4백만원(30백만원×1/12)

3)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 지부는 관할 지역 내 대국민예방교육 사업과 사회재활사업[4] 일부를 수행

- 별도로 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지부별 1~4명의 인력이 예방 교육뿐 아니라 전화 예방상담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관련 지자체 용역사업 등의 업무까지 모두 수행함
- 2024년 신규 개소한 재활중독센터에서 채용한 정신건강전문요원 11명을 선제적으로 지부의 대국민 예방교육 업무에 투입[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13개소)]

(단위: 명)

지부	인원(담당)	지부	인원	지부	인원	지부	인원
서울	4	부산	1	대구	3	인천	2
대전	2	울산	1	경기	3	경기	2
충남	2	전북	2	광주전남	1	경북	1
경남	2						

주: (담당)은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자 현원
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업무과다, 낮은 급여 등의 이유로 퇴사율이 높은 편으로,[6][7] 단기적으로는 인력 재배치로 효율적 인력이 활용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전문성을 높여 예방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사회재활사업은 재범방지의무교육,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 보호관찰 수강명령자 재활교육 등

5) 재활중독센터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본부와 통합(일부 지부와 센터는 통합 진행 중)

6)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 보수는 5,650만원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3,250만원으로 평균대비 △43%

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예산안에 대국민 예방교육 운영 전문인력 13명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됨

4-2. 신규 중독재활센터 설치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신규로 14개소 설치

○ 최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특히 마약류 투약 사범의 증가로 마약류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약류 사용자 또는 중독자들에 대한 상담, 재활교육 등에 필요성 증가[1)]

○ 이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 재활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약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를 당초 운영 중인 3개소(중앙, 대전, 부산)를 포함하여 전국 17개소로 확대 추진

- 14개 신규 센터 입지는 지역별 인구 규모 및 마약류 사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9개 지역은 개소하였고, 5개 지역은 개소 준비 중임

○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역본부(이하 지부)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어 권역별로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개 지부 및 센터는 통합 완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범죄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위: 명, %)

구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투약)	소지	기타
2021	9	807	3,229	1,151	8,522	1,214	1,221
2022	6	1,392	3,492	1,712	8,489	1,032	2,272
2023	6	1,235	7,904	3,081	10,899	1,859	2,627

자료: 대검찰청「마약류 범죄백서」

[신규 마약중독재활센터 설치현황(2024.8. 기준)]

지역		개원시기	규모(m2)	위치	지부와 통합 현황
1	인천	'24.03.19	330.40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완료
2	경기	'24.07.01	228.16	수원시 팔달구	
3	강원	'24.07.01	232.95	강원도 강릉시	
4	울산	'24.07.08	314.94	울산광역시 중구	
5	충남	'24.07.08	235.30	충청남도 천안시	
6	충북	'24.07.15	239.45	충청북도 청주시	
7	경북	'24.07.15	228.52	경상북도 구미시	
8	대구	'24.08.05	379.08	대구광역시 수성구	
9	광주	'24.08.30	264.19	광주광역시 서구	
10	제주	(9월 中)	260.18	제주도 제주시	통합예정
11	전남	(10월 中)	226.45	전라남도 순천시	
12	경남	(10월 中)	199.59	경상남도 창원시	
13	전북	(10월 中)	263.88	전라북도 전주시	
14	서울	(9월 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료: 마약퇴치운동본부

나. 주요 쟁점

❑ 마약류 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인 서울에 신규 설치되는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센터 개소 과정상 문제 발생

○ 마약류 사범의 증가로 마약퇴치운동본부는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씩 14개 재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4년 8월 말 현재 9개 지역 센터는 개소를 완료함

○ 기존에 세종시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센터는 충남권역에 운영 중인 대전과 신규 개소할 충남(천안)과 중첩됨에 따라 마약류사범 점유율이 높은 서울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 변경된 서울 센터의 입지는 강동구로 2024년 2월 장소를 선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입지갈등으로 무산[2)]

- 당초 강동구에 개소 예정이었던 중독재활센터는 입지갈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에 입주하지 않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함
- 임대차 계약해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9월 강동구청의 임대차 계약 승계일까지 관리비 및 임차료 비용 총 2,058만원 발생[3)]

○ 이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중앙센터 1층에 서울 센터를 9월 중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전할 입지를 새롭게 선정할 예정

- 목표대로 연내에 개소하였으나 기운영 중인 중앙센터(서울시 영등포구)와 동일한 장소에 새로운 센터를 (임시)개소함에 따라 설치 지역 중첩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한 입지 선정 필요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신속한 개소를 통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새로운 입지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에 이전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향후 서울 센터 이전 등 신규 센터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음

---

2) 「교육환경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 설치는 법적 문제는 없었으나, 지역사회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거부감 및 편견에 따라 해당 지역 센터 설치가 무산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입지 갈등이 센터의 전국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안정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강동구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설명함

3) 총 4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9월 이후의 임대차는 강동구청에서 승계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관리비 330만원 및 6월부터 9월 계약 승계일까지 관리비 및 임차료 1,728만원의 비용 발생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지역 및 지역별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 명, %)

센터		센터 설치 지역	마약류사범
기존	중앙(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4,840(25.2)
신규	서울	-	
기존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1,042(5.7)
신규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신규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5,559(30.2)
신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규	강원	강원도 강릉시	559(3.0)
기존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1,159(6.3)
신규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1,215(6.6)
신규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신규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526(2.9)
신규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279
신규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규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274(1.5)
신규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778(4.2)
신규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신규	제주	제주도 제주시	113(0.6)
합계			18,395(100[1)])

주: 1) 나머지 6.7%는 지역 불상, 0.1%는 외국

1. 지역별 마약류사범 현황은 2022년 기준

2. ( )안은 점유율

자료: 마약퇴치운동본부, 「2022년도 마약류 범죄 백서」



환경노동위원회

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환경부 소관 11개 기관, 고용노동부 소관 12개 기관, 기상청 소관 3개 등 총 26개 기관임

- ○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6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11개 기관임
- ○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위탁형 준정부기관 4개,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임
- ○ 기상청 소관 공공기관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3개 기타공공기관임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환경부 (11)	준시장형 공기업 (1)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1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	근로복지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타공공기관 (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상청 (3)	기타공공기관 (3)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26)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35,397명

-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14,720명
-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등 12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20,342명
- ○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3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335명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환경부 (11)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수자원공사	6,112	6,337	6,508	6,584	6,36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한국환경공단	2,997	3,095	3,239	3,326	3,212
		국립공원공단	2,538	2,623	2,631	2,674	2,6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35	651	671	690	657
		국립생태원	601	611	649	650	623
	기타공공기관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62	363	360	361	34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3	208	214	217	213
		한국상하수도협회	69	69	71	77	73
		한국환경보전원	255	253	252	252	238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31	139	155	170	17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0	189	189	189	185
	소계		13,903	14,538	14,939	15,190	14,720
고용노동부 (1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근로복지공단	9,481	9,612	10,067	10,266	10,07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88	2,055	2,153	2,250	2,224
		한국산업인력공단	1,855	1,891	1,905	1,917	1,87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12	1,325	1,418	1,494	1,442
		한국고용정보원	477	489	500	514	522
	기타공공기관 (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677	2,722	2,730	2,756	2,73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708	620	640	647	641
		노사발전재단	289	293	299	304	301
		건설근로자공제회	192	213	219	224	2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6	118	124	128	125
		한국잡월드	61	64	64	66	66
		한국고용노동교육원	0	115	115	121	115
	소계		19,056	19,517	20,234	20,687	20,342
기상청 (3)	기타공공기관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48	148	169	175	163
		(재)APEC기후센터	90	90	90	90	64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0	113	113	113	108
	소계		238	351	372	378	335
합계			33,197	34,406	35,545	36,255	35,397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환경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와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로 총 10개 기관임

-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임
-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고용정보원임
  -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 보통(C) 등급에서 2023년 아주미흡(E) 등급으로 2등급 하락하였으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관장 해임 건의
- ○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환경공단은 기관장 경고 및 안전 관련 개선계획 제출 조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환경부 (5)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수자원공사	경평결과	B	A	A	A	B
			경평성과급	8,903	7,875	9,304	8,676	10,89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국립공원공단	경평결과	B	B	B	B	A
			경평성과급	966	1,177	1,491	1,392	1,796
		국립생태원	경평결과	B	D	D	B	B
			경평성과급	858	1,108	0	246	2,059
		한국환경공단	경평결과	B	B	A	A	A
			경평성과급	477	1,142	1,117	1,636	2,03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평결과	B	C	B	B	B
			경평성과급	1,471	1,542	1,056	1,188	1,798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고용노동부 (5)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	근로복지공단	경평결과	C	B	B	C	C
			경평성과급	1,036	1,013	1,222	1,285	1,073
		한국고용정보원	경평결과	C	D	C	C	E
			경평성과급	717	774	0	1,108	1,34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평결과	B	C	D	C	B
			경평성과급	827	1,144	587	117	1,191
		한국산업인력공단	경평결과	D	D	C	C	C
			경평성과급	603	101	532	955	1,15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평결과	B	B	B	B	C
			경평성과급	1,306	1,118	1,358	1,129	1,393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1개임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 한국환경보전원은 4년 연속(2020~2023년) 4등급을 받음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2개임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며, 하락한 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개,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환경부 (7)	준시장형 공기업 (1)	한국수자원공사	4	4	3	3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한국환경공단	5	4	4	2	4
		국립공원공단	4	3	4	3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3	4	4	3
		국립생태원	3	2	2	3	4
	기타공공기관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4	4	3	-
		한국환경보전원	3	4	4	4	4
고용노동부 (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근로복지공단	2	3	2	2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4	3	3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3	3	3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3	4	3	4
		한국고용정보원	3	3	3	3	4
	기타공공기관 (3)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	2	2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3	3	2
		노사발전재단	3	2	-	-	-
기상청 (1)	기타공공기관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2	-	3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한국수자원공사

2-1. 수탁사업 자금 관리 부적절

가. 현 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 수행 과정에서 2023년 기준 1조 1,297억원의 수탁사업자금을 관리 중

[한국수자원공사 수탁사업별 결산상 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수탁사업명	위탁주체	연말 기준 결산상 잔액	
		2022	2023
현대화사업	가평, 양양 등 지자체	800,150	676,024
지방SWM, 소규모 댐건설, 관로이설 등	원주, 봉화 등 지자체	365,249	262,524
기타(맑은 물 공급사업,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사업 등)	중앙부처, 지자체 등	221,511	191,148
계		1,386,910	1,129,696

주: 2021년 이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공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탁사업자금 중 대부분의 수납과 집행을 운용계좌로 통합 관리하면서 이를 공사의 자체운영사업 및 투자사업 등에 활용함

○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 실제 보유 중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규모(2,143억원)가 연말 결산 기준 수탁사업자금 잔액 규모(1조 1,297억원)보다 적었음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자금을 공사의 자체운영사업 및 투자사업 등에 활용하면서 운용계좌(보통예금) 이율(0.10%) 수준의 이자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을 공사에 귀속시켰음

[한국수자원공사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		이자수익률		비고
	2022	2023	2022	2023	
수탁사업	19,167	12,452	0.1	0.1	수탁사업자금
대행사업	42,844	76,403	1,94	3.41	정부대행사업자금
4대강 사업	-	22,312	1,94	3.41	4대강 사업 출자금 및 금융비용 관리용 계좌
기타	609,002	103,108	0.01~4.35	0.1~4.23	원화, 외화
계	671,013	214,275			

주: 2021년 이전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타 기관의 사례[1]를 고려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위·수탁계약 체결 시 적정 수준의 이자를 반납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2]

○ 참고로 본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자금에 대해서도 정부 수탁사업자금과 같이 별도계좌 이율(3.04%)을 적용

1) 타 기관 예시: 2021~2023회계연도 한국환경공단 수탁사업 수익 및 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탁사업 수익	수탁사업 비용	연도 말 재무제표 계상 사업자금 잔액	이자수익	이자수익률	사업별 별도계좌 관리 여부
정부	2021	347,158	347,158	174,752	1,619	0.50%	O
	2022	376,386	376,386	183,676	5,181	1.57%	
	2023	324,272	324,272	106,008	7,550	3.04%	
지자체	2021	802,026	802,026	1,360,923	7,552	0.50%	O
	2022	911,902	911,902	1,157,613	21,373	1.57%	
	2023	949,446	949,446	1,000,423	36,745	3.04%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자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제2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1조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정부 수탁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보다 높은 수준의 이율을 적용 중인 점, 한국환경공단의 사례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자금에 대해서도 보통예금보다 높은 수준의 이율이 적용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지방자치단체 수탁사업자금에 대해 과소 수준의 이자를 반납한 것인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2-2. 물산업 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가. 현 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 물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물산업 관련 지역혁신 벤처펀드(이하 '물산업 펀드')에 참여 중

○ 2021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999억원 규모의 출자계획을 이행 중이며, 2023년 말까지 713억원을 출자 완료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산업 관련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향후 투자예정액	합계
연도별 출자액	100	280	333	286	999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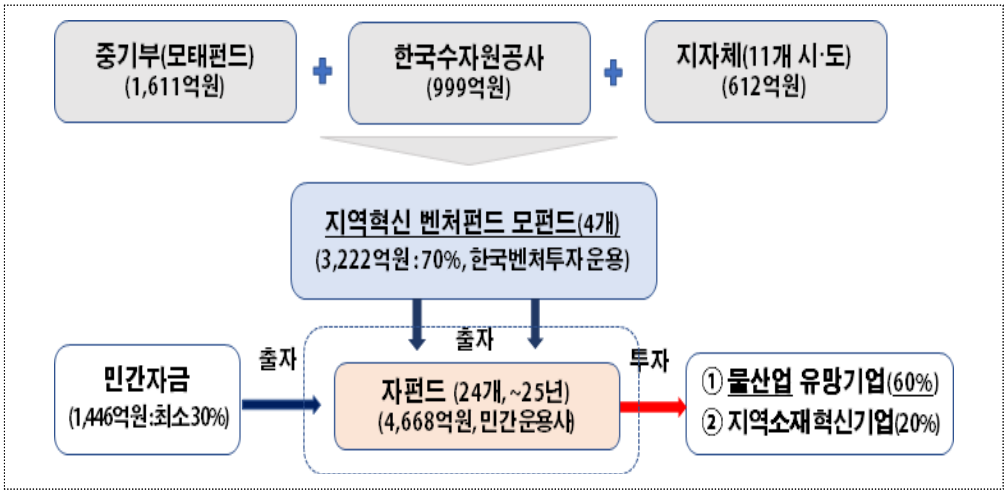
❑ 물산업 펀드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공사, 중소벤처기업부 및 11개 지자체가 최소결성총액(약 4,668억원)의 70%에 달하는 모펀드를 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자펀드에 출자

○ 최소결성총액의 30% 이상을 민간부문 출자에서 조달 예정

○ 민간운용사에 의한 투자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완전 회수 시점은 2034년 전후로 예상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물산업 펀드 추진체계]



❑ 2023년 말 기준 물산업 펀드는 모펀드 결성 예정액 3,222억원 중 2,252억원이 출자 완료되었고, 자펀드는 결성총액 4,668억원 중 2,856억원이 결성되었음

○ 한편, 물산업 펀드가 속한 한국모태펀드 '지방' 계정은 최근 출자금보다 자본총계의 규모가 작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 발생 중[1)]

1) 한국모태펀드 '지방' 계정 및 전체 계정의 자본총계/출자금 현황

(단위: %, %p)

계정	2018(a)	2019	2020	2021	2022	2023(b)	증감(b-a)
지방	99.6	98.7	96.9	97.5	97.7	95.1	△4.5
전체	109.6	108.9	110.0	119.7	114.4	112.6	3.0

주: 자본총계/출자금의 값이 100 이상이면 이익이, 100 미만이면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모태펀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현재 공사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기준 공사는 약 8.17조원의 금융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평균 조달금리는 3.936% 수준으로 투자 결정 당시 시점(2020.11.)에 비해 상승하였는바 재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본 펀드에서 평균 조달금리 수준 이상 수익 창출의 필요성이 큼

- ○ 공사의 금융부채에는 2036년까지 상환 예정인 이른바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금융부채가 포함됨

[2023회계연도 한국수자원공사 금융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유동금융부채	비유동금융부채	합계
금액	1,431,266	6,736,415	8,167,681

주: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평균 조달금리는 3.936%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

❑ 그런데 물산업 펀드의 투자 항목은 영세 물기업 등과 관련한 물산업 및 물에너지산업(60%), 지역 소재 혁신기업(20%) 등과 같이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같은 공공성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될 물산업 펀드 투자 과정에서 정책 추진성과 및 재무적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물산업 펀드 출자로 인하여 공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3. 친수 및 수변사업 실적 관리 필요

가. 현 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 기준 3개의 친수사업, 5개의 단지사업 및 1개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

[친수사업 및 수변사업별 세부 현황]

(단위: 천㎡,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친수	부산 에코델타시티	11,769	2012~2028	56,143
	부여 규암지구	111	2012~2024	280
	나주 노안지구	104	2012~2023	306
수변	시화MTV	9,980	2002~2025	36,051
	송산그린시티	55,635	2007~2035	110,809
	구미확장단지	2,476	2008~2024	8,179
	구미 하이테크밸리(HTV)	9,330	2009~2025	19,327
	구미4단지	6,785	1996~2010	6,905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816	2020~2027	3,607

주: 1.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 집행분(85%) 기준
2. 송산그린시티 사업기간은 현재 변경 신청 중인 내용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2023년 말 기준 사업별 투자 및 회수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분양 개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계획상 공사 완료가 임박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적 부진

○ 부산EDC, 구미HTV는 2015년부터 분양이 개시되었고, 부여규암, 나주노안은 2020년부터 분양이 개시되었으며, 4개 사업 모두 공사가 5년 내 완료될 예정임에도 여전히 사업비 대비 수납 실적이 크게 미치지 못하여 손실 발생

[사업별 투자 및 회수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계획					실적			
	투입 기간	회수 기간	사업비 (A)	수납액 (B)	손익 (C=B-A)	사업비 (D)	수납 (E)	손익 (F=E-D)	차이 (G=F-C)
부산EDC	'12~'28	'15~'35	44,496	22,013	△22,483	43,926	18,924	△25,002	△2,519
부여규암	'12~'24	'20~'30	246	15	△231	280	15	△265	△34
나주노안	'12~'23	'20~'27	299	164	△135	306	126	△180	△45
시화MTV	'02~'25	'10~'31	35,632	38,702	3,070	31,607	38,249	6,642	3,572
송산그린시티	'07~'35	'11~'40	39,128	16,100	△23,028	38,299	14,974	△23,325	△297
구미확장단지	'08~'24	'11~'31	8,181	7,738	△443	8,171	7,783	△388	55
구미HTV	'09~'25	'15~'36	13,577	4,828	△8,749	13,377	4,824	△8,553	196
구미4단지	'96~'10	'00~'12	6,905	8,740	1,835	7,218	8,589	1,371	△464
계			148,464	98,300	△50,164	143,184	93,484	△49,700	464

주: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착공 초기단계로서 2023년 12월부터 선분양이 시작되어 실적이 없는 관계로 제외되었음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분양 개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계획상 공사 완료가 임박하였음에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한 4개 사업 모두 50% 미만의 분양률을 기록

- ○ 부여규암(6%), 나주노안(47%), 구미HTV(38%)는 공사가 2025년 내 완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50% 미만에 그쳤음
- ○ 부산 에코델타시티(39%), 구미HTV(38%)는 총사업비가 각각 5.6조원, 1.9조원의 규모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

[사업별 분양 세부 현황]

(단위: 천㎡)

사업명	공사기간	회수기간	분양 개시일	유상공급 면적(A)	분양가능 면적	분양 면적(B)	분양률 (B/A)
총계	-	-	-	42,073	42,073	18,647	44%
부산EDC	'12~'28	'15~'35	'15.12.	4,872	4,872	1,891	39%
부여규암	'12~'24	'20~'30	'20.12.	50	50	3	6%
나주노안	'12~'23	'20~'27	'20.8.	64	64	30	47%
시화MTV	'02~'25	'10~'31	'10.12.	4,861	4,861	4,364	90%
송산그린시티	'07~'35	'11~'40	'11.10.	20,448	20,448	5,032	25%
구미확장단지	'08~'24	'11~'31	'11.10.	1,320	1,320	932	71%
구미HTV	'09~'25	'15~'36	'14.12.	5,986	5,986	2,276	38%
구미4단지	'96~'10	'00~'12	'00.12.	4,472	4,472	4,119	92%

주: 2023년 말 기준이며, 2023.12부터 분양 개시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제외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사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사업 중 실적이 부진한 4개 사업의 분양 저조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구미HTV: 2단계 공사 진행률이 0.15% 수준으로 계획 대비 저조
- ○ 부산EDC, 나주노안: 고금리로 인한 수분양자 재정 악화
- ○ 부여규암: 사업구역과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 입지여건이 제한됨

[투자 및 회수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분양 저조 사유]

사업명	누적 분양률	분양 저조 사유
부산EDC	39%	1단계(공사완료) 및 2단계(공사진행 92%)는 고금리로 인한 수요자의 자금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계약 해제가 발생하여 분양률이 저조(1단계 분양률 42%, 2단계 분양률 48%)하며, 3단계는 공사진행 56%로 분양 미개시
부여규암	6%	2024년 내 공사 완료 예정이나, 사업구역 외에 인접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 입지여건 제한 발생 및 그에 따른 수요 저조
나주노안	47%	공사 완료에도 불구, 고금리로 인한 수분양자 재정 악화로 계약 해제 발생
구미HTV	38%	1단계(공사완료)는 91% 분양, 2단계는 공사진행 0.15%로 분양 미개시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자원공사는 분양 실적 제고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과 더불어 진행률이 느린 공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적극 진행하는 한편, 입지 여건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

2-4. 활성탄 비축창고 및 재생시설 공사의 신속한 완료 필요

가. 현 황

❑ 한국수자원공사의 '활성탄[1] 수급 안정화 사업'은 정수 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장기 보관하는 한편 비상시에도 상시 공급 가능한 비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 한강 유역 비축창고 관련 국가 출자액: 0원(한국수자원공사 전액 부담)
- ○ 낙동강 유역 비축창고 관련 국가 출자액: 조사설계비 408백만원, 공사비 8,027백만원으로, 2023년 조사설계비 중 55.9%인 228백만원 집행

[2023회계연도 활성탄 수급 안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활성탄 수급 안정화 사업	408	-	-	408	228	180	-	8,027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고도 정수처리시설 주요 수처리제인 입상활성탄을 대부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2021년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 발생한 '요소수 대란'과 유사한 경제안보품목 수급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

- ○ 조달청은 활성탄 구매 계약의 역할을, 한국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구축 및 물품 관리의 역할을 수행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1) 활성탄(Activated Carbon)은 석탄, 코코넛, 목재 등의 탄소질을 원료로 하여 고온의 탄화와 활성화 과정을 거쳐 미세기공을 발달시킨 탄소집합체로, 산업 내 발생하는 불필요한 각종 오염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공장 굴뚝, 방독면, 정수장, 수족관, 정수기 등 기체·액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외에서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활성탄 수급 안정화 목적으로 ① 유사시 필요한 활성탄을 자체 비축할 수 있는 비축창고 공사, ② 활성탄을 재사용함으로써 수입량을 줄여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활성탄 재생시설 공사 등을 추진 중

[활성탄 재생시설 개요 및 사업 계획]

구분	재생용량	위치	사업비	사업기간
한강	48㎥/일(11.7천㎥/년)	덕소정수장	380억원(자체)	2021.4.~2024.5.
낙동강	30㎥/일(6.8천㎥/년)	밀양정수장	414억원(자체)	2021.9.~2025.1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는 ① 활성탄 비축창고 공사, ② 활성탄 재생시설 공사 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활성탄 구매비용을 절감할 필요

○ 첫째, 낙동강 유역 비축창고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예정인 활성탄 물량까지 합동 비축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추가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2023년 예산의 이월 발생 및 활성탄 구매 지연

[낙동강 유역 활성탄 비축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추진 시기]

단계명	계획상 추진 시기	실제 추진 시기
국고 반영	2022.12.	2022.12.
예비투자심의	2023.6.	2023.9.
기본 및 실시설계	2023.6.~12.	2023.11.~2024.9.
발주 및 공사	2024.1.~12.	2024.9.~미정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최근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활성탄 구매단가는 2021년 1,376천원/㎥에서 2023년 최대 2,133천원/㎥으로 꾸준히 상승[2]하고 있어,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활성탄 구매 지연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 둘째, 2024년 5월 구축 완료 예정이었던 한강 유역 활성탄 재생시설이 원도급사 자금난, 하도급사의 공사 진행 거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활성탄 재생시설 완공이 지연되면, 그 지연 기간 동안에는 재생 후 재활용 가능한 활성탄을 1회만 사용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이는 곧 구매비용 절감의 지연으로 이어짐

2) 최근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 활성탄 규격별 구매단가

(단위: 천원/㎥)

구매연도	규격별 구매단가		
	0.6mm	0.9mm	1.1mm
2021	1,453	1,376	1,385~1,387
2022	-	1,753	1,695~1,744
2023	1,689	1,910~2,115	1,808~2,133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5. 수질관련 환경법규 위반 발생

가. 현 황

❑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대기·물환경(수질)·폐기물 분야의 환경법규 위반 현황을 분석

○ 대기·물환경(수질)·폐기물 분야의 해당 환경법규는 대기환경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수질) 관련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폐기물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

❑ 한국수자원공사의 2023년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7건이며, 최근 3년간 누적된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32건

[최근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

기관명	2021	2022	2023	3년 누적
한국수자원공사	17	8	7	32

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집계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물관리 및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3개년 누적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32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많은 환경법규 위반 사항 발생

○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32건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환경 법규 위반 건수 357건 중 9%를 차지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최근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

기관명	2021	2022	2023	3년 누적
한국수자원공사	17	8	7	32
전체 공공기관	121	103	133	357
비중	14.0	7.8	5.3	9.0

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집계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수질관련 환경법규 위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미비 등 유사한 위반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

○ 특히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은 수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목적과도 배치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수질기준 및 폐수배출 등 수질 관련 환경법규 위반건수는 20건으로 62.5%를 차지

○ 최근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법규 위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한국수자원공사 위반사례]

(단위: 건)

연도	위반내역	위반법률	건수
202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6), 운영일지 작성 누락(1)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3조	7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2)	「하수도법」 제7조	2
	건설폐기물보관기준 위반(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1)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7조	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기한 초과 등(5)	「폐기물관리법」 제18조	5
2022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2)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1)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8조	4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1)	「하수도법」 제7조	1
	건설폐기물 분리보관 위반(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기한 초과(1)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18조	2
202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1),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3조	2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3)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7조	3
	폐기물 처리 및 보관기준 위반(1)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입력 미흡(1)	「폐기물관리법」 제18조	2
합계			32

자료: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6.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수자원공사는「연봉규정」제15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6,224명의 임직원에게 총 40,555,092천원을 지급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A	6,121	51,791,246	49,324,996	101,116,242
2023	A	6,241	69,539,791	46,924,337	116,464,128
2024	B	6,224	-	40,555,092	40,555,092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을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비간부직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지급률이 다섯째 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인바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경영평가 성과급(비간부직): 최고 등급 165%, 다섯째 등급 135%

○ 내부평가급(비간부직): 최고 등급 220%, 다섯째 등급 180%

[최근 3년간 한국수자원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간부직)	10	260	15	228	50	195	15	163	10	130	-	-
	경평 (비간부직)	10	215	15	205	50	195	15	185	10	176	-	-
	내부 (간부직)	10	267	15	233	50	200	15	167	10	133	-	-
	내부 (비간부직)	10	220	15	210	50	200	15	190	10	180	-	-
2023	경평 (간부직)	10	320	15	280	50	240	15	200	10	160	-	-
	경평 (비간부직)	10	264	15	252	50	240	15	228	10	216	-	-
	내부 (간부직)	10	267	15	233	50	200	15	167	10	133	-	-
	내부 (비간부직)	10	220	15	210	50	200	15	190	10	180	-	-
2024	경평 (간부직)	10	200	15	175	50	150	15	125	10	100	0.2	0
	경평 (비간부직)	10	165	15	158	50	150	15	143	10	135	0.1	0
	내부 (간부직)	10	267	15	233	50	200	15	167	10	133	0.2	0
	내부 (비간부직)	10	220	15	210	50	200	15	190	10	180	0.1	0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한국수자원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7.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406명, 지원금액은 22,697,973천원임

[한국수자원공사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477	471	436	448	427	406
지원금액	15,791,759	22,002,418	25,215,474	27,781,329	25,982,277	22,607,973
1인당 지원 한도	(~2023.12.30.) 120,000 / (2023.12.31.~) 7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7조, 제10조, 제13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1년 거치 후 최장 20년, 원금균등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table>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2천만원 초과)	3.22	2.08	1.38	1.83	4.41	4.43	4.06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2천만원 이하)	2.00	1.58	0.88	1.33	2.00	2.00	2.00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과도한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제공,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 등

❑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12월에서야 비로소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과도한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12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1명에 대해 여전히 107㎡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 제공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12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83명에 대해 여전히 1인당 7천만원을 초과(1.2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 대출 금리의 경우 여전히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109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1.33~4.43%)으로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109	1.33~4.43	10,410,000	미개정	83	9,254,000	개정(2023.12.22.)

85㎡ 초과 면적 주택의 구입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면적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개정 시기)
1	107	100,000	개정(2022.12.30.)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8.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2,414명, 지원금액은 53,384,928천원임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920	1,927	1,898	2,069	2,210	2,414
지원금액	40,803,429	44,512,732	44,149,479	50,805,148	54,851,343	53,384,928
1인당 지원 한도	(~2023.12.30.) 50,000 / (2023.12.31.~) 2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19조, 제20조, 제24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최장 7년, 원금 균등 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table>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8	2.8	2.5	2.5	2.5	2.5	2.5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12월에서야 비로소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12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904명에 대해 여전히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5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제공

  ○ 대출 이자율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1,490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2.50%)으로 생활안정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1,490	2.50	53,613,000	미개정	904	42,778,000	개정(2023.12.22.)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9.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수자원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68명임

[한국수자원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312	168	22	-	30	-	66	50	23	26	9	1	4	6	6	93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9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14회의 징계위원회 중 5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수자원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징계처분 결과	위원 수 (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 (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 (B/A)
2022.1.28.	성희롱	감봉 2월	6	0	6	0.0
2022.2.23.	성희롱	견책	6	1	6	16.7
2022.6.8.	성희롱	감봉 3월	6	0	6	0.0
2022.9.20.	성추행	파면	7	4	3	57.1
2022.9.21.	성희롱	견책	4	1	3	25.0
2023.2.9.	성추행	강등	8	3	5	37.5
2023.3.6.	성추행	강등(재심)	10	2	8	20.0
2023.5.17.	성희롱	견책	5	4	1	80.0
2023.6.8.	성추행	해임	9	3	6	33.3
2023.7.13.	성추행	해임	8	3	5	37.5
2023.7.13.	성희롱	감봉 3월	6	2	4	33.3
2023.8.16.	성추행	파면	6	3	3	50.0
2024.4.26.	성추행	강등	7	4	3	57.1
2024.7.26.	성추행	파면	7	4	3	57.1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23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한국수자원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2.5.2.	횡령	729,000	파면	X
2023.3.29.	재산상 이익 취득	200	감봉 1월	
2023.7.13.	유용	43,000	해임	
2023.9.4.	횡령	746,000	파면	
2024.1.12.	유용	80,000	해임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한국환경공단

3-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한국환경공단은 입주자 및 사용자 간에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에 관한 분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업무를 대행 중

○ 2023년도 예산현액 15억 4,000만원 중 91.8%인 14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540	-	-	1,540	1,413	127	-	2,073

자료: 한국환경공단

나. 주요 쟁점

❑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지수(100점 만점)는 매년 60점 전후 수준을 유지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연도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현황]

(단위: 건, 점)

구분	전화 및 방문상담 만족도		관리주체 지원 서비스 만족도		종합만족지수
	유효표본수	만족지수	유효표본수	만족지수	
2017	650	54.2	60	82.9	56.6
2018	403	52.8	97	78.3	57.8
2019	400	53.7	100	82.1	59.4
2022	525	58.9	56	77.8	60.8
2023	895	58.9	106	82.0	61.3

주: 1. 2020~2021년도 조사의 경우 PCSI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시하지 않음
2. '민원인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는 2022년부터 '관리주체 지원 서비스'로 변경되었음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서비스에 대한 주요 개선 요청 사항을 살펴보면, 법적 효력 부여 희망 등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외하면 대기시간 단축, 소음측정기 대여 기간 연장, 소음측정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유형별 주요 개선 요청 사항]

(단위: %)

전화 및 방문상담		관리주체 지원 서비스	
개선 요청 사항	비율	개선 요청 사항	비율
법적 강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등 도움이 되지 않음	41.2	신청부터 방문까지 대기시간 단축, 소음측정기 대여 기간 연장, 법적인 효력 희망	14.8
대기기간 단축, 후속조치 필요, 소음측정 기준 변경 필요	19.9	소음 측정값 기록 제공, 기기 자체에 대한 개선 요청	12.9
		전문가의 직접 서비스 제공 요청	7.3
그 밖의 사유	7.4	그 밖의 사유	11.2
모름/무응답	31.5	모름/무응답	53.8

주: 유사한 취지의 불만족 사유들은 하나의 항목으로 병합하였음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평균 현장진단 민원 대기 시간을 살펴보면 강원(43일), 인천(39일), 경기(34일), 광주(1일), 전남(1일), 전북(2일), 서울(4일), 경북(9일) 등 편차가 상당함

○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대기 시간을 살펴보면 30일 이상 소요된 건수가 전체 220건 중 58건(약 26.3%)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현장진단 민원 평균 대기 시간]

(단위: 일)

대기 시간	해당 지역
10일 미만	광주(1), 전남(1), 전북(2), 서울(4), 경북(9)
10일 이상 20일 미만	대구(14), 부산(19)
20일 이상 30일 미만	세종(20), 충북(20), 경남(20), 울산(21), 충남(23), 제주(24), 대전(26)
30일 이상	경기(34), 인천(39), 강원(43)

주: 1. 괄호 안 숫자는 지역별 평균 대기 시간을 의미함
2. 전국 평균 대기 시간은 약 17일이며, 서울 제외 시 약 22일임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대기 시간 현황]

(단위: 건)

구분	측정기 대여 대기 시간(신청일부터 대여일까지)
5일 미만	87
5일 이상 10일 미만	35
10일 이상 20일 미만	14
20일 이상 30일 미만	26
30일 이상 40일 미만	12
40일 이상	46
계	220

주: 2023년 접수 및 대여 건수 220건을 대상으로 작성(이월 건수 미포함)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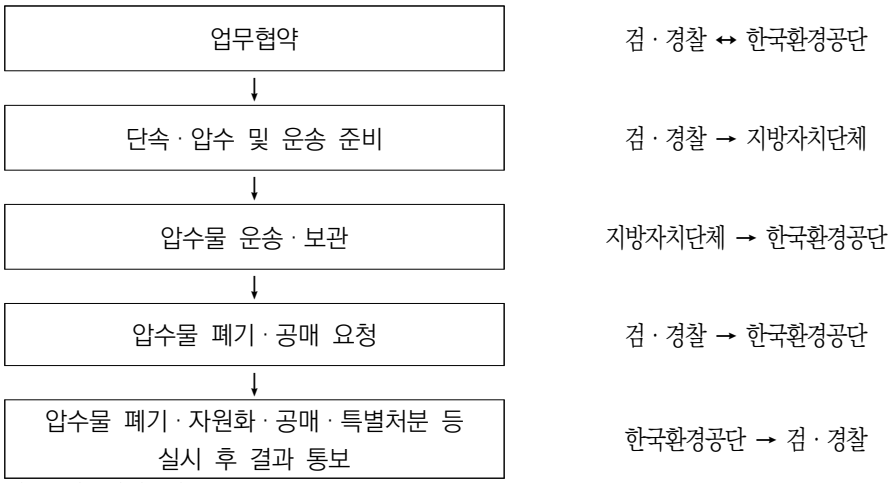
❑ 공단은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주요 개선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진단 민원 대기 시간이 긴 지역의 민원 처리 속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음측정기 대여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충분한 수의 소음측정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2.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지속적 손실 발생 문제 해결 필요

가. 현 황

❑ 한국환경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된 사행성게임기, PC 등을 공단으로 이송 · 인수 후 검찰의 폐기 결정에 따라 분해 · 해체하여 품목별 · 재질별로 자원화하는 사업을 수행 중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진행 과정]



자료: 한국환경공단

❑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은 수지차 방식 출연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기준 동 사업에서 5억 1,800만원의 수입과 21억 300만원의 지출이 발생

[2023회계연도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A)	지출(B)	차이(=A-B)
2023 결산	518	2,103	1,585
2024 예산	1,705	2,067	362

자료: 한국환경공단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최근 3개년 압수폐기물 인수 및 자원화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행성 게임기의 경우 인수 및 자원화 실적이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며, 사행성 PC의 경우 매년 유사한 규모를 유지

◦ 전체 실적의 경우 인수(2021년 46,095건 → 2023년 32,241건), 자원화(2021년 60,202건 → 2023년 37,588건) 모두 매년 감소 추세

[연도별 압수폐기물 인수 및 자원화 실적]

(단위: 대, 점)

구분		사행성게임기	사행성PC	기타	계
2021	인수	29,378	10,807	5,910	46,095
	자원화	39,478	7,741	12,983	60,202
2022	인수	26,238	11,182	3,312	40,732
	자원화	26,129	8,297	9,584	44,010
2023	인수	18,965	10,079	3,197	32,241
	자원화	22,357	9,724	5,507	37,588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최근 5년간 수입 및 비용을 살펴보면, 수입이 비용보다 적어 매년 손실 발생

◦ 손실의 규모는 매년 대체로 30억원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40억 8,900만원의 손실이 발생

[최근 5개년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수입 및 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현황			비용 현황			손익(A-B)
	게임기	PC	소계(A)	창고유지비	인건비	소계(B)	
2019	1,750	203	1,953	1,342	4,185	5,527	△3,574
2020	1,331	241	1,572	1,441	4,220	5,661	△4,089
2021	1,842	307	2,149	1,310	3,223	4,533	△2,384
2022	737	109	846	1,440	2,435	3,875	△3,029
2023	361	157	518	1,495	1,868	3,363	△2,845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동 사업은 폐기결정 지연, 자원화된 부품의 매각 단가 하락 등으로 지속적 손실 발생

○ 첫째, 압수물을 자원화하려면 사업 구조상 검 · 경찰의 폐기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폐기결정이 지연되면서 수만 대에 달하는 압수물이 창고에 장기간 보관 및 비용 발생(2023년 기준 약 7.1만대의 압수물 재고 보관 중)

[압수물 유형별 재고현황]

(단위: 대, 점)

구분	압수물 분류			
	사행성게임기	사행성PC	기타	계
재고량	49,300	14,012	7,856	71,168

주: 2023년 말 기준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둘째, 자원화된 부품의 매각 단가가 하락하는 등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

- 최근 3개년 압수물 유형별 매각 단가를 살펴보면, 사행성 게임기(2021년 46.69천원 → 2023년 16.15천원), 사행성PC(2021년 39.67천원 → 2023년 16.15천원) 모두 매각 단가가 크게 하락

[자원화된 압수물의 유형별 매각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사행성게임기	사행성PC
2021	46.69	39.67
2022	28.20	13.18
2023	16.15	16.15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동 사업은 환경부의 수지차 방식 출연 사업인데, 최근 5개년 기관별 동 사업의 손실 부담 규모를 살펴보면 대부분을 한국환경공단이 부담 중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산 중 수입예산을 상회하는 부분만큼 손실 부담(2023년 기준 452백만원 부담)

○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에서 부담한 손실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데, 2023년 기준 환경부(452백만원) 대비 5배 이상의 손실을 부담 중(2,393백만원)

[최근 5개년 기관별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의 손실 부담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수익 (A)	사업비용 (B)	사업손실 규모 (C=B-A)	환경부 수입예산 (D)	환경부 지출예산 (E)	환경부 부담액 (F=E-D)	한국환경공단 부담액 (G=C-F)
2019	1,953	5,527	3,574	2,157	2,590	433	3,141
2020	1,572	5,661	4,089	2,157	2,429	272	3,817
2021	2,149	4,533	2,384	2,157	2,072	△85	2,469
2022	846	3,875	3,029	1,730	2,072	342	2,687
2023	518	3,363	2,845	1,705	2,157	452	2,393

주: 환경부 수입·지출예산은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수지차 출연 사업의 일부이며, 국회확정 본예산 기준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환경부는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정하게 수지차 출연금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음

3-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환경공단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60명임

[한국환경공단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212	60	6	0	20	0	20	14	10	10	3	0	0	1	11	28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나. 주요 쟁점

❑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10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한국환경공단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0.12.29.	수리비 전가	610	해임	X
2021.2.1.	식사접대	155	감봉	
2021.2.1.	식사접대	623	정직3월	
2021.2.1.	식사접대	643	정직2월	
2021.10.15.	식사접대	34	정직2월	
2023.10.26.	경조사비 수수	200	감봉	
2024.1.29.	식사접대	42	감봉	
2024.1.29.	식사접대	42	감봉	
2024.3.6.	경조사비 수수	300	감봉	
2024.3.6.	경조사비 수수	300	감봉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국립공원공단

4-1. 산악형 공원의 전문구조요원 부족 문제

가. 현 황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총 23개(산악형 18개, 해상 · 해안형 4개, 사적형 1개)로, 국립공원공단은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2개의 국립공원을 관리 중

◦ 2023년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되었음

❑ 최근 3년간 탐방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북한산, 한려해상,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탐방객 수가 1,000만명을 상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국립공원별 탐방객 수 현황]

(단위: 명)

공원명	공원유형	탐방객 수			
		계	2021	2022	2023
계		114,151,285	35,901,970	38,793,952	39,455,363
지리산	산악	10,454,723	2,864,374	3,782,921	3,807,428
경주	사적	8,637,044	2,389,314	2,796,288	3,451,442
계룡산	산악	6,773,180	2,149,164	2,317,672	2,306,344
한려해상	해상 · 해안	11,087,649	3,252,991	3,842,065	3,992,593
설악산	산악	6,228,499	1,918,390	2,067,328	2,242,781
속리산	산악	3,244,455	987,504	1,107,659	1,149,292
한라산	산악	2,427,130	652,706	850,744	923,680
내장산	산악	4,890,684	1,525,174	1,625,029	1,740,481
가야산	산악	1,623,983	495,099	552,659	576,225
덕유산	산악	3,375,743	1,036,941	1,193,438	1,145,364
오대산	산악	3,492,674	1,115,400	1,135,324	1,241,950
주왕산	산악	1,773,408	566,556	601,047	605,805
태안해안	해상 · 해안	2,083,878	660,113	647,849	775,916
다도해해상	해상 · 해안	5,830,017	1,883,904	2,159,157	1,786,956
북한산	산악	20,420,675	7,362,704	6,700,861	6,357,110
치악산	산악	2,753,131	826,134	887,193	1,039,804
월악산	산악	2,330,797	841,135	795,825	693,837
소백산	산악	2,845,970	953,829	954,145	937,996
변산반도	해상 · 해안	4,006,625	1,278,476	1,393,251	1,334,898
월출산	산악	1,448,426	316,813	601,637	529,976
무등산	산악	7,246,035	2,399,255	2,438,693	2,408,087
태백산	산악	1,176,559	425,994	343,167	407,398

주: 국립공원 지정 순이며, 2023년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은 제외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립공원의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25건, 2022년 131건, 2023년 119건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 발생 중

[국립공원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공원명	공원 유형	안전사고 발생 건수											
		계			2021			2022			2023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375	36	339	125	10	115	131	16	115	119	10	109
지리산	산악	29	3	26	8	2	6	9	1	8	12	0	12
경주	사적	2	0	2	1	0	1	1	0	1	0	0	0
계룡산	산악	17	0	17	5	0	5	7	0	7	5	0	5
한려해상	해상 · 해안	2	0	2	2	0	2	0	0	0	0	0	0
설악산	산악	81	16	65	18	4	14	33	8	25	30	4	26
속리산	산악	6	1	5	3	0	3	1	0	1	2	1	1
내장산	산악	12	0	12	6	0	6	4	0	4	2	0	2
가야산	산악	2	1	1	1	0	1	1	1	0	0	0	0
덕유산	산악	5	1	4	0	0	0	2	1	1	3	0	3
오대산	산악	3	0	3	1	0	1	0	0	0	2	0	2
주왕산	산악	5	1	4	1	0	1	1	0	1	3	1	2
태안해안	해상 · 해안	3	3	0	0	0	0	1	1	0	2	2	0
다도해해상	해상 · 해안	1	0	1	0	0	0	0	0	0	1	0	1
치악산	산악	5	0	5	4	0	4	0	0	0	1	0	1
월악산	산악	10	0	10	2	0	2	3	0	3	5	0	5
북한산	산악	141	3	138	60	2	58	50	0	50	31	1	30
소백산	산악	1	0	1	0	0	0	1	0	1	0	0	0
월출산	해상 · 해안	14	1	13	6	1	5	3	0	3	5	0	5
변산반도	산악	5	2	3	1	0	1	2	2	0	2	0	2
무등산	산악	23	2	21	5	1	4	10	1	9	8	0	8
태백산	산악	8	2	6	1	0	1	2	1	1	5	1	4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외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국립공원공단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북한산 및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해 특수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북한산 및 설악산 등의 암벽장과 같은 고고도 · 고위험 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암벽등반 기술을 보유한 전문 구조인력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한 것임

○ 북한산 40명, 설악산 7명(2023.12.~), 산악안전교육원 1명 등 총 48명

[국립공원공단 특수산악구조대 인력 현황 및 구조 실적]

(단위: 명, 건)

공원명	특수산악구조대 인원 수	구조 실적				
		계	2021	2022	2023	~2024.7.
계	47	574	167	195	139	73
북한산	40	554	167	195	139	53
설악산	7	20	-	-	-	20

주: 1. 북한산 국립공원 통계에는 북한도봉 구역 포함
2. 산악안전교육원 소속 1명 제외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암벽장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을 고려하면 암벽장이 존재하는 다른 국립공원에도 전문 구조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2022년부터 국립공원 내 고고도 · 고위험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을 위하여 특수산악구조대를 확대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2024년 기준 여전히 북한산 및 설악산을 제외한 국립공원에는 전문 구조인력이 없음

[국립공원별 암벽장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개소, 건)

공원명	특수산악구조대 인원 수	암벽장 수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			
			계	2021	2022	2023
북한산	40	24	141	60	50	31
설악산	7	22	81	18	33	30
계룡산	-	2	17	5	7	5
속리산		1	6	3	1	2
월출산		4	14	6	3	5
무등산		2	23	5	10	8

주: 1. 북한산 국립공원 통계에는 북한도봉 구역 포함
2. 산악안전교육원 소속 1명 제외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4-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국립공원공단은 「연봉제 시행규칙」 제4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1,390명의 임직원에게 총 6,925,165천원을 지급

[국립공원공단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B	1,374	1,954,557	3,125,842	5,080,399
2023	B	1,386	2,617,330	3,211,642	5,828,972
2024	A	1,390	3,515,146	3,410,019	6,925,165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국립공원공단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모두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된 내부평가급의 경우 등급별 지급률이 109%, 105%, 100%, 95%, 91% 순이며, 최고 등급의 지급률이 최하위 등급 지급률의 2배 미만으로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국립공원공단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15	73	28	64	28	55	15	46	15	37	-	-
	내부	10	134	15	117	50	100	15	83	10	66	-	-
2023	경평	14	94	28	83	29	70	16	58	13	46	-	-
	내부 (5급 이상)	10	134	15	117	50	100	15	83	10	66	-	-
	내부 (6급 이하)	10	109	15	105	50	100	15	95	10	91	-	-
2024	경평	14	121	31	105	38	90	9	75	8	59	-	-
	내부 (5급 이상)	10	134	15	117	50	100	15	83	10	66	-	-
	내부 (6급 이하)	10	109	15	105	50	100	15	95	10	91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국립공원공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국립공원공단은 내부 규정인 「숙사 및 장기대여금 운영규칙」 제15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8명, 지원금액은 340,000천원임

[국립공원공단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3	10	6	10	11	8
지원금액	547,000	278,000	160,000	425,000	573,000	340,000
1인당 지원 한도	서울권역 근무자: 70,000 / 서울권역 이외의 근무자: 50,000					
관련 내부 규정	「숙사 및 장기대여금 운영규칙」 제 15조(임차금)					
지원 요건 (2024.7. 기준)	근무지 내 무주택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최대 3년 균등 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국립공원공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국립공원공단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립공원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9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2.00%)으로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국립공원공단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29	2.00	1,338,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립공원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4.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국립공원공단은 내부 규정인 「보수규정」 제33조의2 등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음

○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명예퇴직한 직원 수는 7명이며, 이들에게 총 1,182,214천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국립공원공단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	3	1	2	-	-
지원금액	175,682	423,074	81,810	501,648	-	-
관련 내부 규정	인사규정 제57조(명예퇴직) 보수규정 제33조의2(명예퇴직수당)					
지원 요건 (2024.7. 기준)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을 명시하는 한편, 기준급여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였음

◦ 기준급여: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할 것

-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보수체계를 고려하면, 월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의 규모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급' 항목과 달리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본 연봉 이외의 수당이 포함됨

◦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 아래의 기준에 따를 것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4

나. 주요 쟁점

❑ 국립공원공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급여는 '월평균임금' 인데, 이는 기준급여를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할 것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과 상이함

◦ 국립공원공단의 '월평균임금'에는 기본연봉, 자체성과급, 직무급,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경영평가 성과급 등이 포함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국립공원공단 「보수규정」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비교]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중략)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명예퇴직수당 산정 방식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45%×정년잔여월수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45%×정년잔여월수의 1/4
국립공원공단 「보수규정」 제33조의2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반액×정년잔여월수로 한다. ② 정년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자는 평균임금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로 한다. ③ 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자는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명예퇴직수당 산정 방식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100%×정년잔여월수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100%×정년잔여월수의 1/4

자료: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명예퇴직수당의 기준급여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설정한 결과, 국립공원공단의 2019년 이후 명예퇴직자에게는 지침상 기준 대비 총 146,592천원의 명예퇴직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음

❑ 국립공원공단은 명예퇴직수당이 지침의 취지보다 과다하게 산정 및 지급되거나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지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1. 반입수수료 수입 급감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을 매립지에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 단위(톤)마다 일정 금액만큼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

◦ 2023년 기준 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 기준 97,963원/톤, 사업장폐기물 기준 55,000~148,270원/톤(종류별로 상이)

나. 주요 쟁점

❑ 공사가 징수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매년 공사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규모 및 수입에서의 비중이 매년 감소 추세

◦ 규모: 2021년 2,787억원 → 2022년 1.928억원 → 20223년 1,256억원

◦ 비중: 2021년 75.8% → 2022년 61.8% → 2023년 56.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입 및 지출 현황(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위탁수입(=반입수수료)	278,709	192,835	125,641
부대수입	174	656	1,829
기타사업수입	52,804	75,036	70,562
기타	35,993	43,313	26,168
수입합계	367,680	311,840	224,200
전체 수입 중 위탁수입의 비중	75.8	61.8	56.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반입수수료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22년부터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제도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직접 반입이 중단되면서 건설폐기물 반입량 및 반입수수료가 급감하였기 때문임

- ○ 건설폐기물 반입량 비중: 2018년 49.8% → 2023년 4.6%
- ○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비중: 2019년 52.8% → 2023년 7.1%

[2018~2023년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량 및 반입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천톤,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폐기물 반입량	전체(A)	3,740	3,367	2,996	2,908	1,766	1,293
	건설 폐기물(B)	1,862	1,451	1,277	1,378	428	60
	비중(B/A)	49.8	43.1	42.6	47.4	24.2	4.6
반입 수수료	전체(C)	273,374	265,286	277,141	278,709	192,835	125,641
	건설 폐기물(D)	144,320	127,574	127,857	137,817	63,201	8,874
	비중(D/C)	52.8	48.1	46.1	49.4	32.7	7.1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반입수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입수수료 관련 지출은 '전출금' 항목을 제외하면 큰 변동 없이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출액 합계가 반입수수료 총액을 상회하였으며 그 차이도 증가 추세

- ○ 반입수수료 수입과 반입수수료 관련 지출 간 차액은 2019년 △93억원 → 2023년 △280억원으로 그 차이가 증가 추세

[2019~202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관련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	반입수수료 총액(A)	265,286	277,141	278,709	192,835	125,641
	건설폐기물 수입	127,574	127,857	137,817	63,201	8,874
	반입총량제 가산금	-	12,229	16,226	20,255	9,038
지출	매립장운영	89,065	105,260	87,837	96,225	90,838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지원	39	33	13	766	610
	기관운영	30,449	36,424	36,792	18,534	17,180
	전출금	153,130	145,991	146,808	84,068	42,579
	예비비	1,873	2,540	2,890	2,968	2,392
	지출 소계(B)	274,556	290,248	274,340	202,561	153,599
차액(A-B)		△9,270	△13,107	4,369	△9,726	△27,958

주: 1. 반입수수료만을 수입으로 보고 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만을 나타낸 것으로, 기관 전체에 대한 경영정보 공시 내용과는 상이함
2. 기관운영비의 경우 2022년부터 적정 사업원가 관리를 위해 개별 사업액으로 인건비를 배분 편성함에 따라 감소하였음(2022년 기준 153억원의 인건비를 개별 사업액으로 배분)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편 '전출금' 항목의 지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가 매년 발생한 이익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반사업부담금'으로의 2023년 전출 규모가 특히 크게 감소(△84.6%)하여, 공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2022년 대비 2023년 반입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출금 지출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A)	2023(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전출금 계	84,068	42,579	△41,489	△49.4
주민지원기금	13,020	9,353	△3,667	△28.2
매립장 사후관리 사전적립금	10,328	6,927	△3,401	△32.9
기반사업부담금	16,805	2,586	△14,219	△84.6
광역지원금(인천시)	43,914	23,713	△20,201	△46.0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기반사업부담금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이후 제1매립장 추가 사후관리 재원으로 활용될 '반입총량제 가산금'을 제외 시 연도 말 잔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중(2018년 1,934억원→2023년 1,390억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반사업부담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조성액	집행액	연도말 잔액		
			계	기반사업 부담금	반입총량제 가산금
2018	429	207	1,934	1,934	-
2019	429	710	1,653	1,653	-
2020	267	271	1,649	1,527	122
2021	305	46	1,908	1,624	284
2022	266	208	1,966	1,479	487
2023	242	241	1,967	1,390	577

주: 반입총량제 가산금 중 일부는 2024년 이후 제1매립장 추가 사후관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해외사업을 제외하고는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수입 감소 대책 현황]

대책 내용	추진 상황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이용한 사업	-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를 이용한 중고차 적치장 임대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 난항
해외 국제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	- 2022.1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조직 및 추진체계 정비 - 몽골 NEDS 매립장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추진 (2022.11. 실시설계용역 착수)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입처 확보 및 기존 사업의 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5-2.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부 규정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2절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2명, 지원금액은 113,894천원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8	8	7	9	8	2
지원금액	400,000	490,910	360,375	499,238	383,121	113,894
1인당 지원 한도	70,000					
관련 내부 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제2절 주택자금 대부					
지원 요건 (2024.7.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최장 14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 대출 이자율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19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2.00%)으로 주택융자금 제공
-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4년 3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3명은 무주택자가 아님에도, 이들에게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택융자금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19	2.00	996,253	미개정	3	2.00	181,326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3.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부 규정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3절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7명, 지원금액은 422,000천원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2	15	16	22	21	7
지원금액	527,761	647,716	635,028	1,017,509	1,060,941	422,000
1인당 지원 한도	70,000					
관련 내부 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제3절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요건 (2024.7.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최장 14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대출 금리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50명에 대해 1인당 한은 금리 미만 수준(2.00%)으로 생활안정자금 제공

○ 1인당 지원 한도의 경우 여전히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7천만원)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44명에 대해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7천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50	2.00	2,500,450	미개정	44	2,440,418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4.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7명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24	7	-	-	1	-	-	6	-	2	-	-	-	-	-	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한 바 있음

○ 이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바,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인사규정」 제77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정직자에게 기본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 1명에게 12,035천원의 보수를 지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	-	-	-	-	1
평균 처분기간	-	-	-	-	-	2
보수지급액	-	-	-	-	-	12,035
관련 내부 규정	「인사규정」 제77조(징계의 효력)					
지원 요건 (2024.7. 기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본급의 10분의 3을 감함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5-5.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부 규정인 「보수규정」 제24조 등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음

○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명예퇴직한 직원 수는 22명이며, 이들에게 총 5,735,283천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명예퇴직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4	-	3	5	5	5
지원금액	590,312	-	923,244	1,197,376	1,476,528	1,547,823
관련 내부 규정	「보수규정」 제24조					
지원 요건 (2024.7. 기준)	20년 이상 재직자 중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을 명시하는 한편, 기준급여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였음

- ○ 기준급여: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할 것
  -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보수체계를 고려하면, 월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의 규모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급' 항목과 달리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본 연봉 이외의 수당이 포함됨
- ○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 아래의 기준에 따를 것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1/4

나. 주요 쟁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급여는 '월평균임금의 90%'인데, 이는 기준급여를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할 것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과 상이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수규정」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비교]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9조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중략)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2.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
명예퇴직수당 산정 방식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45%×정년잔여월수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월평균임금의 45%×정년잔여월수의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수규정」 제24조	① 인사규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급여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으로 한다. 1.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 : 명예퇴직 당시 월평균임금의 45%×정년잔여월수 2. 정년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 : 명예퇴직 당시 월평균임금의 22.5%×(정년잔여월수-60월)
명예퇴직수당 산정 방식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퇴직 당시 월평균임금의 90%×정년잔여월수의 1/2 -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퇴직 당시 월평균임금의 90%×정년잔여월수의 1/4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명예퇴직수당의 기준급여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설정한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2019년 이후 명예퇴직자에게는 지침상 기준 대비 2,094백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명예퇴직수당이 지침의 취지보다 과다하게 산정 및 지급되거나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지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근로복지공단

6-1. 산업재해 사건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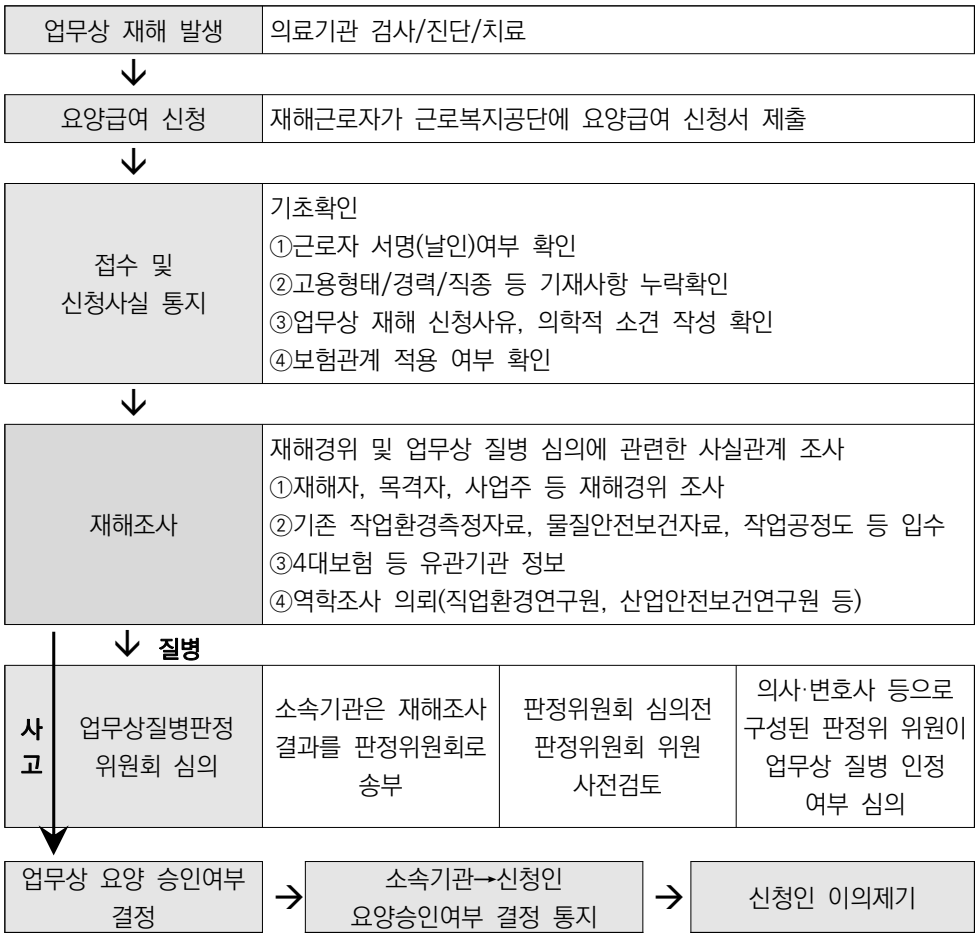
❑ 업무상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산업재해 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급여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급여 심사 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데 업무상 재해는 크게 사고에 의한 경우와 질병에 의한 경우로 분류

- 업무상 사고는 공단 직원이 재해경위 조사 및 근로이력 확인 등의 재해조사를 실시한 후, 공단에서 업무상 요양 여부 바로 결정
- 업무상 질병은 재해조사 실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심의 · 결정하며, 질병과 유해 · 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직업병 등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직업환경연구원(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하여 역학조사 추가실시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업무상 재해 조사 절차]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건수는 2019년 12만 4,988건에서 2023년 16만 2,947건으로 3만 7,959건(30.4%) 증가

- 동 기간 업무상 사고 처리건수는 23.0%(2만 4,559건) 증가, 업무상 질병은 73.4%(1만 3,400건) 증가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처리기간(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은 2019년 40.9일에서 2023년 55.0일로 34.5% 증가

- 처리기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2019년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28.5일 증가

[산업재해 처리건수 및 평균 처리기간]

(단위: 건, 일수, %)

구분		처리건수	승인건수	평균 처리기간
2019(A)	질병	18,266	11,075	186.0
	사고	106,722	102,652	16.1
	합계	124,988	113,727	40.9
2020	질병	18,634	11,432	172.4
	사고	105,287	101,238	15.5
	합계	123,921	112,670	39.1
2021	질병	24,871	15,699	175.8
	사고	116,856	112,767	15.3
	합계	141,727	128,466	43.4
2022	질병	28,796	18,043	182.0
	사고	122,066	117,940	15.9
	합계	150,862	135,983	47.6
2023(B)	질병	31,666	18,333	214.5
	사고	131,281	126,632	16.5
	합계	162,947	144,965	55.0
증감(B-A)	질병	13,400(73.4)	7,258(65.5)	28.5(15.3)
	사고	24,559(23.0)	23,980(23.4)	0.4(2.5)
	합계	37,959(30.4)	31,238(27.5)	14.1(34.5)

주: ( )안은 증감율
자료: 근로복지공단

나. 주요 쟁점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 심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역학)조사 기간의 장기화로 산업재해 인정이 지체되는 문제 발생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직업환경연구원에 자문(이하 전문(역학)조사) 의뢰[1)]

○ 전문(역학)조사 필요성은 공단 본부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결정

- 위원회는 「업무상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업무처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역학)조사 기관(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민간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결정

○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전문(역학)조사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해당 기관에 역학조사 의뢰

[업무상 질병에 관한 전문(역학)조사 업무 분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민간 작업환경측정기관
신종질병, 희귀병, 유해요인조사 등	폐암 등 호흡기 질병 등	측정·분석 필요 질병 (소음성 난청 등)

자료: 근로복지공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업무상질병에 관한 자문)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제2장의 재해조사 외에 규칙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직업환경연구원에 자문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자문한다.
1. 〈삭제〉
2. 영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질병, 인정기준에 질병과 유해요인은 명시되어 있으나 질병과 유해요인의 인과관계 및 다른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질병:「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문(역학)조사 기관의 사건 처리기간은 증가하는 추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는 513.3일이었으나 2023년 952.4일로 439.1일 증가
- 직업환경연구원의 2019년 평균 조사 소요일수는 206.3일이었으나 2023년 588.1일로 381.8일 증가
- 근로복지공단은 전문(역학) 조사 처리기간이 증가하는 이유를 산재 신청 건수 급증에 비례한 역학조사 의뢰 건 증가 및 작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유해물질·질병의 발생 등으로 설명
- 그러나 양 기관 모두 전문(역학) 조사 의뢰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소요일수는 증가하고 있음

[기관별 전문(역학)조사 처리기간]

(단위: 건, 일)

구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		
	의뢰	회신	소요일수	의뢰	회신	소요일수
2019(A)	111	59	513.3	703	548	206.3
2020	54	70	438.0	553	491	275.2
2021	83	68	632.9	596	457	371.5
2022	36	58	664.4	438	398	436.7
2023(B)	30	66	952.4	174	451	588.1
증감 (B-A)	△81	7	439.1	△529	△97	381.8

주: 1. 2024.5월 기준 미처리건수 337건(산업안전보건연구원 59건, 직업환경연구원 278건)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반려건이 포함되었으나 직업환경연구원은 불포함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 전문(역학)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직업환경연구원의 1년 이상 장기 처리기간 사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직업환경연구원의 1년 이상 사건 수는 2019년 전체 회신건수 548건 중 86건으로 15.7%를 차지했으나 2023년 전체 회신건수 451건 중 404건으로 89.6%를 차지하여 73.9%p 증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처리기간 현황]

(단위: 일, 건, %)

연도	평균 소요일수	1년 이상 사건수/ 전체 회신건수	최장 처리기간 사건			
			의뢰일	회신일	소요일수	사유
2019	206.3	86/548(15.7)	'16.6.2.	'19.4.24.	1,057	의뢰 건수 폭증으로 지연
2020	275.2	119/491(24.2)	'17.5.22.	'20.2.19.	1,004	사업장 폐업으로 유사사업장 섭외로 지연
2021	371.5	249/457(54.5)	'19.8.26.	'21.12.21	850	사업장 요청자료 입수 지연
2022	436.7	239/398(60.0)	'19.7.22.	'22.8.24.	1,130	사망원인(COPD) 검토로 지연
2023	588.1	404/451(89.6)	'16.12.19.	'23.7.19.	2,404	급성심장사와 업무관련성에 대한 기존사례없어 문헌 검토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1년 이상 사건 수는 2019년 전체 회신건수 59건 중 30건으로 52.6%를 차지했으나 2023년 전체 회신건수 69건 중 61건으로 88.4%를 차지하여 35.8%p 증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처리기간 현황]

(단위: 일, 건, %)

연도	평균 소요일수	1년 이상 사건수/ 전체 회신건수	최장 처리기간 사건			
			의뢰일	회신일	소요일수	사유
2019	513	30/59(52.6)	'16.4.20	'19.12.31	1,350	최신문헌검토
2020	438	37/70(52.8)	'16.4.20	'20.1.7.	1,357	최신문헌검토
2021	586	50/69(72.5)	'18.4.30	'21.6.28.	1,155	최신문헌검토
2022	664	49/58(84.5)	'19.10.15	'22.12.21	1,163	최신문헌검토
2023	940	61/69(88.4)	'16.6.17	'23.8.22	2,622	최신문헌검토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전문(역학) 조사 등의 장기화로 산업재해 인정이 지체될 경우 재해노동자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노동자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 요양급여 신청이 불가능함에 따라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용 일부를 재해 근로자가 부담[2)]

- 요양급여는 재해로 인한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로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업재해 환자에 대해 진료비(진찰, 처치, 수술 등) 지원
- 요양급여에 따른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재 승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산재 승인 후 본인 일부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환급[3)]

○ 업무상 질병 심사가 장기화 될 경우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원

❑ 산업재해 급여 처리기간 및 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화하여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우선 보장하고 추후 산업재해 심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 행사 방안 고려 필요[4)]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4)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개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조사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우며, 산재급여의 선보상은 기금 재정의 여력, 부당이득 반환문제 등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

6-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1](푸른씨앗)는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장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2021.4.13. 신설되면서 도입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운영[2]' 의 내역사업임

  ○ 2023년 계획액은 133억 1,200만원이었으나 63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69억 4,000만원이 불용[3]되어 집행률은 47.9%에 불과함

[2023회계연도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퇴직연금사업운영	15,855	15,855	-	-	15,855	8,897	-	6,958	22,32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운영	13,312	13,312	-	-	13,312	6,372	-	6,940	20,179

자료: 고용노동부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함. 사업주의 재정부담 경감, 근로자의 노후소득 축적 지원을 위해 부담금의 10%를 지원함

2) 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3) 불용액은 사업주 재정지원금이 대부분(69억 3,700만원)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2, 3[4]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관리 · 운용할 의무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홍보 수단에서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 측면에서 홍보 효과를 조사 및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5]

○ 2023년 실적을 살펴보면 가입자 21,844명에게 사업주 지원금 2,303백만원을 지원하였음. 이는 목표 대비 가입자 기준으로는 25.1%에 불과한 달성률임

- 2022년에도 목표 사업장 85,236개소(28만 2,208명)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2,549개소(9,272명)만 가입하여 가입자 수 기준 3.3%의 달성률에 그쳤던 바 있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연도별 실적]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사업비	집행률
2022	282,208	9,272	3.3	6,420	51.9
2023	87,207	21,844	25.1	13,312	47.9

자료: 고용노동부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5)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2024.7., pp.208~213 참고

-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 단계에서 가입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으나 가입유인 부족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아 집행 부진이 발생했다고 설명
- 그러나 이미 2023년 유인 강화를 위하여 같은 해 4월부터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6]해주는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사업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24년에 전년 대비 51.6% 증액된 201억 7,900만원의 계획액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2023년 1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7]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잘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남
-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도 '제도에 대해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음

○ 미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홍보 수단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홍보 효과를 조사 및 검토할 필요

6) 종전: 사용자 0.2%, 가입자 0.1%

7) 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실태조사, 2023.11.

6-3. 대지급금지급 구상채권 부실과 임금채권보장기금 재무건전성 취약 문제

가. 현 황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지급금지급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 대지급금지급사업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고 있던 체불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사업임

- 퇴직근로자가 기업이 파산 및 도산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근로자의 퇴직여부 및 기업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

○ 2023년 결산기준 대지급금지급 사업은 6,869억원을 지출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총지출의 64.7%를 차지함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표(결산기준)]

(단위: 억원)

수입					지출				
항목		2021	2022	2023	항목		2021	2022	2023
자체수입	이자수입	90	79	323	사업비	대지급금지급	5,466	5,369	6,869
	가산금	1	1	1		체불근로자조력지원	262	141	133
	이전수입	5,033	5,392	5,607		체불청산지원융자	410	332	728
	융자원금회수	94	161	198		소계	6,137	5,841	7,730
	소계	5,218	5,633	6,129	기금운영비		137	162	193
정부내부수입	정부예금회수	1,204	1,100	2,580	정부내부지출	공자기금예탁	1,000	1,000	1,000
	전입금	1	0	1		-	-	-	-
	예탁원금회수	2,000	1,000	1,000		-	-	-	-
	예탁이자회수	20	21	33		-	-	-	-
	소계	3,225	2,121	3,614	여유자금운용		1,169	751	829
합계		8,443	7,754	9,752	합계		8,443	7,754	9,752

자료: 2023년도 고용노동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주요 쟁점

❑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 수혜자 확대 등으로 대지급금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 대지급금지급 실적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에서 2023년 6,869억 500만원으로 3,181억 9,500만원(86.3%) 증가함

- 도산대지급금은 동 기간 2,010억 8,900만원 감소한 반면, 간이대지급금이 동기간 5,192억 8,500만원 증가하여 대지급금지급의 증가는 간이대지급금 증가에 기인함
- 간이대지급금의 지원 상한액이 2017년 400만원, 2019년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자가 재직자로 확대됨에 따라 수요 증가

[대지급금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B)	증감 (B-A)
도산	240,724	232,727	187,467	168,789	109,975	79,360	36,576	39,635	△201,089
(비중)	(65.3)	(62.5)	(50.1)	(36.7)	(19.0)	(14.5)	(6.8)	(5.8)	-
간이	127,986	139,694	186,531	291,090	469,715	467,210	500,288	647,271	519,285
(비중)	(34.7)	(37.5)	(49.9)	(63.3)	(81.0)	(85.5)	(93.2)	(94.2)	-
합계	368,710	372,421	373,998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318,19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율은 감소하고 있고, 미수납채권에서 부실채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함

○ 2023년 기준 누적징수결정액은 6조 9,240억 8,300만원이며, 이 중 회수금액은 2조 1,394억 8,500만원으로 30.9%의 회수율을 보임

- 2019년부터 2023년 변제금 누적회수율은 9.9%p 하락한 반면, 미회수액규모는 동 기간 62.7% 증가함

- 특히 2023년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누적회수율은 16.4%로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회수율(41.1%) 보다 낮으며,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이 전체 대지급금 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34.7%에서 2023년 94.2%로 점차 증가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대지급금 누적회수율 하락 추이는 지속될 것

[연도별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p)

연도	종류	누적징수결정액 (A)	누적회수액 (B)	소멸정리 (C)	미회수액 (A-B-C)	누적회수율 (B/A)
2019	도산대지급금	3,793,500	1,468,487	935,954	1,389,059	38.7
	간이대지급금	780,552	98,894	23,842	657,816	12.7
	소계(a)	4,574,052	1,567,381	959,796	2,046,875	34.3
2020	도산대지급금	3,903,475	1,529,286	944,748	1,429,441	39.2
	간이대지급금	1,250,267	160,579	25,919	1,063,769	12.8
	소계	5,153,742	1,689,865	970,667	2,493,210	32.8
2021	도산대지급금	3,982,836	1,586,748	1,084,139	1,311,949	39.8
	간이대지급금	1,717,477	251,364	27,907	1,438,206	14.6
	소계	5,700,313	1,838,112	1,112,046	2,750,155	32.2
2022	도산대지급금	4,019,412	1,635,636	1,230,028	1,153,748	40.7
	간이대지급금	2,217,765	355,717	31,402	1,830,646	16.0
	소계	6,237,177	1,991,353	1,261,430	2,984,394	31.9
2023	도산대지급금	4,059,047	1,669,185	1,368,310	1,021,552	41.1
	간이대지급금	2,865,036	470,300	86,412	2,308,324	16.4
	소계(b)	6,924,083	2,139,485	1,454,722	3,329,876	30.9
증감율((b-a)/a)		51.4	36.5	51.6	62.7	△9.9

자료: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의 미수납채권은 2023년 3.3조원을 상회하며, 이 중 4년을 경과하여 부실채권으로 볼 수 있는 채권이 4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대지급금 미수납채권 연령분석표]

(단위: 백만원, %)

구분	미납총액 (비율)	채권 연령 현황				
		1년 이내	1~2년	2~3년	3~4년	4년 이상
도산대지급금	1,021,552	36,212	27,513	51,595	58,721	847,512
간이대지급금	2,308,324	577,113	434,252	395,127	350,705	551,126
합계	3,329,876 (100.0)	613,32625 (18.4)	461,765 (13.9)	446,722 (13.4)	409,426 (12.3)	1,398,638 (42.0)

주: 1. 2023년 말 기준
2. ( )안은 비중임

자료: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3년 1,750억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수지차가 커지는 추세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요 재원인 대지급금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

○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2019년 9,587억 7,700만원에서 2023년 5,204억 8,700만원으로 감소

○ 대지급금 변제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의 주요 재원으로 전체 수입의 24.7%를 차지하므로[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변제금 회수 제고 필요

[임금채권보장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지출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수지차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자료: 고용노동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의 재원별 비중(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재원	금액	비중
사업주의 변제금	152,402	24.7
사업주의 부담금	408,272	66.2
기금운용 수익금	32,271	5.2
기타 수익금	24,310	3.9
총 수입	617,255	100.0

자료: 고용노동부

6-4. 퇴직금 관련 자산 추가 적립 필요

가. 현 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1]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누어짐

-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 문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 있음

-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임
-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로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의 주체임

❑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를 운영 중임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 적립방식[2]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 직원에 대해 퇴직시점까지 매년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방식

나. 주요 쟁점

❑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금 관련 부채보다 퇴직금 관련 자산이 약 3,176억원 적어 퇴직금 지급 재원이 부족함

○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 관련 부채는 약 4,556억원이며, 퇴직금 관련 자산은 단기금융상품 등 약 1,380억원으로 단기금융상품은 사외에 적립하고 있음

○ 퇴직금을 지급할 금액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대여하여 퇴직금 관련 자산에 장기대여금이 존재함

[근로복지공단의 2023년 말 퇴직금 관련 부채 및 자산]

(단위: 백만원)

부채(A)		자산(B)		차이금액(B-A)
계정	금액	계정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455,588	현금및현금성자산	17,920	-
-	-	단기금융상품	117,841	-
-	-	국민연금전환금	2	-
-	-	장기대여금	2,243	-
합계	455,588	합계	138,007	△317,581

자료: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사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을 고려해 볼 때, 기관 자체적으로도 퇴직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퇴직금 관련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체불임금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함

7 한국산업인력공단

7-1.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발생

가. 현 황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함)으로, 공단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출연으로 지원 받음

○ 202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출 예산 2,858억 9,600만원에서 자체수입 예산 1,307억 9,700만원을 차감한 1,550억 9,900만원을 출연받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수입 · 지출]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예산	결산	예산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B-A)		155,099	155,099	184,482
수입	자격검정수입	104,914	109,461	80,704
	외국인고용관리수입	16,929	26,522	25,890
	사업외수입	8,954	8,954	6,846
수입 계(A)		130,797	144,937	113,440
지출	자격검정사업	130,249	134,796	132,989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	92,875	96,700	94,270
	과정평가형자격제도	10,574	10,574	10,574
	국가자격시험장확충	8,528	8,528	11,176
	국가전문자격시행	18,272	18,994	16,969
	외국인고용관리사업	16,836	26,429	25,641
	HRD확산	5,154	5,154	1,843
	국제교류협력사업	804	804	504
	경상운영비	132,853	132,853	136,945
지출 계(B)		285,896	300,036	297,922

자료: 산업인력공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및 국가전문자격 시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검정형 493종목, 과정평가형 179 종목, 국가전문자격 37개[1] 운영

○ 2023년 기준 자격검정사업 수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수입의 80.2%(2023년 예산 기준)를 차지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에 출제 및 시행하는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필답형, '23.4.23 시행)에서 613명 응시자의 답안지를 파쇄('23.5.16.)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재시험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짐

○ 서울시 은평구의 연서중학교에서 응시한 613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직원의 과실로 파쇄되었으며 시험 시행 이후 약 한달이 지난 5월 20일쯤 해당사항 인지

○ 후속조치로 재시험 시행 및 수험자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출금액은 재시험에 따른 4,694만 8,000원 및 수험자 보상에 따른 6,126만 2,600원임[2]

- 대상인원 613명 중 566명 응시(47명 응시 미희망)
- 재시험 대상자(613명)에 보상금 지급하였으며 대상 613명 중 599명에 지급(보상기준은 응시자 10만원, 미응시자 10만원+응시수수료)

[재응시 현황]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대상	응시	응시율	시험장소
		613명	566명	92.3%	
'23.6.1.(목) ~ 6.4.(일)	'23.6.9.(금)	243명	214명	88.1%	4개
'23.6.4.(토) ~ 6.25.(일)	'23.6.27.(화)	370명	352명	95.1%	9개

주: 시험장소는 은평중학고, 서울·서울서부·서울남부·서울강남·경기·광주국가자격시험장, 인천 중구청소년수련관(영종도), 말레이시아 세렘반(국외)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자격시험은 기술자격과 전문자격 시험이 있으며, 기술자격은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검정형 548개와 교육·훈련관정 이후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179개로 구분, 전문자격은 202직종으로 구분

2) 599명에 대한 보상금 5,990만원 및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1,362,600원

나. 주요 쟁점

❑ 국가자격시험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이후 수험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3건이 제기됨

- 2023년 6월 19일 수험생 147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2024년 1월 30일 조정기일을 열고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공단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감
- 2023년 7월 10일 수험생 1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2024년 5월 29일 1백 6만 7,8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 진행 중임

[수험자 손해배상 소송 진행 현황]

구분	2023가합33590	2023가단251216	2023가소5837
소제기일	'23.6.19.(월)	'23.7.24.(월)	'23.7.10.(월)
관할법원	서울서부 지방법원		
진행상황	강제 조정 ('24.1.30, 150만원지급) → 공단 이의신청('24.2.19)	1차 변론 예정 (기일 미지정)	판결 선고('24.5.29) 〈1,067,800원 지급〉 → 공단 항소('24.6.24)
원고/소송대리	147명/법무법인 ○현	74명/법무법인 ○롬	1명/개인
피고/소송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법인 ○○루		
청구내용	적극·소극적 손해(생활비 및 수험비용)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 각 5백만원 지급		인건비 등 직접손해 8백만원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출예산에서 수입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므로, 부주의한 사업 집행에 따른 비경상적 지출 발생에 국가의 비용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예산낭비 요인 발생

○ 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험문제 재출제·재시험 및 수험자 보상에 따른 따른 비용 1억 821만원과 소송 비용은 약 11억원[3]으로, 부주의한 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함

- 이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급 상당 이상 임직원 238명의 자발적 모금으로 7,660만원 보상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따라 배상액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3) 재판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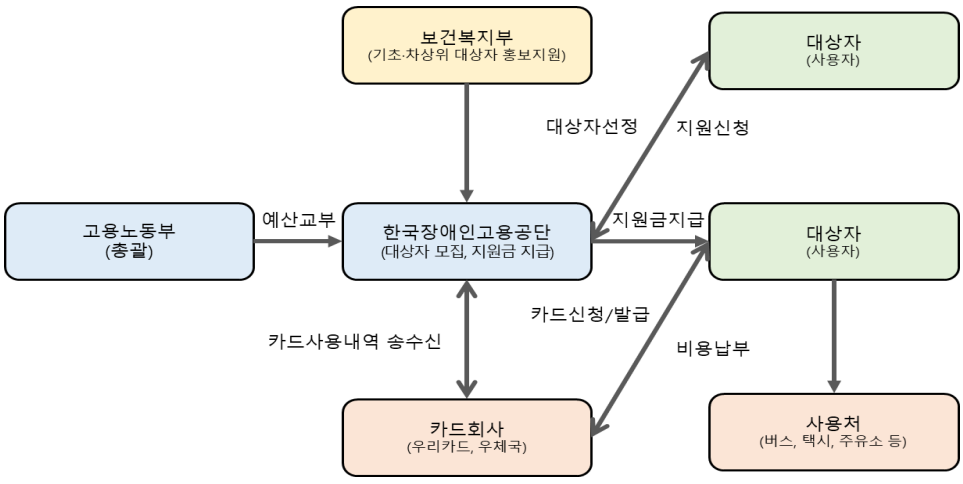
8-1. 중증장애인근로자 출 · 퇴근비용지원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필요

가. 현 황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 · 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1]에 따라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출 · 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시범도입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탁 운영

- ○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중 ①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자
- ○ 지원 내용은 월 7만원 한도('23년까지는 월 5만원 한도)에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사업체계도]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023회계연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계획액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당초	수정					
중증장애인근로자 출 · 퇴근비용 지원	6,948	6,948	-	6,948	5,052	1,896	6,948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주요 쟁점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4년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자를 2023년(15,440명) 보다 4,440명 감소한 11,000명으로 계획함

[중증장애인근로자 출 · 퇴근비용 지원 2023년 및 2024년 예산편성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편성
	예산편성	결산	
출퇴근 비용 지원	6,648 = 15,440×5만원 ×12개월×71.76%	4,752 지원인원 14,093명	6,274 = 11,000명×7만원×12개월 ×67.9%
사업운영비	300 =22개지사×13백만원	300 =22개지사×13백만원	①사업운영비 300 = 22개지사×13백만원 ②시스템유지비 23 = 1식×23백만원
합계	6,948	5,052	6,597

주: 고용노동부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금 신청자의 급증으로 2024년 2월 지원 인원 목표를 상회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 인원 현실화 필요

○ 동 사업 예산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 시행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5,400명 지원에서 2024년 11,000명 지원으로 감소하여 편성함

- 서울시 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 인천) 버스 환승요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3년 8월 시행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은 교통수단 및 거주지역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 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음

○ 2024년 7월말 기준 1만 4,071명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2024년 지원 목표인 1만 1,000명은 이미 2월에 상회함

○ 당초 계획보다 신청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의 빠른 소진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원 인원 등의 현실화 필요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예산 및 지원인원]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지원인원(누적)
	예산액	집행액(누적)	
2024년 1월	6,597	172	7,288
2024년 2월		803	11,986
2024년 3월		1,481	12,988
2024년 4월		2,189	13,538
2024년 5월		2,907	13,808
2024년 6월		3,610	13,978
2024년 7월		4,316	14,07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 학교법인한국폴리텍

9-1. 학과신설 · 개편에 따른 원활한 교원 수급 필요

가. 현 황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학과신설 및 개편 사업은 사업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폴리텍대학의 학과신설과 개편에 소요되는 장비·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임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의 내내역사업에 포함된 학과 신설 및 개편사업과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학과신설 및 개편사업,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탄소중립기술인력양성의 내내역사업에 포함된 저탄소분야 학과신설 사업으로 이루어짐

- 2023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학과신설 및 개편 사업 예산은 총 825억 1,0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학과신설 및 개편 사업 예산편성 근거]

(단위: 백만원)

인력개발사업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 학과 신설 및 개편: 65,450 - AI+x 학과신설: 5개 학과×3,000백만원 - 반도체 학과신설: 10개 학과×3,500백만원 - 혁신성장동력학과 개편: 15개 학과×1,030백만원	○ 학과 신설 및 개편: 2,060 - DX-Academy 2개과 × 1,030백만원
탄소중립기술인력양성	
○ 학과 신설: 15,000 - 저탄소 학과신설: 5개 학과×3,000백만원	

주: 사업의 예산은 모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산이며 학과 신설 및 개편에 필요한 교원 충원 예산은 따로 책정되지 않고 학교법인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의 인건비 예산에 포함됨

자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신설 학과는 반도체 분야 10개 학과 AI 분야 5개 학과 및 저탄소 그린에너지 영역의 5개 학과 등 20개 학과

○ 반도체 학과 700명, AI+x 학과 350명 및 저탄소 학과의 인원은 350명으로 총 1,4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함

[2023회계연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학과 신설 사업]

신설분야	캠퍼스	학과명	인원	예산액
반도체 (10개)	인천	반도체시스템	700명 (학위 500명, 하이테크 200명)	350억원 (장비비 250억원 시설비 100억원)
	인천	반도체공정		
	아산	반도체디스플레이		
	아산	반도체장비		
	광주	반도체시스템제어		
	부산	반도체시스템		
	반도체융합	반도체테스트		
	반도체융합	반도체장비개발		
	대전	반도체장비제어		
	대전	반도체융합기계		
AI+x (5개)	청주	디지털기계시스템	350명 (학위 250명 하이테크 100명)	150억원 (장비비 100억원 시설비 50억원)
	대전	클라우드보안		
	광주	지능형에너지설비		
	울산	AI산업안전시스템		
	항공	항공모빌리티		
저탄소 (5개)	홍성	전기자동차	350명 (학위 250명 하이테크 100명)	150억원 (장비비 100억원 시설비 50억원)
	광주	에너지재료		
	전남	미래전기자동차		
	울산	기계시스템		
	부산	전기자동차		

자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의 학과 신설 및 개편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교원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22년 신설된 AI+x 및 저탄소 분야의 10개 학과에 30명의 교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10명만 채용되어 53.3% 충원하였고, 2023년 17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10명을 채용하여 58.8% 충원

○ 2023년 신설된 반도체, AI+x 및 저탄소 분야의 20개 학과에 24명의 교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4명만 채용되어 16.7% 충원

○ 분야별로, 2023년 반도체 분야에서 13명 채용을 계획했으나 실제 채용 1명으로 7.7% 충원되었고, AI+x 분야 5명 채용을 계획했으나 채용은 2명으로 40.0% 충원, 저탄소 분야의 경우 6명 채용을 계획했으나 1명으로 16.7% 충원에 그침

[학과 신설에 따른 신규교원 채용 현황]

(단위: 명)

	캠퍼스	신설 학과	2022			2023		
			계획	채용	차이	계획	채용	차이
22년 신설	서울정수	메타버스콘텐츠	2	2	-	1	-	1
	성남	그린반도체설계	2	2	-	-	-	-
	성남	인공지능소프트웨어	4	2	2	1	1	-
	인천	디지털융합제어	4	1	3	2	1	1
	춘천	인공지능SW융합	4	2	2	2	2	-
	대전	메타버스콘텐츠	6	2	4	2	1	1
	전북	스마트전기자동차	2	1	1	1	-	1
	전북	농생명바이오시스템	2	1	1	3	2	1
	대구	그린반도체시스템	2	2	-	2	2	-
	대구	이차전지시스템	2	1	1	3	1	2
	2022년 소계		30	16	14	17	10	7

(단위: 명)

	캠퍼스		신설 학과	2022			2023		
				계획	채용	차이	계획	채용	차이
23년 신설	반도체 (10)	인천	반도체시스템	-	-	-	2	-	2
		인천	반도체공정	-	-	-	2	1	1
		아산	반도체장비	-	-	-	2	-	2
		아산	반도체디스플레이	-	-	-	2	-	2
		광주	반도체시스템제어	-	-	-	1	-	1
		부산	반도체시스템	-	-	-	2	-	2
		반도체융합	반도체장비개발	-	-	-	-	-	-
		반도체융합	반도체테스트	-	-	-	-	-	-
		대전	반도체융합기계	-	-	-	1	-	1
		대전	반도체장비제어	-	-	-	1	-	1
		반도체 분야 소계		-	-	-	13	1	12
	AI+x (5)	대전	클라우드보안	-	-	-	-	-	-
		청주	디지털기계시스템	-	-	-	2	-	2
		광주	지능형에너지설비	-	-	-	2	1	1
		울산	AI산업안전시스템	-	-	-	-	-	-
		항공	항공모빌리티	-	-	-	1	1	-
		AI+x 분야 소계		-	-	-	5	2	3
	저탄소 (5)	홍성	전기자동차	-	-	-	2	-	2
		광주	에너지재료	-	-	-	1	1	-
		전남	미래전기자동차	-	-	-	2	-	2
		부산	전기자동차	-	-	-	1	-	1
		울산	기계시스템	-	-	-	-	-	-
		저탄소 분야 소계		-	-	-	6	1	5
	2023년 소계			-	-	-	24	4	20
합계				30	16	14	41	14	27

자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교원 수급계획을 2027년까지 400명으로 세우고 있으나, 수급계획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원 수급계획 달성을 위한 방안마련 등 학사 운영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학과신설 및 개편, 퇴직 인원에 따른 교원 수급 예정]

(단위: 명)

연도	교원 현황		
	퇴직예정교원	신설 · 개편에 따른 필요 교원	수급계획
2024	72	60	110
2025	69	60	110
2026	59	60	100
2027	54	30	80
합계	254	210	400

자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9-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보수규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2,484명의 임직원에게 총 10,402,326천원을 지급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B	2,462.5	-	9,890,517	9,890,517
2023	B	2,477.5	-	10,151,235	10,151,235
2024	B	2,483.5	-	10,402,326	10,402,326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최하위 등급(여섯째)의 지급률이 45%로,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에 불과하는 등 지급 인원 비율의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내부	0	195	9	135	20	113	47	90	16	68	8	45
2023	내부	0	195	10	135	21	113	45	90	17	68	7	45
2024	내부 (연봉제)	1	195	9	135	21	113	45	90	17	68	7	45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9-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63명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478	63	9	0	11	0	20	23	1	7	8	0	0	7	8	32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상기한 내용 중 일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바,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2019년 이후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 9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

○ S 1명, A 1명, B 5명, C 2명, 성과급 20,876천원 과다 지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채용 비위	계
인원 수	-	4	5	-	9
평가 등급	-	B 3명 C 1명	S 1명 A 1명 B 2명 C 1명	-	S 1명 A 1명 B 5명 C 2명
징계연도	-	'19년 2명 '20년 1명 '21년 1명	'19년 2명 '20년 2명 '21년 1명	-	'19년 4명 '20년 3명 '21년 2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	8,152	12,724	-	20,876

주: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1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가. 일반 현황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28개 기관임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3개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준시장형 공기업 6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관, 건설기술교육원 등 15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28개 기관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주무부처	유형	공공기관명
국토교통부 (28)	시장형 공기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타공공기관 (15)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28)		

자료: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인력 현황

❑ 2023년 기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총 85,886명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등 28개이며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85,886명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2019~2023)]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국토교통부 (28)	시장형 공기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	1,641	1,942	1,940	1,930	1,946
		한국공항공사	2,622	2,704	2,768	2,770	2,721
		한국도로공사	7,964	8,964	9,094	9,166	8,997
	준시장형 공기업 (6)	한국토지주택공사	9,456	9,683	8,979	8,951	8,871
		한국부동산원	1,009	1,048	1,120	1,189	1,182
		주택도시보증공사	819	858	963	1,063	1,1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67	380	379	385	365
		한국철도공사	32,430	32,424	32,339	32,508	32,115
		주식회사 에스알	668	669	685	686	67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662	796	931	1,072	1,087
		한국국토정보공사	4,516	4,539	4,625	4,704	4,563
		국가철도공단	2,018	2,095	2,200	2,231	2,185
		한국교통안전공단	1,762	1,811	1,864	1,833	1,848
	기타공공기관 (15)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98	198	217	226	22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44	146	153	155	153
		주택관리공단(주)	2,651	2,673	2,748	2,783	2,72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	54	72	81	97	94
		새만금개발공사	90	95	102	105	105
		코레일유통(주)	488	504	507	507	482
		코레일로지스(주)	134	838	839	839	543
		코레일관광개발(주)	1,404	1,403	1,405	1,403	1,303
		코레일네트웍스(주)	1,915	1,916	1,916	1,916	1,679
		코레일테크(주)	5,008	5,257	5,259	5,395	5,267

(단위: 개, 명)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항공안전기술원	97	103	107	108	108
		건설기술교육원	83	83	83	83	8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0	66	66	81	81
		국립항공박물관	73	83	83	83	83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6,741	6,771	6,317	6,317	5,276
합계			85,014	88,121	87,770	88,586	85,886

주: 1. 임직원 정원은 상임임원과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의 합계
2. 공공기관 유형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 3개, 준시장형 공기업 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로 총 13개 기관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임

-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2년 보통(C)등급에서 2023년 우수(A)등급으로 2등급 상승함

○ 2022년 평가 대비 2023년 평가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안전관리원임

-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까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23년부터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우수(A)등급을 받았으나 2023년 양호(B)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3년 평가 결과(미흡(D) 등급)에 따라 경영실적 미흡으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음

○ 2023년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장 경고 및 안전 관련 개선계획 제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9~2023)]

(단위: 등급,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토교통부 (13)	시장형 공기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	경평결과	B	B	C	C	A
			경평성과급	8,804	6,712	6,264	4,557	2,548
		한국공항공사	경평결과	B	B	C	C	D
			경평성과급	5,340	6,509	5,527	2,718	2,200
		한국도로공사	경평결과	A	A	A	A	B
			경평성과급	8,068	10,401	8,901	8,808	9,798
	준시장형 공기업 (6)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경평결과	C	C	B	C	C
			경평성과급	3,421	2,659	1,765	3,899	3,855
		주식회사 에스알	경평결과	D	B	C	C	C
			경평성과급	3,943	1,649	2,636	2,391	2,341
		주택도시보증공사	경평결과	C	B	C	D	D
			경평성과급	4,750	4,195	4,952	4,122	-
		한국부동산원	경평결과	A	A	A	B	B
			경평성과급	6,868	9,005	7,740	7,475	6,904
		한국철도공사	경평결과	D	C	E	E	D
			경평성과급	5,098	0	2,482	1,006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평결과	A	D	D	D	C
			경평성과급	9,928	9,962	0	1,340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국가철도공단	경평결과	A	C	B	C	C
			경평성과급	991	1,708	522	1,428	1,094
		국토안전관리원	경평결과	D	C	C	C	D
			경평성과급	1,615	599	886	862	1,379
		한국교통안전공단	경평결과	B	C	C	B	A
			경평성과급	1,214	1,664	1,317	1,029	2,113
		한국국토정보공사	경평결과	C	C	B	D	D
			경평성과급	1,853	1,063	806	974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3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평성과급은 1인당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라. 종합청렴도 현황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2개, 준시장형 공기업 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4개 기관임

- ○ 2022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3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코레일유통(주) 등 3개 기관이며, 2022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임
  - 주식회사 에스알은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
- ○ 국가철도공단은 4년 연속(2020~2023년) 4등급을 받음
-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년 연속(2022~2023년) 4등급을 받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9~2023)]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국토교통부 (18)	시장형 공기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	3	3	4	2	2
		한국공항공사	3	2	2	3	3
		한국도로공사	4	4	3	4	4
	준시장형 공기업 (6)	한국토지주택공사	4	4	5	4	4
		한국부동산원	-	3	2	2	2
		주택도시보증공사	2	2	3	3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4	3	4	4
		한국철도공사	3	4	3	2	3
		주식회사 에스알	-	-	2	-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3	3	3	3	3
		한국국토정보공사	2	3	3	2	2
		국가철도공단	2	4	4	4	4
		한국교통안전공단	2	3	3	3	2
	기타공공기관 (5)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	-	3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	2	-	4	3
		주택관리공단(주)	-	-	3	3	3
		코레일유통(주)	-	-	5	3	3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	3	3	2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가. 현 황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은 2024년 기준 9개 기관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3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6개 기관임

- ○ 시장형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임
- ○ 준시장형 공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이 있음

나. 주요 쟁점

(1) 수익성

❑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의 지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9개 공기업 중 2019년, 2022년 대비 2023년의 수익성이 모두 악화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로 나타남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수익성]

구분	2019년 대비 2023년	2022년 대비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악화	악화
한국도로공사	악화	개선
한국철도공사	악화	악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악화	악화
인천국제공항공사	악화	개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선	개선
한국공항공사	악화	개선
주식회사 에스알	악화	악화
한국부동산원	개선	개선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토지·주택 분양이익이 감소하고, 임대주택 물량누증에 따른 임대부문 손실의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됨
- ○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과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 동력비, 수선비 등이 증가했고, 차입금 증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됨
-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개인보증 사고 급증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 증가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 주식회사 에스알은 코로나19 감염자 수 감소에 따라 수송량이 증가하였으나, 평균 전력단가 상승에 따른 동력비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악화됨

❑ 2023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임

- ○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로 2020년 이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매출액이 4조 401억원, 영업이익이 4조 4,034억원, 당기순이익이 3조 4,620억원 감소함

- ○ 매출액 감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토지 분양대금 연체 증가로 인한 것임
-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감소는 상술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사고 급증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로 보증영업비용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2023년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각각 △308.6%, △298.0%로 나타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액	205,298	244,336	273,459	196,263	138,840	△57,423
	영업이익	27,827	43,346	56,486	18,128	437	△17,691
	당기순이익	22,447	33,029	41,633	14,327	5,158	△9,169
	영업이익률	13.6	17.7	20.7	9.2	0.3	△8.9
	당기순이익률	10.9	13.5	15.2	7.3	3.7	△3.6
한국도로공사	매출액	87,219	95,575	105,351	107,795	107,280	△515
	영업이익	12,387	6,230	6,185	8,541	7,888	△653
	당기순이익	996	275	336	637	1,188	551
	영업이익률	14.2	6.5	5.9	7.9	7.4	△0.5
	당기순이익률	1.1	0.3	0.3	0.6	1.1	0.5
한국철도공사(별도)	매출액	56,027	44,005	51,428	54,558	58,159	3,601
	영업이익	△1,446	△11,685	△8,661	△4,364	△4,743	△379
	당기순이익	△853	△12,381	△11,081	△3,104	△5,425	△2,321
	영업이익률	△2.6	△26.6	△16.8	△8.0	△8.2	△0.2
	당기순이익률	△1.5	△28.1	△21.5	△5.7	△9.3	△3.6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10,596	9,760	8,798	12,685	12,951	266
	영업이익	4,848	3,926	4,941	△2,428	△39,962	△37,534
	당기순이익	3,836	2,918	3,620	△4,087	△38,598	△34,511
	영업이익률	45.8	40.2	56.2	△19.1	△308.6	△289.5
	당기순이익률	36.2	29.9	41.1	△32.2	△298.0	△265.8
한국공항공사	매출액	9,709	5,804	5,801	6,568	8,502	1,934
	영업이익	1285	△2,610	△2,740	△2,050	△521	1,529
	당기순이익	188	△1,487	△2,311	△1,876	△1,272	604
	영업이익률	13.2	△45.0	△47.2	△31.2	△6.1	25.1
	당기순이익률	1.9	△25.6	△39.8	△28.6	△15.0	13.6

주: 한국철도공사는 ㈜에스알의 주주이므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19년, 2022년 대비 2023년의 재무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로 나타남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구분	2019년 대비 2023년	2022년 대비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악화	악화
한국도로공사	악화	악화
한국철도공사	악화	악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악화	악화
인천국제공항공사	악화	개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악화	개선
한국공항공사	악화	악화
주식회사 에스알	개선	개선
한국부동산원	유지	유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보상 및 조성공사를 위한 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 사채 등 이자부담부채가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말 금융부채가 117.1조원이며, 부채비율은 218.3%로 매우 취약한 수준은 아니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에 의한 공사채 발행 증가로 인해 사채 및 외부차입금이 증가함

○ 한국철도공사는 당기순손실 및 철도차량 취득에 따른 공사채 발행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 한국철도공사는 총자산 중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금융부채의 비율인 차입금의존도가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자보상배율이 음(-)으로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수준임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채 증가(보증부채 증가) 및 자본 감소(결손금 증가)로 인한 영향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손실로 인해 2022년 △141.9배, 2023년 △1,384.2배로 나타나, 이자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영업외수익 또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의한 손실로 인해 외부차입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사채 규모는 변동 없으나 자산이 소폭 감소하여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함

[부채, 금융부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p, 배)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감(B-A)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1,266,800	1,297,451	1,388,884	1,466,172	1,528,473	62,301
	금융부채	936,098	966,083	1,040,661	1,103,840	1,171,380	67,540
	부채비율	254.2	233.6	221.3	218.7	218.3	△0.4
	차입금의존도	37.4	37.2	37.3	38.2	39.6	1.4
	이자보상배율	1.2	2.1	2.9	0.9	0.0	△0.9
한국도로공사	부채	294,536	311,658	332,834	358,300	383,391	25,091
	금융부채	285,440	300,198	321,772	345,028	371,214	26,186
	부채비율	81.1	82.0	83.0	84.3	87.3	3.0
	차입금의존도	41.0	41.8	42.2	42.1	43.3	1.2
	이자보상배율	1.7	1.0	1.0	1.4	1.2	△0.2
한국철도공사(별도)	부채	157,297	174,408	181,453	195,782	203,585	7,803
	금융부채	120,534	127,179	132,741	147,896	162,096	14,200
	부채비율	255.3	242.1	281.4	220.6	242.5	21.9
	차입금의존도	51.7	48.3	50.3	48.6	52.4	3.8
	이자보상배율	△0.4	△4.1	△3.1	△1.4	△1.3	0.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채	18,683	18,721	17,600	19,769	24,541	4,772
	금융부채	1,185	1,123	1,087	1,144	1,185	41
	부채비율	32.6	31.5	26.6	35.4	116.9	81.5
	차입금의존도	1.6	1.4	1.3	1.5	2.6	1.1
	이자보상배율	67.9	54.8	134.8	△141.9	△1,384.2	△1,242.3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채	29,749	40,502	54,207	68,726	75,587	6,861
	금융부채	14,890	27,470	43,397	57,048	61,142	4,094
	부채비율	32.0	47.9	69.8	94.2	96.7	2.5
	차입금의존도	12.1	22.0	32.9	40.3	39.8	△0.5
	이자보상배율	24.5	△8.6	△18.1	△7.0	5.3	12.3

주: 1. 한국철도공사는 ㈜에스알의 주주이므로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외 기관은 연결 및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2. 부채비율은 (부채÷자본)×100, 차입금의존도는 (이자부부채÷총자산)×100,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산출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한국토지주택공사

3-1. 미분양 장기보유재고 매각활성화 필요

가. 현 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고자산은 2021년 장부가액 기준 72조 7,429억원에서 2023년 83조 2,881억원으로 증가

- ○ 토지의 경우 2021년 60조 2,875억원에서 2023년 65조 7,979억원으로 제품 재고자산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 주택의 경우 2021년 12조 4,549억원 수준에서 2023년 17조 4,896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재고자산 현황(2021~2023)]

(단위: 억원, %)

구분	토지	주택	합계
2021	602,875	124,554	727,429
2022	620,702	155,488	776,190
2023	657,979	174,902	832,881

주: 장부가액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임

- ○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 2,447억원에서 2023년 5,158억원으로 감소
  부채비율은 2019년 254.2%에서 2023년 218.32%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200%를 상회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및 손익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고자산	671,295	686,607	727,429	776,190	832,881
자산	1,765,151	1,852,865	2,016,501	2,136,488	2,228,569
부채	1,266,800	1,297,451	1,388,884	1,466,172	1,528,473
자본	498,351	555,414	627,617	670,316	700,096
당기순이익	22,447	33,029	41,633	14,327	5,158
부채비율	254.2	233.6	221.3	218.7	218.3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고자산 중 완성후 미분양토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장기보유재고자산(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품(토지) 장부가액 11조 8,072억원 중 재무상태표 내 완성토지 상 미분양토지는 7조 5,608억원임 (1년 미만 제외)

- 3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토지 장부가액이 4조 1,479억 4,400만원으로 전체 54.86%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3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 5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토지 장부가액이 3조 2,737억 5,400만원으로 3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토지의 78.9%, 전체 43.3%의 비중을 차지

[2023년 미분양 토지 현황(준공후 경과년수)]

(단위: 개, 천㎡, 백만원, %)

구분	사업지구수(개)	면적(천㎡)	자산가액	
			금액(백만원)	비중(%)
1년 미만	16	1,543	1,744,228	23.07
1~2년	13	1,822	1,387,142	18.35
2~3년	5	327	281,453	3.72
3년 이상	159	6,656	4,147,944	54.86
5년 이상	133	5,913	3,273,754	43.30
10년 이상	97	1,796	1,100,585	14.55
합계	193	10,348	7,560,767	100.0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3-2. 집단에너지사업 장기간 미매각 문제

가. 현 황

❑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공공기관의 생산성 ·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 조직 ·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능) 민간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축소 및 조정 (조직 · 인력) 2023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예산) 하반기 경상경비 · 업추비 예산 절감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청사 활용도 제고 (복리후생)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 · 정비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이행안을 수립하였는데, 이 중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총 7,778억원의 자산을 효율화할 것으로 계획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효율화계획 총괄표]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계
비핵심 부동산	148	50	24	4,618	-	7	74,847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	2,379	1	-	1	-	2,382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90	32	427	-	-	-	549
합계	239	2,461	452	4,618	1	7	7,778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효율화 계획 수립 시 2023년까지 2,700억원의 매각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중 321.5억원만 이행 완료하였음

○ 2023년까지 계획 대비 자산매각 이행률은 11.9%에 불과하며 2,378.5억원의 매각 금액을 미이행하였음[1)]

○ 불요불급한 자산 미이행 실적은 집단에너지사업 미매각 실적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효율화계획 이행 실적(2023년 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계획 금액(A)	이행실적(B)	이행률(B/A)
비핵심 부동산	198	177.2	89.5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2,380	1.28	0.1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122	143.02	117.2
합계	2,700	(이행) 321.5 (미이행) 2,378.5	11.9

주: 2023년 말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효율화계획에 반영된 집단에너지사업은 아산배방·탕정 및 대전 서남부 집단에너지 사업임

○ 열공급 허가세대수는 아산배방·탕정이 30,619호, 대전서남부가 35,512호인데 실제 공급 세대수는 아산배방·탕정이 29,814호, 대전서남부가 33,759호로 허가세대와 실제 공급세대가 차이 발생

1) 단, 계획금액 외 추가목표 부여 및 매각 노력으로 비핵심부동산 매각 유형 중 하남·광명시흥 사업본부 외 대체자산 3,150억원 등의 매각실적을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구분		아산배방 · 탕정	대전서남부
사업종류		(전기) 한국전력공사 판매 (열) 수용가 판매	
공급규모	열(Gcal/h)	236	322
	전기(MW)	101.7	48.3
사용연료		LNG	LNG
건설기간		'07.10 ~ '11.01	'08.05 ~ '11.01
열공급 허가세대수(A)		30,619	35,512
열공급 세대수(B)		29,814	33,759
열공급 허가세대수 대 공급세대수 차이(A-B)		△805	△1,753

주: 2023년 결산 기준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설비가동률은 타 집단에너지사업에 비해 저조하며, 낮은 가동률로 인해 당기순손실 누적 심화

○ 집단에너지사업의 평균 설비가동률은 2021년 27.3%, 2022년 31.6%, 2023년 28.5%임

- 집단에너지사업이 주요사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21년 평균 설비가동률 49.9%, 2022년 51.1%, 2023년 49.2%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 설비가동률]

(단위: Gcal, %)

구분	연도	아산(2009~2023)	대전(2010~2023)	합계	한국지역난방공사
생산량 (A)	2021	250,380	204,494	454,874	18,217,645
	2022	292,335	233,617	525,952	18,779,110
	2023	269,425	205,254	474,679	17,738,560
생산가능용량 (B)	2021	876,000	790,152	1,666,152	36,531,408
	2022	876,000	790,152	1,666,152	36,723,468
	2023	876,000	790,152	1,666,152	36,088,201
설비가동률 (C=A/B)	2021	28.6	25.9	27.3	49.9
	2022	33.4	29.6	31.6	51.1
	2023	30.8	26	28.5	49.2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집단에너지사업의 누적 손익현황(2009~2023년)에 따르면 매출 8,574억원에 매출원가 1조 827억원, 영업이익 △2,252억원, 당기순이익 △1,742억원이 발생해 수익이 좋지 않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분	아산(2009~2023)	대전(2010~2023)	합계
매출	5,275	3,299	8,574
매출원가	6,287	4,540	10,827
영업이익	△1,012	△1,240	△2,252
영업외이익	300	210	510
당기순이익	△713	△1,029	△1,742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은 낮은 가동률에 따른 영업이익 적자 및 당기순손실 누적 등으로 매각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인 자산매각계획시점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은 2013년 매각 유찰(2013.6), 2023년 매각 유찰(최초: 2023.6, 재공고 2023.8)로 매각에 난항이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진행일정]

일정	내용
2009.7	감사원 감사결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부적정 통보
2009.12	집단에너지시설 매각 추진계획 수립(준공 후 순차적 매각 추진)
2012.4	아산배방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추진방안 수립(이사회 의결)
2013.2	아산배방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 시행
2013.6	예비입찰제안서 접수(유찰: 응찰자 없음)
2013.9	아산배방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전략 변경 시행 (설비가동률 80% 또는 영업이익 발생 등 매각조건 호전시까지 매각 유보)
2021.6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집단에너지사업 폐지)
2023	본입찰 공고(최초: 2023.6 유찰, 재공고: 2023.8 유찰)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3. 수탁사업 자금 이자수익률 제고 필요

가. 현 황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2023년 기준 총 167개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한편, 2023년 말 기준 총 5,799억원의 수탁사업자금을 관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수탁사업별 결산상 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수탁사업명	위탁주체	연말 기준 결산상 잔액		
		2021	2022	2023
용산공원 조성 등	국토교통부	41,517	55,357	25,462
시흥은계(09, 보금4) 등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3,049	2,999	3,002
그 외 사업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397,710	496,350	551,430
계		442,276	554,706	579,894

주: 1.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사업에 포함하여 작성
2.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 사업에 포함하여 작성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사는 수탁사업자금 관련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 등에 보통예금 이율(연 0.1%) 수준의 이자만을 반납하였는데, 이는 MMT, 정기예금 등 공사 자체사업자금의 이자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2023회계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현금성자산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이자수익률	비고
보통예금	579,894	원화	0.1%	수탁사업자금
보통예금	238,212	원화	0.1%	자체사업자금
MMDA	84,900	원화	2.3%	
MMT	221,700	원화	3.5%	
정기예금	220,000	원화	3.94%	
계	1,344,706			

주: 1. MMT(Money Market Trust): 안정성이 높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자금운용 신탁상품
2.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가입 시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낮은 이율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수탁사업자금은 궁극적으로 공적 자금의 운용 수익이 민간 금융기관에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탁사업자금에 대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제2항[1]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입장이나, 타 기관의 사례[2]를 고려하면 수탁사업자금에 대해서도 보통예금 수준을 상회하는 이율을 적용 가능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별도 계정 등)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2) 타 공공기관 예시: 한국환경공단 수탁사업 수익 및 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탁사업 수익	수탁사업 비용	연도 말 재무제표 계상 사업자금 잔액	이자수익	이자수익률	사업별 별도계좌 관리 여부
정부	2021	347,158	347,158	174,752	1,619	0.50%	O
	2022	376,386	376,386	183,676	5,181	1.57%	
	2023	324,272	324,272	106,008	7,550	3.04%	
지자체	2021	802,026	802,026	1,360,923	7,552	0.50%	O
	2022	911,902	911,902	1,157,613	21,373	1.57%	
	2023	949,446	949,446	1,000,423	36,745	3.04%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위·수탁계약 체결 시 적정 수준의 이자를 위탁주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공사와 같이 수탁사업의 수가 많고 사업별 자금의 규모가 작은 경우[3] 자금 운용 과정에서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수납하여 운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3)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167개 수탁사업의 계좌 중 92개 계좌의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잔액이 10억원 미만이며, 계좌별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잔액의 평균은 약 34.7억원임

3-4.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1)]

○ 고객만족도 종합 점수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등급, 80점 이상은 C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을 받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내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항]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평균 대비 낮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 부분 주요사업(주거복지·주택건설·토지공급)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합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임[2)]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기획재정부는 조사단계별로 기본설계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주관업체(한국능률협회 등 2개 업체) 및 실시업체(한국리서치 등 6개 업체)에 위탁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함(0.4점)

2)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 고객만족도 점수 하위 4개 기관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랜드
점수	79.4	77.8	77.1	73.8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기업(평균)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 결과]

(단위: 점)

구분		2021	2022	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급	D	D	D
	점수(A)	71.5	76.4	77.1
공기업(평균) (B)		86.6	86.0	87.0
점수 차이(B-A)		15.1	9.6	9.9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든 세부항목별 고객만족도가 3년 동안 공기업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공공기관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5가지 부분(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국민행복 및 신뢰 등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구성[3)]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점수가 3년간 특히 더 저조한 상황

[공기업(평균) 및 한국토지주태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항목별 점수]

(단위: 점)

구분	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국민행복 및 신뢰)	
	공기업 (평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공기업 (평균)	한국 토지 주택 공사
2021	88.6	75.1	85.5	64.0	84.1	70.1	86.5	71.5	85.0	70.5
2022	88.2	79.8	84.8	71.6	83.5	74.0	85.8	76.3	84.0	76.6
2023	89.1	80.7	85.8	73.7	84.8	75	86.8	76.3	84.7	77.3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서비스품질(서비스 상품의 본원적 품질, 서비스 전달과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환경 등에 대한 만족 정도) 사회적책임(공공기관으로서 정책타당성, 지속가능성, 윤리성 정도), 기대 대비 불일치(기대, 이상점, 타 기관 이용 경험 등과 대비 지각된 서비스 수준의 일치/불일치 정도), 전반적 만족도(서비스 이용 후 전반적 만족도 및 기관에 대한 긍정적 느낌), 성과(서비스 이용 후 기관 사업 활동에 대한 신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정도)

3-5.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0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772명, 지원금액은 65,021,209천원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056	989	891	850	776	772
지원금액	95,315,773	88,479,314	79,806,502	75,886,436	67,590,885	65,021,209
1인당 지원 한도	「구입」 (2019~2022.7.31.) 50,000~90,000 / (2022.8.1.~) 70,000 「임차」 9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22년도 제5차 기금이사회 의결 대출 사업기준, 복지후생규정					
지원 요건 (2024.7. 기준)	(구입)2년 이상 재직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1년 이상 무주택자(1회 한정) (임차) 근무지역 무주택 부양가족 동반직원 등					
상환 조건 (2024.7. 기준)	최장 20년(거치기간 최장 2년 포함)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인정과세 ~3.00	인정과세 ~3.00	인정과세 ~3.00	인정과세 ~3.00	2.80~3.00	3.00~4.82	3.10~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과도한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제공,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8월 및 2023년 12월에서야 비로소 지침상 한도 내에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지침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12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에 대해 여전히 인정과세~4.82%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12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8명에 대해 여전히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100~113㎡)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제공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2년 8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에 대해 여전히 1인당 7천만원을 초과(9천만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406	인정과세~4.82	33,939,620	임차의 경우 미개정	333	29,733,970	임차의 경우 미개정

85㎡ 초과 면적 주택의 구입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면적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개정 시기)
8	100~113	640,000	개정(2023.12.29.)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3-6.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0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3,179명, 지원금액은 85,342,403천원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801	2,006	2,927	3,400	3,134	3,179
지원금액	47,332,211	54,309,240	101,018,290	119,047,314	97,762,868	85,342,403
1인당 지원 한도	(~2023.12.28.) 30,000~50,000 / (2023.12.29.~) 2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23년도 제7차 기금이사회 의결 대출 사업기준					
지원 요건 (2024.7. 기준)	2년 이상 재직하고, 만 23세 이상인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최장 7년(거치기간 최장 2년 포함)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90	2.90	2.40	2.40	2.90 (대출 중단)	4.82 (대출 중단)	4.49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12월에서야 비로소 지침상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지침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12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918명에 대해 여전히 2.40~2.90%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3년 12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727명에 대해 여전히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여(최대 5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을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918	2.40~2.90	31,446,835	개정(2023.12.29.)	727	29,266,336	개정(2023.12.29.)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3-7.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384명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8,723	384	51	0	50	0	96	187	39	26	3	11	3	17	14	297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 기관 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
-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9회의 징계위원회 중 2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징계처분 결과	위원 수 (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 (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 (B/A)
2022.6.27.	성희롱	파면, 해임, 견책	9	3	6	33.3
2022.9.5.	성희롱	정직 2월, 견책	9	3	6	33.3
2023.2.13.	성희롱	파면, 정직 3월	9	3	6	33.3
2023.4.17.	성희롱	정직 2월, 정직 2월, 견책	9	2	7	22.2
2023.6.13.	성희롱	파면	9	2	7	22.2
2023.8.23.	성희롱	강등	9	3	6	33.3
2023.9.25.	성희롱	정직 1월	8	3	5	37.5
2023.10.18.	성희롱	강등, 정직 1월	9	3	6	33.3
2024.5.21.	성희롱	정직 3월	9	3	6	33.3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39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19.1.16.	금품/향응 수수	2,830	해고	X
		630	정직 3월	
		280	정직 1월	
		1,050	해고	
2019.3.13.	금품/향응 수수	8,400	해고	
		14,700	해고	
2019.4.24.	금품/향응 수수	21,900	해고	
		31,300	해고	
		35,800	해고	
		32,400	해고	
		430	그 밖의 징벌(강등)	
	공금 유용	3,400	해고	
2019.7.25.	금품/향응 수수	330	그 밖의 징벌(견책)	
2019.8.9.	금품/향응 수수	200	감봉 1월	
2019.8.22.	금품/향응 수수	700	해고	
2019.11.8.	금품/향응 수수	230	정직 1월	
2019.12.24.	금품/향응 수수	400	정직 1월	
2020.1.7.	금품/향응 수수	2,140	강등	
2020.6.16.	금품/향응 수수	1,300	해고	
		40	그 밖의 징벌(견책)	
		40	그 밖의 징벌(견책)	
2020.10.8.	금품/향응 수수	530	정직 3월	
2021.3.8.	금품/향응 수수	154,000	해고	
2021.5.26.	금품/향응 수수	630	해고	
2022.11.9.	금품/향응 수수	670	감봉 1월	
		670	해고	
2023.1.5.	금품/향응 수수	14	정직 1월	
2023.1.11.	금품/향응 수수	40	감봉 3월	
2023.3.21.	금품/향응 수수	1,600	해고	
2023.4.17.	금품/향응 수수	100	감봉 1월	
2023.9.13.	금품/향응 수수	1,000	해고	
2023.9.25.	금품/향응 수수	272	해고	
2023.11.22.	금품/향응 수수	1,040	해고	
2024.4.25.	금품/향응 수수	190	정직 1월	
		170	정직 1월	
		10,000	해고	
		272	그 밖의 징벌(강등)	
2024.5.28.	금품/향응 수수	50	해고	
2024.7.9.	금품/향응 수수	980	해고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한국도로공사

4-1.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설치 지연 문제 해결 필요

가. 현 황

❑ 한국도로공사는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고속도로 내 충전기 설치를 추진

○ 2024년까지 고속도로 내 63기의 수소자동차 충전기 구축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39기의 충전기 준공 완료

[고속도로 수소충전소의 연도별, 지역별 구축 현황]

(단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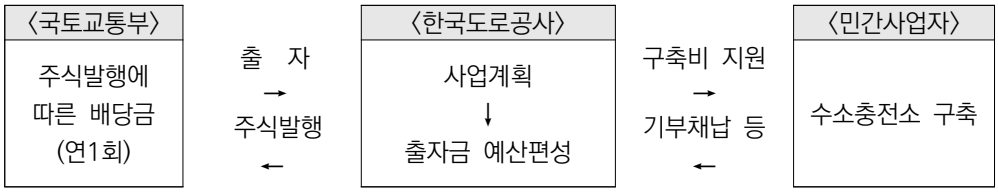
구분	연도별 구축 대수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민간사업자 협약체결 완료	63	8	14	12	17	6	3	3
준공 완료 (구축 중)	39	-	8	2	9	16	4	(24)

구분	지역별 구축 대수								
	계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준공 완료	39	12	4	6	6	2	3	4	2
구축 중	24	10	-	1	3	3	-	6	1

주: 2024년 6월 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본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의 국비 출자액 및 공사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후 민간사업자에게 충전소 구축비를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을 기부채납받는 구조임



○ 국비 출자액은 2019년 97.5억원에서 2021년 162.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24년에는 45억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2년을 제외하면 동 사업에 매년 국비가 투입되고 있음

[연도별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규모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688.0	108.0	195.0	195.0	-	90.0	100.0
정부출자	480.0	97.5	130.0	162.5		45.0	45.0
공사 자체예산	208.0	10.5	65.0	32.5		45.0	55.0

주: 2022년의 경우 2021년 예산 전액을 이월 집행하였음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24년 6월 기준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24기의 고속도로 수소충전시설 중, 7기의 수소충전시설은 국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내 운영 시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 2025년 이후 운영 시작 예정인 충전시설: 천안호두(부산행) 1기, 매송(서울행) 1기, 매송(목포행) 1기, 용인(인천행) 3기 등 총 6기
- ○ 운영 시작 시기가 미정인 충전시설: 문산(순천행) 1기

[설치 지연 문제가 발생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관련 현황]

(단위: 기, kg/h, 억원)

충전소명	기수	용량	운영 시작시기(예정)	국비 투입액	도로공사 자체 예산액
천안호두(부산행)	1	25	2025년 이후	12.5	2.5
문산(순천행)	1	25	미정	12.5	0
매송(서울행)	1	25	2025년 이후	12.5	2.5
매송(목포행)	1	25	2025년 이후	12.5	2.5
용인(인천행)	3	100	2025년 이후	30.0	15.0

주: 2024년 6월 기준이며, 국비 미반영 충전소 및 2024년 내 운영 시작 예정인 충전소는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에 2024년 내 운영이 시작되지 못할 예정인 7기의 충전시설에 대해 세부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충전시설 구축 과정에서 부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문제 또는 협의 문제로 인해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 ○ 대부분의 시설이 2022년까지 민간사업자와 구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24.6. 현재까지도 설계, 착공, 설치 등의 과정에서 중단

[2024년 내 운영이 시작되지 못할 예정인 충전시설의 세부 구축 현황]

충전소명	구축 단계	계획상 추진 시기	실제 추진 시기	지연 사유
천안호두(부산)	구축협약 체결	-	2022.03.	「고압가스법」 개정으로 설계·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었고, 이후 '23.10. 경부선 확장공사 간섭 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음. 이후 부지 변경 관련 협의 진행 중
	설계	2022.12.	2023.02.	
	인허가 신청	2023.04.	2023.04.	
	공사 착공	2023.05.	2023.10.	
	설비 설치	2024.05.	-	
	준공	2024.12.	-	
문산(순천)	구축협약 체결	-	2021.12.	휴게소 내 충전소 부지 협의, 토지 사용 가능성 검토 및 협의, 지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었으며, 설계사무소 부도로 인해 설계 지연
	설계	2022.09.	2024.06.	
	인허가 신청	2024.07.	2024.07.	
	공사 착공	2024.09.	-	
	설비 설치	2024.11.	-	
	준공	2024.12.	-	
매송(서울)	세부 구축협약 체결	-	2022.12.	'23.7. 운영업체(민자)가 충전소 부지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운영업체 설득 및 구축업체 대체부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4.5. 구축업체 측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구축사업 시행자 변경 등 후속 조치 중에 있음
	설계~준공	미정	미정	
매송(목포)	세부 구축협약 체결	-	2022.12.	
	설계~준공	미정	미정	
용인(인천)	구축협약 체결	-	2022.12.	지장물의 존재로 인해 부지 부적합 판정('23.7.) 이후 부지를 변경하였으나, 대체부지 또한 지장물의 존재로 인해 부지 부적합 판정('24.2.)되어 부지를 재변경
	설계	2024.06.	2024.06.	
	인허가 신청	2024.07.	2024.07.	
	공사 착공	2024.08.	미정	
	설비 설치	2024.11.		
	준공	2025.05.		

주: 2024년 6월 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사업은 도로공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출자액 등 국비도 함께 투입되어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소경제 활성화 목표가 적시에 이행되고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지 관련 행정절차 및 협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4-2. 최근 5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을 공시함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 중 ESG(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운영의 사회(S) 부문의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1분기에 공시함

❑ 한국도로공사의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6명이며, 최근 5년간 35명 발생[1)]

[연도별 한국도로공사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현황]

(단위: 명)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누적
한국도로공사	9	8	9	3	6	35

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모두 건설발주에서 발생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 누적 사고사망자가 35명 발생하여, 공공기관 중 최다 발생

○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 176명 중 19.9%를 차지함

○ 한국도로공사는 건설발주에서 매년 8~9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오다 2022년 3명으로 급감하였으나 2023년 다시 6명으로 증가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산업재해 승인기준임

- 2023년 집계된 6명의 사고사망자는 작업차량(굴삭기) 전도 사고 1명, 부딪힘 사고, 주행차량에 치임 사고(교통사고) 3명, 가설벤트 해체 중 벤트 전도 사고 1명임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작업장 수가 많고 전체 작업장의 약 86%를 소규모 작업장이 차지하고 있어 시공사 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이 다소 미흡[2]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건설발주 시공사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산재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단위: 명, %)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누적
한국도로공사	9	8	9	3	6	35
전체 공공기관	36	45	39	26	30	176
비중	25.0	17.8	23.1	11.5	20.0	19.9

자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도로공사는 사고사망자 수가 2022년 3명에서 2023년 6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중 안전성과 등급이 2023년 2(양호)등급으로, 안전관리등급제가 사고사망 감소유인으로 충분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종합등급은 3(보통)등급)에서 사고사망 감축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포함된 안전성과 등급이 2023년 2(양호) 등급으로 나타남

-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을 심사하며, 안전관리등급(총점 1000점)은 안전역량(300점), 안준수준(400점), 안전성과(300점)을 합산

2) 한국도로공사, 「2023년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 사고사망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하위지표(안전성과의 세부지표)의 배점은 100점으로, 다른 영역의 득점으로 만회 가능한 수준으로 산업재해 사고 발생기관에 대한 패널티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3)]

[연도별 한국도로공사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및 안전관리등급 결과]

(단위: 명, 등급)

구분	사고 사망자 수	종합 등급	세부 심사기준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종합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	연구 시설	
2020	8	4	2	3	4	3	2	2	-	5
2021	9	3	3	2	4	2		2	-	3
2022	3	2	3	2	3	2		1	-	1
2023	6	3	3	2	3	3		1	-	2

주: 1.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2. 20년도 위험요소별 건설현장 선택란 왼쪽은 심사 결과보고서의 " 근로자의 산업안전관리" 등급, 오른쪽은 심사결과보고서의 "공사중 구조물 등의 안전관리"등급임
3. 사고사망자 수는 산업재해 승인기준임

자료: 한국도로공사

3) 안전성과 세부지표 및 배점

(단위: 명)

범주	안전성과 세부지표	배점
안전성과 (300점)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이행수준	60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100
	③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성과	40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자료: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제 결과보고서

4-3.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규정인 「주거안정지원 운영기준」 제48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772명, 지원금액은 31,463,323천원임

[한국도로공사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064	1,028	1,037	924	837	772
지원금액	33,634,563	35,240,021	40,486,003	37,434,565	33,450,463	31,463,323
1인당 지원 한도	(2013년~) 75,000					
관련 내부 규정	「주거안정지원 운영기준」제48조 주택마련자금의 지원금액은 7천5백만원 이내로 한다.					
지원 요건 (2024.7.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 직원					
상환 조건 (2024.7. 기준)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도로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2.10+연말 인정과세	1.95+연말 인정과세	1.95+연말 인정과세	1.95+연말 인정과세	5.34	5.04	4.48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지침 개정 내용과 달리 과도한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제공,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 등

❑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5월에서야 비로소 한은 금리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내부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2022년 5월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 28명에 대해 여전히 (1.95+인정과세)% 수준의 금리로 제공

◦ 주택 면적의 경우 여전히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5명에 대해 111.0㎡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 제공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76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7,500만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도로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28	1.95%+ 연말 인정과세	2,031,000	개정 (2022.5.20.)	76	5,697,500	미개정

85㎡ 초과 면적 주택의 구입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면적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개정 시기)
5	111.0	337,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도로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4.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도로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72명임

[한국도로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8,512	272	7	0	72	0	115	78	11	7	17	8	2	6	13	217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11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한국도로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19.3.25.	유용	453	감봉 1월	X
2019.9.26.	횡령	660	강급	
2022.3.7.	금품 수수	261	정직 3월	
2022.3.7.	금품 수수	283	정직 3월	
2022.3.7.	금품 수수	283	정직 2월	
2022.3.7.	금품 수수	550	정직 2월	
2022.6.14.	금품 수수	4,000	해임	
2022.7.19.	금품 수수, 유용	798	정직 1월	
2023.3.28.	금품 수수	24,100	파면	
2023.7.26.	금품 수수	3,340	해임	
2023.12.18.	금품 수수	950	강급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규정 및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5 주택도시보증공사

5-1.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 현 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사고의 급증으로 인하여 2022년 대비 2023년 손실이 3조 4,511억원 확대되었으며, 2024년 반기 또한 손실이 1조 7,914억원 발생

- ○ 2023년의 매출은 전년도와 동일 규모이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사고의 급증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었으며, 2023년 영업손실은 3조 9,962억원이고 당기순손실은 3조 8,598억원임
- ○ 2024년 6월 말 기준 자산은 정부 현물출자로 인해 2023년 대비 4.7조 증가했으나, 대위변제액 지급으로 인해 약 2.7조원이 감소하여 총자산은 약 2조원 증가하였음
- ○ 2024년 6월 말 기준 부채는 대위변제액 지급으로 인해 보증부채의 차감항목인 구상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2023년 대비 7,983억원 감소함
- ○ 손실 발생으로 인한 자본 감소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3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116.9%를 기록하였고, 2024년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정부출자 4.7조원으로 인해 자본이 증가하여 33.3%로 감소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및 손익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p)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2024.6.	증감(b-a)
자산	75,964	78,064	83,713	75,685	45,536	66,268	△30,149
부채(A)	18,683	18,721	17,600	19,769	24,541	16,558	4,772
금융부채	1,185	1,123	1,087	1,144	1,185	1,176	41
자본(B)	57,281	59,343	66,113	55,916	20,995	49,710	△34,921
매출	10,596	9,760	8,798	12,685	12,951	5,060	266
영업이익	4,848	3,926	4,941	△2,428	△39,962	△15,280	△37,534
당기순이익	3,836	2,918	3,620	△4,087	△38,598	△17,914	△34,511
부채비율(A/B)	32.6	31.5	26.6	35.4	116.9	33.3	81.5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주요 쟁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2023년의 절반을 상회하는 보증사고 건수 및 대위변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지속적 재무적 모니터링을 할 필요

○ 연도별 보증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20,282건 증가한 28,632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19,66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2023년 보증사고 건수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음

- 보증사고 건수의 증가는 대부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서 나타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의 2023년 보증사고 건수가 19,350건, 5,982건인데 2024년 상반기의 보증사고 건수가 각각 12,254건, 5,014건으로 나타나 2024년에 2023년 대비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도별 보증사고 건수(2019~2023)]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2024.6.	증감(b-a)
전세보증금반환	1,630	2,408	2,799	5,443	19,350	12,254	13,907
임대보증금보증	5	400	524	902	5,982	5,014	5,080
전세대출특약보증	509	886	939	1,109	2,072	1,243	963
주택구입자금	852	298	290	599	954	771	355
기타	190	212	168	297	274	382	△23
합계	3,186	4,204	4,720	8,350	28,632	19,664	20,282

주: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보증금보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대출특약: 임차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특약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고,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약
주택구입자금: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대위변제액은 2023년 4조 9,229억원, 2024년 상반기 3조 2,345억원으로 대위변제액 또한 2023년의 절반을 상회하여 2024년에 2023년 대비 비용이 증가하여 손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위변제액 또한 전세보증금반환, 임대보증금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액]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6.	
	대위변제액	비율	대위변제액	비율
전세보증금반환	35,544	72.2	20,422	63.1
임대보증금보증	11,172	22.7	9,824	30.4
전세대출특약보증	1,298	2.6	615	1.9
주택구입자금	20	0.1	7	0.0
기타	1,195	2.4	1,477	4.6
합계	49,229	100.0	32,345	100.0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자본이 감소하자, 정부는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자본확충을 위하여 2024년 공사에 출자를 실시함

- 2월 현금 0.7조원, 3월 현물(한국도로공사 주식) 4.0조원을 출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가 지속되면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공사는 2022년 이후 지속적 손실 발생, 2024년 상반기의 보증사고 건수 및 대위변제액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재무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

5-2. 연례적으로 낮은 고객만족도 개선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1)]

○ 고객만족도 종합 점수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 85점 이상은 B등급, 80점 이상은 C등급, 80점 미만은 D등급을 받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내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항]

>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만족도는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평균 대비 낮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사업[개인·사업자 보증 및 이행, 기금사업(도시재생)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종합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임[2)]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기획재정부는 조사단계별로 기본설계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주관업체(한국능률협회 등 2개 업체) 및 실시업체(한국리서치 등 6개 업체)에 위탁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함(0.4점)

2) 공기업 · 준정부기관 중 고객만족도 점수 하위 4개 기관

구분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점수	80.9	79.4	77.8	77.1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만족도 점수 결과]

(단위: 점)

구분		2021	2022	2023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급	D	D	D
	점수(A)	79.7	79.95	79.4
공기업(평균) (B)		86.6	86.0	87.0
점수 차이(B-A)		6.9	6.05	7.6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든 세부항목별 고객만족도가 3년 동안 공기업 평균 대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공공기관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5가지 부분(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국민행복 및 신뢰 등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구성[3)]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점수가 3년간 특히 더 저조한 상황

[공기업(평균)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항목별 점수]

(단위: 점)

구분	서비스품질		사회적책임		기대 및 이상점 등 대비 불일치		전반적 고객만족		성과 (국민행복 및 신뢰)	
	공기업 (평균)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 (평균)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 (평균)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 (평균)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 (평균)	주택도시보증공사
2021	88.6	84.2	85.5	81.6	84.1	75.2	86.5	78.0	85.0	78.3
2022	88.2	83.9	84.8	81.1	83.5	76.3	85.8	78.5	84.0	78.8
2023	89.1	83.5	85.8	81.5	84.8	75.2	86.8	77.9	84.7	79.3

자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서비스품질(서비스 상품의 본원적 품질, 서비스 전달과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환경 등에 대한 만족 정도) 사회적책임(공공기관으로서 정책타당성, 지속가능성, 윤리성 정도), 기대 대비 불일치(기대, 이상점, 타 기관 이용 경험 등과 대비 지각된 서비스 수준의 일치/불일치 정도), 전반적 만족도(서비스 이용 후 전반적 만족도 및 기관에 대한 긍정적 느낌), 성과(서비스 이용 후 기관 사업 활동에 대한 신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정도)

5-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보수규정」제3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1,121명의 임직원에게 총 16,393,706천원을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C	1,063	4,108,666	13,754,908	17,863,574
2023	D	1,123	18,739	15,943,297	15,962,036
2024	D	1,121	28,502	16,365,204	16,393,706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지급 인원 비율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모두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특정 등급(셋째)의 인원 비율이 52~60%에 육박하는 등 지급 인원 비율의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9	134	13	110	56	100	13	90	9	66	-	-
	내부 (연봉제)	9	134	13	110	60	100	11	90	8	66	-	-
	내부 (연봉제 외)	9	110	14	105	53	100	15	95	9	90	-	-
2023	경평	-	134	-	110	-	100	-	90	-	66	-	-
	내부	9	134	14	110	55	100	14	90	9	66	-	-
2024	경평	미정	134	미정	110	미정	100	미정	90	미정	66	-	-
	내부	10	134	15	110	52	100	15	90	10	66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4.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규정인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85명, 지원금액은 11,963,980천원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81	104	82	82	81	85
지원금액	10,120,900	13,718,500	10,804,000	11,370,200	11,272,247	11,963,980
1인당 지원 한도	(주택구입) 200,000 / (주택임차) 150,000					
관련 내부 규정	「임차주택및주택자금대여세칙」					
지원 요건 (2024.7. 기준)	(주택구입) 무주택 직원의 85㎡ 이하 주택을 구입을 위한 자금 대여 (주택임차) 근무지내 무주택 직원의 주택 임차를 위한 자금 대여					
상환 조건 (2024.7. 기준)	(주택구입) 거치기간 5년 포함하여 20년이내 상환 (주택임차) 대여기간종료일(임대차 종료일)에 일시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1.00~3.00	1.00~3.00	1.00~3.00	1.50	1.50	2.50	2.50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및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대출 이자율의 경우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55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1.50~2.50%)으로 주택융자금 제공

○ 1인당 대출 한도의 경우 여전히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48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2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55	1.50~2.50	7,660,000	미개정	48	7,375,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5.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4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는 인원은 323명, 지원금액은 10,232,236천원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291	291	314	351	331	323
지원금액	9,705,236	9,901,236	10,407,236	11,017,236	10,612,236	10,232,236
1인당 지원 한도	50,000					
관련 내부 규정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지원 요건 (2024.7. 기준)	만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여					
상환 조건 (2024.7. 기준)	대여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임의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9.1.	2020.1.	2021.1.	2022.1.	2023.1.	2024.1.	2024.7.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64	3.01	2.64	3.46	5.34	5.04	4.48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	2.5	2.5	2.5	2.5	2.5	2.5

주: 각 연도(24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여전히 한은 금리 미만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49명에 대해 한은 금리 미만 수준(2.50%)으로 생활안정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49	2.50	96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한국철도공사

6-1. 용산 역세권 토지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매각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자산, 기능, 인력·조직, 예산, 복리후생)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을 발표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내용]

5대 분야 주요내용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비 등 (기능) 민간경합 · 수요감소·비핵심 기능 축소 및 조정 (인력 · 조직) 2022~2023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추진 (예산) 경상경비 ·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복리후생)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구분	자산효율화 계획 주요 내용
비핵심 부동산 매각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있음

○ 2027년까지 비핵심부동산 매각(7조 9,977억원)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매각(817억원)을 통하여 총 8조 794억원 상당의 자산 효율화 계획 수립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한국철도공사 혁신가이드 라인 이행 총괄표(자산)]

(단위: 억원)

구분	2022~2023	2024	2025~2027	총계
비핵심 부동산	39,294	32,902	7,781	79,977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	-	-	-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	817	-	817
합계	39,294	33,719	7,781	80,794

자료: 한국철도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철도공사는 자산효율화 계획 수립 시 2023년까지 3조 9,294억원의 매각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중 7,073억원만 이행 완료하였음

○ 2023년까지 계획 대비 자산매각 이행률은 18%에 불과하며 3조 2,221억원의 매각 금액을 미이행하였음

[한국철도공사 자산효율화계획 이행 실적(2023년 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계획 금액(A)	이행실적(B)	이행률(B/A)
비핵심 부동산	39,294	7,073	18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	-	-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	-	-
합계	39,294	(이행) 7,073 (미이행) 32,221	18

주: 2023년 말 기준
자료: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 자산 효율화 계획 미이행 자산은 비핵심 부동산 미매각에 기인한 것이며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지연에 따른 영향이 큼

○ 2023년 계획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부지 절반(2023년 기준 3조 1,573억원)을 매각하고 2024년 나머지 절반을 매각하여 총 6조 3,146억원에 매각하는 것을 계획하였지만 매각이 지연되고 있음[1)]

[한국철도공사 비핵심 부동산 매각 미이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자산명	비핵심 부동산		
		'23년 계획(A)	'23년 실적(B)	이행률(A/B)
유휴부지	용산역세권	31,573	-	-
	수색역세권	972	-	-
	금천구청역	106	-	-
합계		32,221	-	-

자료: 한국철도공사

❑ 따라서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과 관련해 매각 지연이 예상되므로 향후 매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용산역세권은 2007년부터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중이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1)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함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사업추진 현황]

구분	내용
2007.08.~12.	사업자공모('07.8.) 및 협약체결('07.12.)
2010.04.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울시)
2013.04.	민간주도개발사업 채무불이행으로 사업해제
2013.10.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고시(서울시)
2018.05.	코레일 토지소유권 회복완료
2020. 12.	기재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KDI) 완료
2021.5. 20.	SH공사와 공동사업 시행 실시협약 체결
2022. 7	서울시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안) 발표
2022.10.5.	전문가 자문
2022.10.~12.	실무협의 개발구상안 내용 전면 재검토 (과도한 지하도로 개설로 건설공사비 과다 증가 등)
2024.2.5	개발구상(안)을 구체화 및 개선하여 개발계획 완성 (市-코레일-SH공사)대외발표
2024.2.14.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용산구청 제출
2024.6.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자료: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는 2023년 부채 20조 4,674억원 미처리결손금 11조 8,240억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이므로 용산역세권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며 해당 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매각 계획이 필요함

[한국철도공사 재무 현황(2019~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채	16,329,796	18,008,897	18,660,773	20,040,525	20,465,382
미처리결손금	△9,451,008	△10,553,934	△11,489,302	△11,503,558	△11,824,023
당기순이익	△46,922	△1,342,682	△1,155,200	△234,969	△451,56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1. 장기화되는 주요 개발사업의 적극적 관리 필요

가. 현 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라 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제1항[1]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2]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3]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세부 사업을 추진함

○ JDC는 현재 3차시행계획(2022~2031)을 수립하여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 및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것으로, 제주자치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JDC 시행계획별 추진사업 내역]

<table>
<tr><th>1차시행계획
(2003~2011)</th><th>2차시행계획
(2012~2021)</th><th>2차시행계획
수정계획
(2017~2021)</th><th>3차시행계획
(2022~2031)</th></tr>
<tr><td>제주영어교육도시</td><td>영어교육도시
(Edu-MICE)</td><td>영어교육도시
(Edu-MICE)</td><td>영어교육도시</td></tr>
<tr><td>제주헬스케어타운</td><td>헬스케어타운
(뷰티케어빌리지)</td><td>헬스케어타운
(뷰티케어빌리지)</td><td>헬스케어타운</td></tr>
<tr><td>첨단과학기술단지</td><td>첨단과학기술단지
(IBE R&BD)</td><td>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td><td>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td></tr>
<tr><td rowspan="2">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td><td>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td><td>신화역사공원</td><td>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td></tr>
<tr><td rowspan="3">휴양형주거단지</td><td>항공우주박물관</td><td>휴양형주거단지</td></tr>
<tr><td>휴양형주거단지</td><td rowspan="2">스마트혁신도시</td></tr>
<tr><td rowspan="3">서귀포관광미항</td><td rowspan="2">국제화사업</td></tr>
<tr><td>제2첨단과학기술단지</td><td rowspan="2">혁신물류단지</td></tr>
<tr><td rowspan="2">오션마리나시티</td><td rowspan="2">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td></tr>
<tr><td>글로벌 교류 허브</td></tr>
<tr><td rowspan="2">쇼핑아울렛</td><td>복합관광단지</td><td>Up-Cycling
클러스터 사업</td><td>청정제주트램 활용
도심 리노베이션</td></tr>
<tr><td rowspan="3">생태공원</td><td rowspan="2">서귀포미항 2단계사업</td><td>전기자동차 시범단지</td><td>미래농업센터</td></tr>
<tr><td>첨단 농식품 단지</td><td rowspan="2">곶자왈생태공원</td></tr>
<tr><td>제주곶자왈생태공원</td><td>드론사업</td></tr>
</table>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나. 주요 쟁점

❑ JDC가 1차시행계획(2003~2011)에서부터 추진해온 주요 개발사업들(관광, 교육, 의료, 첨단)이 지연 및 장기화되면서 전체 투입 사업비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수익 발생 및 투자 회수 실적은 저조함

○ JDC의 주요 사업인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 투자 중단, 사업계획 재검토 등의 사유로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최소 5년에서 최장 21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

- 영어교육도시 사업은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통한 유학수지 적자 개선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2단계 사업의 인가(`09.) 후 대학유치(제주도) 지연,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조성 유보 중임. 이에 사업 기간은 당초 계획 대비 장기화된 반면 투자 유치 난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4)]
-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의료·관광·휴양시설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투자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의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고 2017년 대법원 판결[5)]로 기존 투자 유치 방식 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라 2017년 이후 전체 공정률 약 53%에서 정체된 상황임. 이후 JDC 소유부지는 제3차 시행계획(`22년~`31년) 내 JDC가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고, 녹지그룹 관할 사업장은 사업 정상화 차원에서 JDC가 인수 검토 예정임
- 신화역사공원은 한국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팬데믹으로 국제관광객 감소 및 중국 투자자금 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JDC는 2단계 조성사업계획을 재정비하였는바, 건설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금융이자 등 투입비용을 재산정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추진 중임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휴양·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6)]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다수의 토지반환 소송 진행 중이며,[7)] JDC는 사업 정상화와 재추진을 위해 추가 보상기준을 마련, 보상에 착수하여 토지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는 계획임[8)]

---

4) 2024년 말까지였던 사업 시행기간을 2026년 말로 추가 연장하기 위한 협의 중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유원지 사업시행자의 토지매각은 인가처분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

6) 부지조성공사 완료(`11.12.) 후 1단계 건축공사(휴양형 콘도) 중 수용재결 무효(`15.3.),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무효(`19.1.) 판결

7) 보상대상 토지주 432명 중 209명(약 48%), 총 면적 658,658㎡ 중 302,210㎡(약 46%) 합의 완료(추가 보상금 약 376억원 집행, `24.6.30. 기준)

8) 2024년말까지 전체 추가보상금의 70% 집행 추진

○ 이와 같은 다수 개발사업의 추진 중단 및 지연 등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5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 규모도 당초 계획 대비 약 1조 7,000억원 이상 증가한 상황임(당초 6조 7,923억원 → 변경 8조 4,949억원)

[JDC 주요 현안사업 추진 지연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 지연 사유
	당초(a)	변경(b)	추가사업비 (b-a)	
영어교육 도시	'08~'12년/ 17,810	'08~'24년/ 19,256	1,446	전체 면적 중 76.5%는 사업 완료(부분 준공)되었으나, 나머지 잔여 미개발 구역(23.5%)은 제주도의 대학유치 지연,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조성 유보 중
헬스케어 타운	'08~'15년/ 7,845	'08~'29년 (예정)/ 15,966	8,121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 등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상태 지속, 2017년 대법원의 인가처분에 대한 중대한 하자 판단에 따라 잔여사업 투자 곤란
첨단과학 기술단지 2단지	'14~'21년/ 1,492	'16~'28년/ 3,921	2,429	2단지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증가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23.10)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결정
신화역사 공원	'03~'24년/ 36,410	'03~'29년/ 40,393	3,983	'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국제 관광객 74% 감소 및 중국 투자자금 유입의 어려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신화역사공원 2단계 조성사업계획 투입비용 재산정
휴양형 주거단지	'05~'09년/ 4,366	'05~'31년 (시행계획 기준)/ 5,413	1,047	토지 수용재결 무효('15.3.),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무효('19.1.) 판결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
합계	67,923	84,949	17,026	-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JDC의 사업 투자 규모는 2조 3,043억원이고[9] 이 중 회수된 금액은 9,882억원으로, 2024년 6월 기준으로 JDC의 사업 투자액 대비 42.9%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남

-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사업(2016년 시작)의 경우 JDC가 1,9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수 실적이 전혀 없음
-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2005년 시작)의 경우 JDC의 투자액 4,27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이 932억원으로 투자액의 21.8% 수준임

9) 그 외에도 JDC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비 2,795억원, 지방비 658억원, JDC외 민간자본이 5조 331억원이 투자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JDC 투자 및 회수 금액(2024.6.)]

(단위: 억원)

구분		투자					회수
		국비	지방비	JDC	민자	합계	JDC
1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344	62	178	-	584	-
2	생태공원 조성사업	-	-	65	-	65	-
3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728	76	5,707	6,253	12,764	1,778
	- 제1첨단	605	76	2,314	6,253	9,248	1,204
	- 제2첨단	-	-	1,920	-	1,920	-
	- 공공주택(사업비+운영비)	123	-	1,473	-	1,596	574
4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38	8	3,534	20,190	23,769	1,683
	- 항공우주박물관	-	-	1,714	149	1,863	264
	- 신화역사공원	38	8	1,820	20,040	21,906	1,419
5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240	86	1,849	6,360	8,535	1,102
6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1,398	409	4,332	15,126	21,265	3,836
7	국제화사업	-	-	22	-	22	-
8	드론사업	-	-	4	-	4	-
9	사회공헌 사업	-	1	1,327	-	1,328	-
10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47	16	4,274	103	4,440	932
11	쇼핑아울렛 조성사업[1)]	-	-	2	-	2	-
12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	-	-	5	-	5	-
13	Up-cycling 클러스터 사업	-	-	6	-	6	-
14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	-	-	-	-	
15	첨단 농식품단지	-	-	5	-	5	-
16	오션마리나시티	-	-	7	-	7	-
17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	-	-	-	-	-
18	복합관광단지	-	-	-	-	-	-
19	비축토지	-	-	1,560	-	1,560	542
20	기타(국제문화복합단지, 에코사업, 혁신성장센터)	-	-	166	2,300	2,466	9
합계		2,795	658	23,043	50,331	76,827	9,882

주: 1) 국제문화복합단지(쇼핑아울렛) 사업 중 2012년 이후 발생(투자비 2억원 정도)실적은 기타에 반영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JDC 전체 자산 1조 7,690억원 중 위 5개 사업에 투입된 자산 규모는 총 8,170억원으로 4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영어교육도시 사업에 투입된 자산이 3,382억원으로 비중이 19.1%로 가장 높고,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에 투입된 자산이 1,956억원 수준으로 비중은 11.1% 수준임

[사업별 JDC 자산 투입 비중]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자산 투입액	비중
전체 자산	1,768,968	100.0
영어교육도시	338,187	19.1
헬스케어타운	96,585	5.5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195,596	11.1
신화역사공원	44,260	2.5
휴양형 주거단지	142,412	8.1
소계	817,040	46.3
기타 사업	951,928	53.7

주: 2023년 말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그러나 2017~2023년 JDC 손익현황을 보면 영어교육도시 사업의 경우 2023년을 제외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기타(개발사업 등)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40억원 ~ 2,37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JDC 주요 사업부 별, 연도별 손익계산서(2017~2023)]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728,148	737,391	614,429	566,319	737,554	803,326	693,445
면세점	547,960	515,754	507,494	448,687	603,713	658,471	535,217
(비중)	(75.3)	(69.9)	(82.6)	(79.2)	(81.9)	(82.0)	(77.2)
영어교육도시[1)]	83,200	100,695	101,661	113,267	121,180	134,727	150,532
기타(개발사업 등)	96,988	120,942	5,274	4,365	12,661	10,128	7,696
당기순이익	181,383	116,177	10,969	△128,506	77,603	90,509	83,644
면세점	164,011	112,523	118,024	119,031	153,120	154,708	115,800
영어교육도시[1)]	△16,971	△18,395	△16,811	△10,810	△7,662	△1,523	1,901
기타(개발사업 등)	34,343	22,049	△90,244[2)]	△236,727[2)]	△67,855	△62,676	△34,057

주: 1) 국제학교 운영 종속회사인 ㈜제인스의 매출, 당기순손익임

2) 2019년에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 주식에 대한 투자주식손상차손 23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에 손해배상금 1,250억원을 지급하면서 1,28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1. 자회사 재무현황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이와 같이 JDC는 2003년 1차시행계획에서부터 주요 개발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중단 및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투입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는 한편 수익 발생을 통한 투자금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향후 JDC는 보다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2. 면세점 사업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 문제

가. 현 황

❑ JDC의 수익(매출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1,371억원(20%)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21년 1,500억원에서 2023년 872억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21~2022년의 당기순이익 증가 역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주 여행객 증가에 따라 면세점 매출이 확대된 효과임

[JDC 손익상황(별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익(매출액)	5,133	4,546	6,322	6,841	5,470
매출총이익	2,275	1,971	3,121	3,199	2,422
영업이익	824	285	1,566	1,278	625
당기순이익(손실)	164	△1,435	1,500	917	872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JDC의 지정면세점 매출액은 5,352억원으로 전년(6,585억원) 대비 18.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도 순이익 1,158억원으로 전년(1,547억원) 대비 약 25.1% 감소하였음

[JDC 지정면세점 운영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매출액	5,157	5,075	4,485	6,037	6,585	5,352	2,734
순이익	1,132	1,183	1,195	1,531	1,547	1,158	716

주; 2024.7월까지 순이익은 결산 전 내부시스템상(SAP) 자료로서 결산 시 변동 가능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나. 주요 쟁점

❑ JDC는 지정면세점 사업의 매출 및 이익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기타(개발사업 등) 지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바, 면세점 상품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JDC의 수익성 악화 및 기타 사업에 대한 투자 차질이 우려됨

- ○ JDC의 면세점 매출액(2017~2023년)의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84.7~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2023년 면세점 사업에서는 1,158억원 ~ 1,64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 반면, 면세점 외 기타 사업에서는 2019~2023년간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면세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기타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대부분 보전하면서 JDC의 당기순이익에 기여하는 구조임
  - 2023년의 경우 기타 사업(개발사업 등)에서 당기순손실이 286억원 발생하였으나, 면세점 사업에서 당기순이익이 1,158억원 발생하여 전체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바 있음

[JDC 주요 사업부 별, 연도별 손익계산서(2017~2023)]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646,985	642,492	513,264	454,634	632,237	684,118	546,951
면세점	547,960	547,960	507,494	448,687	603,713	658,471	535,217
(비중)	(84.7)	(85.3)	(98.9)	(98.7)	(95.5)	(96.3)	(97.9)
기타(개발사업 등)	99,026	126,739	5,770	5,948	28,524	25,646	11,733
당기순이익	171,788	124,686	14,061	△140,904	149,784	91,685	87,169
면세점	163,983	163,983	118,295	119,468	153,232	154,708	115,800
기타(개발사업 등)	7,805	11,419	△86,176	△260,371	△3,449	△63,022	△28,630

주: 별도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2020~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주 여행객 증가 효과로 면세점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최근의 해외여행객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JDC의 면세점 매출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JDC는 기타 개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면세점 사업 수익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JDC 면세점 매출액의 감소는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7-3. 유휴토지 및 국제학교 운영권 매각계획 적시 이행 필요

가. 현 황

❑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자산, 기능, 인력·조직, 예산, 복리후생)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자산효율화 계획 내용]

5대 분야 주요내용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비 등 (기능) 민간경합 · 수요감소·비핵심 기능 축소 및 조정 (인력 · 조직) 2022~2023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추진 (예산) 경상경비 ·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복리후생)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구분	자산효율화 계획 주요 내용
비핵심 부동산 매각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골프회원권, 콘도 · 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 · 설비 등

자료: 기획재정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7년까지 비핵심부동산(715억원)과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400억원)을 통해 총 1,120억원 상당의 매각 계획 수립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혁신가이드 라인 이행 총괄표(자산)]

(단위: 억원)

구분	2022~2023	2024	2025~2027	총계
비핵심 부동산	685	20.1	10	715.1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400	-	-	400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	-	5	5
합계	1,085	20.1	15	1,120.1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나. 주요 쟁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자산효율화 계획 수립 시 2023년까지 1,085억원의 매각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중 73억 6,000만원만 이행 완료하였음

- ○ 2023년까지 계획 대비 자산 매각 이행률은 6.78%에 불과하며 611억 4,000만원의 매각 금액을 미이행하였으며 2024년 2분기(6월말)까지 추가 이행실적은 없음
- ○ 2023년까지 비핵심 부동산 매각 이행률은 10.74%이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이행률은 0%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산효율화계획 이행 실적(2023년 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계획 금액(A)	이행실적(B)	이행률(B/A)
비핵심 부동산	685	73.6	10.74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400	-	0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	-	-
합계	1,085	(이행) 73.6 (미이행) 611.4	6.78

주: 2023년 말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비핵심 부동산 매각 대상인 제주시 조천읍 유휴부지(600억원)는 매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지연 등을 이유로 계획 시점(202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음

○ 제주 조천읍 유휴부지는 2023년 11월 기획재정부에 의해 경찰교육기관 부지 최종 매입후보지에서 제외되었지만 2024년 7월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후보지로 추천받아 후보지 평가를 진행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조천읍 유휴부지 매각 진행 현황]

구분	내용
2022.8	JDC 혁신계획(비핵심 부동산 매각 반영) 제출
2022.11.24.	와흘리 비축토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2022.12.26.	JDC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비핵심 부동산 매각) 확정
2023.5.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부지교환 가능성 검토 요청(경찰청→JDC) * (당초) JDC, 제주도, 경찰청 3자간 교환 → (변경) 경찰청 직접 토지매입('23.7.)
2023.8.	와흘리 비축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매입 신청(경찰청→기재부) ('23.9) 조달청 토지현장평가 → ('23.10) 기재부 현장실사 → ('23.11.) 토지매입심의
2023.11.	기획재정부 심의 후 최종 매입후보지에서 제외
2024.3.21.	비축토지 자체매각 계획 통보(JDC → 경찰청)
2024.8.2.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부지 추천신청서」 제출(제주도 → 경찰청) * (일정) 후보지 평가(9월) 및 선정(10월) 예정
2024.8.22.	비축토지 매각 계획(안) 이사회 안건 상정(온비드 공고, 일반경쟁 최고가 낙찰방식) * 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본 공고 건 진행 또는 중단 결정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불요불급한 자산 중 국제학교(NLCS Jeju) 운영권(400억원)은 매각 대상자 선정 등을 이유로 계획 시점(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음

○ 국제학교(NLCS Jeju) 운영권(400억원)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 협의 후 제주도교육청 인허가가 계획대로 완료되어도 매각 시점은 2025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진행 현황]

구분	내용
2022.8.23.	JDC 혁신계획(국제학교 NLCS Jeju 운영권 매각 반영) 제출
2022.12.30.	JDC 자회사 사업부 매각주간사 용역 입찰공고
2023.3.27.	JDC 자회사 사업부 매각주간사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2023.7.10.	국제학교 NLCS Jeju 매각 계획(안) 매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2023.7.20.	국제학교 NLCS Jeju 매각 계획(안) 이사회 의결
2023.8.31.	국제학교 NLCS Jeju 매각 공고
2023.12.28.	국제학교 NLCS Jeju 매각 최종입찰제안서 평가
2024.1.3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이사회 의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4.3.06.	JDC-제인스-우선협상대상자 합의각서(MOA) 체결
2024.5.24.	우선협상대상자의 국제학교 NLCS Jeju 확인 실사 완료
(진행 중)	양수도계약 체결 관련 주요사항 협상 중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제학교(NLCS Jeju)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적용해 협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매각 전 제주도 사전협의 과정에서 양 기관 이견 발생하였음

- 제주도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2조[1]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무상양여 받은 도유지를 매각할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전협의 절차 없이 2023년 8월부터 NLCS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추진하였고,[2] ② 매각 예정인 국제학교 NLCS 부지는 도민의 공공자산으로 마련된 만큼 감정평가액 등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주도 "JDC, 사전 협의 없이 'NLCS 제주' 민간 매각 추진"", 뉴시스, 2024.3.15.

협상하여 매각 차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인접 운동장은 주민 체육시설로 공동 활용 증이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

- 2011년 국제학교를 조성할 당시 제주도는 도유지를 JDC에 무상으로 양여하였고, NLCS제주 Jeju 학교부지 104,407㎡ 중 73.5%인 76,791㎡(23,229평)도 당시 제주도가 무상양여한 토지임[3)]
-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제주도와 합의하였고 도유지를 제주도로부터 무상으로 받으면서 영어교육도시 성공을 위해 학교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고, 영어교육도시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수립되어 지정권자에게 제출 및 확정된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계획[4)]에 따라 동법 제27조제1항[5)],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6)], 도시개발업무지침 5-7-1[7)]에 근거하여 조성원가 공급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설명임

---

3) 무상양여협약(JDC-제주도, '09.8.) 제2조제1호라목

4)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 공급 시 행정처분 대상(도시개발법 제75조제9호)

5) 「도시개발법」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③ 법 제27조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7조 및 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43조의4에서 정한 인수가격 기준에 따른다.
(2)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3) (1)과 (2)의 경우 조성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NLCS제주 매각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의 입장]

쟁점사항	JDC 입장	제주도 입장	협의 결과 (2024.7.2.)
① 학교부지 매각가격 산정	· 조성원가 공급 (협약 및 관련 법령 근거)	· 감정평가액 공급	· 학교부지 매각가격은 JDC가 산정
② 운동장 부지(학교용지 H-1) 매각 포함 여부	· 매각 대상 포함	· 매각 대상 제외	· 도민 수용성 차원으로 금번 매각 제외로 매각 협의 추진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 기반 재작성

❑ 혁신계획 종료시점인 2027년까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실효적 매각 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매각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음

7-4.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보수규정시행세칙」 제7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365명의 임직원에게 총 4,666,275천원을 지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B	358	1,424,956	4,137,608	5,562,564
2023	C	360.5	1,360,485	4,127,377	5,487,863
2024	C	365	-	4,666,275	4,666,275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차등 지급되도록 명시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나. 주요 쟁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모두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고,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 3급 이하의 등급별 지급률의 경우 105%, 102.5%, 100%, 97.5%, 95% 순으로,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못함

[최근 3년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41	134	80	105	150	100	78	95	45	66	-	-
	내부 (2급 이상)	2	134	3	105	4	100	3	95	2	66	-	-
	내부 (3급 이하)	39	105	77	103	146	100	75	98	43	95	-	-
2023	경평	41	134	77	105	149	100	75	95	41	66	-	-
	내부 (2급 이상)	2	134	3	105	4	100	3	95	2	66	-	-
	내부 (3급 이하)	39	105	74	103	145	100	72	98	39	95	-	-
2024	경평	10	134	20	117	40	100	20	83	10	66	-	-
	내부 (2급 이상)	10	134	20	117	40	100	20	83	10	66	-	-
	내부 (3급 이하)	10	105	20	102.5	40	100	20	98	10	95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7-5.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 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집행지침」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말 주택융자금을 제공받던 인원은 4명, 지원금액은 360,000천원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융자금 제공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인원	10	11	4	-	4	-
지원금액	810,000	1,015,000	340,000	-	360,000	-
1인당 지원 한도	(~2022년) 120,000 / (2023년~) 10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집행지침					
지원 요건 (2024.7. 기준)	전 세대원 무주택자 / 정직(중징계자 등 포함), 휴직, 퇴직예정자 제외					
상환 조건 (2024.7. 기준)	최대 2년거치. 최대 1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4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지침을 개정(2021.8.)하면서, 공공기관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주택융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원으로 할 것

○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주택융자금 대출 지원 관련「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주요 내용]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대출 이자율</td><td>제46조제5항: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할 것

<table>
<tr><th>기준 금리</th><th>각 기관의 적용 기간</th></tr>
<tr><td>1.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3.1.~5.31.</td></tr>
<tr><td>4.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6.1.~8.31.</td></tr>
<tr><td>7.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9.1.~11.30.</td></tr>
<tr><td>10.1. 한은 가계대출금리</td><td>당해연도 12.1.~차년도 2.29.</td></tr>
</table>
자료: 기획재정부 '사내대출제도 개선 10문 10답'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td></tr>
<tr><td>대출 한도</td><td>제46조제5항: 대출 한도는 7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 함</td></tr>
<tr><td>면적 요건 등</td><td>제46조제6항: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td></tr>
</table>

나. 주요 쟁점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2021.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 7월 말에도 여전히 지침상의 대출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여전히 7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중 4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1억원)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개정 시기)
4	36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한국국토정보공사

8-1. 녹색제품 연례적 구매계획 미달성 개선 필요

가. 현 황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23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이행 비율은 44%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제품 계획액을 이행하지 못하였음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라 녹색제품[2]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이행계획을 수행함
- 2023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3]의 구매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평균 118.3% 이행함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행비율은 44%임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함

3) 전체 327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 중 신규 편입된 ㈜한국통계정보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액 현황 등(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구매이행계획(A)	녹색제품 구매실적 (B)	계획 대비 실적 (B/A)
324개 공공기관	733,543	867,720	118.3
한국국토정보공사	2,334	1,026	44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계획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 실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을 보면 2021년 63.6%, 2022년 82.2%, 2023년 44%로 3년 연속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달성하지 못함

[최근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구매이행계획(A)	녹색제품 구매실적 (B)	계획 대비 실적 (B/A)
2021	5,423	3,448	63.6
2022	3,559	2,927	82.2
2023	2,334	1,026	44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8-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93명임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563	93	13	0	20	0	18	42	5	7	7	0	5	1	3	6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5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1.1.8.	금품 수령	300	정직 1월	X
2021.7.20.	횡령	5,176	파면	
2024.1.3.	금품 제공	300	정직 3월	
2024.1.3.	금품 수령	300	정직 1월	
2024.7.17.	횡령	7,986	파면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9 새만금개발공사

9-1.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새만금개발공사는 설립연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현재 부분 자본잠식상태[1]에 있음

○ 2022~2023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기준 새만금개발공사의 누적 손실은 211억 6,000만원으로 예상

[새만금개발공사 재무상태(2018~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총계	1,140,737	1,183,832	1,277,765	1,403,546	1,504,284	1,506,725
유동자산	42,213	82,839	166,804	291,433	389,588	389,987
현금및현금성자산	40,210	72,362	143,566	230,517	246,121	160,908
기타유동자산	2,003	10,477	12,437	10,133	21,250	22,563
재고자산	-	-	10,801	50,783	122,217	206,516
비유동자산	1,098,524	1,100,993	1,110,961	1,112,113	1,114,696	1,116,738
관계기업투자주식	-	534	8,025	7,594	10,065	12,219
유형자산(케이블카)	-	174	1,503	1,515	1,524	1,528
유형자산(공구와기구 등)	387	910	1,302	1,164	762	762
무형자산(매립면허권)	1,097,142	1,097,396	1,097,919	1,098,954	1,099,247	1,099,247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	995	1,979	2,212	2,886	3,098	2,982
부채총계	740	995	4,756	41,791	40,038	38,073
유동부채	740	760	4,756	2,506	4,216	4,216
비유동부채	-	235	-	39,285	35,822	33,857
공사채 등 차입금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235	-		-	-
선수수익(매립면허권)	-	-	-	39,285	35,822	33,857
자본총계	1,139,997	1,182,837	1,273,009	1,361,755	1,464,246	1,468,652
자본금	1,147,000	1,197,000	1,297,000	1,397,000	1,497,000	1,497,000
자본조정	△5,506	△5,747	△6,227	△6,708	△7,188	△7,188
이익잉여금(결손금)	△1,497	△8,416	△17,764	△28,537	△25,566	△21,160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1)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자본잠식이라 하며, 자본잠식이 지속되면서 자본총계가 음(-)(자산<부채)이 되는 경우를 완전자본잠식이라 함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출자받은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상환 계획도 미비한 상황

○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도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현물(공유수면 매립면허권) 1조 970억원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현금 500억원을 출자, 설립 후 2022년도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현금 3,500억원을 추가 출자받음

[새만금개발공사 자본금 현황]

(단위: 억원, %)

납입자본금	주주	금액	비율	비고
14,970	농림축산식품부	10,970	73.3	현물(매립면허권)
	기획재정부	4,000	26.7	현금

주: 연도별 정부 출자 현황: ('18) 현물 1조 970억원, 현금 500억원, ('19) 현금 500억원, ('20) 현금 1,000억원, ('21) 현금 1,000억원, ('22) 현금 1,000억원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 새만금개발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출자받은 매립면허권은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4와 제36조의5[2]에 따라 출자일(2018년)로부터 20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나, 새만금개발공사의 중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누적 손실 및 향후 적자 전망으로 인해 최소 향후 5년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나. 주요 쟁점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대사업을 통한 기타매출(육상태양광 매립면허권 이용료 수입) 외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판매비와 관리비도 충당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황

2)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4 (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생략)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5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9억 7,100만원, 44억 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부출자금을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의 영향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원은 아직 없는 상황

[새만금개발공사 손익상태(2018~2023)]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	-	446	372	8,092	9,303
사업매출	-	-	-	-	-	-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	-	-	-	-	-	-
항만배후도시 분양	-	-	-	-	-	-
케이블카 운영 매출	-	-	-	-	-	-
기타매출	-	-	446	372	8,092	9,303
매립면허권이용료 수입	-	-	446	372	8,092	9,303
매출원가	-	-	-	-	492	501
사업원가	-	-	-	-	-	-
스마트 수변도시 원가	-	-	-	-	-	-
항만배후도시 원가	-	-	-	-	-	-
케이블카 운영비	-	-	-	-	-	-
기타원가	-	-	-	-	492	501
매립면허권 관리비	-	-	-	-	492	501
매출총이익	-	-	446	372	7,600	8,802
판매비와관리비	1,556	8,640	11,944	13,050	11,730	13,008
인건비	515	5,514	7,971	7,357	6,873	8,614
인건비 외 경비	1,041	3,126	3,973	5,693	4,857	4,394
영업이익(손실)	△1,556	△8,640	△11,498	△12,678	△4,130	△4,206
영업외수익	59	1,727	2,720	2,535	7,119	8,612
이자수익	59	1,727	2,720	2,535	4,965	6,458
육상태양광 배당이익	-	-	-	-	-	-
육상태양광 지분법 이익	-	-	-	-	2,154	2,154
영업외비용	-	6	570	630	18	-
공사채 이자비용	-	-	-	-	-	-
기타비용	-	-	-	-	18	-
육상태양광 지분법 손실	-	6	570	63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497	△6,919	△9,348	△10,773	2,971	4,406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순이익	△1,497	△6,919	△9,348	△10,773	2,971	4,406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 2025년부터 사업비 지출 충당 목적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예상됨

- ○ 새만금개발공사는 발생한 수익을 사업비에 재투자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사채로 충당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 2025년부터는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항만경제특구 조성 사업비 지출로 인해 공사가 보유한 현금이 부족해짐에 따라 공사채를 최초 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공사채 이자비용의 영향으로 2025년부터는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 예상
- ○ 2023년 수립한 중기 재무계획(전망)에서는 공사채의 발행 계획 및 지속적인 규모 증가를 고려할 때 2028년까지의 공사 누적 손실을 1,533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공사는 기관 설립 이후 10년 후까지도 당기순손실의 지속으로 인해 자본잠식에 대한 보전 및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새만금개발공사는 부분자본잠식상황에서 수익 발생은 저조한 반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이자비용 부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용 절감 및 사업 수익성 확대 등 다방면의 자구책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 필요

9-2. 사업 집행 부진으로 인한 수익 발생 지연 문제

가. 현 황

❑ 새만금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① 토지 및 도시 개발사업과 ② 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구분됨

○ 토지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업은 공공주도 선도 사업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및 항만경제특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

[토지 및 도시개발 사업 현황]

구분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항만경제특구 조성
사업기간	2019~2024년 (사업기간 변경 협의 중)	2022~2030년
총사업비	1조 3,476억원	1조 8,648억원
사업규모	6.6㎢(200만평)의 도시 조성	4.4㎢(133만평)의 도시 조성
사업형태	공공주도 매립 및 조성	공공주도 매립 및 조성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 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 사업으로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및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자금 조성 수익 사업 현황]

구분	육상태양광 발전	케이블카 조성
사업기간	2019~2042년 (발전소 운영기간 20년 포함)	2019~2028년
총사업비	1구역 1,575억원/ 3구역 1,604억원	975억원
사업규모	구역별 99MW 태양광 발전	약 4.9km 케이블카 설치
사업형태	신·재생에너지 발전	궤도사업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이상아 예산분석관 (ivory412@assembly.go.kr, 6788-3745)

나. 주요 쟁점

❑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분양 수익 발생 지연 문제

○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3,476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전액 부담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의 53.5%인 7,203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입된 금액은 2,421억원으로 당초 2019~2023년에 투자를 계획한 7,203억원의 약 33.6% 수준에 불과함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집행 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투자계획	16	165	635	1,076	5,311	6,273	13,476
집행	97	89	427	848	960	-	2,421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 2024년 5월까지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관련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며, 새만금개발공사의 중기 재무전망(2023.11.)상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2025년부터 분양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새만금청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비 투입계획 등이 변경될 예정인바,[1] 향후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 및 새만금 사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추가 지연이 예상됨

○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통한 분양수익이 새만금개발공사의 주요 수익원이 된다는 점에서 새만금개발공사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향후 입찰 공고 및 분양 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 ㅇ 2023.4월부터 2023.11월까지 새만금청과 협업하여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총 10차 회의)
- 새로 도출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2024.1월부터 2024.3월까지 새만금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수행
- 2024.4월 公社 자체 위원회인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의를 완료
ㅇ 2024.5월 새만금청에 통합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며, 신청 이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

❑ 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 장기화 문제

○ 새만금개발공사의 고군산도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2019.12.)에 따른 연도별 수익 및 비용을 살펴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975억 5,400만원의 사업비 투입을 통해 케이블카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운영에 따른 이익(수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획하였음

[고군산도 케이블카 연도별 수익 및 비용(타당성조사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익흐름		13,017	(145)	(1,271)	(5,405)	(12,763)	(37,800)	(40,171)	7,655	(생략)
비용	사업비	97,554	145	1,271	5,405	12,763	37,800	40,171	-	
	운영비용	364,068	-	-	-	-	-	-	12,143	
수익	운영수입	574,639	-	-	-	-	-	-	19,798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 그러나 2021년 12월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관계기관(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의 협의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바, 현재 새만금개발공사의 케이블카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로 조성사업 기간이 증가하였음

[케이블카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19~2028년(케이블카 운영기간 미포함)
총사업비	약 975억원
지원조건	직접 수행 또는 특수목적법인 지분출자
사업시행주체	새만금개발공사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 당초 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 975억 5,400만원 중 573억 8,300만원(58.8%)이 2019~2023년에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2019~2023년 동안 총 22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타당성 조사 결과 대비 예산 투입 규모 자체가 상당히 적었고, 해당 사업 예산의 집행률도 2020년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케이블카 조성 사업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B/A)
2019	230	-	230	143	32	55	62.2
2020	1,368	32	1,400	1,286	74	40	91.9
2021	645	74	719	12	-	707	1.7
2022	14	-	14	9	-	5	64.3
2023	7	-	7	4	-	3	57.1
합계	2,264	-	-	1,454	-	-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케이블카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관계기관 협의 후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사업여건을 확인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새만금개발공사의 수익원 중 하나인 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추진이 당초 계획 대비 계속 지연되고 있고, 2024년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지거나 수익 발생 시점이 늦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케이블카 조성 사업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새만금개발공사는 「보수규정」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107명의 임직원에게 총 2,094,624천원을 지급

[새만금개발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B	105	720,109	698,733	1,418,842
2023	B	105	713,122	748,310	1,461,432
2024	B	107	1,295,925	798,699	2,094,624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내부평가급이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차등 등급 수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음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새만금개발공사가 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이 존재하지 않음

[최근 3년간 새만금개발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평	42	186	46	150	12	113	-	-	-	-	-	-
	내부	42	20	46	18	12	16	-	13	-	10	-	-
2023	경평	8	226	13	196	25	172	21	150	18	132	15	89
	내부	8	20	13	18	25	15	21	14	18	12	15	10
2024	경평	미정	227	미정	196	미정	179	미정	179	미정	150	미정	134
	내부	미정	20	미정	18	미정	15	미정	14	미정	12	미정	10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새만금개발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관련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9-4. 징계 관련 문제

가. 현 황

❑ 새만금개발공사 인원 중 2019~2024.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7명임

[새만금개발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3)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 운전 관련	부정 청탁 관련	채용 비위 관련	폭언 ·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98	7	4	-	1	-	1	1	1	3	-	-	-	-	2	1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9.1.1.~2024.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규정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상기한 내용 중 일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바, 인사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인원 1명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4년 7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새만금개발공사 재산비위 관련 현황]

(단위: 천원)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재산비위 종류	비위 관련 재산 가액	징계처분 결과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 여부
2024.4.18.	금품 향응·수수	635	정직 3개월	X

주: 각 연도 내에(2024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자료: 새만금개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0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10-1. 안전관리등급 미흡

가. 현 황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종사자 및 시설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등급제가 시행된 2020년부터 심사 대상임

○ 안전역량(300점),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수준(400점), 안전성과(300점)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위험요소 평가는 작업장으로, 본원 및 검사소에 대한 안전수준을 평가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2023년 안전관리등급은 4(미흡) 등급이며, 2021년 이래로 매년 4(미흡) 등급을 받고 있음[1)]

[최근 3년간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관리등급 현황]

(단위: 등급)

2020	2021	2022	2023
4(미흡)	4(미흡)	4(미흡)	4(미흡)

자료: 기획재정부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21년부터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에 해당

나. 주요 쟁점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를 위탁수행함

○ 관리원의 주요사업인 건설기계 검사사업은 건설기계의 구조와 성능 확인, 적재량 증가와 같은 불법개조 및 유지보수(정비) 미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능불량에 대한 안전사고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는 2023년 36만 8,119대에 대해 수행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은 221억원 발생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요사업]

(단위: 대, 건, 억원)

주요 사업		2023년 실적		2024년 계획	
		실적	수입액	계획	수입액
건설기계 검사		368,119	209	383,907	233
건설기계 형식(변경) 신고	건설기계 형식 신고	248	0.81	364	1
	타워크레인 형식 승인	22	0.09	28	

자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안전관리등급 미흡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검사소에 대한 안전수준은 아주미흡으로 검사소의 안전수준 개선이 필요함

○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작업장은 총 22개소로, 본원 1개소 및 지역검사소 18개소(출장소 3개소)를 두고 있으며 동 작업장에 대한 안전수준이 매우 취약하여 5등급으로 평가됨

[연도별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관리등급 결과]

(단위: 등급)

구분	종합 등급	세부 심사기준						
		안전 역량	안전수준					안전 성과
			종합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	연구 시설	
2020	4		5	E	-	-	-	
2021	4		4	D	-	-	-	
2022	4		4	D	-	-	-	
2023	4	5	4	E	-	-	-	2

주: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안전보건공단

○ 특히, 작업장의 안전수준은 2022년 4(미흡) 등급이었으나 2023년 5(매우미흡) 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수준 배점 및 등급]

(단위: 점, 등급)

범주	심사 분야	안전수준 지표	배점	등급			
				'20	'21	'22	'23
안전수준 (400점)	작업장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40	E	E	C	D
		② 기계 · 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20	D	D	C	D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80	D	D	D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E	E	E	D
		⑤ 수급업체 안전 보건 관리	100	E	E	E	E
			400	E	E	4	5

주: 1등급(A) 90점 이상, 2등급(B) 80점 이상, 3등급(C) 70점 이상, 4등급(D) 60점 이상, 5등급(E) 60점 미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1 건설기술교육원

11-1. 3년 연속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미달성

가. 현 황

❑ 건설기술교육원의 202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 비율은 46.7%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구매해야 할 중소기업제품 계획액의 50%를 달성하지 못함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1]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구매해야 함

○ 2023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2]의 구매계획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평균 74.5%임

- 건설기술교육원의 구매실적은 46.7%임

박지민 예산분석관 (cow25c@assembly.go.kr, 6788-3731)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전체 327개 공공기관(부설기관 제외) 중 신규 편입된 (재)한국통계정보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

[건설기술교육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등 (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소기업제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324개 기관	57,653,057	42,965,198	74.5
건설기술교육원	3,489	1,629	46.7

자료: 건설기술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건설기술교육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구매 실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술교육원의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보면 2021년 46.1%, 2022년 38.3%, 2023년 46.7%로 3년 연속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50%)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건설기술교육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소기업제품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1	3,270	1,506	46.1
2022	5,815	2,227	38.3
2023	3,489	1,629	46.7

자료: 중소기업유통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1-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 황

❑ 건설기술교육원은 「성과상여금 지급규칙」 등에 근거하여,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

○ 2024년 82명의 임직원에게 총 596,542천원을 지급

[건설기술교육원이 지급한 성과급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 연도	경영평가 결과	임직원 수	성과급 지급액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2	C	76	52,800	706,109	758,909
2023	D	78	-	696,903	696,903
2024	C	82	50,803	545,739	596,542

주: 2022~2023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예산 기준이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기준
자료: 건설기술교육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내부평가급이 개인별(부서별)로 엄정한 내부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차등 등급 수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음

○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기타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본 지침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gckim@assembly.go.kr, 6788-4681)

나. 주요 쟁점

❑ 건설기술교육원이 2022~2024년에 지급한 성과급은 지급률이 0%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차등 등급 수가 5개에 불과하는 등 등급별 차등화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건설기술교육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평/ 내부)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내부	7	134	10	117	42	100	7	83	5	66	-	-
2023	내부	10	134	15	117	36	100	12	83	2	66	-	-
2024	내부	10	134	15	117	50	100	15	83	10	66	-	-

주: 인원(부서)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건설기술교육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건설기술교육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

발간일	2024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경호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케이에스센세이션(tel 02·761·0031)

ISSN 3058-504X

ⓒ 국회예산정책처, 2024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8-002040-10

국회예산정책처